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0350-14



어업자원관실 업무편람

2009. 11

어업자원관실 업무편람

2009. 11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관

목 차

I. 일반현황	1
1. 일반현황	3
2. 비전 및 전략	5
3. 주요업무 추진계획	6
II. 어업정책과	17
1. 일반현황	19
2. 비전 및 전략	21
3. 주요추진정책	22
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22
나. 해역별 어업조정제도 마련	28
다. 지역별·해역별 특성에 맞는 어업관리 제도 구현	32
라. 연근해 무조업선 일제 정비	39
마. 표준 어구·어법 기준 마련	41
바. 생분해성 어구보급 확대	43
사. 고래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위한 제도정비	50
아. 저탄소·에너지 절약형 어선어업 구조정착	56
자. 기후변화에 따른 해파리 어업피해 대책 마련	60

Ⅲ. 양식산업과	65
1. 일반현황	67
2. 비전 및 전략	69
3. 주요 추진정책	70
가. 외해양식 활성화	70
나. 어장이용계획 개발 기본 지침 수립 추진	74
다. 환경 친화형 배합사료 보급 확대	78
라. 수산동물 방역체계 구축	88
마. 양식분야 대표품목 육성 추진	93
바. 친환경양식 기반시설 구축	99
사. 양식수산물 출하조절사업	103
아. 어업재해복구 지원대책	106
자. 적조피해 예방대책 추진	111
차. 수산물 이력제 추진	115
카. 해역별 위생등급 설정 관리	119
타. 수산물 위생관리	121
파. 양식장 불법시설 정비 및 단속	123
하. 김 양식장 유해물질 사용 근절대책	127
거. 한·미 패류위생협정 이행	130
너. 위생약정 이행 및 수입조건 이행	137

IV. 자원환경과	145
1. 일반현황	147
2. 비전 및 전략	150
3. 주요 추진정책	151
가.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체계화	151
나. 총허용어획량(TAC)제도 확대 강화	154
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	160
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바다 숲 조성	168
마. 해양관광·레저가 어우러진 바다목장 조성	172
바. 자율관리어업 확산 및 내실화	178
사. 어장정화사업	184
아.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한 내수면어업 진흥	189
자. 유어산업 육성제도 도입	203
V. H/S 피해어업인 지원단	205
1. 일반현황	207
2. 주요추진정책	208
가. 피해어업인 지원활동	208
나. 유류 피해어장 복원추진	210

VI. 주요통계 및 참고자료	217
1. 어업자원관 예산 내역	219
2. 수산업·어촌 주요통계	221
3. 어업자원관실 소관 주요통계	223
가. 근해어업 허가처분 현황	223
나. 연안어업 허가처분 현황	224
다. 구획어업 허가처분 현황	224
라. 신고어업 현황	225
마. 정치망어업 면허처분 현황	225
바. 마을어업 면허처분 현황	225
사. 어선등록 현황	226
아. 양식어업 면허·허가 건수 및 면적	227
자. 내수면어업 현황	230
차. 수산물 생산량 현황	233
카. 유어·낙시 현황	237
타. 수산자원관리 정보화 시스템 활용 현황	241
4. 어업자원관 소관법령 현황	242
5. 수산동식물 채포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255
6. 어업자원관 소관 법인 현황	260
7. 어업자원관 소관 위원회 현황	263
8. 연근해 어업별 조업 모식도	268
가. 수산업법상 수산업의 분류	268
나. 면허·허가·신고어업의 정의 및 어업종류	269
다. 허가어업의 종류	271
【근해어업】	271
【연안어업】	282
【구획어업】	2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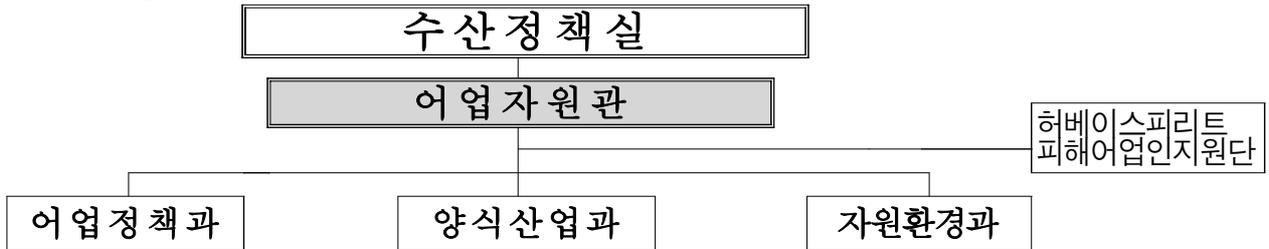
I. 일 반 현 황

1. 일반현황	3
2. 비전 및 전략	5
3. 주요업무 추진계획	6

1. 일반현황

조직 및 정원

□ 조 직



□ 정 원

(단위 : 명)

구 분	정 원							
	합계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이하	기능직
합계	45	1	1	4	5	17	15	2
어업정책과	15	1	1	-	3	3	5	2
양식산업과	14	-	-	1	1	7	5	-
자원환경과	11	-	-	1	1	4	5	-
허베이스피리트 피해어업인지원단	5	-	-	2	-	3	-	-

주요 관장업무

담당과	주요 업무 내용
어업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 및 근해어업 정책·제도 조정 연근해어업 경영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 어선의 관리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도·감독
양식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식어업육성, 어장환경개선 정책수립·운영 양식수산물 질병 관리,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운영 적조, 어업재해대책, 수산물품질검사원 지도·감독
자원환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근해 자원환경 및 수산자원회복에 대한 정책수립·집행 자율관리어업, 총허용어획량, 바다목장, 바다숲 조성 등 내수면어업, 낚시, 유어장 제도 운영
허베이스피리트 피해어업인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류피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피해지역 어장환경복원, 피해어업인 보상지원 관한 사항 피해지역 어획수산물 안전성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소관법률

법률명	주요내용
수 산 업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어업, 허가 및 신고어업 • 어업조정, 자원의 보호·관리 및 보상·보조
기 르 는 어 업 육 성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르는데어업발전시행계획 • 수산자원관리수면
어 장 관 리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장정화·정비 등 어장환경관리
수 산 자 원 관 리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체계적 수립·집행
어 선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건조허가, 등록 및 검사 등 안전관리
내 수 면 어 업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면 어업 기본계획 수립 및 어업관리
낙 시 어 선 업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시어선업 신고 및 설비기준 등 안전관리
수 산 동 물 질 병 관 리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동물전염병 방역 및 수입수산물 검역
수 산 물 품 질 관 리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의 상품성 및 안전성 향상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검사
농 어 업 재 해 대 책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재해 대책 및 재해어업인 지원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기금의 보상한도 초과금액 추가지급 •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지역 지정

'09년도 예산 및 '10년도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8(a)	'09(b)	'10정부안(c)	증감액		증감율(%)	
				b-a	c-b	b/a	c/b
총 계	4,610	2,622	2,378	△ 1,988	△ 244	△ 43.1	△ 9.3
일 반 회 계	210	233	533	23	300	11.0	128.8
농 특 회 계	4,054	1,884	1,456	△ 2,170	△ 428	△ 53.5	△ 22.7
광 특 회 계	8	10	17	2	7	25.0	70.0
수산발전기금	338	495	372	157	△ 123	46.4	△ 24.8

* 추경예산 포함 : '08년 2,363억(농특), '09년 20억(기금)

* 광특회계는 부처편성사업만 표시

2. 비전 및 전략

비전

건강한 어장, 풍요로운 자원,
행복한 어업생산 활동

전략

자립·자강형
어업생산 구조



고수익, 친환경
수산생물산업

추진
과제

고수익 어업생산 능력 창출

어업경영, 자원수준을
고려한 적정어선세력 달성

고부가·친환경 외해양식
산업 전략적 육성

자율·자립형 어업자원 관리

해역별·지역별 맞춤형
어업관리 제도 구현

자율자원관리형 어업생산
활동 문화 조성

녹색성장형 수산자원 관리

저탄소·녹색성장형
바다숲 조성

저탄소·에너지 절약형
어선구조로의 전환

청정하고 안전한 어장환경

안전하고 깨끗한
수산물 생산공급

친환경 어구보급 및
어장정화 사업 확대

3. 주요업무 추진 계획

1 수산생물산업 경쟁력 강화

가 감척을 통한 적정 연근해 어선세력 유지

현황 및 문제점

- 자원수준에 비해 과도한 어획강도(어선척수, 단위노력어획량)
 - 연근해 어선척수는 어업자원량에 비해 10~37% 과도
 - 어린고기 등 비상품성 어종의 포획비율이 증가하고, 유류비 등 어업생산비용 증가로 어업경쟁력 약화
- 유가안정 등으로 감척수요가 감소하고, 어획강도 높은 근해 대형·저층끌어업 업종의 참여가 저조
 - 감척지원금이 어업인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09. 1월이후 면세유 가격안정 등 경영여건이 개선되어, 참여율 저조
 - ※ '09년 계획물량(324척/1,295억원)의 67.2%인 218척/899억만 사업신청

향후 추진계획

- 어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1년까지 어선감척 지속
 - WTO 협상진전, FTA 체결확산, 어업자원감소 및 고유가 지속 등
- 체계적 감척제도 마련과 업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 방식을 도입 추진
 - 감척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감척제도 도입, 인센티브 부여, 잔존어업인의 부담부여 등 법적·제도적 근거마련 추진
 - ※ 『어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추진('09.9~12월)

나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

현황 및 문제점

- 일부 품종의 과잉생산, 수출부진, 어업재해, 어장 노후화 등으로 양식어업의 지속적 성장 한계

※ 양식업은 수산물생산의 42%('07기준)를 차지

- 민간주도의 자율 수급시스템 및 새로운 양식개념 확대가 필요
 - 외해수증가두리양식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양식산업의 신성장동력 견인

향후 추진계획

-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및 지원으로 시장변화에 탄력적 대응
 - 생산자 연합회를 구축하여 수급조절·가공·판매를 연계 통합 관리·운영할 수 있는 대표조직 육성
- 대규모 외해 가두리 양식시설을 확대하여 부가가치 증대
 - 고가·고품질 어종(참치, 대구, 참돔, 능성어)의 대량생산 체제를 구축하여 외국산 수산물에 대한 경쟁력 제고
- 주요품목에 대한 자율수급조절 강화로 수급안정
 - 생산규모, 수급 불균형이 큰 양식품종에 대한 관측사업 확대
 - ※ ('09) 김 등 7개 품종 → ('13) 10개 품종
 - 유통협약 및 자조금 사업대상 규모 확대를 통한 내실화 도모
 - ※ 사업범위 확대 : ('07) 시·군 → ('08~'09) 광역화 → ('10) 전국화
 - ※ 대상품목 : ('08) 4종(김, 전복, 넙치, 송어) → ('09) 5종(자라 추가)

다 내수면어업 활성화 및 낚시관리 제도화

현황 및 문제점

- 내수면어업은 '90년대 중반이후 위축 되었으나, 최근 뱀장어 등 육상양식업을 중심으로 생산량 회복 추세
- 내수면 수산물은 소비자 접근성이 낮고, 회·매운탕 등 소비구조 단순
 - ※ 내수면 생산량(천톤) : '90년(35) → '97년(32) → '04년(25) → '08년(29)
-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낚시대상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안전사고로부터 낚시인의 생명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 부재
 - ※ 매년 5만톤(연근해 및 내수면 어획량의 약 4%)이 낚시에 의해 포획,
 - ※ 무인도서, 갯바위 등에서 낚시인 인명사고 : '04년 385명, '05년 440명

향후 추진계획

-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연계한 내수면어업 진흥방안 마련
- 내수면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가공공장” 설치 지원
 - ※ 자라('09~'10, 32억원), 메기('10~'11, 26억원)
- 관상어 등 고부가가치 양식품종 개발 및 지원
 - 관상어 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품평회 참가 지원 및 관상어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 추진
- 낚시관리 및 육성법(안) 마련 및 입법 추진
 -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한 낚시제한기준 설정 등

2 | 자율·자립형 어업자원 관리

가 | 지역별·해역별 맞춤형 연안어업 관리

현황 및 문제점

- 한정된 어장에서 경쟁조업에 따른 업종간 갈등과 분쟁 심화
- 동·서·남해의 어장환경특성에 따라 어구·어법이 다양

향후 추진계획

-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여 원칙과 기준에 의한 어업관리
 - 지역 실정에 맞는 어업자 자율자원관리 및 어업제도의 운영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연안어업관리 방안 마련 추진
 - ※ Green zone :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낚시만 허용하는 해역
 - 연근해 어구의 형태와 어획방법에 대한 명확,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업종간 분쟁예방과 어업질서 도모
 - ※ 「연근해 어업의 표준어구와 어법에 관한 고시」 제정 추진
- 연근해어업 체질 강화를 위한 증장기 제도개선 추진
 - 현행, 경쟁조업방식에서 어업자 자율 관리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초연구('10년 4.5억원)
 - 어린고기·혼획을 저감을 위한 어구·어법 개발 및 어종별 자율관리방식 전환추진
 - 어업허가장은 있으나, 장기간 조업에 참여하지 않는 무조업 어선에 대한 일제정비 추진
 - 미래지향적 연근해어업 발전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어업총조사('10년 6억원) 실시

나 자율관리어업 내실화 및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기존 정부주도의 수산자원 관리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조성·관리→자율관리어업 도입('01.2)
 - ※ 참여공동체 : ('01) 63개소/5천명 → ('09.6) 709/53(11배 증가)
- 수산자원이 회복되고 소득이 향상되는 공동체가 속속 가시화
 -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의 소득이 최근 3개년('05~'07)간 매년 8-9%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08. 9~12, 70개소)
- 자율관리어업의 효과가 큰 어선·복합어업 공동체 참여는 아직 부족
 - 참여공동체 : 마을·양식어업 64%, 어선·복합어업 34%. 내수면 3%

향후 추진계획

- 참여공동체를 2012까지 전 어촌계의 60%까지 확대하고, 공동체 등급에 따라 육성사업비 차등 지원하여 공동체간 경쟁유도
 - 참여공동체 : ('01) 63개소 → ('09) 750 → ('12) 1,200
 - 최우수공동체 3억원, 풍요공동체 2억원, 모범공동체 1억원 지원
- 매년 성공사례 경진대회를 개최를 통해 자율관리어업의 “뽕”을 조성하고,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에 대한 관리 강화
 - 자율관리어업 효과측정을 위해 공동체별 소득변화 조사('09.7~12월)
 - 활동이 부진한 공동체는 현장집합교육 등을 통해 집중 지도하고, 일정요건(활동실적 부진, 불법어업 과다 등) 미달시에는 선정 취소 추진

3 | 녹색성장형 수산자원 관리

가 |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

현황 및 문제점

- '90년대 중반 150만톤의 연근해 어획량이 '04년까지 100만톤 수준으로 지속 감소, 최근 회복 추세로 전환

※ 어획량 : ('80) 137만톤 → ('04) 108만톤 → ('08) 128만톤

- 매립, 토사채취 등으로 산란·서식지가 훼손되어 생산력 감소

향후 추진계획

- 자원조성사업 지속 추진으로 수산자원 증대

- 대규모 바다숲 조성사업 추진('09년, 100ha, 100억원)

※ 어류 산란·서식장 조성 → CO₂저감 → 펄프·해조연료 생산 및 한천·콜라겐 등 식의약품 개발 등 상업화로 연결

- 시범 바다목장(여수, 북제주, 울진, 태안) 및 소규모 바다목장(12개소) 조성 : 사업비 190억원(시범 130, 소규모 60)

- 인공어초 4.4천ha 시설 및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종묘(치어 등) 1억마리 방류 : 사업비 570억원(인공어초 400, 종묘방류 170)

- 체계적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하위령' 제정('10.4)

- 수산자원회복계획 도입, 휴어제 근거 마련 등 새로운 자원 관리 수단 규정, 총허용어획량(TAC) 등 세부추진방안 마련

- 한·중·일 공동이용 어종관리를 위한 3국 수산전문가 협의회 개최('09.11)

나 어선구조 선진화 및 어선관리체계 개편

현황 및 문제점

- 어선어업의 저효율 고비용 연료소비형 구조에서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전환 필요
- 어선관리 효율화 및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선검사 기능을 우리부로 이관하여 통합 일원화 필요
- '09년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추진
 - LED 집어등 설치 217척/13억원, 유류절감장치 400척/42억원
- 어선등록·검사 일원화를 위한 어선법 개정('09.5.27)
 - 「선박안전법」에 따른 어선설비기준, 어선검사제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어선법」으로 이관

향후 추진계획

- 어선구조 선진화 및 어선관리 체계화 세부추진방안 수립
 -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 미래형 어선기술 개발 및 경제성 조업 가능한 규모의 대체 건조지원
- 효율적인 어선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어선법 하위법령 개정추진
 - 어선설비 기준 및 검사업무 세부시행 기준 마련 ('09. 6~12)
-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유류절감장비 개발·보급 지원 및 현대화, 선원복지 미래형 어선기술개발 추진

4 | **청정 안전한 어장환경 조성**

가 |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불량 식재료, 위해물질, 식중독 등에 의한 식품사고 빈발
 - 수산물 수입급증과 더불어 불량 수산물도 지속적으로 증가
 - ※ 부적합 건수 : ('06)376건(0.4%) → ('07)536건(0.5%) → ('08)373건(0.45%)
 - 식품안전사고 증가 등으로 식품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확산되고, 식품안전에 대한 욕구 증대

향후 추진계획

- HACCP 적용 양식장 확대 및 위생안전 교육 강화
 - 양식장 HACCP 컨설팅 및 시설개선비 지원
 - ※ HACCP 양식장(개소) : ('05) 22 → ('06) 42 → ('07) 82 → ('08) 122 → ('09) 162(누계)
- “생산해역 위생등급설정”을 통해 해역별 안전관리 차별화
 - 60개 해역에 대해 중금속, 세균 등을 조사, 등급 설정('05~'10)
- 12개대학의 전문연구기관 컨소시엄 구성(사업비 21억)
 - ※ 연차별 조사계획(해역수) : ('06) 30 → ('07) 45 → ('08) 60 → ('09) 60
- 수산물이력제 활성화 및 각종 대중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
 - 대상품목 및 참여 어업인, 유통·가공업체, 판매장 확대 추진
 - ※ 대상품목 : 김, 미역, 넙치, 굴비, 바지락 등 10개 품목
- 위생약정 체결 확대 및 현지점검 강화
 - 주요 수산교역국가에 대한 수입수산물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산물 위생약정 체결 확대 추진
 - ※ ('09까지) 중국, 베트남, 인니, 태국 → ('09 이후) 뉴질랜드, 대만 등

나 자연 친화형 어구보급 확대 및 어장환경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폐어구 등으로 인한 연안오염 및 수산자원 피해 발생
 -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인한 어류산란장 및 서식장 파괴
- 생사료 사용으로 인한 양식어장 환경악화 및 어린고기 남획
- 어장오염에 따른 수산동물질병 및 유해성 적보 발생 빈발

향후 추진계획

- 자연친화형 어구 및 배합사료 사용 확대
 - 시범사업의 확대를 통한 자연분해성 어구의 상용화 기반마련
 - '09년 시범사업 : 대게·조기·꽃게 자망, 장어통발(5개 시·도)
 - ※ 자연분해성 어구 : 자연계의 박테리아, 곰팡이 등 미생물 작용에 의해 일정기간(1~2년) 경과 후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
 - 연안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저밀도 부표(시티로폼)의 연차적 고밀도 규격제품으로의 교체지원을 통한 연안환경 개선('09년 신규)
 - 현장적용 시험 등을 통한 고품질 배합사료 생산·공급체계 구축
- 체계적인 어장관리를 통한 어장생산성 회복 추진
 - 연안양식어장의 오염정도, 어장수용력, 생산성을 감안 어장관리 해역을 지정하고, 적극적인 어장정화사업 추진
 - ※ 어장정화사업 : 5,761ha, 5,145백만원(국고 80%, 지방비 20%)
 - 어장관리해역 중 환경악화 및 수산물안전성 우려어장에 대해서는 『어장관리특별해역』으로 지정
 - 양식굴 박신(굴까기) 과정에서 대량 발생하는 폐각의 재활용(비료 등 자원화) 지원을 통한 연안오염 방지('09년 신규)

다 HEBEI SPIRIT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어업인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유조선 유류사고('07.12.7)로 충남·전남·북 지역 피해발생
 - 법원에 신고된 유류피해 제한채권은 총 12.6만여건 중 수산분야가 11만건(88%)으로 맨손어업이 88.6천건(80%) 차지
- 배상금이 일부 지급되고 있으나, 수산부문은 입증자료 부족 및 피해건수의 과다 등으로 배(보)상 지연

추진실적

- 피해지역 주민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어업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업재개 및 경영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원
 - 긴급생계안정자금 1,172억원('07.12) 및 쌀·의약품('08.4) 지원
 - 피해지역 어업인을 고용하여 오염된 굴양식시설(43ha) 철거(126억원)
 - 기존 영어자금(673억 원)의 상환유예·이자감면, 특별영어자금(242억원)·수산업경영회생자금(22억원) 지원 및 농특 융자금(4억원) 상환유예
 - 피해어장 환경개선을 위한 침체어망, 양식어장 개선(20억원) 사업 추진
- 피해어장의 체계적인 복원을 위한 「어장환경 복원계획」 수립('09. 7)

향후 추진계획

- 신속·공정한 피해어업인 배(보)상을 위한 지원활동 강화
 - 국제기금과의 협의(총회·집행위·정례회의)를 통한 사정 촉구
 - 신속한 피해사정과 배(보)상을 위해 전문조사인력 확충 등 지속추구
-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국토부)확정 및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어장복원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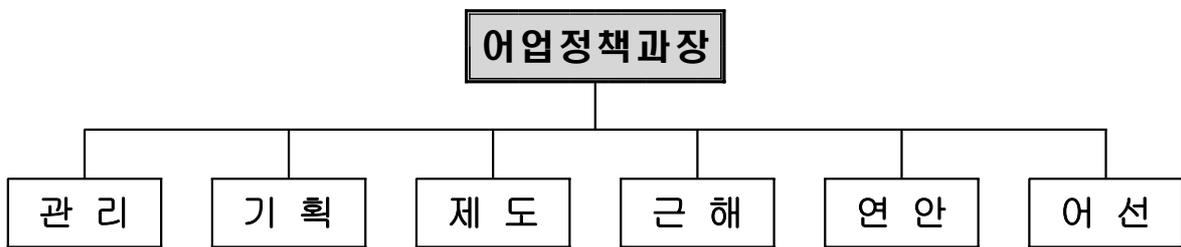
II. 어업정책과

1. 일반현황	19
2. 비전 및 전략	21
3. 주요추진정책	22
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22
나. 해역별 어업조정제도 마련	28
다. 지역별·해역별 특성에 맞는 어업관리 제도 구현 ..	32
라. 연근해 무조업선 일제 정비	39
마. 표준 어구·어법 기준 마련	41
바. 생분해성 어구보급 확대	43
사. 고래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위한 제도정비	50
아. 저탄소·에너지 절약형 어선어업 구조정착	56
자. 기후변화에 따른 해파리 어업피해 대책 마련	60

1. 일 반 현 황

조직 및 정원

□ 조 직



□ 정 원

(단위 : 명)

구 분	합계	고공단	3·4 ~ 4급	4·5 ~ 5급	6급이하	기능직
정 원	15	1	1	6	5	2
현 원	17	1	1	6	7	2

소관법률

법률명	주요내용	제·개정 경과 및 계획
수산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어업, 허가 및 신고어업 • 어업조정, 자원의 보호·관리 및 보상·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 법률 제295호('53.9.9) • 개정 : 법률 제9626호('09.4.22)
어선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 건조·개조 허가 및 등록 • 어선설비 기준, 검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 법률 제3063호('77.12.31) • 개정 : 법률 제9718호('09.5.27)

담당별 업무분장

구분	주요 업무내용	비고
관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 대외업무(국회, 예·결산 등) 총괄 국립수산과학원 관리·감독(책임운영기관의 평가 등) 연근해업종별 경쟁력강화 방안 	
기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근해어업의 구조조정 계획수립 및 집행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 지원사업 어업자원관실 주요 업무계획 관련 	
제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업자원관 소관 수산관계법령의 총괄 어업제도에 관한 법령 질의·해석 	
근 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해어업의 정책수립 및 허가 운영에 관한 사항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및 운영, 고래관련 업무 	
연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어업, 구획어업의 정책수립 및 허가 운영에 관한 사항 마을·정치망어업(면허) 및 신고어업 운영에 관한 사항 	
어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선관리·등록·검사 및 건조 허가 등에 관한 사항 어업자원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09년도 예산 및 '10년도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09년	'10년(정부안)	증감	대 비 (%)
합 계	142,872	87,847	△55,025	△38.5
< 일반회계 >	1,400	1,400	-	-
○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제 구축	1,400	1,400	-	-
< 농특회계 >	140,272	86,447	△53,825	△38.4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129,900	77,500	△52,400	△40.3
○ 친환경어구 보급 지원	4,870	5,035	165	3.4
○ 고효율 어선유류절감 장비 지원	5,502	3,912	△1,590	△28.9
< 수발기금 >	1,200	-	△1,200	△100.0
○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	600	-	△600	△100.0
○ 어망생산운영자금	600	-	△600	△100.0

2. 비전 및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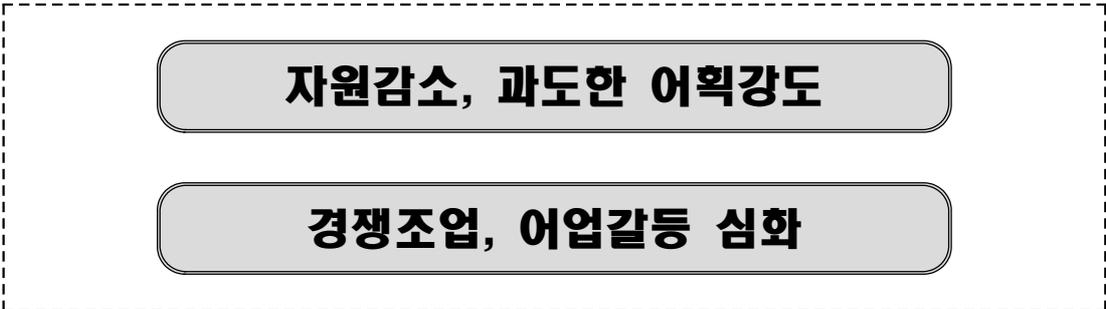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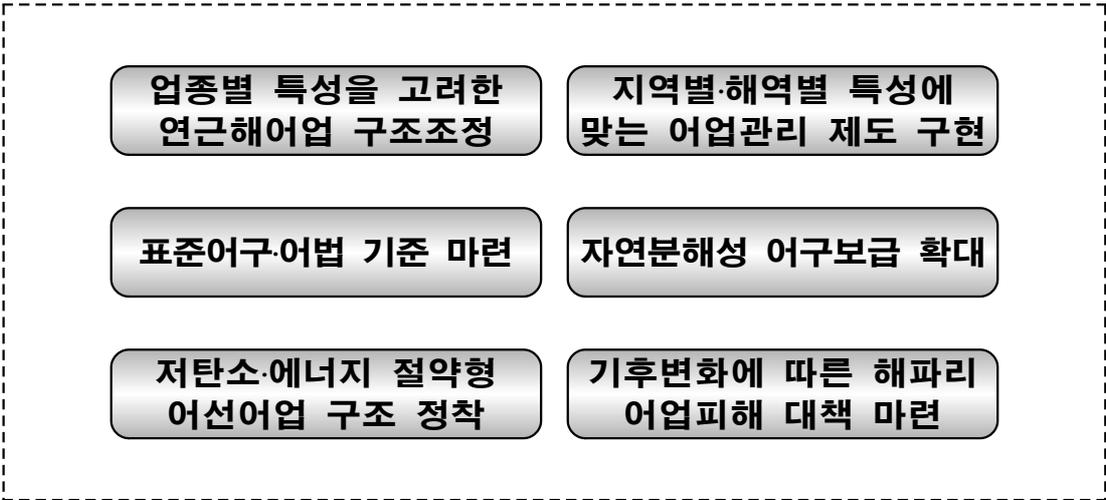
고수익형 어업생산 능력 창출



**녹색성장형
어업구조 전환**



**어업관리 제도
선진화**



3. 주요 추진정책

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목 표

-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 제고

1) 추진배경

- 국내·외적인 수산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악화된 연근해어업 경영수지 제고
 - 연근해 어업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연근해 어선세력의 감축 시책이 시급히 수립·추진하여야 할 필요성 제기
 - ※ 1992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을 위한 계획수립 및 조사·연구
 - 조사당시 어선세력이 자원수준 대비 23~53% 과도한 것으로 평가

2) 추진경과

- 1994년부터 연근해어선 감축사업 추진(일반감축)
 - 연안어업 : 연안 주산란·서식지 보호 및 연안어업경쟁력 제고
 - ※ '94 ~ '08년까지 3,906억원을 투입 11,191척 감축
 - 근해어선 : 대형선망, 대형트롤 등 어획강도가 큰 업종 감축
 - 정부 지원액(3~4억) 대비 어업인 요구액(7~9억)이 크게 높아 참여 저조 및 중도 포기 등으로 '04년 사업 중단, '07년 재개
 - ※ WTO-DDA, FTA에 대비하고 자원회복과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07~'11년까지 '06년말 전체 근해어선의 35%인 1,280척 감축 추진

- 1999.1.22 및 2001.6.30 각각 발효된 한·일, 한·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조업어장 축소로 국제규제 감척사업 추진(국제감척)
 - 일본수역 : 통발, 채낚기, 트롤어선 등
 - 중국수역 : 안강망, 자망, 연승어선 등
- ※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2002년까지 감척
- ※ '99 ~ '02년까지 6,443억원을 투입 1,308척 감척

3) 성과와 반성

□ 성과

- '94년 이후 어선감척 사업으로 연근해어선 13,600여척이 줄어들어 어획량 및 어업소득 증가
 - ※ 연근해어선 척수 : ('00) 68,629척 → ('08) 57,177척으로 16.7% 감소
 - ※ 척당 생산량 및 어로수입 증가
 - 척당 생산량 : ('00) 17.3M/T → ('08) 22.4M/T
 - 척당 어로수입 : ('00) 33.9백만원 → ('08) 56.5백만원

□ 반성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감척추진으로 근해 대형·저인망 업종의 참여부진
 - ※ '07~'11년까지 근해어선 1,280척을 감척할 계획이나, 일부 근해저인망류(동해구트롤, 서남구기저 등) 참여저조로 목표달성 불투명('07~'08까지 461척 감척)
- 어선감척 후 무저조업선(일명 장롱면허)의 부활로 감척효과 반감
 - ※ 감척이후 무저조업선의 허가를 구입하여 다시 어업활동에 재진입하는 사례 발생
- '97~'98년 무허가·무등록어선의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연안어선 23,000여척이 양성화됨에 따라 오히려 연안어선수 증가
 - ※ 연안어선 척수 : ('94) 43,520척 → ('00) 63,342척 → ('08) 53,792척

4) 향후 추진계획

□ 국내·외 어업환경 변화에 적극대처 및 어업생산량 증대를 위해 '11년까지 근해어선 지속감척 추진

- WTO 협상진전, FTA체결확산, 어업자원 감소 및 고유가 지속 등 출어환경 악화에 적극대처

※ 근해어선 감척계획 : ('09)124척(495억원)→('10)194척(775억원)→('11)193척(772억원)

□ 어업구조조정 참여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감척제도 마련과 업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식 도입추진

- 감척희망어선 대부분 감척, 감척효과로 인한 어획량 증대, 신규허가 억제로 어업허가의 희소가치가 증대 등으로 현행 지원조건으로 감척사업 참여기피
- 따라서, 참여자 인센티브 부여, 잔존자 부담강화, 단체협약을 통한 의무감척, 노후어선의 감척시 유류절감형 내지 규모화된 어선 신조 등 연계방안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 모색

※ 『어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용역 추진('09.8.31~12.30)

참 고 1

연근해어선감척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1. 어선세력 대비 감척목표

(단위 : 척)

구 분	'09년 어선세력	감척목표	연도별 감척계획					적정어선 척 수
			소계	'08실적	'09	'10	'11	
근 해	3,385	1,280*	863	352	124	194	193	2,342
연 안	53,792	15,330**	6,452	4,852	1,600	-	-	47,202
계	57,177	16,610	6,094	3,984	1,724	194	193	49,544

* 근해어선 감척목표 : '06년말 기준 3,622척의 35% 수준인 1,280척을 감척('07~)

** 연안어선 감척목표 : '03년말 기준 62,532척의 25% 수준인 15,330척을 감척('04~)

2. 감척실적

구 분	기 간	척 수	사업비(억원)	비 고
계	'94~'08	13,660	13,416	
연안어선	'94~'08	11,280	3,906	
근해어선	'95~'08	2,380	9,510	'08~'09년 517척 감척 ('08년 352, '09년 165)
(일반감척)	'95~'08	1,072	3,067	'05~'06 사업중단
(국제감척)	'99~'02	1,308	6,443	

3. '09 감척세부 계획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연 안	-	1,600척 (800억원)	
근 해	324척 (1,295억원)	124척 (495억원)	
소 계	324척 (1,295억원)	1,724척 (1,295억원)	

참 고 2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척, 백만원)

구 분	합계	일 반 감 척			국 제 감 척			
		소계	연안	근해	소계	어선감척	실업지원	어구비
'94	척수	54	54	54	-	-	-	-
	금액	4,910	4,910	4,910	-	-	-	-
'95	척수	117	117	111	6	-	-	-
	금액	10,410	10,410	9,113	1,297	-	-	-
'96	척수	136	136	110	26	-	-	-
	금액	13,656	13,656	7,991	5,665	-	-	-
'97	척수	135	135	48	87	-	-	-
	금액	27,200	27,200	4,227	22,973	-	-	-
'98	척수	159	159	63	96	-	-	-
	금액	27,513	27,513	5,287	22,226	-	-	-
'99	척수	730	78	-	78	-	652	2,415
	금액	357,185	15,180	-	15,180	342,005	330,844	10,654
'00	척수	140	109	36	73	-	31	369
	금액	31,162	22,500	3,695	18,805	8,662	1,566	7,096
'01	척수	586	77	55	22	-	509	4,660
	금액	248,914	10,811	5,742	5,069	238,103	196,786	40,442
'02	척수	280	164	21	143	-	116	1,441
	금액	96,783	41,283	3,805	37,478	55,500	43,786	11,714
'03	척수	60	60	16	44	-	-	-
	금액	19,011	19,011	1,504	17,507	-	-	-
'04	척수	698	698	639	59	-	-	-
	금액	17,384	17,384	6,672	10,712	-	-	-
'05	척수	841	841	841	-	-	-	-
	금액	33,300	33,300	33,300	-	-	-	-
'06	척수	1,598	1,598	1,598	-	-	-	-
	금액	50,278	50,278	50,278	-	-	-	-
'07	척수	2,922	2,922	2,836	86	-	-	-
	금액	129,417	129,417	100,000	29,417	-	-	-
'08	척수	5,204	5,204	4,852	352	-	-	-
	금액	274,501	274,501	154,089	120,412	-	-	-
합계	척수	13,660	12,352	11,280	1,072	-	1,308	8,885
	금액	1,341,624	697,354	390,613	306,741	644,270	572,982	69,906

※ '08년도는 '09. 9. 31일 기준금액임(사업비 미정산)

참 고 3

근해어선 추가감척 계획물량

(단위 : 척)

구 분	'06년 말 어선세력	감척목표	감척실적 (‘07~’08)	추가감척 필요척수(‘09~)	감척 후 어선세력
합 계	3,622	1,280	430	850	2,342
대형기저 (외)	47	20	-	20	27
대형기저 (쌍)	88	24	14	10	64
동해구기저	42	23	1	22	19
서남구기저 (외)	44	17	-	17	27
서남구기저 (쌍)	18	8	-	8	10
대형트롤	58	28	8	20	30
동해구트롤	39	15	-	15	24
대형선망	191	67	21	46	124
소형선망	105	29	-	29	76
근해채낚기	679	148	122	26	531
기선권현망 (1구)	355	106	8	98	249
기선권현망 (2구)	116	27	-	27	89
근해자망	464	137	63	74	327
근해안강망	266	99	17	82	167
근해봉수망	9	1	-	1	8
근해자리돔들망	-	-	-	-	0
잠수기 (1구)	7	3	-	3	4
잠수기 (2구)	11	5	-	5	6
잠수기 (3구)	129	46	-	46	83
잠수기 (4구)	52	19	-	19	33
잠수기 (5구)	37	14	-	14	23
근해통발	228	96	44	52	132
근해문어단지	22	5	1	4	17
근해형망 (1구)	87	62	18	44	25
근해형망 (2구)	33	24	-	24	9
근해연승	495	257	113	144	238

※ 어획물운반선 감척물량은 제외한 숫자임('08년도 8척)

나 해역별 어업조정제도 마련

목 표

- 한정된 어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간 갈등과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

1) 현황 및 실태

- 한정된 어장에서 다양한 업종 및 많은 어선이 경쟁적으로 조업함으로 어장 및 자원 선점 등 업종간 갈등과 분쟁이 심하며 어업분쟁은 대부분 해역별 어업여건과 특성에 따라 발생
 - 2004. 8월 이후 한국수산회에 민간“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해 왔으나, 이는 순수 민간위원회로 어업분쟁 당사자간 합의 및 조정에 어려움
- 따라서 해역별 어선어업의 특성을 반영, 분쟁조정을 위해 해역별 어업조정기구 도입 필요성 대두

2) 추진경과

-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출범 및 분쟁조정업무 추진('09.10~)
 - 어업조정제도 도입을 신수산 10대 프로젝트 과제로 선정('09.3)
 - 어업제도개선협의회 개최('09.5.29)
 - 해역별어업조정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정(훈령 제95호, '09.7.15)
 - 동해(10.23) 및 서해(11.3) 어업조정위원회 출범
 - 충남 및 경남지역 멸치분쟁, 외출낚시 미끼공급, 자리돔들망 조업 구역 조정 등 4개 과제 선정

- 해역별어업조정위원회 설치·운영규정 개정(훈령 제172호, '09.11.11)
 - 모든 어선어업분쟁을 조정대상으로 하고, 위원수 확대(15→20)를 통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조정할 수 있는 민간수산전문가 증원
-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운영방안 협의회 개최('09.11.16)
 - 분과위 구성·조정방향, 2010 분쟁과제 발굴 및 홍보방안 협의

3) 성과와 반성

- (반성) 해역별 어업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홍보 부족
 -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중이나 지자체, 어업인 단체, 수협 등 홍보부족으로 분쟁조정 신청 부재
- (성과)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훈령 제정 및 구성을 완료 ('09.10)함으로써, 해역별 어업분쟁에 대한 체계적·합리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응이 가능

4) 향후 추진계획

- 선정과제별 분과위원회 구성·조정추진(11월~)
 - ※ 서해어업조정위원회 분과위(11.27), 동해어업조정위원회 분과위(12.4)
- 신규 분쟁과제 발굴 및 조정 실시(12월~)
 - 외끌이대형기저 조업구역 분쟁 등 오래된 갈등과제 조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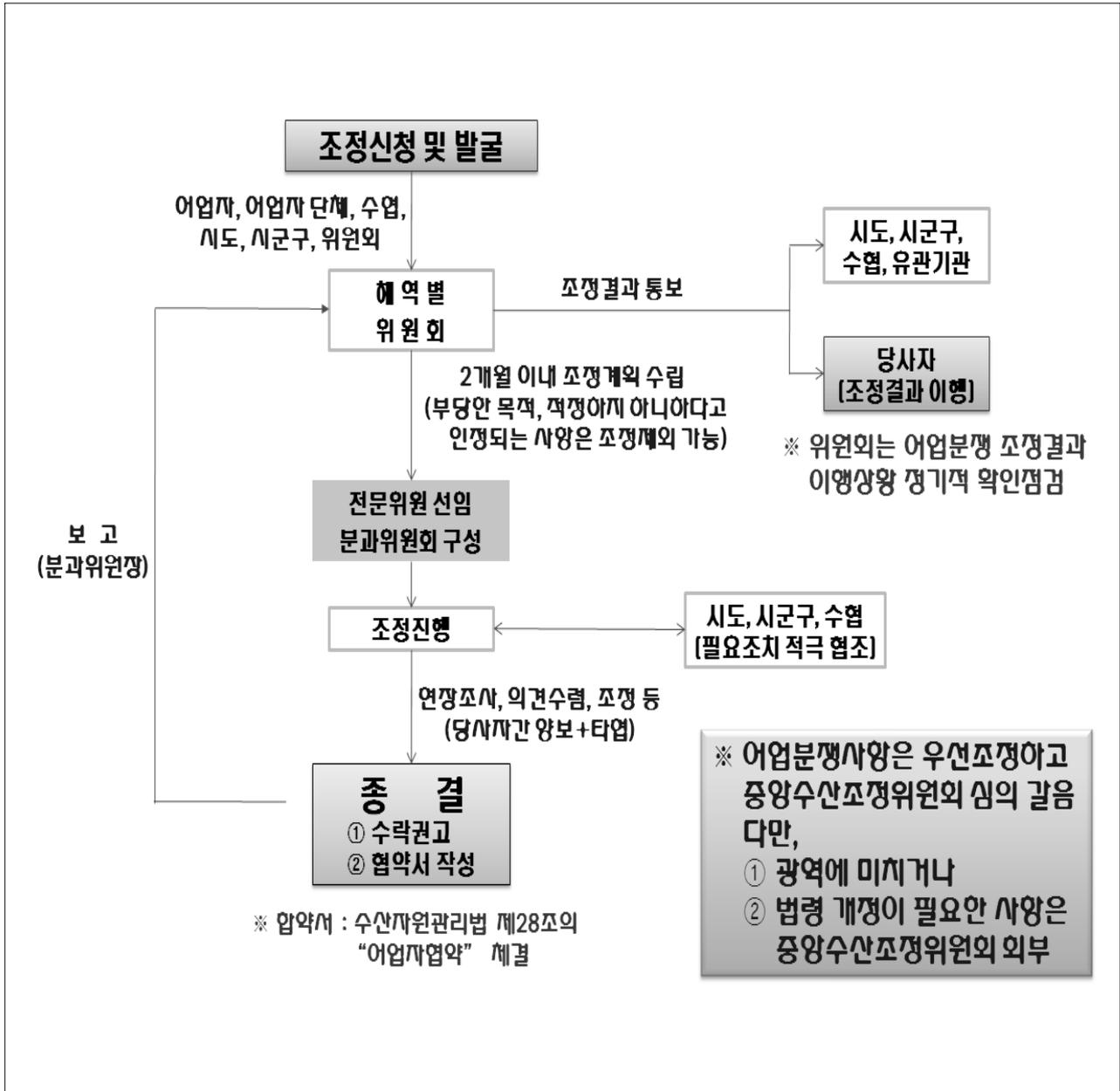
1. 제정이유

한정된 어장에서 46개의 업종, 6만여척의 어선이 경쟁조업 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어업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농어업 선진화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 동·서해 어업지도사무소에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고자 함

※ 농어업선진화위 의결(4.28) :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어업조정방안

2.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정(안) 주요내용

- (1) 해역위원회를 동·서해 어업지도사무소에 각각 설치(안 제4조)
 - 사무국 역할은 해당 지도사무소가 수행하고, 민간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선임·운용(안 제14조·제15조)
- (2) 해역위원회는 어선어업의 업종간, 지역간, 업종·지역간의 조업 및 어구·어법에 관한 다툼과 어선어업과 다른 어업과의 다툼 및 수산자원관련 다툼 등의 분쟁을 조정(안 제5조)
- (3) 구성 : 지도사무소장을 포함 어업인 대표, 지자체, 학계, 연구기관의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 위원장은 지도사무소장과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정함(안 제7조)
 - 분쟁사안별 신속·효율적 조정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
- (4) 분쟁조정 신청 및 발굴, 조정절차, 합의권고, 관계기관 협조, 조정종결, 조정결과의 이행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안 제21조 내지 제26조)
- (5) 어업분쟁은 해역위원회가 우선 조정하며,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에 같음. 단, 효력이 광역에 미치거나 법령의 제·개정 등의 사항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서 2차 심의(안 제28조)



다 지역별·해역별 특성에 맞는 어업관리 제도 구현

목 표

- **해역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업제도 구현**
 - 지역적 여건과 해역 특성을 고려해서 연안어업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자치권 부여하되, 한계범위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
- **어업자 맞춤형 어업관리 제도 정착**
 - 수산자원 관리에 문제가 없는 경우, 지역내 업종간 합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어업제도 개선

1) 추진배경

- 해양환경변화와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선진화된 지역별 맞춤형 어업관리 제도로의 개선 필요
 - 동해·서해·남해의 지리적·어장환경 특성이 상이
 - 지역적 여건과 해역별 특성에 따라 어구·어법 등이 다양
- 어업인 자원관리 인식고조, 지방분권시대 지자체 역량 성숙으로 무한경쟁조업방식에서 자원관리형어업으로 패러다임 변화요구
 -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 어업제도로는 지역별 다양한 어업환경의 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어업제도를 운용하는데 한계

2) 추진경과

- 어업 제도개선 협의회 구성안 마련('09.5.8)
 - 내부(20명) 및 외부(14명내외) 전문가를 분야별 인력 Pool로 구성
- 제1차 어업제도개선 협의회 개최(5.29)
 - 연안어업 등 대상 어업제도개선 우선 추진과제 선정
 - ※ ①지자체 권한강화, ②마을어장 관리개선, ③낙도지역 Green Zone 설정, ④자망어업 관리 개선, ⑤허가어업별 채포물의 종류제한 규정 개선
 - '지자체 권한강화'에 대한 실행계획 마련을 통해 논의키로 합의

○ 제도개선에 대한 지자체(시·도) 의견수렴(7.2~)

※ 지자체 사전협의 : 어업조정위원회 관련 협의회(6.19), 시·도수산업정책협의회(6.30)

○ '전국방방곡곡' 지역별 맞춤형 연안어업관리 워크숍개최(7.16~17)

- 지자체내에 대응 T/F 구성, Case 별 검토 등 구체적인 방안마련

※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원론에는 동의. 다만, 지자체 역량을 고려 단계적·제한적으로 이양 필요

○ 연근해 어업허가 담당자 협의회를 통한 의견수렴(11.12~14)

3) 성과와 반성

○ (반성) 지자체 법령 제개정·운용 권한이 미흡하여 주도적으로 지역내 민원, 어업갈등을 해소하는데 한계

- 어장환경변화에 따라 어업형태도 시시각각 변화하는데 이해관계 조정 등에 따라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 지역에 한정된 어업이나 지역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어업제도를 중앙정부가 일률적 관리에 따라 지자체 어업관리 기능 미흡

○ (성과) 지자체·지역공동체의 연안어업 관리 자치권 강화를 통한 지역특성에 맞는 연안자원관리 및 이용기틀 마련

- 어업제도 규제완화, 어업인 자율적 자원관리형 어업제도 근간 마련 및 지자체 중심의 어업관리 권한강화

- 지역적 어업갈등·민원해결을 위한 이행수단 마련 및 지역업종간 이해관계 조정기능의 강화

< 추진 방향 >

■ 어업인에게 득이될 수 있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접근

■ 지역적 사안에 대한 지자체 어업관리 권한 극대화

■ 타 시·도와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지자체 권한 범위설정

* 부작용 및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기위해 과제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단계별 추진하되, 지자체 폭넓은 조례제정권 부여

4) 향후 추진계획

- 지자체 연안어업 관리권한 강화방안 마련시행
 - 중앙·지방정부 역할과 단계별 추진절차 및 방법 등 계획수립('10.5)
- 어업제도 개선을 위한 지자체별 의견수렴 및 대상과제 확정
 - 지자체에서 광역단위 수산조정위원회를 통해 대상과제 발굴('10.8)
 - 어업제도개선 협의회를 통한 과제검증 및 중앙 수산조정위원회 최종 확정('10.12)
- 지자체 어업관리 권한이양을 위한 수산업법 등 제도개선
 - ※ 개정추진 : 수산업법('10.12), 하위법령('11.2~12)

[① 사안별 검토과제]

○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발달된 소규모 어업

- 일부 연안 및 구획어업, 일부지역에 한정된 소규모어업 등 전국적으로 허용하기 어려운 사안

※ 남해안 일부지역에서 연안통발 등에서 변형어구를 사용하여 도다리를 어획하고 있으나 동 어구를 전국적으로 허용시 낚시어업 등에서 반발

- 포항 곤쟁이 들망과 같이 타 어업과 갈등관계가 없으나, 전국에 적용되는 제도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운 사안
- 낙지 등의 어획을 위해 통발의 그물코 크기 조정이 필요하나, 내만 등이 일부해역이나 지역에 한정된 사안

○ 지역 업종간 이해관계 조정이 우선하는 사안

- 새우조망 조업구역 조정과 같이 지역에 한정되나, 타 연안어업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 등

※ 새우조망 조업구역 조정문제는 지역내 타 연안어업에서 민감하게 반응

○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

- 금어기, 특정어구 사용금지 기간과 같이 지역에 따라 금지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
- 어업면허, 어업허가 우선순위 등과 같이 지역적 여건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사안
- 정치성구획어업의 조업구역 변경 문제와 같이 시·도에 따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안
- 임의적으로 발생한 소규모 어업 등에 업종변경 등

○ 객관적인 판단 등 지자체 의회에서 논의가 바람직한 사안

- 제도개선 필요성은 인정되나, 특정업종이 반대로 해결이 곤란하여 객관적인 제3의 시각에서 판단이 필요한 사안

※ 중앙정부에서 지역적인 모든 문제해결을 담당하기에는 한계

- 지자체에서 직접 이해 조정하는데 부담스러우나, 지자체 의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이 가능한 사안

※ 어업갈등이 많아 재정 투입을 통해 특정업종이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안

- 수산자원에 문제는 없이 지역내 업종간 이해관계 조정·합의가 중요하고,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수단이 필요한 사항

[② 수산업법령상의 검토과제]

○ (수산업법) 마을어장 수심한계 등 10개 검토과제

구분	검토사항	관련조문
①	마을어장의 수심한계	제8조 제3항 (시행령 제9조)
②	마을어장 면허 우선순위	제 15조
③	정치망의 보호구역의 범위	제31조 제1항 (면허규칙 제33조)
④	정치망의 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 제한 및 금지	제31조 제2항 (보호령 제28조)
⑤	어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시정조치에 관한사항	제40조 제2항
⑥	정치성구획어업의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와 규모	제43조 제4항
⑦	정치성구획어업의 사용하는 어선의 선복량, 부속선의 규모	제43조 제4항
⑧	시험어업에 관한사항	제44조
⑨	유어장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제57조
⑩	보호수면안에서의 금지 어로행위	제67조 제2항
⑪	지역적 소규모어업의 업종 변경	신규

○ (수산업법 시행령) 신규 2개과제 등 3개 검토과제

구분	검토사항	관련조문
①	정치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종류	제7조 제2항
②	정치성구획어업의 보호구역 설정	신규
③	정치성구획어업의 어장간 최소거리	신규

○ (수산자원보호령) 비어업자의 포획채취 제한 등 8개 검토과제

구분	검토사항	관련조문
①	2종이상 자망·승인	제5조
②	그물코 규격의 제한	제6조 별표 9
③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정상 필요한 경우 어구의 규모·형태 및 어법, 어망의 그물코 크기 제한	제7조
④	어구사용 금지구역과 기간	제9조 별표 10
⑤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금지기간	제11조 별표11
⑥	비어업자의 포획·채취의 제한	제17조
⑦	자원보호 및 어업조정상 필요한 경우 포획·채취물의 종류와 체장 및 포획·채취 시기의 제한	제21조
⑧	수산동식물의 보호와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업구역을 정하고, 구역별로 어선수 제한	제24조 제2항

○ (어업허가규칙) 정치성구획어업 허가 제한 등 5개 검토과제

구분	검토사항	관련조문
①	타 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 허가받은 자의 동의 여부 및 동의서의 효력기간에 관한 사항	제6조 제1항 제4호
②	정치성구획어업의 허가 제한 및 절차	제12조 제1항
③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선·어구의 규모, 어선척수 및 조업수역에 대한 제한 및 허가조건	제14조 단서
④	연근해 채낚기어업의 광력기준(경북·강원 공동조례)	제3조제1항별표1
⑤	서해특정해역에서의 근해자망의 부속선의 규모와 척수	제3조제1항별표1 제3조제2항별표2

○ (어업면허규칙) 마을어장 어업권 행사우선순위 등 7개 검토과제

구분	검토사항	관련조문
①	마을어업의 포획·채취방법	제11조 (법 제9조 제3항)
②	낙도·무인도와 연접된 수면에 대한 마을어업 면허	제14조 (시행령 제9조 제3항)
③	마을어장 관리선의 용도	제28조 제7항 (법 제29조 제5항)
④	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어장관리선의 척수	제31조제5항
⑤	마을어장 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제41조 (법 제39조 제3항)
⑥	마을어장 어장관리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42조 (법 제40조 제1항)
⑦	어업권의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 체결방법, 계약기간, 해지 사유 등에 관한 사항	제43조 (법 제40조 제1항)

[③ 검토과제 선정과정]

- 지자체 권한이양 과제 발굴을 위한 의견수렴
 - 지자체 입장에서 권한을 이양받고 싶은 사안 최대한 발굴
- 『어업제도개선협의회』를 통해 검토 우선과제 선정
 - 각 사안의 권한이양 필요성, 장·단점, 문제점 등에 대해 개별 사안별로 충분히 검토 후, 실현가능한 사안 선택
- 조례제정권 부여를 법령정비 방안
 - 개별 조문마다 조례 제정권을 부여하거나, 법령에 조례제정 사항에 대해 일괄규정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 후 결정

라 연근해 무조업선 일제정비

목 표

- 우리어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무조업선* 퇴출 등 어업허가 일제정비

* 실제 어업을 하지 않으면서 어업허가증만 소지하고 있는 어선

1) 추진배경

□ 어업구조조정사업의 실효성 확보

- 연근해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94년부터 현재까지 어선감척사업 실시중

* '94 ~ '07년까지 총 7,681척 감척(연안 5,739척, 근해 634척, 국제감척 1,308척)

- 어선감척 후 방치된 어선을 매입, 재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 무조업선 등의 일제정비를 통한 감척사업의 실효성 확보

* '05 ~ '06년 2개년간 면세유 공급 및 입출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안어선 56천여 척 중 18천여 척이 면세유나 입출항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07.7)

□ WTO-DDA 및 고유가 시대에 대응한 어업정책방안 마련

- 향후 수산보조금의 축소가 예상되고 어업용 면세유 공급가격 상승으로 출어포기 등 생산 활동 위축 우려

* 면세유 가격 : ('03.12) 63,260원 → ('08.5) 172,360원 180% 상승

- 우리어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무조업선 퇴출 등 어업허가 일제정비와 함께 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한 향후 정책방안 마련

2) 추진경과

- 어선감척 후 방치된 어선을 매입, 재진입할 우려에 따라 “무조업 어선 일제정비 실시”

* 1차('04.4~'05.3) : 연안어업 무조업어선 300여건 허가취소 등 정비

* 2차('08.8~현재) : 연근해 무조업어선 일제조사 실시중(6억원)

* 어업허가 현황과 어선등록현황을 정보화사업으로 연계, 허가 및 등록현황 정비('09)

- 정기적인 어업허가 정비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추진 중('09.9~)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개정안을 반영하여 관계기관 의견수렴 중

3) 성과와 반성

- 자원수준에 알맞은 적정 어획노력량 유지를 위한 연근해 어선 구조조정사업의 효과 제고

- 시·도(시·군·구)의 허가처분 권한과 관리를 강화하고 부실을 시정하는 계기 마련

* 폐선·등록말소 등 실체가 없는 어업허가정비 및 미신고 휴업어선 등 행정 절차 이행상태 확인

- 또한, WTO-DDA 및 고유가 시대를 맞아 무 조업선이 발생하는 원인분석 등을 통한 향후 정책방안 마련

4) 향후 추진계획

- “어업허가 일제정비 제도*” 법령개정안 검토 추진('10년, 법제연구원)

* “어업허가 일제정비”는 일괄적으로 어업허가증을 재발급하는 새로운 절차

- 무조업선 정비(어업허가 일제정비)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11년, 6억원)

- 일제정비시 “위변조가 불가능한 어업허가증”으로 교체 검토

- 실효적 추진을 위해 “어업허가 일제정비 실시요령”을 작성·시행

마 표준 어구·어법 기준 마련

목 표

- 연근해 46개 업종별 어구(漁具)와 어법(漁法)을 법제화를 통한 업종간 갈등완화

1) 추진배경

- 그간 어구나 어법이 법제화 없이 전통적·관행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어구와 어법에 대한 분쟁과 갈등 심화
 - 수산업법 제정('53.9.9) 이후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구(漁具)나 어법(漁法)에 대한 법적근거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음
- 어장축소, 자원감소 등으로 자원 선점을 목적으로 어구나 어법을 임의 변형하여 자원남획과 업종간 갈등을 조장
 - 당초 허가받은 어업이외의 방법으로 조업하거나 어구를 임의 변형하여 조업하는 등 불법어업 증가와 다양한 민원이 발생
- 업종간 분쟁예방, 어업인 권익보호, 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하여 어구와 어법에 대한 기준을 법제화
 - 어구형태와 조업방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종 간 갈등을 최소화하여 민원의 근원적 해소
 - ※ 어구와 어법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수산자원보호령에 반영하고, 동 보호령이 지난 '08.7.29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

2) 추진경과

- 어구·어법 고시제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08.7, 수산자원 보호령 개정)
- 「연근해어업의 표준어구와 어법에 관한 고시」안 마련('08.8)
 - * 고시 초안 마련, 어구겨냥도, 조업모식도, 어구설계도 작성의뢰(수산과학원)
- 고시안 의견조회
 -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08.11)
 - * 전국 시도·시군구, 어업지도사무소, 해양경찰청,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 등 82명
 - 연근해어업 대표조직 협의회 고시 추진상황 설명('08.12.9)
 -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보고안건 상정('08.12.16)
 - 시도, 수협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09.2.9)
 - 전문가 협의회 개최(3회, '09.6~8월)

3) 성과와 반성

- 어구형태와 조업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어업민원을 근원적 해소
- 불법어구사용으로 인한 업종간 갈등을 해소하고 불법어업 예방을 통한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어업질서 확립

4) 향후 추진계획

- 고시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09.9~10월) 및 안 확정
-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시행일('10.4월)에 맞추어 제정 추진

바 생분해성 어구보급 확대

목 표

- 생분해성 어구사용 확대를 통한 수산자원 및 해양 생태계 보호

1) 추진배경

- 합성섬유(나일론, 폴리에틸렌 등) 폐어구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 및 수산피해 발생(유령어업(Ghost fishing), 어류산란장 및 서식장 파괴)
-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수중에서 분해되는 친환경 어구(생분해성 어구)의 사용 필요

※ 생분해성 어구 : 자연계의 박테리아, 곰팡이 등 미생물 작용에 의해 일정기간 경과 후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됨

2) 추진경과

- 유실이 많은 자망과 통발을 대상으로 5개 시도에서 시범사업 중
 - 사업지역 : 5개 시·도(경북, 경남, 충남, 전남, 제주)
 - 대상어구 : 자망(대게, 조기, 꽃게), 통발(장어)
- 3개년간 사업비는 총 100억원으로 국비 70%, 지방비 30%
 - '07년(20억원) → '08년(43억원) → '09년(39억원)
- 어구는 6개 전문 업체에서 생산하고, 수협을 통해 공급
 - 전문생산업체는 수산과학원의 품질인증을 통해 생산 가능
 - 유통과 관리시설이 갖춘 수협을 통해 원활한 공급 체제 구축

3) 성과와 반성

□ 어업인 참여 부족으로 '08년도 지방사업비 이월

- 기존어구 구입비와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신규 참여자는 어구 성능에 대한 불안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 유보적인 자세

* '08년 이월 : 2,309백만원(지방비 991백만원)

- 통발어구 성능 시험시 몸통부분 균열, 자동 투승 장애현상으로 생분해성어구의 사용을 기피

* 균열부분은 개선완료('09), 자동투승 부분은 어구특성상 해결 곤란 (통발입구(깔대기) 부분만 생분해성 재질로 개선하여 공급)

□ 현 원가산정 방법이 법적 효력 문제로 공급계약 지연

-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자체 조사한 가격을 지자체에 기준 가격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법적 효력이 없어 계약시 활용불가
- 시도, 시군구에서는 원가산정 직접 실시에 대해 예산확보 문제를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

* 시군구별 개별 원가계산 의뢰시 시군구별 단가차이 발생을 우려

□ 어구 보관 및 관리 등의 추가 비용발생으로 공급에 차질

- 수협을 사업대행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어구보관 등의 비용 문제 발생으로 적기 공급에 차질

4) 향후 추진계획

□ 어업인 참여유도 및 사업홍보 강화

-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의 어구비 지원 외에 어구 인증제를 통하여 어업인 참여를 제고

□ 사업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어업인 부담금의 일정 부분(20%)을 추가 지원 가능하도록 사업지침을 개정,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사업대행기관의 조정(시·군·구→수협중앙회)을 통해 사업 집행률 제고
- 생분해성어구 공급에 필요한 경비를 동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동 지침 개정, 어구적기 공급 추진
- 신규 도입 어구를 무상공급하여 어업인 참여하에 어획 성능검증 실시, 어업인 참여 확대 유도
- 어구의 품질 향상 및 대량생산을 통한 단가 인하 추진
 - 생분해성어구에 대한 물리적 특성 성능인증
 - 생산단계별 생산조건 이행여부 확인 강화 등

□ '09년도 시범사업 평가 및 '10년도 지침 개정 : 12월

1 사업개요

- 목적 : 바다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바다에서 분해되는 생분해성어구 사용의 시범실시('07년~)
- 대상 : 유실이 많은 자망과 통발을 대상으로 5개 시도에서 실시
- 예산 : '07년(20억원) → '08년(43억원) → '09년(39억원)
- 조건 : 생분해성어구와 기존어구 구입비 차액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2 예산현황

시·도	시·군	어구명	사업물량	사업비 내역(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5개	10개	자망	141,100폭	3,857	2,700	1,157
		통발	326,600개			
경북	울진, 영덕, 포항	대게자망	91,200폭	1,030	721	309
경남	통영	장어통발	251,600개	629	440	189
충남도	보령, 태안	꽃게자망	5,000폭	724	507	217
		연안통발	75,000개			
전남	목포, 여수, 신안	조기자망	43,000폭	1,303	912	391
제주	제주	조기자망	1,900폭	171	120	51

□ 해양 폐기물의 발생 및 피해

해양 폐기물 발생량 및 피해

- 해양 폐기물 발생량 : 연간 15만톤 정도
- 침체어망 수거 비용 : 연간 약 150억원 소요
- 해양 폐기물에 의한 수산업 피해 추정 : 연간 약 2,000억원

○ 해양 폐기물의 연간 발생량 (해양 쓰레기 수매사업, 2003)

구 분	발생량 (톤/년)
육상기인 폐기물	52,100
해상기인 폐기물	100,000
계	152,000

○ Ghost Fishing 등에 의한 수산업 피해 (어획량 10% 추정)

· 1,200천톤 × 10% × 1,707천원 = 2,048억원/년



<유실된 통발 · 자망의 유령어업 및 서식장 파괴>

○ 폐그물로 인한 각종 환경 오염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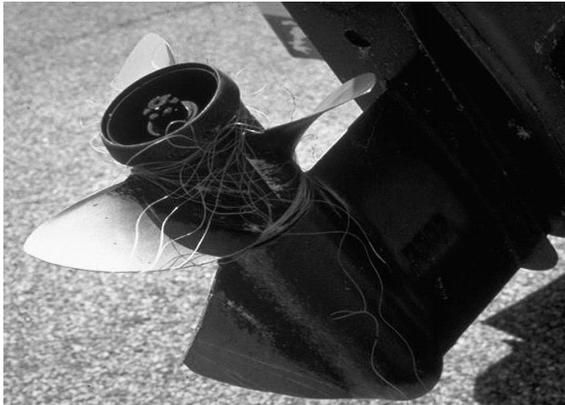
- 폐그물 소각시 발암성 물질인 PCB(Polychlorinated biphenyl),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 발생

○ 인공어초의 기능 저하

- 침체 어망이 인공어초를 뒤덮어 인공어초 기능 상실 우려

○ 폐그물에 의한 선박 안전 사고(전체사고의 10%) 및 해양생태계 파괴

- 폐그물 및 폐로프 선박 스크류 감김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 선박 추진기에 걸린 낚시 줄 및 폐그물이 목에 걸려 있는 물개 >

- 현재의 어구재료는 자연환경 중에서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을 사용
- 폐어망에 의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수중에서 미생물에 의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재료 개발 및 산업화 필요

참 고 3

나일론자망과 생분해성자망의 특성비교

구 분	나일론 자망	생분해 자망
소 재	Polyamide(PA)	Polybutylene succinate(PBS)
도입시기	1965년경 동해안의 푹치유자망에 처음 도입	2004년부터 3년간 동해안 대게자망 개발, 2007년부터 시범사업 추진
분해도	400-500년간 지속	2년후부터 미생물에 의해 분해 시작
어업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여년간 지속적으로 유령 어업 발생(어획량의 10%) (1,200만톤*10%*1,707원/톤 =2,048억원/년) - 해저에 안착하여 백년간 수산생물의 산란장, 서식장 파괴 - 인공어초 기능 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령어업 획기적으로 저감 (100년→1년) - 수산생물의 산란장, 서식장 보호(미생물에 의해 분해) - 인공어초 기능 보호
해양 및 대기 환경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쓰레기 발생 (침체어구 수거에 막대한 예산 및 인력, 시간 낭비) - 선박 안정사고 발생 - 소각시 발암성 물질 PCB, 다이옥신, 독가스 발생 - 매립시 수백년간 토양오염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쓰레기 저감 - 선박안전 사고 예방 - 소각시 발암물질 없음 - 매립시 조기에 분해 - 해양 오염 억제

사 고래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위한 제도정비

목 표

- 고래자원에 대한 국제포경위원회(IWC)의 변화(보존→이용) 움직임에 대응, 국내법 정비 등을 통한 보존과 이용방안 강구

1) 국내외 동향

□ 고래자원의 이용·보전에 대한 국제 동향

- 증가하고 있는 고래자원 이용에 대한 상업포경 재개 논의
 - * 고래자원의 보존과 이용의 형평성, 지역의 문화다양성 존중, 풍부한 자원 유지라는 국제포경규제협약(ICRW)의 목적 정상화를 위한 협상 진행중
- 일본의 연안포경 신청('86년~)에 대한 허용 가능성 증대

□ 전통적인 고래육 식문화 보전을 위해 포경 허용 요구

- 국내 상업포경 중단이후 고래육 식문화 및 전통문화 단절위기
- 어업인들은 고래 개체수 증가로 인한 어업분야 피해 예방 및 전통적인 고래육 식문화 보전을 위해 제한적 포경 허용 요구
 - * 돌고래류 잠정 이용방안으로 “숙아내기식” 포획 허용 요구(울산시)
- 우리나라는 제61차 IWC 연례회의에서 전통식문화에 대한 고려 요청 및 과학조사포경은 자국의 고유권한임을 표명

2) 고래자원 이용 및 관리실태

□ 고래류는 전세계에 80여종 서식, 우리나라에는 약 35종 분포

* 대왕, 귀신, 밍크, 참·향·범고래, 큰돌고래, 참돌고래, 상괭이 등

○ '86년 상업포경금지이후 혼획된 고래류는 연간 약 600두

* 통발, 정치망, 자망어구에 혼획(밍크 80두, 돌고래류 500, 기타 20두)되며, 대부분 시중에 식용으로 유통

○ 우리나라 주변의 밍크고래 개체수는 약 14,000두로 '86년 모라토리움 이전인 70년대 초 보다 많은 수치로 평가(IWC위원회)

□ 고래자원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국내법령 취약

○ 고래자원 이용에 관한 관계법령 미비로 효율적인 이용 곤란

- '86년 상업포경 금지 이후 “근해포경어업” 삭제('91년. 수산업법시행령)

○ 고래관련 제도가 고시와 지침으로 운영되어 법적구속력이 미약

- 「고래포획 금지에 관한 고시」 및 「고래포획금지조치 이행지침」으로 운영되어 고래관리 행정체계 확립에 한계

□ 고래자원의 연구·관리 체제

○ 3억5천만원 예산('09)과 연구원 3명으로 연간 40일 제한된 조사 실시

* 일본 : 산학연 연구소에 연구원 150명, 예산 200억엔, 수 척의 전용선 운영

○ 효율적인 고래자원 조사·연구 수행을 위해 관련 인력, 예산, 조사장비 등 기반 구축이 긴요한 실정

3) 제도정비 등 대응방안

□ 고래자원 관리에 관한 법·제도 정비

- 「고래포획 금지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 추진
 - 과학조사 포경 대상 확대(돌고래류 → 모든 고래류)
 - 돌고래류 자원의 합리적 이용 방안 강구
 - 모든 고래의 DNA 확보, 불법포획·혼획고래 유통관리 체계 확립 등
- 고래자원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근거 규정 신설
- IWC 상업포경 모라토리움 해제에 대비한 국내 관련제도 정비
 - 근해어업의 종류에 “근해포경어업” 신설(수산업법시행령 제33조)
- 어촌관광과 연계하여 고래 역사·문화 등과 결합한 종합 관광 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고래관광에 대한 근거 마련

□ 고래자원의 과학적 조사 및 연구기반 확충

- 과학조사 대상을 돌고래류에서 모든 고래류로 확대 추진
- 포획쿼터 산정방식(RMP) 수행을 위한 연구기반 조성
- 자원평가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 추진
 - * 연구인력(10명) 보강, 소요예산(12억원) 증액, 조사연구 전용선 확보 등

□ 국제협약 틀 내에서 고래자원 활용방안 마련

- 돌고래류의 어업, 교육, 관광 등 합리적인 이용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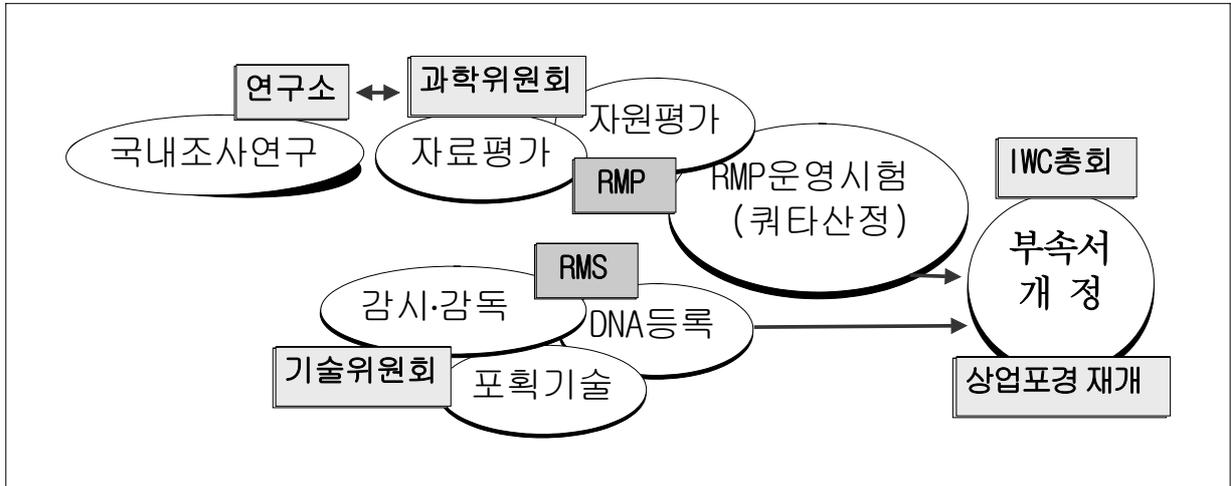
□ 개 요

- 설 립 : 1946.12. 2(본부 : 영국 런던)
 - 조직 : 총회, 소위원회, 사무국 등으로 구성
 - ※ 우리나라 가입 : 1978.12.29
- 우리나라 국별대표 (Commissioner)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장
- 목적 : 포경관련 연구, 조사를 통하여 고래자원의 보존과 포경산업의 질서있는 발전 도모
 - ※ 1982년 제34차 IWC 총회에서 1986년부터 상업포경을 중지(상업포경 쿼터를 zero)하기로 결정
- 회원국 : 85개국('09. 5 현재)
 - 포경지지국 : 일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 포경반대국 : 영국, 호주, 미국, 독일, 뉴질랜드 등
- 주요활동
 - 협약부표에 등재된 고래종(12종)의 포획금지
 - 고래자원의 보존과 지속적 이용을 위한 논의, 고래 관련 과학적 조사 등

□ 쟁점사항

- '86년 상업포경 금지 후 증가된 고래자원에 대한 상업포경 허용을 위해 '94년 새로운 포획쿼터 산정방식(RMP) 완성 후 감시감독제도 등 개정 관리절차(RMS)를 마련 중
 - RMP(포획쿼터 결정 방식) : 1994년 채택 완료
 - RMS(포경관련 각종 감시·감독, 이행조건 부여) : 현재 논의 중
- ※ 상업포경 재개 등 주요사안은 회원국의 3/4 찬성 필요, 현재 찬반 세력이 비슷함

□ IWC의 상업포경 재개 절차



□ 개정관리방식(RMP : Revised Management Procedure) : 1994 완성

○ 포획량 = 번식력 × (감소비율 - 0.54) × 현재 자원량

- 번식력 : 개체군과 환경의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
- 감소비율 : 초기자원에 대한 현재 자원의 비율

※ 과거의 포획량 자료, 현재 자원량, 번식력 등을 감안하여 초기자원을 산정 (현재 자원량은 목시조사로 결정)

□ 개정관리제도(RMS : Revised Management Scheme) : 1994년부터 논의 중

○ 개정관리방식의 포획량, 목시조사, 자원량 추정의 불확실을 감소시키는 제도적 장치로서 상업포경시 필요한 조건을 명시

- 포획량 : 허위보고, 불법포획 방지(오퍼버와 감독관 의한 조업 · 포획량 보고, 양육장 감시, 고래고기의 DNA 분석 등)
- 목시조사 : 조사계획 심의, IWC 감독관 승선, 자료수집 및 조사
- 자원량 추정 : 생물학자들에 의한 심층자원 평가
- 불법포획 감시 및 검토위원회 등 설치

참 고 3

우리나라 주변수역 고래종류 (대형 9종, 중소형 13종, 돌고래류 13종)



목 표

- 저탄소 녹색성장 어선구조 선진화 및 어선관리 효율화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 도모

1) 추진배경

- 어선어업의 저효율 고비용 연료소비형 구조에서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전환 필요
 - 어선노후화 및 출어경비 부담가중으로 어업생산 활동 위축 심화
 -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 절감형 어선·장비 개발 보급 필요
- 어선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어선등록 및 어선검사업무의 기능 일원화 필요
 - 어선검사제도, 검사대행기관 지정·운영업무와 어선등록업무를 통합하여 체계적 관리 필요

2) 추진경과

- 집어등 사용어선에 대한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LED 집어등 및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보급지원
 - 품질인증·성능기준 마련 및 지자체에 사업지원('09/55억원)
 - LED 집어등 : ('09) 217척/13억원 → ('10~'13까지) 1,090척/52억원
 - 유류절감장비 : ('09) 400척/42억원 → ('10~'13까지) 1,400척/147억원
 - ※ 지원율 : 국고 30%, 지방비 30%, 자담 40%

□ 저효율 노후기관대체 지원

- 유류소모 및 탄소배출량이 많은 노후기관 대체 지원
 - 저효율 기관대체 : ('09) 6억원 → ('10~'13까지) 40,000마력/20억원
 - ※ 지원율 : ('09) 용자 80%, 자담 20% → ('10) 국가보조 30%, 지방 30%,

□ 어선등록·어선검사 업무의 일원화를 위한 어선법 개정('09.5.27)

- 「선박안전법」에 따른 어선설비기준, 어선검사제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어선법」에 이관

3) 성과와 반성

- 정부조직 개편('07.2)에 따라 이원화 되어 있던 우리부 어선등록업무와 국토해양부의 어선검사업무를 「어선법」으로 이관 일원화하여 어선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
 - 어선어업 특성과 조업환경에 적합한 어선검사제도 구축을 통한 해양사고 예방으로 어업인 안전향상

4) 향후 추진계획

- 효율적 어선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어선법 하위법령 개정
 - 어선규모, 어업형태, 조업구역 등 어업특성에 맞는 안전설비 기준 및 어선안전검사 시행기준 마련('09. 10~12)
-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유류절감장비 개발·보급 지원 및 현대화, 선원복지 미래형 어선기술개발 추진
 -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 미래형 어선기술 개발 및 경제성 조업 가능한 규모의 대체 건조지원
 - 어업생산과 연계된 경제성, 표준선형 개발, 소형어선 전기추진 시스템 개발 보급 등

1. 어선건조허가, 등록 관리

□ 어선건조 및 개조 허가

- 어선을 건조하거나 기존 어선을 개조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농림수산식품부 : 원양어선, 국가어업지도선, 과학원시험선
 - 시장·군수·구청장 : 연근해 어선, 내수면어선, 양식어선 등
- ※ 수산업법령에 의한 어업허가·면허·신고 등이 가능한 어선에 한하여 허가

<어선건조허가 실적>

(단위 : 척)

구 분	계	5톤미만	5-10톤	10-50톤	50-100톤	100톤이상
'06	2,508	2,269	150	66	20	3
'07	2,832	2,575	176	63	16	2
'08	2,663	2,319	261	71	11	1

※ '08년 어선건조허가 중 5톤 미만 소형어선이 2,319척으로 87%차지

<어선개조허가 실적>

(단위 : 척)

구 분	계	5톤미만	5-10톤	10-50톤	50-100톤	100톤이상
'06	1,525	850	424	180	63	8
'07	1,489	854	427	157	47	4
'08	1,584	911	445	173	54	1

※ '08년 어선개조허가 중 5톤 미만 소형어선이 911척으로 58%

어선의 총톤수 측정

- 어선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등기 및 등록의 기준
 - 총톤수측정기관 : 선박안전기술공단(어선법 제41조에 따라 업무대행)
 - 측정실적 : ('06) 3,157척 → ('07) 3,029척 → ('08) 2,929척

□ 어선의 등록

- 모든 어선은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 ※ 20톤 이상 어선은 선박등기(선박등기법) 후 등록
- 등록어선에 대해 선박국적증서(20톤 이상), 선적증서(20톤 미만), 등록필증(5톤 미만 무동력선)을 발급
 - 등록어선 : ('06) 86,113척 → ('07) 85,627척 → ('08) 80,766척

2. 어선의 안전관리

□ 어선검사 제도

- 어선검사 종류
 - 건조검사, 정기검사(매 5년), 중간검사(2~3년 주기), 임시검사 등
- 검사대상 어선 : 모든 어선(종전 '07.11.4 이전은 2톤 이상 어선)
- 검사대행기관 : 선박안전기술공단
 - 어선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선협회가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확대 개편('97.12)
 - 선박검사, 총톤수측정, 선박안전기술개발·보급, 교육·홍보 등
 - ※ 어선설비기준 마련, 어선검사제도 도입을 위한 어선법 개정('09.5.27. 공포, '09.11.28. 시행)

자 기후변화에 따른 해파리 어업피해 대책 마련

목 표

- 기후변화로 인한 해파리 대량발생에 따른 연근해 어업피해 최소화

1) 현황 및 실태

- 최근 수온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해 해파리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조업포기·어구훼손 등 연근해 어업 피해 발생
 - 연안에서 주로 조업하는 업종(권현망, 자망, 정치망 등)에 영향이 큼
 - ※ 출현량(노무라입깃해파리 개체수/만㎡) : ('05)170 → ('07)64 → ('08)1 → ('09.7) 100
- 10월에 접어들면서 수온하강으로 해파리 세력이 급격히 약화
 - 해파리 모니터링결과 전체 출현빈도(40~50%), 출현량(70~80%) 감소 추세

2) 추진경과

- 농식품부 내에 종합대책반을 구성(8.6, 반장 : 제2차관), '해파리 어업피해 긴급대책' 수립 및 피해 최소화 노력
 - 어업피해조사(8.7~), 발생상황 모니터링 및 해파리 피해 저감기술 매뉴얼 제작·배포(8.27)
 - 해파리 소멸시까지 민·관 합동 제거작업(관공선 100척, 민간선 600여척) 지속추진(8.17~) 및 민간어선 소요경비(20억원) 지원(9.7)
 - 트롤어구 해파리 분리배출장치 피해저감기술 개발·보급
 - ※ 안강망·낭장망의 해파리 배출망은 기 개발·보급('03.9월 설치규정 고시)
 - 출현해역·이동경로 연구 등을 위해 한·중·일 공동협력 추진
 - ※ 한·중 환경공동협력회의('09.10.9, 외교부 주관)에서 해파리공동연구 협의

3) 성과와 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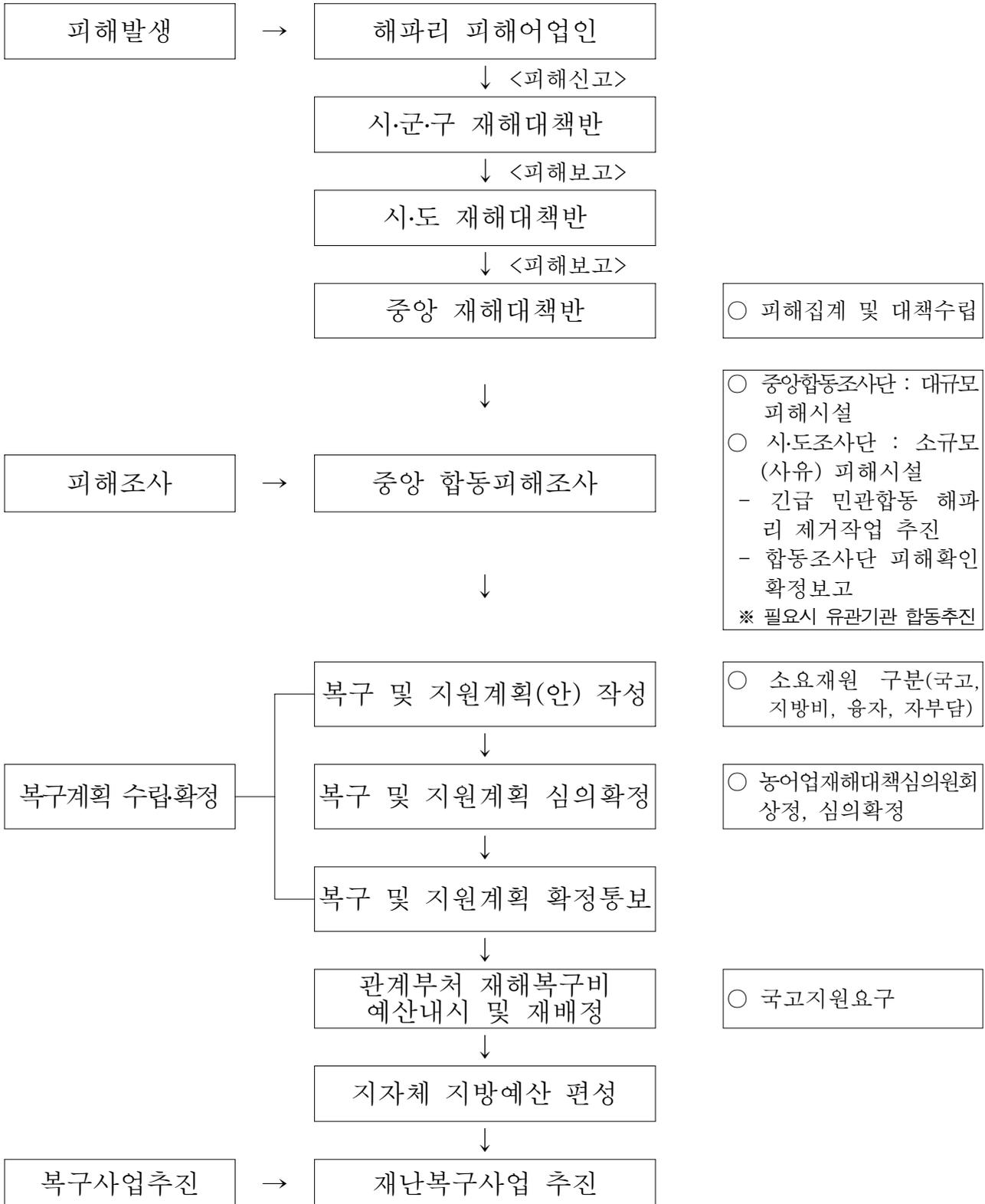
- (반성) 어업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미흡하고, 발생 원인, 이동경로 등에 대한 한·중·일간 공동협력 미흡
 - 지자체별로 피해 신고 접수 중이나 조업손실에 대한 정확한 피해 산정이 어려워 아직 피해접수 실적이 미진(11월중 완료예정)
- (성과) 해파리 어업피해 긴급대책 마련·시행('09.8)함으로써, 어업피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응이 가능
 - 어업피해 중앙·지방 대책반 구성·운영(8.6), 어업피해 조사 추진(8.7), 민관합동 해파리 제거 캠페인 추진(8.21~) 등
 - 해파리 출현 및 이동경로 등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한 정보 전달 체계 구축
 - 적조예찰시스템과 연계하여 감시망, 정보관리, 예찰반 운영 등

4) 향후 추진계획

- 한·중 어업공동위원회(11월)를 통해 해파리 공동연구 제의
 - ※ 한·일 해파리 업무협의회 개최(2차, 11월초), 한·일 어업공동위(12월)
- 어업피해 조사 완료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관련규정 보완(11월)
 - 해파리로 인한 피해 산정이 가능한 부분(어구피해 등)은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대상 포함검토(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등)
- 어가소득 안정을 위해 다양한 어업종류별 피해입증·산정, 지원범위·기준 등에 대한 전문기관 연구용역 추진
- 해파리 콜라겐, 미량성분 등을 활용한 화장품, 의약품 원료 이용방안 연구개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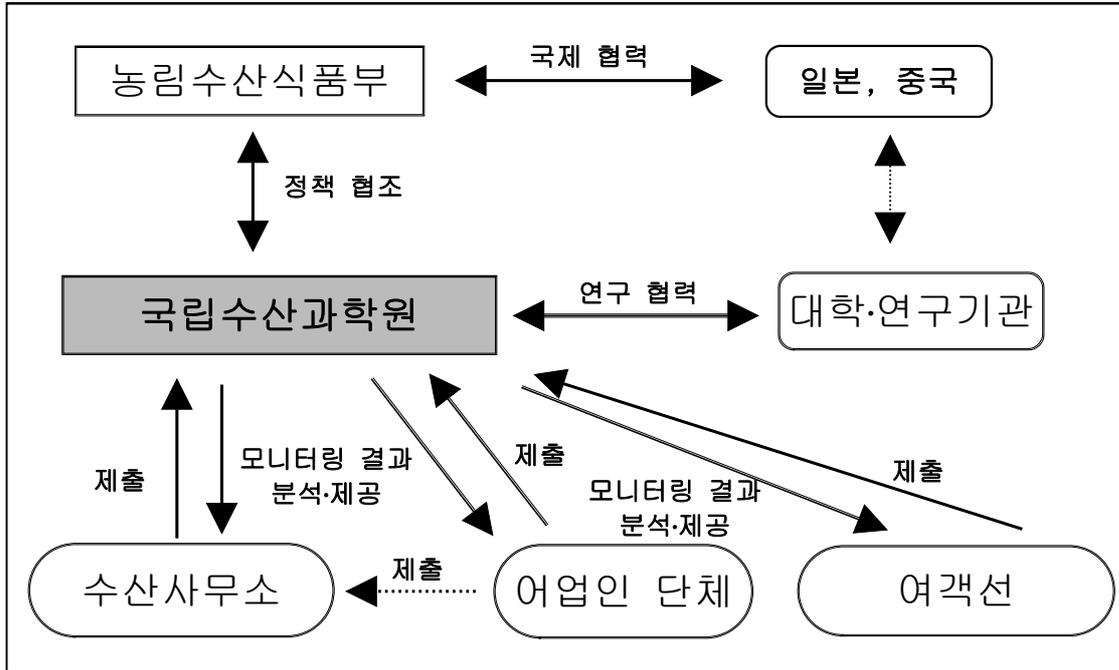
참 고 1

해파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절차



참 고 2

해파리 모니터링 운영체계 및 기관별 역할



참여 기관	역할 및 임무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국)	- 해파리 대책 총괄 - 대책 수립, 관계기관 협조, 한·중·일 협력 등
수산과학원 (유해생물팀)	- 해파리 모니터링 상황 종합관리 - EEZ에서의 해파리 정기 모니터링 - 해파리 출현·분포에 관한 자료 취합 및 분석 - 해파리 모니터링 분석결과 제공, 서비스 - 해파리 관련 연구결과 공유(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수산사무소)	- 지역 어업인이 제공하는 해파리 동향 파악 및 관찰 해안 에 출현하는 해파리 동향 육상 관찰 (해파리 모니터링 담당자 1명 지정) - 해파리 동향을 수산과학원에 제출 (평상시는 주 1회, 여름철은 주 2회) - 수산과학원의 분석자료를 어업인에게 제공
어업인, 어업인단체 (수협)	- 어업인이 해상에서 조업시 관찰한 해파리 동향을 직접 수산과학원에 전달
여객선	- 여객선이 해상에서 운항시 항로에서 해파리 동향을 선상에서 관찰 자료제공(수산과학원) (평상시는 주 1회, 여름철은 주 2회)
대학·민간 연구기관	- 해파리 조사·연구 계획 및 결과를 수산과학원과 협의 또는 제공(정보 공유)

Ⅲ. 양 식 산 업 과

1. 일반현황	67
2. 비전 및 전략	69
3. 주요 추진정책	70
가. 외해양식 활성화	70
나. 어장이용계획 개발 기본 지침 수립 추진	74
다. 환경 친화형 배합사료 보급 확대	78
라. 수산동물 방역체계 구축	88
마. 양식분야 대표품목 육성 추진	93
바. 친환경양식 기반시설 구축	99
사. 양식수산물 출하조절사업	103
아. 어업재해복구 지원대책	106
자. 적조피해 예방대책 추진	111
차. 수산물 이력제 추진	115
카. 해역별 위생등급 설정 관리	119
타. 수산물 위생관리	121
파. 양식장 불법시설 정비 및 단속	123
하. 김 양식장 유해물질 사용 근절대책	127
거. 한·미 패류위생협정 이행	130
너. 위생약정 이행 및 수입조건 이행	137

1. 일 반 현 황

조직 및 정원

□ 조 직



□ 정 원

(단위 : 명)

구 분	합계	3·4 ~ 4급	4·5 ~ 5급	6급이하	기능직
정 원	11	1	6	4	-
현 원	12	1	6	4	1

※ 파견근무자 : 4명(제주도 2, 수산과학원 1, 품질검사원 1)

소관법률

법률명	주요내용	제·개정 경과 및 계획
기르는어업육성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질병관리사 시험 및 운용 기르는어업육성 기본계획 및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정: 법률 제6611호(2002. 1.14) 개정: 법률 제7796호(2005.12. 29)
수산동물질병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동물전염병 예방 및 대처 수입수산물 검역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정: 법률 제8789호(2007.12.21) 개정: 법률 제8852호(2008. 2. 29)
수산물품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물 품질규격화 및 품질인증제도 수산물 안전 및 위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정: 법률 제6399호(2001. 1.29) 개정: 법률 제9009호(2008. 3.28)
농어업재해대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업재해 지원기준 및 심의회 운용 어업재해 피해 복구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정: 법률 제1874호(1967. 1.16) 개정: 법률 제7438호(2005. 3.31)

업 무 분 장

구 분	주요 업무내용	비 고
기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르는데업발전기본계획 수립·운영에 관한사항 • 양식업 시설현대화 및 기반조성사업 지원에 관한사항 • 양식분야 인력 수급 및 해외협력에 관한사항 	
방 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동물 방역대책 수립·운영에 관한사항 • 수산용 의약품 관리 및 배합사료 지원 육성에 관한사항 • 수산물품질검사원 지도·감독 	
개 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면허, 허가·신고 등에 관한 규칙 운용 •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운영에 관한사항 • 외해어장 개발 및 양식어장 구조조정에 관한사항 	
육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관측 및 양식수산물 수급조절에 관한사항 • 어업재해 피해복구 및 적조 피해예방대책에 관한사항 	
협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과의 수산물 위생협정(약정)에 관한사항 • 수산식품의 CODEX, SPS에 관한사항 • 지정해역 지정고시 및 관리에 관한사항 	
위 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이력추적제 사업에 관한사항 • 수산물 생산해역 위생등급 및 HACCP에 관한사항 • 비브리오패혈증 등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사항 	
지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 유기산 사용 및 양식장 불법시설 정비·단속에 관한사항 • 해조류 신제품 보호제도에 관한사항 	

'09년도 예산 및 '10년도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09년	'10년	증감	대 비 (%)
합 계	33,211	38,215	5,004	15.1
< 농특회계 >	18,502	25,886	7,384	39.9
○ 환경친화형배합사료 지원	7,000	6,300	△700	△10.0
○ 친환경양식기반시설구축	5,100	11,900	6,800	133.3
○ 생산이력제 도입	1,800	1,800	-	-
○ 수산물 위생관리	2,550	2,750	200	7.8
○ 해역별 위생등급 설정관리	2,052	2,052	-	-
○ 수산동물질병관리	-	784	784	-
○ 적조피해 발생직전 양식어류 방류	-	300	300	-
< 광특회계 >	1,600	750	△850	△53.1
○ 웰빙표고넙치브랜드개발	550	250	△300	△54.5
○ 고효율배합사료공장 건립	600	-	△600	-
○ 환경친화형배합사료 지원(제주)	450	500	50	11.1
< 수산발전기금 >	13,109	11,579	△1,530	△11.7
○ 양식어업지원	8,105	7,699	△406	△5.0
○ 출하조절	4,200	3,781	△419	△10.0
○ 생계소득및안정	99	99	-	-
○ 수산동물질병관리	705	-	△705	-

2. 비전 및 전략

목표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기반 구축

전략

전략품목 육성

친환경 양식

추진
과제

고소득 대표품종 육성

소비촉진형 안전성관리

외해양식의 전략적 육성

양식수산물 안정성 확보

안정적 생산기술 확보

친환경 양식기반 조성

문제
인식

양식어장의 생산기반 약화

3. 주요 추진정책

가 | 외해양식 활성화

1) 현황 및 실태

- 내만에 편중, 생산성만을 고려한 집약생산으로 연안환경 오염 야기 및 태풍, 질병 등에 의한 반복적 피해로 국가 재정 압박
- 소규모 양식사업으로 대외 경쟁력 약화 및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양식경쟁력 강화 필요성 제기
 - * 양식생산 : ('95) 996천톤 → ('00) 653 → ('05) 1,041 → ('08) 1,382
- 그러나, 법·제도상의 한계 및 고부가가치 신품종 개발 부족 등에 따라 외해양식 산업의 활성화 미흡
- 기존 내만 가두리양식 면허관련 규정과 큰 차이가 없어 기업형 외해양식어업의 활성화에 한계
- 참다랑어, 능성어, 대구 등 고급품종에 대한 개발 필요

2) 추진실적

- 내만 위주 양식으로 상습적인 적조피해·환경이 악화되어 어장 환경이 양호한 외해양식어장을 개발하기 위해 시험어업 추진
- '05년도 부터 해역별 특성을 감안, 외해양식 시험어업 5개소 추진
 - * 시험어업: ('05)제주 → ('06)경남 → ('07)전남 → ('08)강원 → ('09)경북
- 기존 3개 해역(전남·경남·제주도)의 시험어업 자체평가 결과 시설물 및 생물의 안전성과 양식어종의 생존율이 대체적으로 우수
- 태풍(제주 2회, 전남 1회)의 영향 및 2노트 이상의 강한 조류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및 생물의 피해가 없어 안전성 입증

- 참돔, 돌돔, 능성어 등이 100% 배합사료를 사용하면서도 질병발생이 없고 생존율이 내만보다 20%이상(내만 60%→외해 80%) 우수

* 외해양식품종 : 참다랑어, 돔류, 농어, 고등어, 능성어 등

3) 성과와 반성

- 시험어업 장소는 외해의 영향을 받는 곳으로 해양환경이 적합하며 양식시설물에 대해서는 태풍 등에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 시험어종은 돌돔, 민어, 참돔 위주의 유사한 품종으로 향후 과잉공급에 의한 가격하락이 우려되며, 각 해역별 차별화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09년까지 해역별 특성에 따른 시험어업(5개소)을 추진하고 타당성 분석 후 전국 연안으로 사업 확대
- 수출 전략형(참다랑어, 연어), 부가가치 제고형(고등어), 수입 대체형(돔류, 농어) 등으로 분류하여 집중 개발·육성
 - 외해 참다랑어 양식가능성이 있는 제주 등 해역에 집중 개발(8개소, '10~'12)
 - 외해 참다랑어 인공종묘 양식기술개발 등 연구개발('10~'14)
- 외해양식 시설기준, 규모화 등 수산업법·제도 정비('09~'11)
 - 외해 양식어업권의 정의, 물권, 우선순위 및 유효기간 등 이용제도

1. 추진배경

- 외해(수중)가두리양식을 통한 연안어장 생태환경 회복과 고부가가치 해산어류를 양식함으로써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법적근거 : 수산업법 제44조(시험 또는 연구·교습어업)

2.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집행주체 : '06~계속 / 시·도(시·군)
- 사업비(개소당) : 14억원(친환경양식 기반시설 구축)
- 지원형태/조건 : 자치단체자본이전/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 정부지원 실적 : 35억원(강원, 경남, 전남, 제주, 경북 각 7억원)

3. 그간 추진실적

- 2005년부터 외해(수중)가두리양식 시험어업 5개소 승인·추진 중
 - ('05) 제주 → ('06) 경남 → ('07) 전남 → ('08) 강원 → ('09) 경북
- < 제주도 서귀포시 : 2005. 5 ~ 2009. 12(4년 7개월) >
 - 위 치 :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3.9km(수심 48m)
 - 양식품종 : 7종 473천미(참치, 돌돔, 참돔, 벵에돔, 고등어 등)
- < 경남도 통영시 : 2006.8 ~ 2010.6(3개 10개월) >
 - 위 치 :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2.2km(수심 45m)
 - 양식품종 : 7종 151천미(민어, 방어, 참돔, 돌돔, 농어 등)
- < 전남도 여수시 : 2007. 5 ~ 2009. 12. 31(2년6개월)>
 - 위 치 :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고도) 1.2km(수심 45m)
 - 양식품종 : 3종 325천미(돌돔, 참돔, 능성어)
- < 강원도 양양군 : 2008. 8 ~ 2010. 8(2개년)>
 - 위 치 :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5.5km(수심 48m)
 - 양식품종 : 6종 계획(참돔, 방어, 고등어, 은대구, 은연어 등)
- < 경북도 포항시 : 2009. 5 ~ 2010. 12(1년7개월)>
 - 위 치 : 포항시 남구 장기면 모포리 지선 3.5km(수심 46m)
 - 양식품종 : 6종 계획(참돔, 방어, 고등어, 쥐노래미 등)

4. 추진결과 평가

- 시험어업 장소는 외해의 영향을 받은 곳으로 해양환경이 적합하며, 양식 시설물에 대해서는 태풍 등에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 시험어종은 돌돔, 민어, 참돔 위주의 유사한 품종으로 양식되고 있어 향후 유사품종 위주로 계속 추진될 경우 과잉공급에 의한 가격하락이 우려되며, 각 해역별 차별화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

5. 향후 추진계획

□ 시험양식 추진

- 추진방법 : 정부(지자체 포함), 어업인, 연구기관 공동추진
- 대상어종 : 신품종 또는 가급적 기존 양식어종과 경합되지 않는 품종
- 대상해역 : 해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도별 2개소 이내로 한정, 시험어업 추진
 - 도 관내 시험어업 2개소 요청시, 해역별, 대상어종별 특성화 조건 승인
 - * 1개소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고, 1개소는 가능한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
 - 시험어장의 장소는 수심 40m이상, 만조시 해안선에서 3km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해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기준완화 가능
 - 어장의 이용면적은 10ha를 기준으로 하되, 가두리 시설물 및 해황 등 지역 해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기준완화 가능

□ 본 사업 실시

- 추진기간 : 2010년부터
 - 시험사업에서 승인된 시험어장의 장소 및 이용면적은 본사업과 연계되지 않으며, 수산업법 등에서 별도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함
- 검토사항
 - 수산업법 등 기존 법제도 보완 및 시행지침 마련
 - 기존 연안가두리를 외해로 이전하는 구조조정 조건으로 외해가두리 허용 검토
 - 대상어종은 신품종 또는 가급적 기존 연안양식 어종과 경합되지 않는 품종 (참치, 능성어, 고등어, 대구, 연어 등) 허용 검토

1) 현황 및 실태

-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할하는 수면에 대한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면의 종합적 이용 관리 도모
 - * 수산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 국가공익사업 예정, 어장재해 상습 발생, 어장밀집 등으로 생산량 저하 수면 신규어장 개발 금지
- FTA 등 시장개방대비 경쟁력 취약 품종, 안정생산이 필요한 품종 신규 개발 금지

2) 추진경과

- 군장산업단지 공익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한정어업 면허 종료로 김 양식 면허처분 건의에 대해 수급상황 및 어장이용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09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지침” 개정(‘09.9)
 - 2009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나. 양식업 (5)신규어장개발 금지) 개정
 - 현행 : (라).김 양식 : 인천광역시 옹진군 서해5도
 - 개정 : (라). 김 양식 : 인천광역시 옹진군 서해5도, 군장국가산업단지 공익사업계획이 변경(해제)된 군산 개야도 및 서천군 장항·비인·마서·서면해역으로 기존 한정어업면허의 20% 축소 개발시에 한함

3) 성과와 반성

- 한정어업 면허기간 종료로 인해 일반어업면허 처분 검토과정에서 기존 면허면적의 20% 축소, 불법시설 정비 및 친환경, 고품질 김생산 방안을 강구하여 어장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

4) 향후 추진계획

- '10년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 수립 관계기관 의견조회('09.10)
- '10년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 수립 시·도 시달('09.12)

1. 근 거

- 수산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2. 목 적

-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할하는 수면에 대한 어장이용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면의 종합적 이용 관리 도모

3. 기관별 수립사항

□ 농림수산식품부

-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 지역별 어업의 특성에 따른 어장개발에 관한 사항
- 어장이용개발의 제한·조건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 시·도지사

- 개발계획기본지침의 세부사항
- 어장이용개발의 제한수역 및 제한품종 등에 관한 사항
- 어장의 재개발 기타 개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개발계획세부지침 및 기본조사 자료에 따라 관할 수면에 대하여 면허하고자 하는 어업의 종류와 면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장기본도를 작성(기본조사실시 및 사회적·경제적 여건 고려)

4. 지침 주요내용('09년)

- 적조, 태풍 등 상습발생 어장(최근 5년간 50%, 2회이상 피해발생) 또는 우려 수면 신규 양식어장 개발금지, 어장이설·감축조정 등 피해 최소화

- 안정생산, 어업재해 및 가격하락 등 우려되는 김·미역·어류·굴·우렁쉥이·미더덕·전복·가리비·피조개, 홍합양식은 신규개발 금지(10개 품종)
 - 다른 양식품종을 가리비, 또는 면허받은 전복 양식장의 사료용 미역양식으로 전환할 경우는 허용(전지역)
 - 다른 품종을 굴 양식으로 전환(강원·충남·경북도에 한함)
 - 다른 품종을 우렁쉥이 양식으로 전환(강원·경북도에 한함)
 - 김양식 : 인천 옹진군 서해5도, 군장국가산업단지 공익사업계획이 변경(해제)된 군산 개야도 및 서천군 장항·비인·마서·서면해역으로 기존 한정어업면허의 20% 축소 개발시에 한함
 - 전복양식 : 인천 옹진군 서해5도 및 전남 신안군 흑산면과 강원도에 한함
 - 가리비양식 : 전남 완도군부터 인천 옹진군 사이의 서·남해안에 한함
 - 굴 간이수하식 : 충청남도 태안군지역에 한함
 - 굴 투석식양식 : 충청남도에 한함
 - 홍합양식 : 전라북도 부안군 지역 어촌계에 한함
 - 축제식 복합(어류·전복)양식 : 전지역
 - 축제식양식 : 해안생태계, 갯벌 훼손이 우려되는 수면은 신규개발금지
- 면허기간 만료 김·어류 양식장·한정어업양식장을 동일 품종으로 재개발시, 어장규모 및 여건 등 고려, 어장면적을 축소개발(5~20%)
- 다랑어·고등어 등 외해가두리 양식어장 또는 외해(중층) 가두리양식어장 및 키조개 살포식 양식어장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시험어업(1년6월)후 동일품종에 한하여 제한조건 붙여 면허 가능
- 면허기간 만료어장 중 불법시설(초과시설, 어장이탈 등)로 행정처분을 받고 시정기간 내 위반행위 미시정 및 어장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어장청소 미이행 수면 재개발 금지

다 | 환경 친화형 배합사료 보급 확대

1) 현황 및 실태

□ (보조)연근해 자원남획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04년부터 생사료를 배합사료로 대체하는 어가에 대한 보조금 지원

※ 지원규모 : ('04)50억원 → ('05)100 → ('06)101 → ('07)87 → ('08)67 → ('09)70

○ 지원기준 : 배합사료 구입금액 × 30%(지원한도 : 6,000만원/어가당)

○ 지원대상 : 해면 가두리양식(축제식 포함), 육상 수조식 양식

□ (용자)배합사료 가격 인상으로 인한 양식어가 경영 어려움 해소를 위해 '08년부터 배합사료 구매자금 용자 지원(이차보전)

※ 지원규모/이차보전예산 : ('08)1,000억원 / 13억원 → ('09)500 / 73

○ 지원기준 : 어가당 2억원 한도, 연리1%, 2~3년 분할상환

○ 지원대상 : 해면 및 내수면에서 배합사료 사용하는 전 양식어가

□ (연구)환경친화형 고효율 배합사료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해 '08년부터 배합사료 연구·개발사업 확대 수행

※ 지원규모 : ('07) 2억원 → ('08) 7억원 → ('09) 10억원

○ 연구내용 : 환경친화형 고품질 배합사료 설계 표준화 연구 등

□ (홍보)본부에서는 별도의 홍보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과학원에서 배합사료 실증효과 홍보물 등 제작 어업인 배포

※ 홍보물 배포실적 : ('07)연구보고서 200부 ('08)연구보고서 200부 → ('09)보고서 400부, 리후렛 5,000부

2) 추진경과

□ 배합사료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보조금)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사업 지침 개선
 - 지원한도액 상향(40백만원→60백만원/어가당), 축제식양식장 지원확대(경북→전국단위)(1차 : '09.1.9)
 - 사업자가 자금 미소진 전망시 즉시 새로운 사업자로 대체 가능토록 하고, 사업적용기간 1개월 연장 (2차 : '09.8.27)
- (융자금)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침 개선
 - 지원 대상을 확대(어류, 새우, 자라 → 패류추가)하고, 추가사업 가능 명문화(1차 : '09.7.29)
 - 시·도별로 소요되는 자금을 현실에 맞게 재배정하고, 내수면, 해면 지원비율 조정(3:7→4:6) (2차 : '09.9. 4)

□ 배합사료 집행 및 사후관리 점검 추진

- 배합사료 구매자금 집행실태 합동점검('09.1.12~16(5일간))
 - 배합사료 집행 주요 5개지역(제주,부산,통영,광주,여수)을 선정하여 대출취급서류, 양식장현장, 간담회 등 실시
- 배합사료 구매실적 등 양식장 실태조사(분기별/시·도별)

□ 배합사료 홍보물 제작 배포

- 홍보 릿플렛 5,000부 제작(3월), 배부(3~4월)
- 배합사료 현장시험결과 보고서(400부) 배부(제주, 경북)

□ **고효율 배합사료 연구·개발(과학원, 사료연구센터)**

- 고품질 배합사료개발 연구(식물성 원료이용)
- 현장적용시험(조피볼락 배합사료)
- 배합사료 실용화연구(급이체계)
- 어체품질 향상 연구

3) 성과와 반성

□ '04년부터 6년간 475억원의 보조금을 양식어가에 지원하여 배합사료 공급물량은 증가시켰으나, 비중은 기대치에 미흡

- 배합사료 공급물량 증가 : ('03) 76천톤 → ('08) 143(188% ↑)
- 생사료/ 배합사료 비중 : ('03) 16.8% → ('08) 22.1%(5.3% ↑)

◀ 연도별 사료공급 현황(2003~2008) ▶

(단위 : 천톤)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A)	453	519	563	570	637	606
배합사료(B) (A/B, %)	76 (16.8)	99 (19.1)	110 (19.5)	117 (20.5)	146 (22.9)	134 (22.1)
생사료	379	377	420	453	491	472

□ 보조사업은 예산집행율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구매자금(융자)은 금년도에도 일부 부진 전망

- (보조)친환경배합사료 지원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였으나, 금년도는 불용액이 없이 95%이상 집행 가능

◀ 연도별 배합사료 지원사업 결산내역(2006~2009추정치) ▶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 이월	전용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율 (%)
2006	10,100	516	-1,182	9,434	5,982	2,695	757	63.4
2007	8,700	2,695	- 536	10,859	5,664	4,797	398	52.1
2008	6,700	4,797	-	11,497	9,017	2,259	221	78.4
2009 (전망)	7,000	2,259		9,259	8,800 (전망)	459 (전망)	-	95.0 (전망)

(*) 2009년도 459백만원 이월액은 양식어종폐사 등에 따른 미집행

- (용자) 금년도 배합사료구매자금은 2,000백만원 불용액 발생 불가피
 - 사업추진과 무관하게 예산편성시 기준금리(7.59%)보다 1.0%금리 하락(6.49%)되어 금리차액 규모 미집행(약 1,000백만원)
 - 양식어가가 사업신청을 하였으나, 신용 및 담보력 부족 등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미집행(1,000백만원)

◀ 연도별 배합사료 구매자금(아차보전) 지원내역(2008~2009전망) ▶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 이월	추경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율 (%)
2008	-	-	1,300	1,300	356	944	-	27.3
2009 (전망)	7,313	944	-	8,257	5,200 (전망)	1,113 (전망)	2,000	63.0 (전망)

4) 향후 추진계획

- (정책목표) 고품질 배합사료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양
식업계 지속적 발전 도모
- (지원방향) 배합사료 현장적용, 보조·용자사업 지속추진 및
홍보기능 강화
 - 조피볼락 등을 대상으로 배합사료 현장적용시험('10~11)
 - 양식어업인의 배합사료 품질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시험어장
운영(수과원)
 - 정부 보조·용자사업의 지속추진('10)
 - 보조사업은 금년도 예산(73억원)의 10% 감소한 63억원 확보추진
 - 용자사업은 금년도 500억원의 공급규모를 700억원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이차보전예산 확보(97억원)
 - 배합사료 우수성 교육·홍보 강화('10~)
 - 조피볼락 현장 적용시험 결과를 토대로 대어업인 홍보실시
 - 배합사료를 사용한 우수사례를 수집, 지도·홍보(의식개혁)

참 고 1

양식사료 수급실태

□ 최근 3년간 사료 소요량 대비 공급실적(추정)

(단위 : 천톤)

연도별	연간 소요 예상량			연간 공급량			B/A(%)	비 고
	계(A)	생사료	배합사료	계(B)	생사료	배합사료		
2006	536	422	114	573	456	117	106.9	
2007	569	447	122	592	491	101	104.0	
2008	-	-	-	606	472	134		

○ 양식장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증가에 따른 사료 소요 증가

- 해면양식장 : ('05) 3,209건/686ha → ('06) 3,131건/1,190ha → ('07) 2,906건/1,034ha

· 가두리	: 2,383건/164	2,238건/146	2,099건/137
· 수조식	: 682건/237	659건/234	629건/235
· 축제식	: 144건/285	233건/810	178건/662

○ 배합사료 : 국내 사료회사 20개사, 연간 약 128천톤 생산('08년말)

- 수입 배합사료 : 19개국 연간 6천톤 수입(총소요량의 4.5%)

※ 생사료 : 식용으로 상품가치가 없는 수산물 이용, 연간 약 51천톤 수입

※ 연도별 사료공급 현황(추정)

(단위 : 천톤)

구분 \ 년도	'02	'03	'04	'05	'06	'07	'08	
합 계	455	453	519	563	570	637	606	
배합사료	소 계	76(17)	76(17)	99(19)	110(20)	117(21)	146(23)	134(22)
	분 말	33	30	29	26	23	21	23
	E.P	33	34	58	73	78	113	105
	수입산	10	12	12	11	16	12	6
생 사 료	소 계	379(83)	377(83)	420(81)	453(80)	453(79)	491(77)	472(78)
	국내산	200	262	315	348	340	399	421
	수입산	179	115	105	105	113	92	51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02~'08어류양식현황조사)관세청, 지방청, (주)수협사료

* 소계의 ()은 총량에 대한 사료별 비율임

■ MP(Moisture Pellet)사료

- 생사료에 건조분말사료가 포함된 습사료
 - 잘게부순 생사료에 배합분말사료, 첨가제 등을 혼합한 사료
 - 완전배합사료에 비하여 결합력이 떨어져 양식장에 급여하게 될 때 수중에서 풀어지거나 분산되기 쉬움
 - 잘게부순 생사료에 배합분말사료, 첨가제 등을 혼합한 사료
 - 수분함량이 50~60%이상 어체 절단시 어체내 영양소 파괴 및 유출됨

■ DP(Dry Pellet)사료

- 침강사료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가축용 배합사료에 사용된다.
 - pellet 과정이 70~80% 정도되며 Starch가 Gellatin화 되는 정도가 EP사료에 비해 다소 떨어져 소화율이 조금 낮다고 볼수 있음.
 - 물에 쉽게 가라앉게 되므로 물고기들이 사료를 섭취하는 시간적 여유가 적어 양어용 배합사료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EP(Extruded Pellet)사료

- 양식용 배합사료는 수분함량이 10%미만인 건조사료이며 익스트루더(Extruder)로 제조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EP(Extruded pellet)라고 함
- 부상사료라고도 하며 130℃고온에서 사료제조과정을 거친 다음 건조과정에서 수분함량을 낮게 처리한 다음 냉각처리 후 포장
 - 고온 압출과정을 통하여 Starch가 Gellatin화 되는 정도가 커서 소화율이 매우 높음.
 - 물에 쉽게 가라앉지 않아서 물고기들이 사료를 섭취하는 시간적여유가 충분함
 - 수분함량이 7~10%수준으로 고온·고압과정을 통하여 유해균들이 사멸되므로 병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DP사료에 비해 낮음.

■ SEP(Soft Extrude Pellet 혹은 Semi-moist pellet<반습사료>)

- 수분함량이 20~30%내외로 70℃에서 사료제조과정을 거친 다음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냉각처리 후 포장 냉동 유통
- 높은 수분함량으로 인해 운반시 뭉게지기 쉽고, 특히 여름철에는 운반 및 보관시 산패·변패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저온 보관이 필요함

참 고 3

생사료와 배합사료의 장단점

구 분	생사료 이용(단점)	➔	배합사료(장점)
환경	○ 먹이투여시 유실량 많음 - 생사료 30~40% - 습사료 15~20%		○ 먹이투여시 유실량 적음 - 5% 내외
	○ 오염부하량이 높아 어장성 저하		○ 어장환경 악화 저감
자원	○ 수산자원 남획 우려		○ 수산자원 보호 효과
경영	○ 사료비가 저렴, 관행 사용 - 520~1,086원/kg		○ 사료비가 다소 비쌌, 품질불신 - 1,400~2,000원/kg
	○ 어황에 따라 수급 불안정 - 공급 한계 및 가격 폭등 우려		○ 사료공급의 안정성 - 공급과 가격 변동 감소
	○ 사료변질 등 저장성 낮음 - 냉동시설 필요 및 전기료 소요		○ 저장성 높음 - 냉동시설 불필요
	○ 질병발생 원인제공 - 비위생적 사료 공급		○ 질병발생 원인 감소 - 위생적 사료원료의 사용

※ 양어용 사료의 종류

▶ 생사료(수분: 65~80%) : 사료계수 4.0~5.0

- 고등어 및 까나리 등을 통째로 또는 잘게 절단한 것, 개별양식장 제조

▶ 배합사료(Extruded Pellet 수분 : 3~7%) : 사료계수 1.4~1.5

- 각 어종에 적합한 사료원료를 배합하여 상품화한 것(양어용 배합사료 제조사 26개사)

- 1kg 어류 사육시 사료 비용은 생사료에 비해 배합사료가 kg당 약 500~1,500원 정도 추가 비용 발생이 있음

□ 2008년도 기준 생산업체 : 22개사

상호명	주 소	전화번호
이화유지공업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380-7	051-291-4208
CJ(인천, 군산, 통영)	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 64	032-881-2723
대한사료공업(주)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120 인천시 중구 북성동 1가 3-14	02-752-1171 032-763-3371
(주)코스프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90-4	032-815-0321
세화사료(주)	인천시 서구 당하동 955-8	032-563-5744
(주)SCF	인천시 서구 마전동 660-18	032-565-4545
제일사료(천하제일)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40-36	042-624-4101
우성사료(주)	충남 논산시 은진면 토양리 33	041-741-8101
서해사료(GPFeed)	충남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477-4	041-674-5147
(주)애그리 브랜드 퓨리나코리아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7-8 전북 군산시 소룡동 56-4	02-528-7700 063-467-6511
대상사료(주)	전북 정주시 영파동 500-2	063-536-1161
(주)코팩스	부산시 동래구 온천1동 154	051-556-8661
제일사료(함안)	경남 함안군 범수면 윤외리 1475-5	055-582-6830
수협사료	경남 의령군 만천리 14-1	055-573-6321
선인장나라	경남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818	055-646-0361
스마일사료	경남 사천시 송포동 1061번지	055-833-5312
기타 사료공장(3)	-	-

참 고 5

양식생 사료 수입 현황

(단위 : 톤)

구 분	'03	'04	'05	'06	'07	'08
합 계	145,920	151,608	122,763	152,791	140,017	69,407
사료용	115,495	104,588	105,140	112,942	92,165	50,918
식 용	30,425	47,020	17,623	39,849	47,852	18,489
고등어	30,783	45,084	18,779	34,820	45,922	28,561
사료용	7,967	6,241	6,360	3,568	2,899	13,256
식 용	22,816	38,843	12,419	31,252	43,023	15,305
전갱이	24,797	13,679	20,292	11,595	6,150	2,511
사료용	23,737	13,268	19,936	11,541	6,150	2,511
식 용	1,060	411	356	54	-	-
까나리	65,227	70,904	64,198	87,098	72,507	28,064
사료용	65,078	70,854	64,126	87,098	72,507	28,064
식 용	149	50	72	-	-	-
청 어	7,255	6,646	5,063	8,758	4,144	2,196
사료용	1,924	616	961	1,178	251	33
식 용	5,331	6,030	4,102	7,580	3,893	2,163
정어리	11,590	10,155	10,179	8,656	9,547	6,690
사료용	11,349	9,534	10,157	8,656	9,536	6,688
식 용	241	621	22	-	11	2
기타어류웨이스트	6,268	5,140	4,252	1,864	1,747	1,385
사료용	5,440	4,075	3,600	901	822	366
식 용	828	1,065	652	963	925	1,019

*기타어류 : 어류 웨이스트 등

○ 생사료 가격(연안산)

- 전갱이 : 530 ~ 650원/kg
- 고등어 : 500 ~ 620원/kg
- 까나리 : 400 ~ 600원/kg
- 멸 치 : 390 ~ 420원/kg
- 청 어 : 380 ~ 450원/kg



라 | 수산동물 방역체계 구축

1) 현황 및 실태

□ 바이러스 등 수산동물 전염병으로 양식어류 연간 2,500억원 피해 발생(추정)

○ 2000년대 들어서는 15~20%로 질병 발생률 증가

□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을 제정·시행('08.12.22)

○ 수산동물 방역 국가기관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방역수행기관으로 정하여 방역업무 수행

- 전염병 관리를 위한 양식장 질병 예찰 및 모니터링 질병 검사

* 25개 질병 수산동물 전염병으로 정함(법14, 시행규칙 11)

- 감염된 수산동물에 대한 병성감정 및 역학조사

- 감염된 수산동물의 격리·이동제한, 살처분, 매몰 등

* 수산동물 국경검역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수행하여 외래질병 차단

□ 수산동물 전염병 방역체계 조기 구축 필요

○ 법령에서 정한 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키 위해서는 조직, 예산, 지원시스템 등이 조기 구축

2) 추진경과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령 안정화 추진

○ 양국수역 상존질병 및 국제수역사무국(OIE) 비지정질병 검역증명서 면제('09.2, 규칙 개정)

□ 수산동물 방역 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

- 국가 방역기관 조직·인력 확대 (2010 소요정원/관련부처 협의완료)
 - 조직 : ('09) 방역센터 → (2010) 방역관리과
(5급연구관) (4급연구관)
 - 인력 : ('09) 18명 → (2010) 27명 (+9)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통합 방역체계 구축 완료
 - 수산동물방역기관 방역관 임명 및 위촉 : 58명(국가 31, 지방 27)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방역관간 방역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 개최(9.24~25, 부산)

□ 방역비용, 장비 및 실험실 등 예산 확보

- 방역에 직접 필요한 방역비, 살처분보상, 생계지원비 확보(본부)
 - ('09) 804백만원 → (2010요구) 804백만원
- 방역관리 역학조사·연구비 확보(국립수산과학원)
 - ('09) 775백만원 → (2010요구) 1,463백만원
- 첨단 방역장비를 동·서·남·해 등 6개 권역별 배치(34종, 119대)
 - * 장비 도입·운영 지원 : ('09년) 20억원 ⇒ ('10년) 22억원
- 수산동물방역센터 실험실(OIE 표준 실험실 규모) 구축
 - * ('10년안) 3개소(본원, 동해, 서해)증축 38억원 요구 중
- 수산동물전염병 병원체 균주은행 설치운영(47종 보존관리)
- 농축수산안전정보시스템 연계, 질병발생정보 등 D/B 운영

□ '09년 방류 수산동물 질병검사 실시('09.9 현재)

- 넙치 등 40개 품종 1,611건 검사('08 : 918건 ⇒ '09; 2,000건 예상)
 - 검사대상 종류(43종) : 해면품종 32종, 내수면 품종 11종
- 붕어 등 8개 품종 13건 전염병 검출 소독 및 격리 명령
 - 흰반점병(4건),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3건),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6건)

□ 질병예방을 위한 어류 이동병원 운영('09. 7~8월)

- 7차례 걸쳐 양식장 106개소 총 811건 어병진단 및 처방

3) 향후 추진계획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령 안정화 지속 추진

- 수산동물전염병 증장기 종합관리대책 수립

- 수산동물전염병의 예방 및 신고체계, 방역계획 수립
- 수산동물전염병 진단기술 개발 및 방역추진방향 설정 등

- 수산동물전염병방역협의회 설치·운영

-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대책, 제도개선, 양식어업인 분쟁조정 등 역할 수행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과학원, 지자체, 수산계대학, 생산자단체 등 20인 이내

- 수산동물질병관리법령 시행에 따른 일부 미비점 발굴 개선

- 관련기관 의견조회 중

□ 국제적으로 조화로운 선진 방역 시스템 구축

- 호주 등 선진국의 방역시스템 도입을 위한 자료수집등 강화

- 공신력 있는 수입위험분석 실시(연구용역)로 방역체계 구축

- 법령에서 정한 보상이 신속히 집행이 가능하도록 예산 및 시스템 보완

- 국영 검역시행장 확보, 양식장등 오존처리시설을 갖추기 위한 타당성 검토(2010 연구용역 수행 후 예산반영)

참 고 1

수산동물전염병 지정현황

(2009.11월 현재)

어종	병원체	연번	수산동물질병	수산동물질병 관리법령			OIE 등재	비 고
				계	법	시행 규칙		
-	-	-	계	25개	11개	14개	25개	
어류	바이러스	1	유행성조혈기괴사증(EHN)	○	-	●	○	
		2	잉어봄바이러스병(SVC)	○	●	-	○	
		3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VHS)	○	●	-	○	국내 보고 질병
		4	전염성연어빈혈증(ISA)	○	-	●	○	
		5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RSIVD)	○	●	-	○	국내 보고 질병
		6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KHD)	○	●	-	○	
		7	바이러스성신경괴사증(VNN)	○	●	-	-	국내 보고 질병
		8	전염성채장괴사증(IPN)	○	●	-	-	국내 보고 질병
		9	돌돔이리도바이러스병(RBIVD)	○	●	-	-	국내 보고 질병 국제미공인질병
		10	전염성조혈기괴사증(IHN)	-	-	-	○	국내 보고 질병
진 균	11	유행성궤양증후군(EUS)	○	●	-	○		
기 생 충	12	자이로닥틸루스증 (자이로닥틸루스살라리스)	○	-	●	○		
패류	기 생 충	13	보나미아감염증 (보나미아오스트레, 보나미아익시티오사)	○	-	●	○	
		14	마르테일리아레프리즈 감염증	○	-	●	○	
		15	퍼킨수스 마리누스 감염증	○	-	●	○	국내 보고 질병
	16	퍼킨수스올제니감염증	-	-	-	○	국내 보고 질병	
세 균	17	제노할리오티스 캘리포니아엔시스 감염증	○	-	●	○		
바이러스	18	전복바이러스성 폐사증	○	-	●	○	OIE 명칭변경('09)	
갑각류	바이러스	19	구상바쿨로바이러스증	○	-	●	-	OIE 삭제('09)
		20	사면바쿨로바이러스증	○	-	●	-	OIE 삭제('09)
		21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IHHN)	○	-	●	○	국내 보고 질병
		22	노랑머리병(YHD)	○	●	-	○	
		23	흰반점병(WSD)	○	●	-	○	국내 보고 질병
		24	타우라증후군(TSV)	○	●	-	○	국내 보고 질병
		25	전염성근괴사증(IMN)	○	-	●	○	
26	흰꼬리병(WTD)	○	-	●	○	국내 보고 질병		
진 균	27	가재전염병	○	-	●	○		
세 균	28	Milky haemolymph disease of spiny lobsters	-	-	-	○	OIE 추가('09)	
29	괴사성간채장염(NHP)	-	-	-	○	OIE 추가('09)		
양서류	진 균	30	항아리곰팡이감염증	-	-	-	○	OIE 양서류
바이러스	31	라나바이러스증	-	-	-	○	OIE 양서류	

※ 자료출처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품질검사과

주) 28. Milky haemolymph disease of spiny lobsters과 29. 괴사성간채장염(NHP)은 '09년 추가된 OIE 등재질병이며, 현재 검토 중인 질병임

참 고 2

방류수산동물 검사대상 질병 및 처벌규정

□ 방류수산동물 검사대상 질병(법 제2조 제3호와 규칙 제2조)

	법시행 전(13항목) 수산종묘매입방류 사업시행지침	법시행 이후(25항목)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류이리도바이러스 감염증 •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 해산버나바이러스 감염증 • 넙치랩도바이러스 감염증 • 어류노다바이러스 감염증 • 잉어허피스바이러스 감염증 • 잉어봄바이러스 감염증 • 전염성채장괴사증 • 전염성조혈기괴사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 돌돔이리도바이러스병 •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 바이러스성신경괴사증 • 전염성연어빈혈증 •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 잉어봄바이러스병 • 유행성쾌양증후군 • 전염성채장괴사증 • 유행성조혈기괴사증 • 자일로닥틸루스증(자일로닥틸루스살라리스)
패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퍼킨수스 감염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퍼킨수스감염증(퍼킨수스마리누스) • 보나미아감염증(보나미아오스트레,보나미아익시티오사) • 마르테일리아감염증(마르테일리아래 프리젠스) • 퍼킨수스감염증 •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감염증 • 전복바이러스폐사증
갑각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흰반점바이러스 감염증 • 간체장파보바이러스 감염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흰반점병 • 노랑머리병 • 타우라증후군 • 가재전염병 • 구상바쿨로바이러스증 • 사면바쿨로바이러스증 •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 전염성근괴사증 • 흰꼬리병
해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능검사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위반시 벌칙 등

대 상	위반사항	처분기준
수산동물을 방류하려는 자	수산동물전염병의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방류수산동물이 수산동물전염병에 감염되어 소독,격리 또는 살처분 명령을 받은 방류하려는 자	소독,격리 또는 살처분 명령 불이행	

마 | 양식분야 대표품목 육성 추진

1) 현황 및 실태

- WTO/DDA체제 출범, 수산물 전면 수입개방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유망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생산, 가공, 유통, 수출분야 단체가 협력하여 현안 문제 등 해소할 수 있는 대안 마련 필요
 - 수출 유망품목(넙치, 전복, 김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생산여건 조성 과 판촉, 마케팅 등 중장기적·전략적인 사업추진 필요
- 양식어업이 국민의 주된 수산물 공급원이자 수출산업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양식어업의 경쟁력 확보로 수익성 개선 필요
 - 최근 양식수산물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비용 증가, 내수시장의 소비성장세 둔화 등으로 과잉생산이 문제화
 - * 양식수산물 생산량 : ('00) 653 → ('05) 1,041 → ('08) 1,382
-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및 농림수산식품부 출범에 부응
 - 1차산업을 식품산업으로 육성 발전, 농림수산식품 수출 100억불 초석 마련
 - 수산업을 융·복합 6차산업으로 발전시켜 어업과 동반 성장 및 부가가치 창출로 어업소득 증대

2) 추진경과

- 양식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생산, 제품개발, 판매·출하, 수급조절 등을 자율적으로 담당하는 대표조직 육성
 - 주요 양식 품종(넙치, 전복, 김) 우선 대표 조직 설립 추진
 - * 넙치('08. 12 출범), 전복, 김('09. 12 설립 계획)

- 양식 생산 원가 및 유통 비용 절감, 수출전략과 대표조직 설립 추진을 위한 워크숍 개최('09.3)
 - 생산자 단체, 유통업체, 주식회사, 지자체, 정부 참여
- 대표조직 출범 T/F 운용 및 설립안 마련(5~6월)
- 지역간, 업·단체간 품종별 전국 대표조직의 필요성 공감대 형성 및 대표조직 발기인 대회 개최(7~9월)

3) 성과와 반성

- 정부 주도의 양식기술 개발·보급, 양식어업인의 기술 노하우 축적으로 자연환경, 산업환경에 적합한 기술 축적
- 29개 농수산 대표품목 중에 생산액이 많고 수출가능성이 높은 양식 품목인 넙치, 전복, 김이 우리부 대표품목에 선정('08.5)
- 연안 어장 대부분의 면허화, 기존 어업인의 부채 문제, 활성화되지 못한 어업권 시장의 여건 등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지연
- 생산자의 정보수집·마케팅 능력 부족
 - 영세한 생산자, 산지수집상, 대형할인점 등 소수의 수요자가 참여하는 수요자 주도 시장 형태가 되면서 생산자의 가격교섭력이 저하됨
 - 생산자의 정보수집·마케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수산업관측사업, 생산자조직화 등이 필요하나 아직 활성화되지 않음

4) 향후 추진계획

- 주요 양식 품종(넙치, 전복, 김) 우선 대표 조직 설립 추진
 - 대표조직(전복,김) 발기인 대회 개최 및 설립허가 신청(9~12월)
- 수출국 다변화, 대표조직 설립인가 등 대표조직 활성화 추진(11~12월)
 - 생산 원가 및 유통비용 절감, 수급조절, 공동 소비촉진 행사 등
- 대표조직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
 - 직거래 확대, 공동작업, 대형 유통업체와 교섭력 확보
 - * 여량(수분감량) 및 단가 조절, 시기별·지역별 출하량 자율 조절 등
 - 유통협약 및 자조금사업(37억원)을 통한 자율수급 조절 추진
- 품종별 연구 집중화로 산업화 연구 추진
 - 품종별로 생산, 식품 개발, 소비 수요, 수출 및 수입 대체 전망 등 분석
- 틈새시장 개척을 통한 양식수산물의 수출 활성화
 - 주요 양식품목의 대외경쟁력 제고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양식 품목별 수출 1억불 조기달성
 - 품목별 수출 1억불 달성시기 : 김('10), 넙치('12), 전복('17)
 - 수출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 추진
 -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을 전 양식어장으로 확대
 - 미국·일본 수출 활넙치 수출확대를 위한 박람회 및 판촉전 지원
 - 동남아, 유럽 등 신규시장의 시장조사 및 고품질 브랜드 개발

참 고

주요 품목 대표조직 현황

가 **넙치**

기본 방향	◇ 우량품종 생산·보급 등 생산성과 품질 향상으로 경쟁력 제고
----------	------------------------------------

'12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존율 향상과 생산기간 단축하여 생산원가 절감 : ('08) 8,000원/kg → ('12) 5,000 ■ 수출 연평균 27.4% 확대 : ('08) 43백만불 → ('12) 102
------------	--

생산·유통구조 개선대책	■ 생산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종에 의한 속성장 및 내병성 우량품종 개발·보급 · 성장기간 단축/kg : ('08) 16개월 → ('12) 12 · 내병성 품종개발로 생존율 향상 : ('08) 50% → ('12) 80
	■ 유통·가공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지 물류센터 설치, 유통비용 축소 및 직거래 확대 · 주요 수도권 및 광역시 : 5개소 설치 지원 - 고급 냉동 싱싱회 등 가공식품 개발 · 국립수산물과학원 정책과제 추진
	■ 수출·소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창구 단일화 및 수출국 다변화로 수출확대 · 해외활어적치 시설 : 3개소(상해, 하와이, LA) 지원 · 수출확대 : ('08) 45백만불 → ('12) 102

품목 대표조직 육성	■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넙치 대표조직 설립(한국광어양식연합회, '08.12) · 기구 : 총회, 이사회, 감사(의결권 : 회원당 1표) - 법인 설립 후 사무실만 확보된 상태 · 자조금 운영비율 등 제도개선 및 자조금(자담) 확보 방안 마련 중
	■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 설치 등 조직·시스템 정비 완료 - 자조금, 유통협약 등 기능 부여로 활성화 도모 - 수출창구 일원화로 시장개척 등 수출기반 강화 - 출하조절·홍보, 마케팅, 브랜드 관리 등 사업영역 확대

나

전북

기본 방향 ◇ 품질고급화 및 유통구조개선 등을 통한 대중기호식품, 수출 주력 품목으로 육성

'12년 목표

- 수출 119% 확대 : ('08) 21백만불 → ('12) 46
- 국내산 우량품종 개발·보급, 품질 고급화 : ('08) 30% → ('12) 80
- 총 생산량 124% 증대 : ('08) 5,145톤 → ('12) 11,500

생산·유통구조 개선대책	■ 생산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성 우량종패 개발·보급('13년 실용화) · 속성장 품종 개발로 사육기간 단축(현재 : 36개월 → '13 : 20~25개월) - 전북육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경쟁력 강화 · '13년까지 우량 씨전복 개발(성장 30% 향상) - 계획생산 유도 : 대표조직에서 지역·시기별 출하 물량 자율조절
	■ 유통·가공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조직을 통한 직거래 확대 - 산지 해상집하장 확충 : ('08) 0개소 → ('12) 5 - 활전복 위주에서 냉동전복 등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
	■ 수출·소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국 다변화 추구(현행 : 일본 → 홍콩 등 중화권) · 수출 물류비, 국제 엑스포 참가비 지원 등 - 국가별 기호에 맞는 가공제품 수출 확대 · 수출 확대 : ('08) 21백만불 → ('12) 46 - Target Market에 대한 시장분석 후 목표시장의 소비 형태 및 소비 트렌드에 적합한 제품 개발

품목 대표조직 육성	■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 중심 (사)한국전복협회('07.3) · 9개 도·시·군 생산자 및 유통인 1,440여가(생산여가의 32%) · 유통협약·자조금(국고 385백만원) 관리 - 완도 전복주식회사 설립('09.3) · 생산자 615명, 유통 5개업체 참여
	■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한국전복협회와 완도 전복주식회사 규합, '09.12월까지 사단법인 형태의 대표조직 설립 · 대표조직 설립 준비 워크샵(3월) · 대표조직 설립을 위한 T/F 구성·운영(4월) · 대표조직 설립(안) 마련(6월) · 대표조직 법인 설립 완료(12월)

다 김

기본방향 ◇ 공동브랜드 강화로 고품질 김 생산과 대외 경쟁력 강화

'12년 목표

- 육상채묘 비율 확대 : ('08) 12% → ('12) 60
- 시군단위 김 공동브랜드 개발 : ('08) - → ('12) 7개
- 수출 확대 : ('08) 75백만원 → ('12) 164

생산·유통구조 개선대책	<p>■ 생산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채묘 시설지원 : ('08) 5개소 → ('12) 15 - 해조류 신제품개발 : ('08) - → ('12) 4종 - 고품질 김 생산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 양식 표준화 지침개발('11), 김활성철리제 개발('10)
	<p>■ 유통·가공 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단위 공동브랜드 개발 : ('08) - → ('12) 7개 - 이물질선별기 지원 확대 : ('08) 79대 → ('12) 130 - 수산물 관측 활성화 : 해조류 해외모니터링 요원 (일본, 중국) 운영
	<p>■ 수출·소비 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수출시장·유통·소비조사 : ('09) 1 → ('12) 7회 - 수출 다각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 미국(28%), 일본(24%) → ('12) 미국(20%), 일본(20%), 중국(12) - 지원 확대 : ('08) 최대50억 → ('12) 수출금액의 20%

품목 대표조직 육성	<p>■ 현 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어업인 및 가공업체 조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 생산 어민연합회, 전국마른김협회 - 어민연합회는 자조금 사업 수행 : '09예산 764백만원
	<p>■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가공, 유통, 수출업계를 포괄하는 품목 대표조직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분야 대표가 참여하는 자문단 구성 · 대표조직 활성화 지원 · 자조금사업 등 대표조직 이관, 기존 예산사업도 대표조직으로 일원화 -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회 개최(5월), T/F 구성(5월), 협의체 구성(9월), 대표조직 설립인가 신청('09.12)

1) 현황 및 실태

- 양식어장의 80% 이상이 남해 연안의 내만에 집중되어 있으며 장기간의 과밀 양식으로 어장이 오염되고 생산성이 저하
 - 양식어장의 오염에 따른 질병 발생, 폐사 증가 등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과도한 약품 사용 상존
- 국제적(FAO 등)으로도 양식어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친환경적인 양식기자재 및 활성처리제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지만 기본사양 및 사용기준이 없어 오·남용 우려 및 관련 업계간 민원 야기
- 수산생물 종자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선택과 집중 부족
 - 체계적인 유전자원 관리, 종자개발 연구 투자 미흡,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조직·기능과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 미흡
- 친환경 신동력 양식산업 창출을 위해 고부가가치 중심의 신품종 및 원천기술 집중개발, 양식산업화 지원
 - ※ 전략품종 - 넙치, 전복, 김, 참다랑어, 해삼, 갯지렁이 등
- 추진근거 : 기르는어업육성법 제6조(자금의 보조 등), 어장관리법 제6조(어장환경의 조사), 수산업법 84조(보조 등), 생명공학육성법 제13조(생명공학육성시책강구등)
- 사업기간 : '62 ~ 계속('09까지 416억원 기 투자)
- 사업규모 : 양식어가수 22,000가구
- 지원조건 : 국고 30~100%, 지방비 30~50%, 자담 0~40%

2) 추진경과

- 친환경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과학적 기반연구 및 고부가가치 양식 수산물의 산업화 지원으로 기르는어업 활성화,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 해조류품종보호, 어장환경실태조사, 태안어장 정밀조사 및 복원,우량 종자보급, 외해참다랑어 양식산업화, 전복연구소 설립 지원 등
- 내역사업별 추진실적
 - 국제식품신품종보호제도 시행 대비, 품종 심사기술개발 및 해조류 신품종 개발 등으로 해조류 품종보호제도 체계구축(2008~2017)
 - 동·서·남해 해역에 대한 체계적인 어장환경실태조사로 어장환경 보전·개선정책의 기초자료 제공(1개 해역)
 - 서해안 유류오염 사고지역에 대한 양식산업 복원화를 위해 피해어장의 정밀조사를 통한 맞춤형 프로젝트 사업개발
 - 양식시설의 품종별 시설 표준화로 자연재해 피해복구비 지원기준 설정(해면, 내수면)
 - 갯녹음 초기 발생지역 철의 기능을 이용하여 육상에서 비료를 시비하는 원리를 수중에 시비하여 해조 생육과 해조숲 조성에 미치는 효과 및 해양환경 영향을 분석
 - 육종생물(넙치, 전복)의 육종 및 종 보존시스템 구축으로 양식산업 기반 유지
 - 친환경 신동력 양식산업 창출을 위해 고부가가치 참다랑어 양식어종의 산업화를 위한 양식기술개발 지원(국내 참치수입 대체효과 및 수출 전략품종으로 활용)

- 양식수산물에 대한 백신공급으로 질병방지 및 우량한 수산물 생산으로 양식어가 경쟁력 제고(연쇄구균백신 접종 지원)
- 외해어장을 개발하여 내만에 밀집된 가두리어장을 외해로 이동함으로써 어장환경 개선 및 양식수산물 이미지 제고(제주, 경남, 전남, 강원, 경북지역 시범사업)
- 넙치, 김 우량종묘 육성·보급을 위한 우량 친어, 모조(母藻) 확보, 보존 관리 안정화로 어업소득 증대(지역별 열성화된 품종 개량)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점검으로 효율적인 관리 추진 (10개소, 3개 도)
- 고부가가치 외해 참다랑어 양식을 위한 기반시설(가두리시설, 종묘 생산시설, 관리선 건조 등) 지원
- 농어업선진화 10대 핵심과제 추진, 국제경쟁에 대비한 종자산업 보호 육성, 고소득 양식 대표품종인 전복, 해삼 지원

3) 성과와 반성

- 양식시설 표준화 연구로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피해 최소화 및 복구 지원시 표준규격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하므로써 국고손실 예방
 - 1차년도('08)는 양식시설별 실태조사 실시, 2차년도('09)는 양식시설별 설계도면 제작 및 내파성, 우수저항 등 측성성 연구
- 양식수산물에 대한 백신공급으로 어류질병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 2007년도 : 2개 제품(에드워드 백신, 연쇄구균 백신)
 - 2008년도 : 1개 제품(연쇄구균 백신)
- 체계적·효율적인 어장환경 보전·개선과 이용 도모를 위하여 남·서·동해 연안어장에 대한 과학적인 실태 파악

- 1차년도('08) : 남해안 연안해역(진해만, 거제만, 한산만/굴, 미더덕, 멧게) 어장실태조사
- 2차년도('09) : 남해안 연안해역(고성만, 자란만, 가막만, 여자만/굴, 홍합, 새고막) 어장실태조사
- 친환경 양식은 양식어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식품 안전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함으로써 양식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음

4) 향후 추진계획

- 친환경 신동력 양식산업 창출을 위해 고부가가치 참다랑어 양식 어종의 산업화 및 양식기술개발 지원
 - * 동 사업은 국정과제 및 우리부 농어업선진화 10대 핵심과제임
- 2012년 해조류 품종보호제도 대비 신품종 심사기준 마련 등
 - 2012년까지 해조류 15품종 이상 개발 후 신품종 출원·등록
- 국제경쟁에 대비한 종자산업 보호 육성, 전복·해삼의 세계일류식품 육성 및 수출전략품종 육성 지원 등

1) 현황 및 실태

○ 목 적

- WTO/DDA, FTA 등 시장개방화에 대비, 정부주도적 수산물 수급조절 정책에서 시장지향적 민간주도의 수급정책으로 전환

○ 지원내용

- 생산·유통관련 정보제공에 의한 합리적 경영 및 소비안정 도모
- 업계의 자율적 출하조절 등 수급조절에 의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 업계 자율적 시장개척, 소비촉진을 통한 생산자단체 시장교섭력 강화

○ 사업규모

- 관측품목(7개 품목) : 김, 미역, 넙치, 조피볼락, 전복, 굴, 송어
- 자조금 및 유통협약 사업(5개 품목) : 김, 넙치, 전복, 자라, 송어

* 수산업관측대상 품목수 : ('04) 1품목→('05) 2→('06) 4→('07) 8→('08) 7→('09) 7

자조금(유통협약)대상 품목수 : ('04)1품목→('05)2→('06)3→('07)4→('08)4→('09)5

- 보조율 : 수산업관측(국고 100%), 유통협약(국고70%, 자담 30%), 자조금(국고 50%, 자담 50%)

- 시행주체 : 수산업관측센터(해양수산개발원) 및 품목별 생산자단체

- '09년예산 : 4,200백만원(관측사업2,040, 유통협약1,060, 자조금1,100)

2) 추진경과

□ 출하조절사업 집행지침 시달('09.1)

- '09년도 집행지침을 마련, 사업대상 품목인 김·넙치·전복·송어생산자단체 및 수산업관측센터에 지침 시달

□ 출하조절사업 자금 집행 등 추진

- '09년 사업계획 확정 및 사업비 42억원 집행

※ 집행내역(백만원) : 관측사업 2,040, 유통협약 1,060, 자조금 1,100

- 매월 관측월보 발간 등 출하조절사업 추진

- 양식산업 발전방안 워크샵('09.3) 및 어류·굴·김·전복 양식 산업 평가대회 개최('09.6), 전복삼복대이 행사추진('09.6) 등

3) 향후 추진계획

□ 관측월보 발간 등 출하조절사업 지속 추진

- 매월 관측품목(7개품목)에 대한 수급동향 등 관측월보 발간
- 자조금사업 품목별 집행상황 점검
- 출하조절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김 대표조직 설립('09.11)
- 김산업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보고회 개최('09.12)

참 고

‘09년도 출하조절사업 현황

□ ‘09년 출하조절사업 사업비 내역(‘09.11월말 현재)

(단위 : 천원)

품목별	사업별	사업비	집행액	비 고
합 계		4,200,000	4,200,000	
○ 관 측 사 업		2,040,000	2,040,000	
○ 유 통 협 약		1,060,000	1,060,000	
○ 자 조 금		1,100,000	1,100,000	
김	유통협약	491,000	491,000	
	자 조 금	523,584	523,584	
전 북	유통협약	329,000	329,000	
	자 조 금	217,841	217,841	
송 어	유통협약	95,000	95,000	
	자 조 금	98,000	98,000	
넙 치	유통협약	145,000	145,000	
	자 조 금	190,250	190,250	
자 라	자 조 금	70,325	70,325	

* ‘10년예산(안) : 3,781백만원(관측사업 2,040, 자조금 1,741)

아 | 어업재해복구 지원대책

1) 현황 및 실태

□ 어업재해

○ 정 의

- 이상조류(수온·염분·용존산소 또는 영양염류가 변함으로써 바닷물 또는 민물의 질이 급변하는 현상)·적조현상, 태풍·해일 기타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시설의 피해를 말함

○ 대 상

- 「수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면허·허가를 받은 어장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양식어업면허를 받거나 사유수면 어업신고를 한 어장안에서 어업재해가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의 규모가 시·군별로 3억원 이상 재해를 입은 지역의 어가

□ 복구지원

○ 절 차

- 어업인들로부터 피해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지자체에서는 피해원인 합동조사 등을 거쳐 어업재해로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유관기관 협의회 심의를 거쳐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장관은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심의 의결 후 지원

○ 내 용

- 종묘대금 또는 치어대금,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 이재민 구호, 고등학교 학자금 면제, 영어자금 상환연기 및 그 이자감면 등

○ 금 액

- 양식생물 및 시설파손 등 개인별 피해상황을 통합한 재난 등급에 따라 어가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

□ 추진경과

- 재해로 인한 어민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을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개정(‘90.8)하여 복구지원 실시
- 「수산업법」에 따른 해산양식부분만 지원하던 것을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담수어양식부분의 재해까지 확대지원(‘07.1)

2) 추진실적

□ ‘08.9~10월중 경남지역의 이상조류에 의한 굴 폐사피해 복구추진

- 빈산소·영양결핍·고수온 등 이상조류에 의한 굴 폐사로 549백만원 피해가 발생하여 재난지원금 223백만원 복구지원

□ 재난지원금 상한액 축소에 따른 어업인 피해 최소화 노력

- 사유재산에 대한 재난복구는 피해자가 보험 등을 활용하여 자력 복구 원칙에 따라 재난지원금 연차적 축소(소방방재청)
- 재난지원금 상한액 : 3억원(‘06년) → 2(‘07년) → 5천만원(‘10년)

○ 추진사항

- 양식재해보험 정착시까지 적용기간 유예건의(4회, 기획재정부, 소방방재청 등)
- '10년부터 적용되는 피해복구비 상한액(5천만원) 지급에 따른 문제점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용역실시('07.11~'08.5)

□ 하절기 재해(태풍·적조 등)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 추진

- 호우 및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 대규모 재해에 대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비상대응 체제 구축으로 피해 최소화

3) 향후 추진계획

□ 겨울철 재해(한파·폭설 등)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

- 한파, 폭설 등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동절기 대규모 재해에 대비, 예방대책 및 수산 증·양식시설 피해 최소화 대책 강구

□ 적조현상·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시 신속한 피해복구 추진

- 지속적인 적조예찰 등으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 재난지원금 상한액 축소에 따른 양식어업인 피해 최소화 방안 지속 추진

- 넉치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양식재해보험 가입 유도
- 양식재해보험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보험대상 품목 확대

참 고

‘09년도 수산분야 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단가

□ 2009년도 농어업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농림수산식품부고시, ‘09.7.20)

○ 내용 : 신설품목(21개), 단가 상향조정 품목(18개)

품 목 별	규 격	단 위	단 가	비 고
나. 어망어구 <정치망류>	죽방림(소)-남해	통	27,366,000	‘08 : 22,830,000
<정치성어구류>	근해안강망	“	4,736,800	‘08 : 4,616,500
	닷자망-서해	틀	7,139,324	‘09 신설
<유자망류>	꽁치-동해(1척기준:400폭)	폭	62,500	‘08 : 55,000
	양미리-동해(1척기준:20폭)	“	187,495	‘08 : 162,525
	꽃게-서해(1척기준:30폭)	“	102,850	‘08 : 80,550
	내수면(1척기준:3폭)	“	19,800	‘08 : 10,313
<통발류>	붉은대게-동해(1척기준:1,200개)	개	10,725	‘08 : 8,250
	꽃게-남해(1척기준:2,500개)	“	2,800	‘09 신설
	낙지(1척기준:2,500개)	“	1,822	‘09 신설
<낚시류:주낙>	붕장어-남해(1척기준:3바스켓)	바스켓	25,840	‘08 : 22,277
	농어-남해(1척기준:10바스켓)	“	15,080	‘09 신설
다.수산증양식시설 <패류>	굴채묘(연승수하식)-100m당	줄	600,280	‘08 : 571,100
<패류>	굴채묘(간이수하식)-25m×2m당	대	276,634	‘08 : 160,000
	피조개채묘(연승수하식)-100m당	줄	401,958	‘08 : 282,435
	전복(천해투석식)	ha	2,444,000	‘08 : 1,803,000
	전복(해상가두리-내파성5×5m)	칸	1,094,000	‘09 신설
	키조개(천해이식)	ha	1,428,800	‘09 신설
	미더덕류(관그물 100m)	줄	275,800	‘09 신설
	미더덕류(붕그물 100m)	“	651,630	‘09 신설
	꼬시래기(연승수하식 100m)	“	64,200	‘09 신설
	<해조류>	매생이(2.2m×40m)	책	83,160
<기타류>	우렁챙이(종묘량3,000m)-수하식,줄	100m	1,739,100	‘08 : 1,704,000

품 목 별	규 격	단 위	단 가	비 고
<해면양식어류>	조피볼락(큰고기)	마리	1,780	'08 : 1,760
	돔(큰고기)	"	2,840	'08 : 2,100
	볼락(큰고기)	"	2,880	'08 : 2,280
	능성어(큰고기)	"	6,940	'08 : 4,200
	솜뱅이(작은고기5~7cm)	"	180	'09 신설
	솜뱅이(큰고기)	"	2,800	'09 신설
	황점볼락(작은고기 5~7cm)	"	180	'09 신설
	황점볼락(큰고기)	"	2,400	'09 신설
	키조개종패(이식,각장15~20cm)	ha	20,000,000	'09 신설
	<내수면어류양식>	뱀장어(큰고기)	마리	2,520
대농갱이(작은고기 5~7cm)		"	100	'09 신설
대농갱이(큰고기)		"	360	'09 신설
철갑상어(작은고기10~15cm)		"	1,080	'09 신설
철갑상어(큰고기)		"	9,000	'09 신설
쏘가리(작은고기 3~5cm)		"	360	'09 신설
쏘가리(큰고기)		"	1,125	'09 신설

자 | 적조피해 예방대책 추진

1) 현황 및 실태

□ 현 황

- 여름철 바다에서 환경조건(수온, 영양염류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현상으로, 점액성 물질이 어류 아가미에 부착하여 호흡곤란으로 가두리 양식장에서 피해 빈발
- 적조 대응기술과 행정조치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앞서고 있어 해외협력 추진
 - 중동지역 초청으로 적조 예찰, 방제 등 지도('09.3) 및 수산과학원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적조 공동연구 등 기술 전수 희망('09.7)
 - * '08. 9월 페르시아만의 대규모 적조로 인한 어류 폐사로 사회적 이슈화

□ 피해 발생 실태

- '90년대 중반 이후 주요 양식지역인 전남·경남을 중심으로 피해 발생(단, '08년도만 피해 미발생)
 - * 연도별 피해액 : ('95) 764억원 →('03) 215 →('05) 11.4 →('06) 0.7 →('07) 115
 - * 적조 발생경향 : '70년대 이전은 소규모 무해성(스켈레토네마) 적조였으나, '90년대 중반 이후 대규모 유해성(코클로디니움) 적조 발생

□ 적조발생 현황 및 피해액 지원현황 ("별표"1. 2)

2) 추진실적

- 적조방제사업(황토구입)비 국고보조금(808백만원)교부('09.1.21)
- 적조피해예방 종합대책 수립·시달('09.4.29)
- 적조피해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09.6.26)
- 적조피해예방 대책 세부 추진사항 ("참고" 1)

3) 향후 추진계획

- 적조피해 예방대책 유공자 포상 추진('09.11)
- 적조대책 추진결과 평가회의 개최('09.12)

<적조 피해 예방대책 세부 추진 사항>

- '09년 적조 피해예방 대책 세부추진 사항
 - 적조 상설감시망(98개 정점) 지정 운영 : 3~11월, 수과원
 - 적조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 적조 정보 상황 D/B 구축, 수과원
 - 육상 상주예찰(127개소)반 및 민·관협력체제 구축 : 4~10월, 수산기술사업소 등
 - 적조 예찰실시 : 광역예찰 6회, 연안예찰 157회, 항공예찰 8회
 - 적조발생 대비 현장점검('09.8.6~8.7, 어업자원관)
 - 적조방제 활동 장비 등 지원협조요청('09.7.21, 국방부)
 - 적조발생대비 양식생물 사육량 및 방제장비 일제점검('09.7.31)
 - 적조발생 우심해역 지속예찰(10월 말까지)

* 2008년도 적조피해 없음

참 고 1

최근 10년간 유해성 적조발생 추이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최 초 발생일	8.11	8.22	8.14	8. 2	8. 13	8. 5	7. 19	8. 6	7. 31	7. 30
- 음 력	7. 1	7. 23	6. 25	6. 24	7. 16	6.20	6. 14	7. 13	6.18	6. 28
소 멸 일	10.3	9.19	9.24	9.27	10. 13	9. 3	9. 14	10. 30	9. 18	9. 29
- 음 력	8.24	8.22	8.8	8.21	9. 18	7.19	8. 11	9. 9	8.7	9. 1
지속기간 (일)	54	29	41	57	62	30	58	36	50	62
최초 발생지역	나로도 인 근	돌산· 남해도 인근	나로도· 돌산동안	붓돌바다· 돌산동안	붓돌바다· 남해 두미도	거제 둔덕, 남부면 여차	나로도 인 근	가막만 하 단	나로도 인근	나로도 인 근, 붓돌바다
발생범위	완도 ~울진	고흥 ~기장	완도 ~강릉	완도 ~울진	진도 ~강릉	완도 ~거제	완도 ~거제	완도 ~남해	완도 ~울진	완도 ~울산
총발생 (건)	83	69	56	59	45	54	39	28	16	38
최고밀도 (개체/ml)	44,000	15,000	32,000	30,000	48,000	5,800	25,000	22,500	32,500	7,300
폐 사 량 (천미)	248	258	7,557	5,268	13,088	219	1,638	702	9,570	-
피 해 액 (억원)	3.2	2.6	84	49	215	1.2	10.6	0.7	115	-
소멸 주요인	수온하강 (태풍 8월)	태풍 “사오마 이”	수온 하강	수온 하강	수온 하강	기상변동 및 종간경쟁	태풍 “나비”	수온 하강	수온 하강	수온 하강

참 고 2

최근 6년간 적조피해 및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피 해 상 황	○ 기 간	7~10월	8~10월	8~9월	7~8월	8, 10월	7~9월
	○ 지 역	전남~경북	울산,전남, 경남	전남~경남	전남~경남	전남~경남	전남~경북
	○ 품 종	어류,전복	어류,전복	어류	어류,전복	어류	어류, 전복
	- 가 구 - 면적(ha) - 피해량 (천미)	어류: 23,050천미 전복: 5,422천패	293가구 32.6ha 13,088 (어류7,708 전복5,380)	11가구 0.1ha 219	62가수 5.0ha 1,638 (어류1,632 전복 6)	2가수 702천미	251가구 118.14ha 9,571천미 (어류9,474 전복97)
	○ 피해신고액	36,058	21,501	120	1,061	73	11,498
복 구 사업비	합 계	26,612	11,306	지원없음	952	지원없음	8,818
	○ 직접비용	26,196	11,133		931		6,794
	- 국 고	10,957	4,606		437		2,378
	- 지방비	2,636	1,120		94		1,019
	- 용 자	9,278	3,979		298		2,038
	- 자 담	3,324	1,427		102		1,359
	○ 간접비용	416	173		21		2,024
	- 영어자금 상환연기	6,456 (85호)	2,891 (38호)		314 (2호)		1,936
	- 이자감면	400	162		19		88
	- 학자금면제 (생계비)	5 (11)	1 (10)		1 (1)		-

* 2008년도 적조피해 없음

1) 현황 및 실태

- 목적 : 생산부터 소비까지 수산물의 이력관리를 통해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료회수 및 대책 마련으로 수산물의 안전성 제고
- 추진근거 : 수산물품질관리법(제8조의2, 제44조의 2)
- 사업기간 : '05 ~ 계속('09까지 59억원 기 투자)
- 사업규모 : 이력제 참여업체 500개소
- 지원조건 : 교육·홍보 등(국고100%), 시설장비 지원(국고30%)

2) 추진경과

- 수산물 이력추적제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04)
 - 3차에 걸쳐 시범사업 추진('05.8 ~'08.7)
 - * 1차 3개품목(김, 굴, 넙치) → 2차 10개품목(기존품목에 송어, 뱀장어 등 7개품목 추가) → 3차 8개품목(기존품목에서 2개품목 제외)
-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08)
 - '08. 8월부터 본사업 시행 전 품목으로 확대 실시('09.9 현재 12개 품목 참여)

3) 성과와 반성

□ 수산물이력제에 대한 홍보 강화로 참여율 제고

○ 업체 등록 현황 : 491개소(생산 86, 가공 33, 유통 10, 판매 362)

* 등록 품목 : 12종(넙치, 김, 바지락, 굴비, 전복, 다시마, 건미역, 멸치, 굴 등)

○ 수산물이력제품 출하의 계절성 및 비연속성, 소량 생산체제로 인하여 대형판매점 등에 안정적인 공급 불가

* 수산물의 특성상 생산시기 집중 출하로 대형판매점 등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 불가

○ 사업초기로 수산물이력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음

* 인지도 조사결과 : 수산물이력제 등록품목 구입 의향은 77%로 매우 높았으나, 7.6%만 이력제 품목 구입하였으며, 전체적인 인지도는 14%로 낮은 분포

4) 향후 추진계획

□ 수산물이력제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품목확대 등 지속추진

○ ('09) 550개소/12개품목 → ('15) 850개소/15개품목으로 확대

□ 참여업체의 비용절감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 노력

○ 인건비, 추가비용 절감을 위한 기기 등 개발 보급, 홍보강화

□ 수산물이력제 등록품목에 대한 수출정책 강화

○ 수출용 수산물의 이력제 도입 ⇒ 영어, 일어, 중국어 등으로 이력 정보 제공 시스템 지속 추진

□ 개념

- “수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는 수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 대상품목 : 국내에서 생산 또는 단순 가공된 모든 수산물

□ 참여자 : 이력추적제 참여를 희망하여 신청·등록한 자

□ 등록 절차



□ 정보의 기록·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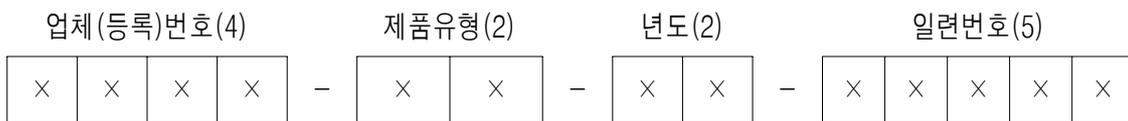
- 생산단계 : 품목명, 생산자 성명 및 주소채취일, 출하일, 위생 검사결과, 항생제 및 사료 사용 현황, 이력번호 등
- 가공단계 : 원료식별번호, 원료공급자명, 원료 입하일, 가공업자 및 공장명, 주소, 가공일, 출하일, 이력번호 등
- 유통단계 : 유통업체명, 입하일, 납품일 등
- 판매단계 : 판매업체명, 주소, 입하일, 출하일 등

□ 이력추적관리품 표시방법

- 해당 수산물의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수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로고 및 식별번호 등 포함)을 붙이거나 인쇄
 - ※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풋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음



○ 이력추적관리번호의 구성



□ 정보의 확인

- 소비자는 이력제품 표시가 부착된 수산물에 대해 판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이력정보 확인 모니터(50대 설치)나 인터넷 (www.fishtrace.go.kr)을 통해 이력정보 확인이 가능

카 | 해역별 위생등급 설정 관리

1) 추진개요

- 목적 : 주요수산물 생산해역에 대한 안전평가를 통하여 어장에서부터 비 위생적인 위해물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체계 구축
 - ⇒ 주산단지별 해역에 대한 등급을 설정·관리하여 양식수산물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 ⇒ 미국·EU·일본 등의 WTO/SPS 협정 동등성원칙에 의거, 수산물 수입관리 수단으로 활용 할 것에 사전 대비
- 지원근거 : 수산업법 제52조, 수산자원보호령 제18조의2
- 사업기간 : '05 ~ 계속('09년까지 74억원 기 투자)
- 사업규모 : 양식수산물 주산단지 60개해역에 대한 조사·평가
- 지원조건 : 국고 100%

2) 추진경과

- 주요 양식어장을 60개 해역으로 구분, 년차별 계획에 따라 안전평가를 실시한 후 해역별 위생등급 설정·관리
 - 조사해역 : ('05) 15 →('06) 30 →('07) 45 →('08~'09) 60해역
 - * 매년 15개 해역씩 연차적으로 조사, 해역별 3년간 데이터를 합산하여 등급 설정('10년까지 조사 해야 60개해역 평가 가능)
- 수산물 생산해역 위생상태 조사 및 평가('05~'10)
 - 조사대상 : 60개 해역(동해 18, 서해 17, 제주 21, 제주 4)

3) 성과와 반성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위생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함한 양식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사항목〉

- 수질조사 : 대장균군, 분변계대장균, 수온, 염분, PH, DO 등
- 생물조사 : 중금속(수은, 납, 카드뮴), 대장균군, 생균수, 패류독소
- 수질조사 : 대장균군, 분변계대장균, 수온, 염분, PH, DO 등

〈조사방법〉

- 조사해역 : 일반적인 조사항목은 연 12회(매월 1회), 중금속은 연 3회(상·하반기 각 1회, 생산량이 많은 시기 1회), 패독은 연 5회(2~6월)
- 조사완료해역 : 기 조사결과를 토대로 연 10회(중금속 2회)

4) 향후 추진계획

- '05~'10년까지 해역별 위생조사 후 등급화 관리('09년까지 45개해역 조사 완료예정)
- '09년말까지 조사시 60개 해역 중 45개해역 조사 완료예정
- 수산물 생산해역 위생관리기준 고시제정('10년까지)
- 청정해역, 준청정해역, 관리해역, 금지해역으로 구분 관리
- 전 해역을 위생 등급화하여 수산물 생산해역 안전관리('11)

1) 추진개요

- 목적 : 안전한 수산물 생산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에 부응하기 위하여 수산물 생산 및 위생관리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수산물 수출확대와 국내소비 촉진 활성화
- 지원근거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3조 및 제25조, 식품위생법, 수산업법, 약사법, 전염병예방법, 수산자원보호령, 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국가표준기본법
- 사업기간 : '05 ~ 계속('09년까지 101억원 기 투자)
- 사업규모 : 외국(7개국)과 위생약정 이행, 양식장 HACCP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100%, 컨설팅 및 시설개선(국고50%,지방비30%,자담20%)

2) 추진경과

-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식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새로운 선진 위생관리기법인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를 2005년부터 양식장에 도입 추진
 - 지원양식장(개소, 누계) : ('05) 22 → ('06) 42 → ('07) 82 → ('08) 122
- 위생약정 국가 등록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인 현지 위생점검 실시
 - ('05) 25 → ('06) 77 → ('07) 63 → ('08) 68개소
- 리스크커뮤니케이션(위해정보 전달) 교육 및 수산물 위생안전홍보물 제작·배포
 - 교육실적(회) : ('06) 21 → ('07) 30 → ('08) 40

3) 성과와 반성

- 양식장 HACCP 사업기간 단축으로 추진의 효율성 제고
 - (당초) 2년(컨설팅 1년, 시설개선 1년) → (개선) 1년6월(컨설팅 1년, 시설개선 6월)
- 양식장 HACCP지원사업 주관기관과 등록기관을 분리·운영함으로써 동 업무추진의 효율성 도모
 - (당초) 주관기관·등록기관 : 수산물품질검사원 →
(개선) 주관기관 : 시·도지사, 등록기관 : 수산물품질검사원
- 주요 수산물 수출국 및 위생검사 부적합 이력국가에 대한 수입수산물 위생관리 시스템 부재
 - 러시아(대한 수산물 수출 2위/'07년 금액대비 15.2%), 대만 (대한 수산물 수출 7위/'07년 부적합율 4.5%)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체계적 위생관리 수단 부재

4) 향후 추진계획

- 양식장(넙치, 뱀장어, 송어 등) HACCP 지원 확대('09~'12)
 - ('08) 누계 122개소(대상 양식장의 약 9.8%) → ('12) 280개소(대상 양식장의 약 20%)
- 2009 중국 등 위생약정국가에 대한 현지 위생점검
 - 점검 계획 : 70개소(중국 42, 베트남 14, 인니 7, 태국 7)
- 수산물 위생·안전교육 확대 실시
 - '09 : 40회 → '12 : 60회

파

양식장 불법시설 정비 및 단속

1) 현황 및 실태

□ **위성영상 관측 결과(KMI 자료)**

○ **총괄**

구분	2007년도						2008년도						전년 대비		비고
	면허 현황		시 설 가 능 량	실 제 시 설 량			면허 현황		시 설 가 능 량	실 제 시 설 량			면허 안	면허 밖	
	건수	면적(ha)		계	면허 안	면허 밖	건수	면적(ha)		계	면허 안	면허 밖			
김	994 (90)	55,527 (9,379)	책 999,486	책 625,655	책 422,208	책 203,447	953 (90)	57,105 (9,379)	책 1,168,065	책 675,714	책 474,815	책 200,899	↑ 12.4% (↑52,607책)	↓ 1.2% (↓2,548책)	() 한정
전북	327 (27)	1,842 (109)	ha 184.2	ha 166.7	ha 106.6	ha 60.1	375 (27)	2,084 (109)	ha 208.4	ha 193.6	ha 125.4	ha 68.2	↑ 17.6% (↑ 18.8ha)	13.5↑ (↑ 8.1ha)	

※ 주 : 1. 김은 2007년도는 2007년산, 2008년도는 2009년산의 관측결과 2. 전북은 완도, 신안, 해남, 진도만 고려함

〈김〉 면허구역 밖의 불법어장이 신규 면허어장으로 일부 흡수된 것으로 판단 되지만, 아직도 상당량의 양식시설이 면허구역 밖에 불법 시설된 것으로 관측됨

〈전북〉 신규 면허어장 증가뿐만 아니라 어장이탈 불법 시설도 증가함

2) 추진경과

- 불법양식 근절 부시장·부군수 대책회의(부산, 4.24)
- '09하반기 양식장 불법시설 일제 정비 및 특별단속계획 시달(6.1)
- 양식장 불법시설 일제정비 및 특별단속 계획 홍보(6월 /7~8월)
- 불법어업 지도단속실태 현지점검 : 서천군외 5개소(6월~7월)
- '09하반기 양식장불법시설정비·단속 중간평가 및 합동단속 계획 설명회(전라남도, 9. 2)

3) 성과와 반성

□ 반성

- 일부 지자체에서 지나친 주민여론 의식으로 불법어업 미온적 대처
- 무면허, 초과시설 등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초기 대처 미흡으로 양식어업질서 확립 조기정착 실패

□ 성과

- 양식장 불법시설 단속에 대한 행정력 집중으로 과잉생산 및 가격폭락 등 사전 차단 및 소비자 신뢰 향상 계기 마련
- 엄정한 단속 실시로 자율 상생의 양식어업 풍토 조성 및 건전 양식업 발전 도약 기반 마련

4) 향후 추진계획

□ 시·도/시군구 일제합동단속 실시

- 기 간 : 9.14~9.17(1차), 9.21~9.24(2차)
 - ※ 우범해역에 대하여 “현장지도단속반” 편성 운영
 - * 중앙직접통제 지역(6개소) : 서천, 군산, 완도, 진도, 해남, 신인군
- 중앙차원의 지원강화: 해경·어업지도사무소 공조체제 확립

□ 전국 일제합동단속 실시

- 기 간 : 10.12~11.26(4차) / 중앙 직접통제지역에 무궁화호 상주배치

□ 양식장 불법시설 단속 “평가제”실시로 차등 인센티브 적용

- 평가 대상기간 : '09.6월 ~ 12월(평가지기 : 12월)
- 평가방법 : “불법양식시설 근절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내용
 - 자체 단속계획수립 및 시행 목표의 적정성, 단속인원 ,동원자원 등 평가
 - 지역주민 참여도 - 민간협의회 구성, 실천결의대회, 자율정비실적 등
 - 언론(신문, 방송)등 지도 홍보 실적 및 단속 건수 등

참 고

불법양식시설 적발 실적 및 처벌현황(시·도별, 최근 3년)

(단위 : 건, ha)

시·도	연도별	합 계		면허취소 (포기)		시정경고		무면허단속		자진신고철거		기 타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계	합 계	1,042	29,238	6	56	745	26,022	131	1,341	137	1,768	24	57
	'06	235	2,720	-	-	164	2,373	60	333	1	2	10	12
	'07	481	21,525	5	50	342	19,774	7	2	119	1,694	8	5
	'08	326	4,993	1	6	239	3,875	64	1,006	17	72	6	40
부산시	소 계	31	57.9	-	-	3	25	15	10	4	4.7	9	18.2
	'06	4	27	-	-	3	25	-	-	1	2	-	-
	'07	8	0.9	-	-	-	-	-	-	1	0.5	7	0.4
	'08	19	30	-	-	-	-	15	10	2	2.2	2	17.8
인천시	소 계	35	186.4	-	-	21	93.7	-	-	9	65.5	5	27.2
	'06	1	20	-	-	1	20	-	-	-	-	-	-
	'07	6	23.2	-	-	5	18.2	-	-	-	-	1	5
	'08	28	143.2	-	-	15	55.5	-	-	9	65.5	4	22.2
울산시	소 계	6	45.74	-	-	6	45.74	-	-	-	-	-	-
	'06	-	-	-	-	-	-	-	-	-	-	-	-
	'07	5	44.99	-	-	5	44.99	-	-	-	-	-	-
	'08	1	0.75	-	-	1	0.75	-	-	-	-	-	-
경기도	소 계	-	-	-	-	-	-	-	-	-	-	-	-
	'06	-	-	-	-	-	-	-	-	-	-	-	-
	'07	-	-	-	-	-	-	-	-	-	-	-	-
	'08	-	-	-	-	-	-	-	-	-	-	-	-
강원도	소 계	7	58.5	-	-	6	58	1	0.5	-	-	-	-
	'06	6	58	-	-	6	58	-	-	-	-	-	-
	'07	-	-	-	-	-	-	-	-	-	-	-	-
	'08	1	0.5	-	-	-	-	1	0.5	-	-	-	-
충남도	소 계	49	1,700	-	-	49	1,700	-	-	-	-	-	-
	'06	1	255	-	-	1	255	-	-	-	-	-	-
	'07	48	1,445	-	-	48	1,445	-	-	-	-	-	-
	'08	-	-	-	-	-	-	-	-	-	-	-	-

시·도	연도별	합 계		면허취소 (포기)		시정경고		무면허단속		자진신고철거		기 타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전북도	소 계	53	855.1	-	-	41	836	12	19.1				
	'06	35	780	-	-	35	780	-	-	-	-	-	-
	'07	7	2.1	-	-	-	-	7	2.1	-	-	-	-
	'08	11	73	-	-	6	56	5	17	-	-	-	-
전남도	소 계	668	25,255	6	56	476	22,223	91	1,310	96	1,672	-	-
	'06	119	1,316	-	-	71	984	48	332	-	-	-	-
	'07	373	19,967	5	50	272	18,245	-	-	96	1,672	-	-
	'08	176	3,972	1	6	133	2,994	43	978	-	-	-	-
경북도	소 계	20	37.945	-	-	14	25.945	-	-	-	-	6	12
	'06	6	12	-	-	-	-	-	-	-	-	6	12
	'07	12	20.545	-	-	12	20.545	-	-	-	-	-	-
	'08	2	5.4	-	-	2	5.4	-	-	-	-	-	-
경남도	소 계	168	1,040.46	-	-	128	1,013.7	12	0.7	28	25.76	-	-
	'06	59	252	-	-	47	251	12	0.7	-	-	-	-
	'07	22	21.76	-	-	-	-	-	-	22	21.76	-	-
	'08	87	766.7	-	-	81	762.7	-	-	6	4	-	-
제주도	소 계	5	0.1	-	-	1	1	-	-	-	-	-	-
	'06	4	0.1	-	-	-	-	-	-	-	-	4	0.1
	'07	-	-	-	-	-	-	-	-	-	-	-	-
	'08	1	1	-	-	1	1	-	-	-	-	-	-

1) 현황 및 실태

□ 동향

- 최근의 국내 김 시장 회복 및 일본 수출 증가를 재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업계에서 김양식 질서 확립에 대한 자성 여론 부상
- 일본 표착 유해물질 의심 프라스틱 용기와 한국의 무기산 사용 실태에 대한 일본의 언론·방송 이슈화 및 日정부 대응에 국내 업계의 불안감 증폭 및 특단의 대책 필요성 공감대 확대

□ 김 활성처리제 사용분석

- 유해물질 처리시 파래·빨썩 제거 등에 효율성 높고 작업시간이 빠름
(어가당 평균 시설량 100책(4,000m) 처리시)
 - ↳ 활성처리제인 경우 → 6시간 소요, 처리 2일후 파래 제거/고가(6~9배)
 - ↳ 무기산인 경우 → 1시간 40분 소요, 처리 즉시 파래 제거/저가

2) 추진경과

- 외교부 주관, 관계 부처 대책회의(2회) - 우리측 입장 일본 전달
 - 한국 측 협력, 한·일·중·러가 참여하는 UNEP-NOWPAP에서 대책 마련
- 우리부 주관, 관계 부처 대책회의, 특별교육(2회), 공문지시(2회)
- 한·일 과장급 간담회('08.7.17) 및 실무회의(부산, '09.2.6)
 - 한·일 양국간 긴밀 협조하되, UNEP-NOWPAP에서 논의키로 합의
- 한·일 실무과장급회의 후속 조치로 관계기관 대책회의('09.2.25)
- 유해물질 사용에 대하여 민간 차원의 자제 및 강도 높은 강제방안 요구
(수산업관측회의시 '09.3.20 / 대표조직 워크숍 '09.3.24~25)
- 제12차 한일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폐플라스틱통 관련 논의('09.9.3)

3) 성과와 반성

□ 성 과

- 해양환경 친화적인 새로운 형태의 김양식 산처리방법 개발
 - 강산성전해수기, 고염수처리제, 육상채묘 및 냉동망처리 등
- 어업인 스스로 상생의 양식산업 풍토 조성

□ 반 성

-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죄의식 결여, 질보다는 양위주의 한탕주의 인식
으로 유해물질 사용 남발 → 품질 저하 및 소비자 불신 초래

4) 향후 추진계획

□ 시·도 및 전국 일제합동단속 실시(김 유해물질사용 포함)

- 기 간 : '09. 10 ~ '10. 2월
- 중점단속 내용
 - 유해물질 사용행위 및 폐플라스틱 용기 투기 행위
- 방 법
 - 지자체의 김 유해물질사용 단속 강화
 - 전국 일제합동단속과 병행 추진
 - 우심지역 모니터링 실시(김 자조금사업 연계 추진)
- ※ '08년 김 양식장의 무기산 불법사용 단속 실적 : 230드럼

※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 개정 검토

김생산 방법의 새로운 기술개발(강산성전해수기, 고염수처리제)에 따라 기본사양 및 사용기준 마련 필요

《향후 추진계획》

- 전해수기, 고염수처리제의 적정 사용 기준 마련(국립수과원, '10.3월)
-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 개정(안) 마련 : '10. 4월
- 의견수렴('10.6월) → 입법예고('10.7월) → 개정 공포('10. 8월)

참 고

불법 무기산 사용 단속실적

(단위 : 드럼(200ℓ), 명)

연도별	구 분	합 계	부 산	경 기	충 남	전 북	전 남
'00	적 발 량	625.5					625.5
	적발인원	50					50
	조치사항						행정·사법, 폐기조치
'01	적 발 량	774.3					774.3
	적발인원	81					81
	조치사항						행정·사법, 폐기조치
'02	적 발 량	332.3	0.8	14.9			316.6
	적발인원	28	8	5			15
	조치사항		경고	사법조치			행정·사법, 폐기조치
'03	적 발 량	293.8	0.1				293.7
	적발인원	31	1				30
	조치사항		경고				행정·사법, 폐기조치
'04	적 발 량	313.3	0.1	3	15	84.5	210.7
	적발인원	52	1	2	2	1	46
	조치사항		경고	사법조치	사법조치	사법조치, 경고	행정·사법, 폐기조치
'05	적 발 량	240.2	0.2	2.5		63	174.5
	적발인원	32	2	2		13	15
	조치사항		경고	경고		사법조치, 경고	행정·사법, 폐기조치
'06	적 발 량	182		60		8.8	113.2
	적발인원	12		1		-	11
	조치사항			사법조치, 무주물처리		무주물처리	행정·사법, 폐기조치
'07	적발량	457.6	2	10.5	70.8	225.2	149.1
	적발인원	28	1	4	5	3	15
	조치사항		사법조치 행정처분		행정처분	사법처분	행정·사법,
'08	적발량	230.4					230.4
	적발인원	26					26
	조치사항						행정·사법, 무주물(7)

1) 현황 및 실태

- 미 FDA 지정해역 및 등록공장 최근 정기 위생점검('08.4)
 - 지정해역의 해상 및 육상기인오염원 한·미 공동조사 병행
 - '08년 지정해역 공동조사를 통해 육상기인 오염원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짐(미 FDA측 수리학, 미생물분석 전문가도 참여)
- 한·미 패류위생실무협의 개최('08.11)
 - 지정해역 오염원 조사 및 오염원 통제계획 시한 제시요구
 - 1호 해역 5개 양식장(1호 해역 7개 양식장에서 시료채취)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 결과를 제시하고 오염원 통제 요구

2) 추진경과

- 지정해역 오염원 통제를 위한 장단기 이행조치 시한 수립
 - 이행조치 시한 : 미 FDA 통보('08.12)
- 지정해역 노로바이러스 장단기(건기,우기) 조사 실시
 - 지정해역을 126개 소해역으로 구획하여 건기시 노로바이러스 조사
 - 시료가 채취된 90개 소해역만 조사(조사결과 음성판정)
 - 굴(81개소), 진주담치(2개소), 피조개(4개소), 바지락(3개소)

3) 성과와 반성

- 지정해역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기초 조사 실시
 - 로다민 색소를 이용한 오염원 확산실험(미 FDA와 공동으로 수리학적 조사)
 - 지정해역 주변 개별 하수구 및 하천 조사 등 오염원 출구조사
- 가두리 양식장 분변오염원 통제 곤란
 - 가두리 양식장내 설치된 소각식 화장실(135대 설치) 이용을 저하
 - 잦은 고장, 소각에 따른 냄새발생 등으로 사용기피
 - 해경 등 관계기관의 현장단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분변에 의한 오염물질 지속 누출

4) 향후 추진계획

- 가두리양식장 설치용 화장실 연구개발 계획 수립('09.12)
- 지정해역 오염원 통제를 위한 장단기 조치 계획 수립('10.3)
 - 건기 및 우기 지정해역 노로바이러스 중간 조사결과를 토대로 오염원통제방안 수립
- 건기 및 우기에 대한 지정해역의 오염원 조사 완료('10.9)
- 지정해역 오염원 통제를 위한 장단기 조치계획 이행완료('11.3)

□ 체결경위

- 한·미 패류위생협정 체결('72년)
 - 체결당사자 :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성
- 대미수출냉동패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87년)
 - 매 5년마다 갱신('03년 최종갱신)
 - 적용대상 : 패류(굴, 홍합, 조개, 바지락 및 가리비 등)
 - ※ '03년 양해각서 개정으로 냉장패류도 수출가능

□ 양측의 역할 분담

- 농림수산식품부
 - 미국패류위생계획(NSSP)에 적합한 수준의 위생관리
 - 패류생산해역의 지정관리 및 대미수출 가공공장 등록관리 등
- FDA
 - 한국패류위생관리실태 정기적 점검 및 지도
 - 미국의 패류위생에 관한 각종 정보의 제공 등

□ 관련 주요 추진사항

- 연도별 한국패류위생계획(KSSP)의 수립·운영
- 지정해역 지정고시 : 7개 해역(경남 5, 전남 2)
- 대미수출 패류가공공장 등록관리 : 5개 공장(거제 2, 통영 3)
 - ※ 대진식품(통영)은 '09년 등록취소됨
- 해양수산부와 패류위생관련 기관간 양해각서 체결('02.9)·운영
- 한국패류위생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앙 및 지방 협의회 구성('03.1)·운영
- FDA 정례적 점검 수검(73년부터 매년, 94년 이후 매2년)

□ 조사현황

- 시료채취 : '09. 3. 3 ~ 3. 11
 - 조사해역 : 지정해역 7개소(34,385 ha) 내 126개 소해역
 - 분석대상 : 126개 소해역 중 수확이 완료되었거나 폐사가 발생하여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소해역을 제외한 90개 소해역에서 해역당 1점씩 채취된 이매패류 시료 총 90점
 - 굴(81개소), 진주담치(2개소), 피조개(4개소), 바지락(3개소)
 - 조사결과 : 90개 해역 모두 음성반응
 - 총 90개 소해역 중 자란사량도 해역(2호 해역) 내 1개 소해역(J-19)은 제1단계 REAL TIME 방식에서는 검출되었으나, 2단계 분석인 PCR 방식에서는 불검출 되어 최종 노로바이러스 음성 최종 판정
- ※ REAL TIME 방식과 PCR 방식 모두 검출되어야 최종 양성으로 인정

□ 조치 사항

- 1단계 분석에서만 양성이 검출된 1개 소해역(J-19)은 최종적으로 노로바이러스 음성지역으로 판정받았지만, 미 FDA 권고에 의거 해역은 폐쇄되지 않고 수확기 동안 지속조사 대상으로 분류

해역	패종별 채취 대상지점수		패종별 채취 지점수	패종별 미채취 지점수	미채취이유	조사결과 (검출수/시료수)
	굴	22				
1호 (한산거제만)	굴	22	17	5	채취완료 또는 폐사	0/17
2호 (자란사랑도)	굴	54	45	9	채취완료 또는 폐사	1/45
	진주담치	1	1	0	해당사항없음	0/1
	피조개	3	0	3	채취완료 또는 폐사	0/0
3호(미륵도)	굴	1	0	1	채취완료 또는 폐사	0/1
4호(가막만)	굴	23	13	10	채취완료 또는 폐사	0/13
5호(나로도)	바지락	3	3	0	해당사항없음	0/3
6호(창선)	굴	1	1	0	해당사항없음	0/1
	진주담치	2	1	1	채취완료 또는 폐사	0/1
	피조개	3	2	1	채취완료 또는 폐사	0/2
7호(강진만)	굴	9	5	4	채취완료 또는 폐사	0/5
	피조개	4	2	2	채취완료 또는 폐사	0/2
계		126	90	36		1/90

□ 지정근거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4조(지정해역의 지정)
 -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지정해역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해역을 지정해역으로 지정고시
-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38조(지정해역의 지정 등)
 - 지정해역 지정을 위한 위생조사·점검계획을 수립, 조사·점검 실시 후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해역을 지정해역으로 지정고시

□ 지정절차

-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의 지정 결정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 신청
- 대상해역에 대하여 2년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위생조사를 실시
 - 위생조사기관 : 국립수산물과학원

□ 지정해역 현황 : 7개소 34,385ha

지정번호	해역명	면적(ha)	주요생산품	관할시·도(시·군)	지정일
제1호해역	한산~거제만	2,050	굴	경남 거제·통영시	'75. 7. 5
제2호해역	자란~사랑해역	9,492	굴	경남 통영시	'84. 5.25
제3호해역	산양해역	3,107	굴	경남 통영시·고성군	'87.11.25
제4호해역	가막만	4,188	굴, 바지락	전남 여수시	'87.11.25
제5호해역	나로도해역	4,398	바지락	전남 고흥군	'99. 3.29
제6호해역	창선해역	5,860	홍합	경남 남해군	'99. 3.29
제7호해역	강진만해역	5,290	피조개	경남 남해군	'04. 3.11

참 고 4

FDA 등록 패류가공공장 현황

□ 등록근거

- 한·미패류위생협정 및 양해각서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5조(생산·가공시설 등의 등록) 및 제26조(등록시설의 조사·점검 등)

□ 세부현황

- 통영시 : 3 (대홍물산, 대원식품, 동원물산)
- 거제시 : 2 (중앙수산, 대홍물산 거제공장)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 소
KR 6 SP	중앙수산(주)	장 욱	경남 거제시 둔덕면 어구리
KR 7 SP	대홍물산(주)	김태우	경남 통영시 미수동
KR 8 SP	대원식품(주)	조군하	경남 통영시 산양읍 신전리
KR 9 SP	대홍물산(주) 거제공장	김태우	경남 거제시 동부면 오송리
KR 12 SP	(주)동원물산	김부곤	경남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 점검개요

- 미패류위생점검관 방한 한·미 합동점검
 - FDA 점검관이 2년마다 방한, 합동점검 실시
- 우리나라 자체점검 실시(연 4회)
 - 주요 점검내용 :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이행여부
가공·제조용 용수의 안전, 시설 및 종업원의 위생관리
유독성물질의 표시, 저장 및 사용, 해충관리 등

□ 매년 미국 FDA에 등록현황 통보(12월)

- 미 FDA 주정부간패류선적자인가명부(ICSSL)에 등재되어야 수출 가능
 - ※ ICSSL : Interstate Certified Shellfish Shipper List
- 우리나라 자체점검 결과 및 등록신청서를 주미한국대사관을 통하여 미 FDA에 전달

1) 현황 및 실태

- 수출입 수산물 안전성 확보 조치의 시행을 위한 양국간 법적 근거로서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 한·베트남('00.7월), 한·중 수산물('01.4월) 및 활어('04.12월), 한·인니('05.9월), 한·태('06.6월)
- EU 및 대일 넙치, 패류수출 위생조건 이행
 - '95년부터 EU 수출 가공시설에 대한 등록관리('09.9월)
 - 등록시설 현황 : 225개소(공장 52, 선박 173)
 - 원산지증명서 첨부시 대일수출 패류에 대해 통관검사 면제
 - 우리정부의 위생관리조건으로 대일넙치수출 통관검사면제
 - 등록현황 : 양식장 586, 수출업체 401, 가공공장 8개소
 - 일본 후생노동성에 연 2회(6월, 12월) 등록현황 통보

2) 추진실적

- 수출국 정부에 의한 가공공장 및 양식장 등록시설 관리 의무화 및 수입국의 수출국 현지 등록시설 위생점검 등을 통한 수입수산물의 위생안전 사전확보
 - 위생약정체결국 등록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점검 실시
 - 최근 3년간 위생점검 실적 : ('05)25 → ('06)77 → ('07)63개소
 - 수출시는 등록시설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한해 위생증명서 발급
 - 수입수산물에서 위생안전에 관한 문제 발생시 잠정 수입중단 조치 등

3) 성과와 반성

□ 위생약정을 통한 이중 위생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안전성 강화

- 수출국의 수출검사 시스템 개선을 통해 수입수산물 위생안전 제고 함으로써 수입 검사 시에는 효율적인 검사운영체계 수립

□ 수입수산물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위생안전시스템 강구필요

- 주요 수산물 수출국(중국, 베트남, 태국 등)을 대상으로 체결하고 있는 수산물 위생약정방식 이외에 미국, EU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입조건 방식 등 다양한 위생안전 검사방식 채택 검토

4) 향후 추진계획

□ 대유럽 수출수산물 명의도용 방지 조치

- 대유럽 수출수산물 관련 위조증명서 및 명의도용 사례방지를 위한 사이버시스템 구축

※ 태국산 EU수출수산물에 우리나라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출하는 것으로 추정(422건 /'08 ~ '08)

□ 부산물 식품규격기준 변경에 따라 위생약정 체결 확대추진

- 4개국 5개약정 → 점진적 확대추진(뉴질랜드, 호주 등)

※ 부산물 식품규격기준 변경에 따라 수입시에 수출국 해당기관 의 인증받은 국가만 수입이 가능 예정

□ 목 적

- 주요 수산물 교역국과의 위생약정 이행을 통해 수입수산물의 사전 안전성 확보

□ 위생약정 현황(4개국 5개 약정)

국가별	약 정 명	체결부처 및 체결권자	체결	시행
베트남	한·베트남 수출·입 수산물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약정	품질검시원 원장 국립수산물품질보증및검역국 국장	2000. 7.5	2003. 4.1
중국	한·중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	해양수산부 차관 국가출입경검험검역국 부국장	2001. 4.5	2001. 7.1
	한·중 수출·입 활수생동물의 검사·검역에 관한 약정	해양수산부 장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주한중국대사)	2004. 12.16	2005. 10.15
인도 네시아	한·인니 수출·입 수산물·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약정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2005. 9.15	2005. 12.14
태국	한·태국 수출·입 수산물·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약정	해양수산부 차관 농업협력부 차관	2006. 6.27	2006. 7.27

※ 2008.8.25 한중수산물 위생약정 개정서명, 발효(2009.8.1)

○ 주요 내용

- 양국은 수산물 가공공장을 등록하고 상대국가에 명단 통보
- 양국은 상대국 등록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인 현지 위생점검 실시
- 수출시는 등록시설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한해 위생증명서 발급
- 수입수산물에서 문제발생시 완전 해결시까지 수입중단 조치 등

○ 주요 약정 체결국 수산물 수입검사 실적(2008년)

- 약정체결국의 수산물 수입이 전체 수입의 39% 차지

구 분	전체수입	약정체결국 수입	중국	베트남	태국	인니
수입실적(천톤)	935	363	283	50	2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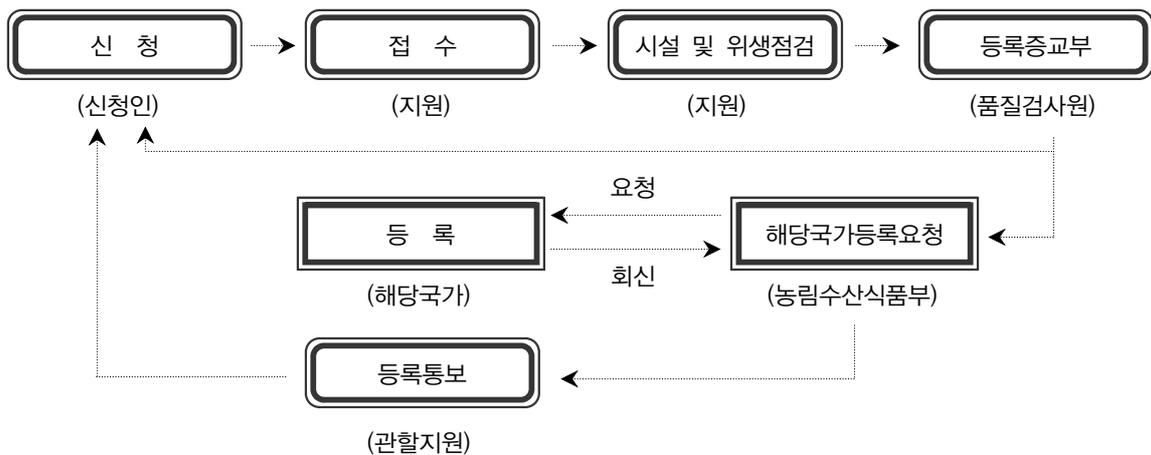
참 고 2

외국과의 위생약정 등에 의한 가공시설 등록절차

□ 등록절차

○ 국내 등록시설

- 근거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5조 (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



○ 외국 등록시설

- 등록현황 통보(상대국) → 우리부 → 품질검사원에 등록사항 통보
(홈페이지에 게재)

※ 베트남은 품질검사원과 체결한 약정으로 품질검사원에서 직접 등록업무 수행

□ 등록시설 관리

○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제41조(등록시설의 조사·점검)

○ 정기점검 : 연2회(EU등록선박 : 국내입항시 1회)

※ 국내 미입항하는 EU 등록선박(원양어선) 점검

- 스페인 지역 : 라스팔마스 해양수산관
- 남미 지역 : 아르헨티나 해양수산관
- 기타 지역 : 직접 현지 출장하여 점검

○ 수시점검 : 협약 등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참 고 3

위생약정 체결국가의 등록시설 수입중단조치 현황

수입중단조치 절차

□ 근거 : 수출입 수산물 위생약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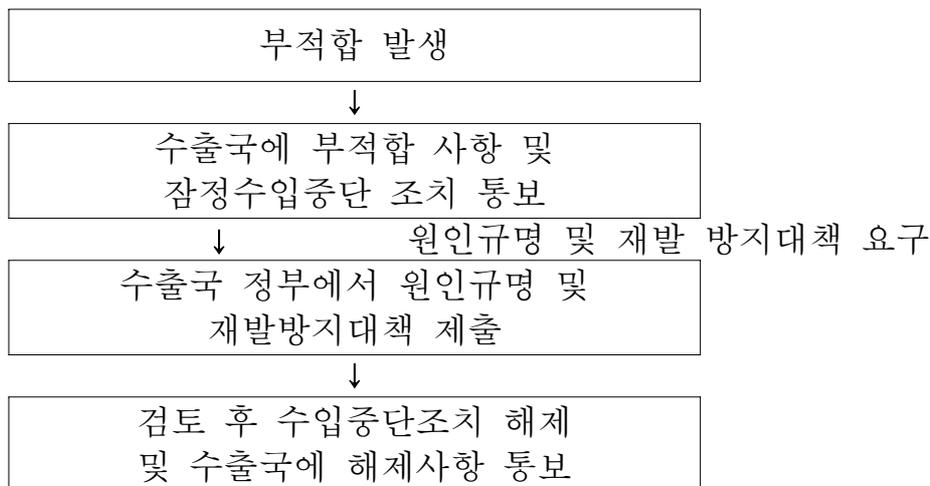
- 수입수산물에서 위생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가공시설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하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수입을 잠정중단

□ 대상국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 중단대상 : 수입검사결과 정밀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하는 경우

※ 관능검사항목 중 금속이물질 부적합인 경우에는 수입중단조치

□ 절차



※ 이산화황 부적합에 대해서는 수출국에서 수출중단조치하고 45일 기간내 재발방지 대책 통보시 정상화(45일 기간내 미 통보시 수입중단조치)하기로 합의

○ 조치문서 통보 및 연락창구

- 중국 : 주중한국대사관(해양수산물) →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 태국 : 농업협력부 수산물 수산물검사품질관리과(직접 서신으로 통보)
- 인니 : 해양수산부 수산물가공유통국(직접 서신으로 통보)
- 베트남 : 수산물부 국립수산물품질보증및검역국(품질검사원에서 조치)

□ 개 요

- EU 공동체는 수산물 생산 및 출하규제에 관한 지침(91/493/EEC)을 제정, 수입수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91. 7. 22)
 - 한국산 수산물 특정수입조건('95/454/EC) 결정('95.10.23)
 - 한국산 이매패류 특정수입조건('95/453/EC) 결정('95.10.23)
- 우리나라는 '95년부터 EU 수출 가공시설에 대한 등록관리업무 시작
 - ⇒ EU는 그 동안 각 국가별 수입특정조건을 결정하여 운용하여 왔으나 06.11월 식품에 대한 통합 조치규정 적용토록 개정('07. 5. 1 시행)
 - '95/454/EC 및 '95/453/EC 폐지

□ 주요내용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EU수출수산물 위생관리 관할당국으로 지정
- EU수출수산물 생산·가공공장은 정부당국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시설(가공공장·선박)에서 생산된 수산물만 수출가능
- 패류는 지정해역에서 생산된 경우에 한하여 수출가능
- 등록현황 : 210개소(공장 52, 선박 173)
- 등록절차 : 등록신청(검사원) → 위생점검 → 등록증교부 → EU집행위원회 등록요청(주벨기에 농무관)

□ 등록시설 관리

- 정기점검 : 공장 연 2회/선박 연 1회
 - ※ 국내 미입항하는 EU 등록선박(원양어선) 점검
 - 스페인 지역 : 라스팔마스 해양수산물관
 - 남미 지역 : 아르헨티나 해양수산물관
 - 기타 지역 : 직접 현지 출장하여 점검

□ 대일수출 패류 위생관리

- '98.4 생식용생굴 수출시 일정한 절차를 밟아 수출할 경우 일본 통관검사 면제 합의
 - 생식용생굴 대일수출요령 고시 제정('98) 운영
 - * 위생기준에 적합한 등록업체만 수출, 정기적으로 위생점검 실시
 - '01년 12월 일본에 수출한 한국산 생식용 생굴로 인하여 이질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건 이질균 검사 실시
 - * 생굴 유통기간이 4일로 일본 수출이 어려운 실정임
- 또한 '01년말 가열조리용 생굴에서 패독검출로 전면 패독검사 실시
 - '04.10.1일부터 원산지증명서 첨부조건으로 패독명령검사 면제

대일수출용 이매패류 원산지증명서 발급지침

- ◎ 목적 :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한 제품에 대하여는 일본 통관시 패독명령검사를 면제받기 위함
 - *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제품은 일본 통관시 명령검사 실시
- ◎ 발급절차 : - 굴·피조개 : 굴·피조개 수협 확인 ⇒ 품질검사원 발급
 - 기타 이매패 : 지구별 수협 확인 ⇒ 시·군 발급

- 일본 후생노동성에 연 1회(12월) 등록업체 명단 통보
 - 주일대사관(수산물)을 통하여 일본 후생노동성에 전달

□ 대일 수출 양식넙치 위생관리

- 일본에 수출한 활넙치에서 항생물질(Oxytetracycline)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일본 후생노동성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위생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통관검사 면제를 제의('99. 5)
 - '99. 9. 20 『대일수출용활넙치위생관리요령』 제정·시행
 - * '02. 7. 31 냉장넙치육도 포함키로 일본 후생노동성과 합의
- 양국이 합의한 위생기준에 적합한 양식·가공·업체를 등록, 품질검사원이 항생물질 검사후 증명서 발급·수출 → 일본 통관검사 면제
 - 양식장/수출업체 등록관리, 검사증명서 발급 : 수산물품질검사원
- 일본 후생노동성에 연 2회(6월, 12월) 등록현황 통보
 - 주일대사관(수산물)을 통하여 일본 후생노동성에 전달

IV. 자원 환경 과

1. 일반현황	147
2. 비전 및 전략	150
3. 주요 추진정책	151
가.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체계화	151
나. 총허용어획량(TAC)제도 확대 강화	154
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	160
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바다 숲 조성	168
마. 해양관광·레저가 어우러진 바다목장 조성	172
바. 자율관리어업 확산 및 내실화	178
사. 어장정화사업	184
아.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한 내수면어업 진흥	189
자. 유어산업 육성제도 도입	203

1. 일 반 현 황

조직 및 정원

□ 조 직



□ 정 원

(단위 : 명)

구 분	합계	3·4 ~ 4급	4·5 ~ 5급	6급이하	기능직
정 원	13	1	7	5	-
현 원	16	1	8	6	1

※ 현원에는 파견 2명(연구관1, 해양수산서기 1) 포함

소관법령

법률명	주요내용	제·개정 경과 및 계획
수산자원관리법	•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체계적 수립·집행	• 제정:법률제9627호('09. 4.22)
어장관리법	• 어장 정화·정비 등 어장환경관리	• 제정:법률제6257호('00. 1.28) • 개정:법률제8852호('08. 2.28)
내수면어업법	• 내수면 어업 기본계획 수립 및 어업관리	• 제정:법률제2835호('75.12.31) • 개정:법률제8619호('07. 8. 3)
낙시어선업법	• 낙시어선업 신고 및 설비기준 등 안전관리	• 제정:법률제5078호('95.12.29) • 개정:법률제8852호('08. 2.29)
낙시관리 및 육성법	• 낙시제한기준 설정, 낙시인 안전관리, 미끼기준의 설정, 낙시터 등의 개발 등	• 제정중('09.12월 국회 제출 예정)

업 무 분 장

구 분	주요 업무내용	비 고
기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어초 개발, 보급 및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 수산종묘 매입·방류 정책 추진 및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 수산자원보호구역 제도 운용 및 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 	
자원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자원관리법 제정 및 하위법령제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총허용어획량(TAC)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TAC 어획량 관리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수산자원회복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자원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다목장 사업 기본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바다숲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소규모 바다목장 기본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어장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장관리법령 제·개정 등 운용에 관한 사항 • 어장관리기본계획 수립·운용에 관한 사항 • 어장관리(특별)해역 지정에 관한 사항 • 양식어장환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양식어장 휴식년제 시행에 관한 사항 • 공유수면 매립 및 점·사용 협의에 관한 사항 	
자율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관리어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자율관리어업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 자율관리어업 등급평가에 관한 사항 	
내수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면어업지원 및 관리 총괄 • 내수면어업법령 등 제도운영 및 관리 • 내수면어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유 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낚시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유어장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 낚시어선업 제도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09년도 예산 및 '10년도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	'09년	'10년	증감	대비 (%)
합 계	165,071	167,486	2,415	1.5
< 일반회계 >	21,859	30,342	8,483	38.8
○ 소규모 바다목장	6,000	8,500	2,500	41.7
○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운영	1,019	1,735	716	70.3
○ 바다목장 조성	13,000	17,917	4,917	37.8
○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 운영	1,840	2,190	350	19.0
< 농특회계 >	89,092	86,077	-3,015	-3.4
○ 해양심층수활용 자원조성시설	5,000	1,500	-3,500	-70.9
○ 바다숲 조성	10,000	15,000	5,000	50.0
○ 자율관리 공동체지원	970	919	-51	-5.3
○ 자율관리 공동체지원(지자체)	11,500	11,975	475	4.1
○ 고밀도부표 보급지원	1,610	1,665	55	3.4
○ 굴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560	560	0	0.0
○ 내수면자원조성	2,205	3,834	1,629	73.9
< 군특회계 >	57,247	49,624	-7,623	-13.3
○ 토속어류산업화센터 건립	-	1,000	1,000	순증
○ 인공어초사업	31,810	30,147	-1,663	-5.2
○ 종묘매입방류	14,152	15,065	913	6.5
○ 복합낚시공원 조성사업	500	1,750	1,250	250.0
○ 내수면어업생산시설	2,878	2,878	0	0.0
○ 어장정화사업	5,719	4,658	-1,061	-18.6
< 제주특별회계 >	33,998	25,273	-8,725	-25.7
○ 인공어초사업	8,200	7,380	-820	-10.0
○ 종묘매입방류	2,893	3,604	711	24.6
○ 어장정화사업	300	270	-30	-10.0
< 수발기금 >	30,805	21,399	-9,406	-30.5
○ TAC참여어업인 경영지원	12,500	11,875	-625	-5.0
○ 연안어장 및 내수면환경개선	22,000	13,000	-9,000	-40.9
○ 순환여과식양식시설지원	700	700	0	0.0
○ 양식어업지원(내수면양식시설지원)	8,105	7,699	-406	-5.0

2. 비전 및 전략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회복)



**맞춤형
자원관리**



**자원조성 및
어장환경개선**



- 수산자원 회복정책의 체계화
-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바다숲 조성
- 해양관광·레저가 어우러진 바다목장 조성
- 자율관리 어업의 지속확산 및 내실화
- 어장환경 개선사업 확대
-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한 내수면어업 진흥
- 친환경 유어산업 육성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및 어장환경 오염

3. 주요 추진정책

가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체계화

목 표

- 생태계 기반 최적 수산자원 1,000만톤 및 어획량 130만톤 달성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어업생산기반 구축

1) 추진배경

- 대내외 수산업 여건 타개를 위한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 생산성 확대 필요
 - '90년대 중반 150만톤의 어획량이 '04년까지 100만톤 수준으로 격감, 현 상태 지속시 어업생산기반 붕괴 우려
 - ※ 현 상태 방치시 '15년 이후 자원량 390만톤, 어획량 66만톤 전망

2) 추진경과

-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체계적 추진
 - 회복대상 어종별 자원상태 진단(자원조사·평가)을 통한 관리방안 도출
- 자원관리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제정('09.4.22 공포)

3) 성과와 반성

- 수산자원회복사업 확대(어종) : ('06) 4 → ('07) 7 → ('08) 10 → ('09) 12
 - 수산자원회복사업 추진시 회복정책 수단간 연계 및 지원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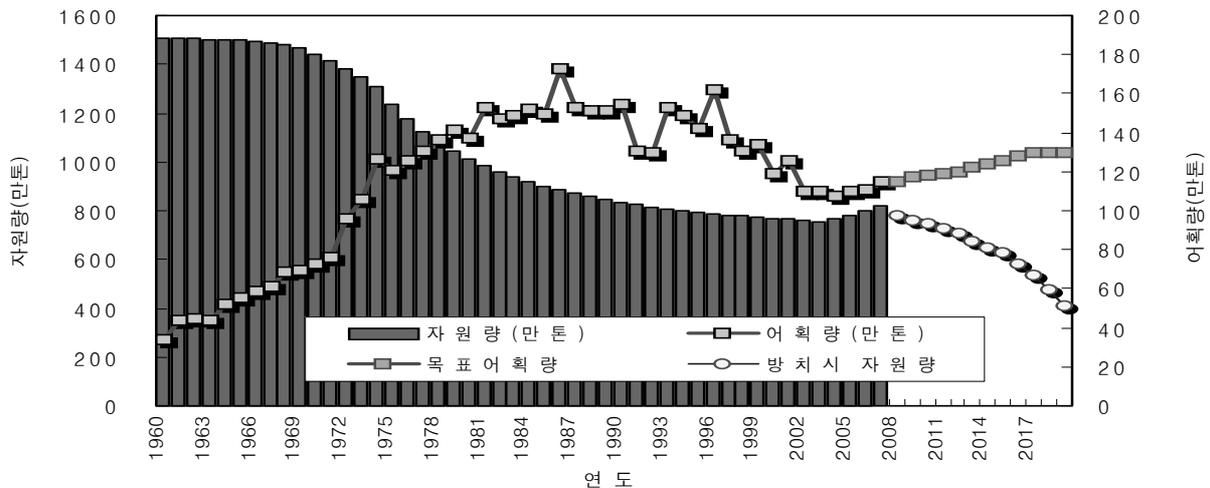
- 수산자원회복사업의 단계별 실행전략 추진
 - 연차별 대상어종 확대 및 자원조사·평가 강화를 통한 최적의 자원 관리방안 도출
 - ※ 회복대상어종 확대 계획 : '10년까지 12종, '15년까지 20종

참 고 1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체계적인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90년대 중반 150만톤의 어획량이 '04년까지 100만톤 수준으로 지속감소,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어업생산 기반 붕괴 우려
 - 자원량 : ('80) 1,000만톤 → ('04) 790만톤 → ('15) 390만톤 전망
 - 어획량 : ('96) 160만톤 → ('04) 108만톤 → ('15) 66만톤 전망



□ 자원회복 목표 및 비전

- '15년까지 생태계 보유가능 최적 수산자원 1,000만톤('08년 829만톤) 및 어획량 130만톤('08년 128만톤) 달성을 목표로 수산자원회복사업 추진

□ 사업내용

- 어종별로 자원 상태를 감안하여 회복대상종(20종) 등을 선정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여 연차별로 세부실천계획 수립·시행
- 어종별 심층적인 자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적 관리방안 실시

□ 수산자원회복사업 대상어종

- '06년(4종) : 도루묵(동해), 꽃게(서특), 낙지(전남 무안), 오분자기(제주 성산)
- '07년(7종) : 참조기(서·남해), 참홍어(서해-흑산), 대구(동·남해) 추가
- '08년(10종) : 말쥐치·개조개(남해), 기름가자미(동해) 추가
- '09년(12종) : 갈치·갯장어(남해) 추가
- '10~'15년(20종) : 붕장어, 민어, 키조개, 대하, 임연수어, 쫄치, 붉은대게, 옥돔

1. 연근해 어업생산량 현황

(단위 : 천톤,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생 산 량	1,097 (1.9%)	1,109 (1.1%)	1,152 (3.9%)	1,286 (11.6%)
생산금액	27,059 (3.7%)	27,512 (1.7%)	29,391 (6.8%)	32,294 (9.9%)

2. 회복어종 어업생산량 현황(2008년)

- 자원회복사업 대상어종 : 94,065톤 (연근해 어업생산량의 7.3% 차지)
 - ※ 대상어종 생산금액 : 6,544억원 (연근해 어업생산금액의 20.3% 차지)
 - 꽃 게 : 17,846톤 (전년대비 31.2% 증가) / 1,939억원 (전년대비 37.3% 증가)
 - 도루묵 : 2,720톤 (전년대비 27.8% 감소) / 84억원 (전년대비 23.6% 감소)
 - 낙 지 : 7,879톤 (전년대비 8.6% 감소) / 1,418억원 (전년대비 7.0% 증가)
 - 오분자기 : 102톤 (전년대비 64.5% 증가) / 33억원 (전년대비 65.0% 증가)
 - 참조기 : 33,199톤 (전년대비 3.0% 감소) / 1,153억원 (전년대비 22.2% 감소)
 - 참홍어 : 1,343톤 (전년대비 258.1% 증가) / 102억원 (전년대비 78.9% 증가)
 - 대 구 : 5,399톤 (전년대비 28.3% 감소) / 231억원 (전년대비 12.5% 감소)
 - 기름가자미 : 20,274톤 (전년대비 16.8% 감소) / 1,285억원 (전년대비 24.3% 감소)
 - 말쥐치 : 2,631톤 (전년대비 4.3% 감소) / 198억원 (전년대비 19.5% 감소)
 - 개조개 : 2,672톤 (전년대비 22.0% 감소) / 101억원 (전년대비 11.7% 증가)
 - ※ 대상어종 전년대비 생산량 5.2%, 생산금액 3.5% 감소

3. 불법어구 철거실적 및 성과

- 꽃게(서해특정해역)
 - 연평도서특어장(12,000ha) 미철거 불법어구(3중자망) 222톤 철거(5억원, '07.1~2월)
 - 연평도어장 서측해역(15,000ha) 침적폐어망 406톤 인양(8억원, '07.7~8월)
- 낙지(전남 무안군 탄도만)
 - 탄도만(1,150ha) 통발어구 등 침적폐어망 27톤 인양(2억원, '07.11~12월)
- 대게(경북 울진~포항 수역)
 - 경북도 수역(16,000ha) 불법어구 89톤 철거(3.5억원, '08.11~12월)
- TAC 어획량 관리방안 제고 등 TAC제도 정착 도모

나 총허용어획량(TAC)제도 확대 강화

목 표

- UN해양법 협약 발효('94.11)에 따른 수산자원의 유지, 회복계획 수립 및 TAC 대상어종 연차별 확대·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력 유지

1) 추진배경

- UN해양법 협약의 이행(제61조, 제62조)
 - 연안국의 자국 EEZ 생물자원 허용어획량 결정, 수산자원 유지 및 회복계획 추진
-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체결로 새로운 어업질서 재편 및 어장 축소에 따른 자원관리 필요성 대두
- 남획·어획량 감소 등 어업관리 제도의 한계 극복을 위한 제도 보완 필요

2) 추진경과

- TAC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및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규칙
- TAC 대상어종 확대(업종/어종) : ('99) 2/4 → ('03) 7/9 → ('09) 12/11

3) 성과와 반성

- 대상자원의 증가 및 소득 안정화 추세
 - 자원량(천톤) : 고등어 ('03) 915 → ('08) 1,509 / 붉은대게 ('03) 45.6 → ('08) 136

- TAC 참여업종의 생산량 조절 및 휴어기 등 자원관리 추진
 - 대형선망수협의 자율적 휴어기 운영('05년부터, 음력3.14~4.14), 잠수기 수협의 자율적 생산량 관리(개조개 : 200kg/1일, 키조개 : 4,000미/1일)

4) 향후 추진계획

- TAC 대상어종 연차별 확대
 - “수산자원회복계획” 실시와 연계하여 '15년까지 15종으로 확대
 - TAC 어획량관리를 위한 양륙장 읍서버의 연차별 증원
 - ※ 읍서버 확보 계획(명) : ('09) 43 → ('10) 70 → ('11) 100 → ('12) 120
- 과학적인 자원조사 및 자원관리 등 관리시스템 강화
 - TAC 대상어종 등 연근해 주요어종에 대한 자원진단 및 평가 강화
 - TAC 어획량 관리방안 제고 등 TAC제도 정착 도모

□ 도입배경

- UN해양법협약의 이행('94.11 발효)에 따른 당사국으로서의 협약 내용 준수 : 연안국은 자국 EEZ의 생물자원 허용어획량을 결정하여 수산 자원의 유지 및 회복계획을 추진(협약 61조, 62조)
- 연·근해어업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어업자원 관리체제 전환
 - 전통적 어업관리제도(금어기, 금지체장 등)의 한계로 인하여 자원남획 및 어획량감소에 따른 제도 보완 필요
 - ※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제도란 : 개별어종(단일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

□ 추진현황

- TAC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 수산업법('95.12) 및 수산자원보호령('96.12)을 개정, TAC제도 시행근거 마련
 - 총허용어획량관리에관한규칙을 제정('98.4), TAC제도 시행을 위한 제도 정비 마무리
- TAC제도 기본운영계획 수립('98.12)
 - 1998년 12월 TAC제도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적용대상 수역 및 TAC 산정방법 명시
- TAC제도 실시 현황(업종/어종) : ('99) 2/4 → ('01) 4/7 → ('02) 5/8 → ('03~'06) 7/9 → ('07) 10/10 → ('09) 12/11
- 읍서버제도 도입 및 관리·운영
- TAC 관리대상어종의 판매장소 지정제 실시('04.1부터 시행)
- TAC 참여 어업인에게는 경영개선자금('08년 150억원 배정) 등 인센티브 부여

○ 자원의 증강 및 소득 안정화

- 수산과학원의 자원평가결과를 기초로 어종별 연간 어획량을 산정하여 자원을 관리하고, 어업인의 자원보호 노력 등으로 전갱이, 붉은대게, 대게, 키조개의 자원량 증가 추세
 - * 자원량 : 고 등 어 ('03) 915천톤 → ('08) 1509천톤,
 붉은대게 ('03) 45.6천톤 → ('08) 136천톤
- 개조개 및 키조개를 어획하는 잠수기어업은 남획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가격이 안정되어 어업소득 증대
 - * 개조개 : ('01) 4,500원/kg → ('06) 5,500, 키조개 : ('05) 2,290원/kg → ('08) 4,330

○ 생산량 조절 및 휴어기 지정 등 자원관리체제 구축

- 대형선망수협(고등어, 전갱이, 정어리)은 '05년부터 수산자원보호 및 어가유지를 위해 1개월간(음력3.14~4.14) 휴어기 자율 실시
- 잠수기수협은 개조개, 키조개의 자원보호와 어가유지 등을 위해 자율적으로 생산량 관리(개조개 : 200kg/1일, 키조개 : 4,000미/1일)
- 붉은대게 어업인들이 TAC실시를 위한 단체를 결성하고 어선별 월 생산량 관리(톤급별 월어획량 제한) 및 금어기(7.10~8.24) 자율 실시
- 근해대게 협회는 자율적으로 일일생산량 관리(4,500미/1일), 대게 포획금지 기간 1개월 연장(6.1~10.31 → 6.1~11.30)
- TAC 제도 참여를 기반으로 한일 수산분야 민간 단체간 협력체제를 구축, 자원관리에 능동적 역할 수행(붉은대게, 대게)

참 고 3

총허용어획량(TAC) 연도별 소진량 현황

(단위 : 톤)

구 분	1999년 할당량/ 소진량(%)	2000년 할당량/ 소진량(%)	2001년 할당량/ 소진량(%)	2002년 할당량/ 소진량(%)	2003년 할당량/ 소진량(%)	2004년 할당량/ 소진량(%)	2005년 할당량/ 소진량(%)	2006년 할당량/ 소진량(%)	2007년 할당량/ 소진량(%)
계	208,460/ 193,921 (93)	245,400/ 124,028 (50.5)	238,750/ 194,328 (81.4)	231,928/ 166,247 (71.7)	231,650/ 161,298 (69.6)	218,650/ 193,670 (88.6)	215,983/ 154,374 (71.1)	217,670/ 131,861 (60.6)	465,930/ 313,718 (67.3)
고등어 (Mackerels)	133,000/ 152,640 (115)	170,000/ 83,629 (49)	165,000/ 156,081 (94.6)	160,000/ 126,502 (79.1)	158,000/ 116,226 (73.6)	155,000/ 151,268 (97.6)	160,000/ 111,169 (69.5)	155,000/ 88,134 (56.9)	154,000/ 125,729 (81.6)
전갱이 (Jack mackerels)	13,800/ 6,499 (47)	13,800/ 9,376 (68)	10,600/ 9,335 (90.3)	10,600/ 10,593 (99.9)	11,000/ 10,979 (99.8)	10,000/ 9,933 (99.3)	12,000/ 11,991 (99.9)	19,000/ 11,370 (59.8)	19,000/ 9,108 (47.9)
정어리 (Sardines)	22,660/ 9,533 (42)	22,600/ 661 (3)	19,000/ 125 (0.7)	17,000/ 0 (0.0)	13,000/ 2 (0.0)	5,000/ 2 (0.0)	5,000/ 0 (0.0)	5,000/ 0 (0.0)	5,000/ 77 (1.5)
붉은대게 (Red Snow crab)	39,000/ 25,249 (65)	39,000/ 30,362 (78)	28,000/ 19,319 (69)	28,000/ 17,996 (64.3)	22,000/ 20,328 (92.4)	22,000/ 22,745 (103.4)	22,000/ 21,813 (99.1)	24,500/ 23,828 (97.3)	25,000/ 25,090 (100.4)
대게 (Snow crab)				1,220/ 947 (77.6)	1,000/ 611 (61.1)	1,000/ 780 (78.0)	1,000/ 805 (80.5)	1,000/ 1,128 (112.8)	1,200/ 1,135 (94.6)
개조개 (Purplish washington clam)			9,500/ 6,051 (63.7)	9,000/ 5,319 (59.1)	9,000/ 4,677 (52.0)	8,000/ 4,636 (57.9)	7,000/ 3,854 (55.1)	5,100/ 2,672 (52.4)	3,700/ 2,608 (70.5)
키조개 (Pen shell)			4,500/ 1,479 (33)	2,500/ 1,426 (57)	2,500/ 1,635 (65.4)	2,500/ 1,740 (69.6)	2,300/ 2,293 (99.7)	2,440/ 2,440 (100.0)	3,200/ 2,733 (85.4)
제주소라 (Cheju top shell)			2,150/ 1,938 (90.2)	2,058/ 1,965 (95.5)	2,150/ 1,951 (90.7)	2,150/ 1,688 (78.5)	1,683/ 1,585 (94.2)	1,629.5/ 1,346 (82.6)	1,480/ 1,351 (91.3)
꽃게 (Blue crab)				1,550/ 1,499 (96.7)	13,000/ 4,889 (37.6)	13,000/ 878 (6.8)	6,000/ 864 (14.4)	4,000/ 943 (23.6)	3,350/ 2,809 (83.9)
오징어 (Common squid)									250,000/ 143,078 (57.2)

※ 오징어 : (2007)'07.7.1.~'08.6.30.

(단위 : 톤)

구 분	2008년 할당량/ 소진량(%)	2009년8월 할당량/ 소진량(%)	2010년 할당량/ 소진량(%)	2011년 할당량/ 소진량(%)	2012년 할당량/ 소진량(%)	2013년 할당량/ 소진량(%)	2014년 할당량/ 소진량(%)	2015년 할당량/ 소진량(%)	2016년 할당량/ 소진량(%)
계	478,990/ 360,329 (75.2)	405,950/ 107,601 (26.5)							
고등어 (Mackerels)	159,000/ 147,945 (93.0)	159,000/ 69,464 (43.7)							
전쟁이 (Jack mackerels)	21,000/ 10,967 (52.2)	18,000/ 8,657 (48.1)							
정어리 (Sardines)	5,000/ 0 (0.0)	(제외)							
붉은대게 (Red Snow crab)	27,700/ 27,467 (99.2)	29,000/ 17,895 (61.7)							
대게 (Snow crab)	1,500/ 1,120 (74.7)	1,400/ 821 (58.6)							
개조개 (Purplish washington clam)	3,200/ 2,141 (66.9)	1,700/ 1,275 (75.0)							
키조개 (Pen shell)	3,200/ 2,898 (90.6)	3,100/ 1,267 (40.9)							
제주소라 (Cheju top shell)	1,500/ 1,357 (90.5)	1,320/ 1,291 (97.8)							
꽃게 (Blue crab)	6,890/ 6,420 (93.2)	5,730/ 909 (15.9)							
오징어 (Common squid)	250,000/ 160,014 (64.0)	185,000/ 5,202 (2.8)							
도루묵 ()		1,500/ 738 (49.2)							
참홍어 ()		200/ 82 (41.0)							

※ 오징어 : (2008)'08.7.1.~'09.6.30. / (2009)'09.7.1.~'10.6.30.

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

목 표

- 수산자원 증대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수중에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 증대
- 연안정착성 및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종묘를 민간 배양장으로부터 매입, 연안에 방류함으로써 수산자원증강 및 민간의 자원조성사업 참여 유도

1) 추진배경

- 연근해 오염, 자원남획 등으로 어업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연안해역에 수산자원 조성기반을 확충 필요
 - 지속 가능한 생산체계 기반 구축을 위해 연안어장에 인공어초 시설 및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종묘를 방류, 수산자원의 증강 및 어촌경제 활성화 도모

2) 추진경과

가. 인공어초사업

- 1971~1980년 : 시험시설 단계(1,539ha)
 - 수산자원증식과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2가지 수단으로 사용
- 1981~1990년 : 사업정립 추진단계(52,851ha)
- 1991~2001년 : 시설효과 인정, 사업 확대 단계(157천ha)
- 2002~2008년 : 어초어장 사후관리 및 갯녹음어장 회복사업

※ 2008년까지 추진실적

- 인공어초시설 : 사업비 8,064억원 / 202천ha 시설(시설가능적지의 66%)
- 어초어장 사후관리 : 사업비 277억원
- 해중림조성 : 사업비 142억원 / 521ha의 해중림 조성

나.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 1986년부터 민간 배양장에서 생산한 수산종묘 매입 방류
- 1997~2001년 : 사업 대상 시·도 확대 및 내수면 품종 추가
 - 6개 시·도 → 10개 시·도로 방류사업 대상지역 확대
 - 2000년 3종(해면 3종) → 2001년 13종(해면 5종, 내수면 8종)
 - ※ 지원형태 : 국고 80%, 지방비 20%(96년까지는 국고 100%)
- 2002~2008년 : 해역별 경쟁력 높은 특산품종 확대 육성
 - 황복, 꽃게, 대하, 참가리비, 가자미, 돔류 등
 - '02년 19종 → '05년 30종 → '08년 41종(해면 30종, 내수면 11종)
 - '02) 27억원/85백만미 → '05) 90/84 → '08) 164/91
 - ※ 지원형태 : 국고 70%, 지방비 30%(97년~2001년 국고 80%, 지방 20%)

3) 성과와 반성

- 지속이용 가능한 수준의 수산자원 증대 효과 거양
 - 어초어장 사후관리 강화 및 갯녹음 해역 해중림 조성으로 연안 생태계 회복과 어패류 산란·서식장 제공
 - 어초시설 후 어획량이 평균 0.50~4.09배 증가
- 종묘매입·방류로 연안어장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
 - ※ 어획효과 : 대하(3배), 조피볼락(1.5~1.8배), 전복(6배)
-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지자체내 우선순위가 밀려 타 부문에 비해 예산 감소 추세
- 물량위주 방류사업 집행으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수산자원 조성 효과 미흡
 - 회유성 어종은 광범위한 해역으로 이동 회유하므로 국가차원의 계획방류가 효과적이나 지역에 따라 소량 방류실시

4) 향후 추진계획

□ 기존 시설된 어초의 사후관리 강화

- 시설어초의 위치파악, 폐기물 수거, 보수·보강 등 어초어장의 사후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

□ 인공어초 적지선정 및 효과조사 강화

- 인공어초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설해역의 어장형성, 자원 상태, 어획량 등 종합적인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최적지에 시설
- 인공어초별 효과조사를 실시하여 해역 특성에 맞는 어초시설

□ 어초시설 수역에 대한 자원보호 조치 강화

- 어초 시설지역 또는 예정수역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확대 지정
-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 및 어업인 홍보활동을 강화

□ 인공어초 사업과 갯녹음(백화현상) 대책 병행 추진

- 백화현상 발생 연안역의 해중립 조성사업 병행 추진으로 어장 주변 생태계 조기회복

□ 품종확대 및 방류표준화 마련·보급

- 해역별 환경 및 어장특성에 적합한 방류품종 지정·방류
- 방류해역별 자연집단의 다양성 유지를 고려한 품종 다양화

□ 품종 다양성 유지를 위한 방류종묘 생산 시스템 마련

- 방류된 종묘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자연순치시설(해상가두리 종묘양성시설 등) 갖춘 생산자의 종묘를 최우선 매입
- 물량 위주보다 특화품종, 우량품종 방류를 위해 종묘구입단가는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함

□ 종묘방류 사후관리 강화

- 시·도지사는 종묘방류 6개월경과 후 반드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방류사업 예산의 일부를 사용하여 효과조사를 실시
- 방류수역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어구제한, 포획금지기간 설정

5) 중기투자계획

□ 종묘매입 방류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원별	총사업비	'07까지	'08	'09	'10	'11	향후투자
합 계		2,029,850	804,602	48,067	49,978	50,241	57,253	1,019,709
인공어초시설	국 비	992,100	607,052	32,229	32,879	32,833	37,952	249,155
	지방비	236,500	159,092	8,024	8,186	8,208	9,488	43,502
어초어장관리	국 비	90,000	22,516	3,171	3,181	4,140	4,350	52,642
	지방비	22,500	5,629	793	795	1,035	1,088	13,160
해중림 조성	국 비	551,000	8,250	3,080	3,950	3,220	3,500	529,000
	지방비	137,750	2,063	770	987	805	875	132,250

□ 인공어초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원별	총사업비	'07까지	'08	'09	'10	'11	향후투자
합 계		298,629	57,292	17,233	20,850	19,200	21,000	163,054
종묘매입방류	국 비	202,000	40,244	11,478	13,902	12,800	14,000	109,576
	지방비	82,200	16,202	4,914	5,958	5,486	6,000	43,640
방류효과조사	국 비	10,100	594	590	693	640	700	6,883
	지방비	4,329	252	251	297	274	300	2,955

참 고 1

인공어초사업 시설현황

□ 시설면적

(단위 : ha)

시도	적지(A)	시설현황						진척율(%) B/A
		합계(B)	'05까지	'06	'07	'08	'09(P)	
합계	306,751	202,141	188,028	5,450	4,698	3,965	4,798	65.9
부산	2,704	2,562	2,314	88	88	72	70	94.7
인천	20,276	10,059	9,291	328	244	196	200	49.6
울산	2,546	2,310	2,116	64	56	74	20	90.7
경기	7,598	4,293	3,556	192	193	352	170	56.5
강원	27,791	22,880	22,160	240	230	250	188	82.3
충남	30,746	16,783	15,739	516	528	-	800	54.6
전북	15,772	13,869	10,857	1,142	1,022	848	800	87.9
전남	55,973	41,842	39,249	896	868	829	900	74.8
경북	27,360	22,996	22,556	104	172	164	150	84.0
경남	51,220	35,722	34,670	516	268	268	300	69.7
제주	64,765	28,825	25,520	1,364	1,029	912	1,200	44.5

□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시도	합계('08까지)			2005 까지			2006			2007			2008			2009(P)		
	합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합계	806,397	639,281	167,116	685,604	542,621	142,983	44,086	32,164	8,041	40,205	32,267	8,068	40,335	32,229	8,024	41,065	32,879	8,186
부산	12,285	9,792	2,493	9,645	7,652	1,993	1,000	720	180	900	720	180	900	700	140	840	700	140
인천	46,959	37,568	9,391	35,521	28,418	7,103	4,038	3,150	788	3,938	3,000	750	3,750	3,000	750	3,750	3,000	750
울산	9,305	7,442	1,863	6,544	5,234	1,310	1,000	630	158	788	600	150	750	978	245	800	640	160
경기	28,274	18,629	9,645	23,160	14,538	8,622	1,423	1,201	300	1,501	1,000	250	1,250	1,890	473	3,064	2,451	613
강원	75,536	60,307	15,229	68,036	54,307	13,729	2,500	1,800	450	2,250	1,800	450	2,250	2,400	600	3,000	2,400	600
충남	70,860	56,689	14,171	58,637	46,911	11,726	4,500	3,240	810	4,050	3,538	885	4,423	3,000	750	3,750	3,000	750
전북	53,462	42,749	10,713	38,462	30,749	7,713	2,184	4,000	1,000	5,000	4,000	1,000	5,000	4,000	1,000	3,750	3,000	750
전남	158,273	126,916	31,357	134,557	107,943	26,614	8,903	5,400	1,350	6,750	6,973	1,743	8,716	6,600	1,650	8,125	6,500	1,625
경북	80,304	64,064	16,240	71,755	57,225	14,530	3,045	2,006	501	2,507	2,634	659	3,293	2,199	550	2,958	2,366	592
경남	136,627	107,830	28,797	124,800	98,369	26,431	7,333	4,617	1,154	5,771	2,422	606	3,028	2,422	606	3,028	2,422	606
제주	134,512	107,295	27,217	114,487	91,275	23,212	8,160	5,400	1,350	6,750	5,580	1,395	6,975	5,040	1,260	8,000	6,400	1,600

참 고 2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현황(실 집행액 기준)

□ 지역별 추진실적

(단위 : 천미)

구분	합 계		'04까지		'05		'06		'07		'08(P)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1,045,821	72,775	650,217	20,746	92,267	8,958	128,359	10,642	84,454	16,038	90,524	16,391
부 산	6,014	2,261	1,145	575	789	254	1,706	400	804	357	1,570	675
인 천	33,085	8,196	2,560	1,691	3,373	917	4,080	1,094	15,072	2,609	8,000	1,885
울 산	11,543	3,502	1,822	943	2,043	600	1,948	536	3,730	518	2,000	905
경 기	7,701	3,298	2,878	926	1,829	939	1,913	900	1,081	533	-	-
강 원	27,102	9,298	6,483	2,597	4,454	1,293	6,280	1,531	4,395	1,877	5,490	2,000
충 북	7,268	1,026	3,322	298	723	142	1,295	184	974	144	954	258
충 남	507,929	9,099	372,896	2,887	24,219	722	43,493	636	27,321	2,701	40,000	2,153
전 북	141,389	3,293	125,555	1,649	410	152	9,603	443	2,201	406	3,620	643
전 남	242,401	6,952	114,413	2,835	46,555	1,002	48,973	908	12,460	1,064	20,000	1,143
경 북	11,314	6,048	4,027	2,059	1,947	611	1,881	814	2,181	1,286	1,278	1,278
경 남	38,637	9,818	13,018	2,271	4,313	862	4,621	950	11,318	2,416	5,367	3,319
제 주	11,438	9,984	2,098	2,015	1,612	1,464	2,566	2,246	2,917	2,127	2,245	2,132

□ 어종별 추진실적

(단위 : 천미, 백만원)

구 분	합계('07까지)		'04까지		'05		'06		'07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955,297	56,384	650,217	20,746	92,267	8,958	128,359	10,642	84,454	16,038
대 하	760,338	3,690	583,520	2,867	61,214	205	89,903	379	25,701	239
보리새우	12,540	411	6,897	158	2,090	188	1,680	30	1,873	35
꽃 게	15,852	1,906	2,603	84	1,751	298	3,811	711	7,687	813
조피볼락	22,332	5,367	11,013	1,966	2,787	783	1,586	674	6,946	1,944
황 북	915	456	677	356	238	100	-	-	-	-
전 북	20,823	17,442	8,824	7,581	3,856	2,913	3,516	3,122	4,627	3,826
넙 치	32,154	9,750	11,321	3,517	4,482	1,608	3,843	1,236	12,508	3,389
감 성 돔	14,213	2,905	4,461	1,007	2,940	563	2,598	514	4,214	821
돌 돔	7,716	2,860	1,794	693	1,045	520	2,183	867	2,694	780
참 돔	2,805	504	1,177	189	648	176	362	56	618	83
농 어	317	142	317	142	-	-	-	-	-	-
해 삼	9,826	2,379	1,059	253	1,532	358	4,310	997	2,925	771
황점볼락	523	218	-	-	-	-	45	20	478	198
볼 락	6,230	1,795	652	240	920	284	1,887	457	2,771	814
가자미류	114	176	-	-	20	30	94	146	-	-
기 타	1,222	843	-	-	-	-	-	-	1,222	843
내 수 면	47,377	5,540	15,902	1,693	8,744	932	12,541	1,433	10,190	1,482

참 고 3

인공어초 현황

□ 일반어초(50종)

순번	어 초 명 칭	규 격	용 도	재 질	선정년도	추천자	권 리 자
1	사각어초	2.0×2.0×2.0m	어 류	콘크리트	1982	과학원	수산과학원
2	잠보형어초	6.8×5.0×5.97m	어 류	콘크리트	1990	강원도	현재현
3	원통형어초	φ 1.8×2.0m	패조류	콘크리트	1983	강원도	현재현
4	반구형어초	φ 2.0×1.3m	패조류	콘크리트	1982	제주도	주재욱, 광병남
5	육각어초	6.0×5.2×3.0m	어 류	콘크리트	1992	과학원	수산과학원
6	요철형어초	2.5×2.0×1.5m	패조류	콘크리트	1994	강원도	송익하
7	육교형어초	2.4×2.4×1.2m	패조류	콘크리트	1993	제주도	고우방, 주재욱
8	별삼각형어초	1.4×1.3×1.5m	패조류	콘크리트	1993	제주도	주재욱
9	방갈로형어초	2.2×2.2×1.4m	패조류	콘크리트	'00.01.06	제주도	고우방외1
10	반원가지형어초	5.0×3.45×2.85m	어패류	콘크리트	'00.03.23	강원도	오영덕
11	신요철형어초	2.45×2.0×1.5m	패조류	콘크리트	'00.03.23	강원도	손익하
12	2단상자형강제어초	14.0×14.0×9.0m	어 류	강 제	'01.01.30	경북도	포스코의 4개사
13	상자형강제어초	9.0×9.0×10.2m	어 류	강 제	'01.01.30	경북도	포스코의 4개사
14	연약지반용강제어초	10.0×10.0×2.0m	어 류	강 제	'01.01.30	경북도	포스코의 4개사
15	강제침선어초		어 류	강 제	2000	과학원	수산과학원
16	상자형어초	3.0×3.0×3.0m	어 류	콘크리트	'02.03.08	과학원	수산과학원
17	어패류용세라믹어초	2.33×2.44×1.5m	어패류	황토·패각	'02.11.21	과학원	과학원, 주(해중)
18	패조류용대형세라믹어초	3.02×3.45×1.8m	패 류	황토·패각	'02.11.21	과학원	과학원, 주(해중)
19	패조류용어초	2.0×2.0×1.15m	패 류	콘크리트	'02.11.21	과학원	수산과학원
20	강제증식어초	6.0×4.0×1.0m	어패류	강제·석재	'02.11.21	전남도	이익효
21	대형강제어초	12.0×12.0×8.0m	어 류	강 제	'02.11.21	전남도	이익효
22	사각전주어초	3.64×3.64×3.64m	어 류	콘크리트	'03.07.11	충남도	충남도, (주)태성
23	대형전주어초	3.22×3.66×7.5m	어패류	콘크리트	'03.07.11	충남도	충남도, (주)태성
24	중형연약지반용강제어초	9.0×9.0×4.0m	어 류	강 제	'03.07.11	전남도	이익효
25	팔각반구형대형강제어초	13.5×9.0m	어 류	강 제	'04.12.15	경남도	포스코의 7개사

순번	어 초 명 칭	규 격	용 도	재 질	선정년도	추천자	권 리 자
26	팔각반구형중형강제어초	12.8×6.0m	어 류	강 제	'04.12.15	경남도	포스코의 7개사
27	팔각반구형소형강제어초	12.5×4.0m	어 류	강 제	'04.12.15	경남도	포스코의 7개사
28	폴리콘어초	9.5×12.0×5.5m	어패류	PE, 황토, 강제	'05.07.06	인천시	환경자원공사외2
29	아치형어초	2.9×2.4×1.4m	패조류	콘크리트	'05.07.06	강원도	유삼열
30	원통2단강제어초	11.0×11.0×13.2m	어류용	강 제	'05.07.06	제주도	21세기해양개발
31	정삼각뿔형어초	3.12×3.12×2.9m	패조용	콘크리트	'06.02.20	경기도	해주이앤씨(주)
32	반톱니형해중립초	2.3×2.3×1.5m	해중립	콘크리트	'06.08.31	과학원	수산과학원
33	소형전주어초	3.66×7.50×1.81m	어 류	콘크리트	'07.6.22	충남도	(주)태성
34	PC침목어초	4.8×3.51×2.21m	어 류	PC침목	'07.11.28	충남도	충남도, 태성(주)외1
35	팔각상자형강제어초	10.0×10.0×8.0m	어 류	강 제	'07.11.28	전남도	청암건설(주)
36	돔형증식어초	6.04×6.04×2.05m	패조류	강제, 석재	'07.11.28	제주도	부민건설(주) 외1
37	사각복합형인공어초	3.0×2.0×2.4m	패조류	콘크리트, 강제	'07.11.28	제주도	부민건설(주) 외1
38	점보형강제어초	12.0×12.0×9.0m	어 류	강 제	'07.11.28	과학원	과학원, KORDI
39	사다리꼴복합강제어초	10.0×10.0×5.0m	어 류	강 제	'07.11.28	과학원	과학원, KORDI
40	십자형해중립초	3.0×3.0×0.5m	해중립	콘크리트	'07.11.28	과학원	과학원
41	피라미드강제어초	10.0×10.0×7.0m	어 류	강 제	'07.11.28	KORDI	KORDI
42	티널형어초	2.5×2.1×2.1m	해중립 어류용	콘크리트	'08.06.03	강원도	(주)나우앤하우
43	굴패각어초	5.2×5.2×3.0m	어류용	굴패각, 사석, 강제	'08.06.03	과학원	과학원, 경남도, (주)해중
44	부채꼴베란다사각어초	3.0×3.0×3.5m	어류용	콘크리트, 굴패각	'08.11.27	인천시	(주)태화건설
45	테트라형어초	2.90×2.90×2.50m	패조류	콘크리트	'08.11.27	인천시	(주)태성건설 외
46	복합형해중립초	1기 : 8×12×1.65m, 1조 : 24×30×1.65m	해중립	강제, 사석 등	'08.11.27	강원도	동성해양개발(주)
47	피라미드구조 인공어초	10m×10m×6m	어류용	PE, 강제	'08.11.27	전북도	(주)우미건설
48	신사각전주어초	3.64×3.64×3.64m	어류용	콘크리트	'08.11.27	중앙협 의회	(주)태성건설
49	다기능성어초	기재생략	패조류	콘크리트, 사석	'08.11.27	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50	하우스형해중립초	2.40×3.50×1.38m	해중립	강제, 암석	'08.11.27	과학원	과학원, (주)부민건설

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바다 숲 조성

목 표

- 갯녹음 해역에 바다 숲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복원
 -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을 조성하여 수산자원 회복
- 바다 숲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신성장동력으로 개발
 - 해조식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및 웰빙산업 개발
 - 바다 숲을 해조 바이오매스 대량 생산기반의 선도적 역할 수행

1) 추진배경

□ 갯녹음 발생

- 국내연안은 동해안 및 제주도 등에 약 7,000ha 발생하고 있으며, 독도·서해안에서도 일부 발생
- 외국의 경우 대부분 전 연안으로 확산추세
 - 일본 전연안,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연안 1,500km, 캐나다 센트로렌스만 2,000km

□ 발생 원인

- 쿠로시오 난류의 확산, 극심한 염분 변동으로 인한 영양염 부족, 해조식물 섭식 동물의 증가 등이나 정확한 원인은 규명 안됨

※ 갯 녹음이란 유용한 해조군락이 감소하고, 이용가치가 없는 무절석회조류가 대량 번식하여 연안의 바위 표면이 백색 또는 홍색으로 변화하는 바다사막화 현상

2) 추진경과

□ 추진 내용

- 산림녹화 사업에 준하는 대규모 바다 숲 조성
 - 바다 숲 조성을 위한 생태기반 및 갯녹음 실태조사 : 35,000ha
 - 갯녹음 심화해역 시범 조림사업('09~'12) : 7,000ha
 - 갯녹음 발생 주변해역 대규모 바다 숲 조성('13~'19) : 28,000ha
- 해조식물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신성장동력으로 개발
 - 청정에너지 및 웰빙산업(식품·의약품)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 해조류 대량생산 기술 및 대량 생산기반 조성

□ 09년 사업 내용

- 바다 숲 조성 사업(65억원)
 - 포항(30ha), 강릉(30ha), 거제(20ha), 태안(1ha), 서귀포(20ha),
- 연안어장 생태환경 조사(35억원)
 - 마을어장 생태 및 갯녹음 조사(120개), 암반분포 조사, 바다 숲 조성 기술개발, 항공 및 위성관측 조사 등

3) 성과와 반성

- 성공적인 바다숲 조성을 위하여 갯녹음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규명 우선
- 바다숲 조성해역 적지선정 및 이식용 종묘 확보를 전년도에 조기 완료하여 차년도 사업이 적기에 순차적으로 수행 필요
- 바다숲 조성 후 해조류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도록 초기에 일정기간 사후관리 필요
- 바다숲 조성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과 해역별로 적합한 바다숲 조성 방향에 대하여 검토 필요

4)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추진내용	총투자액	'09	'10	'11	'12	'13년 이후
총계	3,110	100	210	210	230	2,360
○ 바다숲 조성해역 기반조사(35,000ha)		20	30	30	30	
○ 바다숲 시범조립(7,000ha)		60	150	150	169	
○ 바다숲 대규모 조성 (35,000ha)						2,290
○ 바다숲조성사업 DB 구축 및 지속적 모니터링		2	8	8	8	20
○ 바다녹화주간 설정 대국민 참여행사 실시		8	20	20	20	50
○ 해조류 바이오매스 그린에너지 사업화 · 대량양식 자동화 및 통합적 활용 → '10년이후 별도 사업화		8				
○ 경제성 분석		2	2	2	3	

□ 연차별 기술개발 추진일정

추진과제	'09	'10	'11	'12	'13	'14	'20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핵심원천기술 개발							
해조류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개발							
바이오매스용 해조류 대량생산 기술개발							
바이오에너지 부산물의 산업적 이용기술개발							
산·관·연 연구협력으로 개발기술의 조기 실용화							
에너지 전문회사와 연구개발 협력체제 구축							
해조류 생산 지자체 등과 실용화 협력체제 구축							
해조류 바이오에너지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저탄소 녹색기술 보급으로 살기 좋은 복지어촌 건설							
바이오매스용 해조류 생산기술 보급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전을 위한 바다숲 조성							
농어촌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참 고

갯녹음 발생 및 해중림 조성 현황

□ 갯녹음(백화) 발생 현황

시도별		마을어장	발생면적(ha)	발생비율(%)	비 고
계		35,101	6,954	19.8	
강 원	소계	11,216	929	8.3	
	고 성	3,489	48	1.4	
	속 초	551	15	2.7	
	양 양	1,854	26	1.4	
	강 릉	2,890	118	4.1	
	동 해	573	182	31.8	
	삼 척	1,859	540	29.0	
경 북	소계	8,422	1,311	15.6	
	포 향	2,973	571	19.2	
	경 주	554	73	13.2	
	영 덕	1,372	225	16.4	
	울 진	2,730	340	12.5	
	울 릉	793	1052	12.9	
울 산		1,012	173	17.9	
제 주		14,451	4,541	31.4	

□ 해중림 조성실적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합 계	'02	'03	'04	'05	'06	'07	'08
사업량(ha)	521	65	60	60	60	81	74	121
사업비(백만원)	14,163	1,250	1,250	1,250	1,938	2,375	2,250	3,850
- 국비(80%)	11,330	1000	1000	1000	1,550	1,900	1,800	3,080
- 지방비(20%)	2,833	250	250	250	388	475	450	770

구분	합 계		'02		'03		'04		'05		'06		'07		'08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계	521	14,163	65	1,250	60	1,250	60	1,250	60	1,938	81	2,375	74	2,250	121	3,850
울산	10	300													10	300
강원	234	4,891	12	125	23	236	28	280	28	1,000	51	1,125	44	1,125	48	1,000
충남	8	425													8	425
전남	35	500													35	500
경북	66	2,226	4	125	8	408	8	380	16	438	10	375	10	250	10	250
경남	20	200					20	200								
제주	148	5,621	49	1,000	29	606	4	390	16	500	20	875	20	875	10	1,375

마 해양관광·레저가 어우러진 바다목장 조성

목 표

- 연안해역에 인공어초, 해조장 등을 시설하여 수산생물의 서식 공간을 제공하고 우량 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조성하는 체계적 생산관리시스템 구축
- 유용한 수산자원을 조성하여 지속적 어업생산을 가능케 하고, 조성된 자원과 어장을 관광·레저목적으로도 활용하여 어업 및 어업의 소득증대를 도모

1) 추진 배경

□ 유엔 해양법 발효,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등 대내외 어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해양생태계를 적극적으로 보전하면서 어업생산 및 어업경영을 영속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미래지향적 연안 수산 자원조성 필요성 대두

☞ 일정한 해역에 인공어초와 해중림초 같은 인공구조물로 수산자원의 산란 및 서식장을 조성하고 건강한 종묘를 방류하여 자원량 증대를 도모하며, 여기에 합리적인 이용관리로 어업인의 소득 향상은 물론 국민들의 연안 공간 이용 욕구를 충족시키는 관광·레저를 포함하는 미래 지향적 어촌 소득 향상 사업

□ 추진 경위

- 1985. 12. 18 : 연안어장 목장화계획(수산종합계획)수립 『대통령보고』
- 1998~2006 : 제1단계 통영 시범바다목장 조성
- 2001~2012 : 해역특성 바다목장 모델개발(동·서·남·제주)
- 2006~ : 제2단계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2020년 50개소)

2) 추진경과

- 해역별 특성에 따라 해양관광·레저 기능이 어우러진 '테마형' 바다목장 5개소 조성
 - 어로형(통영·여수), 갯벌형(태안), 관광형(울진), 체험·관광형(북제주)
- 통영 바다목장 완공으로 수산자원조성의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
 - 자원량 : 98년(초년) 118톤 / 05년 909톤(7.7배) / 16년 7,189톤(60.9배)
 - 어업인 소득 : 98년 (216억원) / 06년 (253억원) 26% 향상

(단위 : 억원)

연도별 / 해역별	합 계	통 영	여 수	울 진	태 안	제 주
총사업비	1,589	240	307	355	337	350
사업기간	'98~'12	'98~'06	'01~'10	'02~'12	'02~'12	'02~'12
'08까지 투자	715	240	244	86	61	84
'09 예산	130	완료	40	30	30	30
목장유형(면적)	248km ²	어업형 (20km ²)	다도해형 (110km ²)	관광형 (20km ²)	갯벌형 (75km ²)	체험·관광형 (23km ²)

- 어업인의 실질적 소득증대를 위한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 통영 바다목장 성과가 가시화 되면서 지자체 및 어업인 등이 소규모 바다목장 지원요구 확대
 - '06년 4개소(군산·강릉·거제·제주), '07년 3개소(보령·군산·사천), '08년 2개소(연평, 속초), '09년 3개소(기장, 강정, 신안) 추진 중
- * 사업기간 5년, 개소당 50억원, 국고 50%(일반회계), 지방비 50%

3) 성과와 반성

- 국내 최초 통영 바다목장 조성사업 완공으로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
 - 자원량 : 98년 (118톤) → 05년 (909톤) 7.7배 증대
 - 어업인 소득 : 98년 (216억원) → 06년 (253억원) 26% 향상

- 해양관광을 접목한 테마형 바다목장 조성
 - 여수 바다목장은 2012 여수엑스포와 연계 바다 숲 조성
 - 울진(관광형), 제주(체험·관광형), 태안(갯벌형) 해양관광 계획 마련

- 통영 바다목장 성과 가시화로 소규모 바다목장 확산
 - 2005년 소규모바다목장 기본계획 수립, 2006년부터 사업 착수
 - ※ 2008년 현재 9개소, 2012년까지 20개소 추진

- 바다목장의 이해부족과 기존 자원조성사업과의 차별성 미흡
 - 사업 초기에 '울타리없는 양식장'으로 인식, 성과에 많은 의구심

- 사업목표에 대한 명확한 인식없이 다소 느슨하게 사업 진행
 - 사업계획 대비 성과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 문제점 노출
 - 연구개발사업이 실제 바다목장 시설사업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인공어초의 교과서적인 배치로 실험적인 연구사업 미흡

- 소규모 바다목장 사업 초기 일부 정치적 결정에 따라 선정
 - 기본계획수립 없이 정치적으로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연례적으로 사업비 이월로 다음연도 예산 반영 애로

4) 향후 추진 계획

□ 바다목장 해양 관광·레저 시설 도입 본격 추진

- 바다목장 마린센터(홍보전시관), 바다낚시터, 수중테마공원 등 관광·레저시설 실시설계 및 관련 부지 확보(6~12월)

※ 2012년까지 총 256억원 투입 해양 관광·레저 시설 도입

□ 바다목장산 수산물 브랜드화 사업 착수

- 바다목장산 수산물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품디자인, 판매, 홍보 방안 연구(식품안전연구단 : 6~12월)
- 통영바다목장 「어획물 관리센터」 완공('09. 6)

* 사업비 및 규모 : 32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600㎡(1동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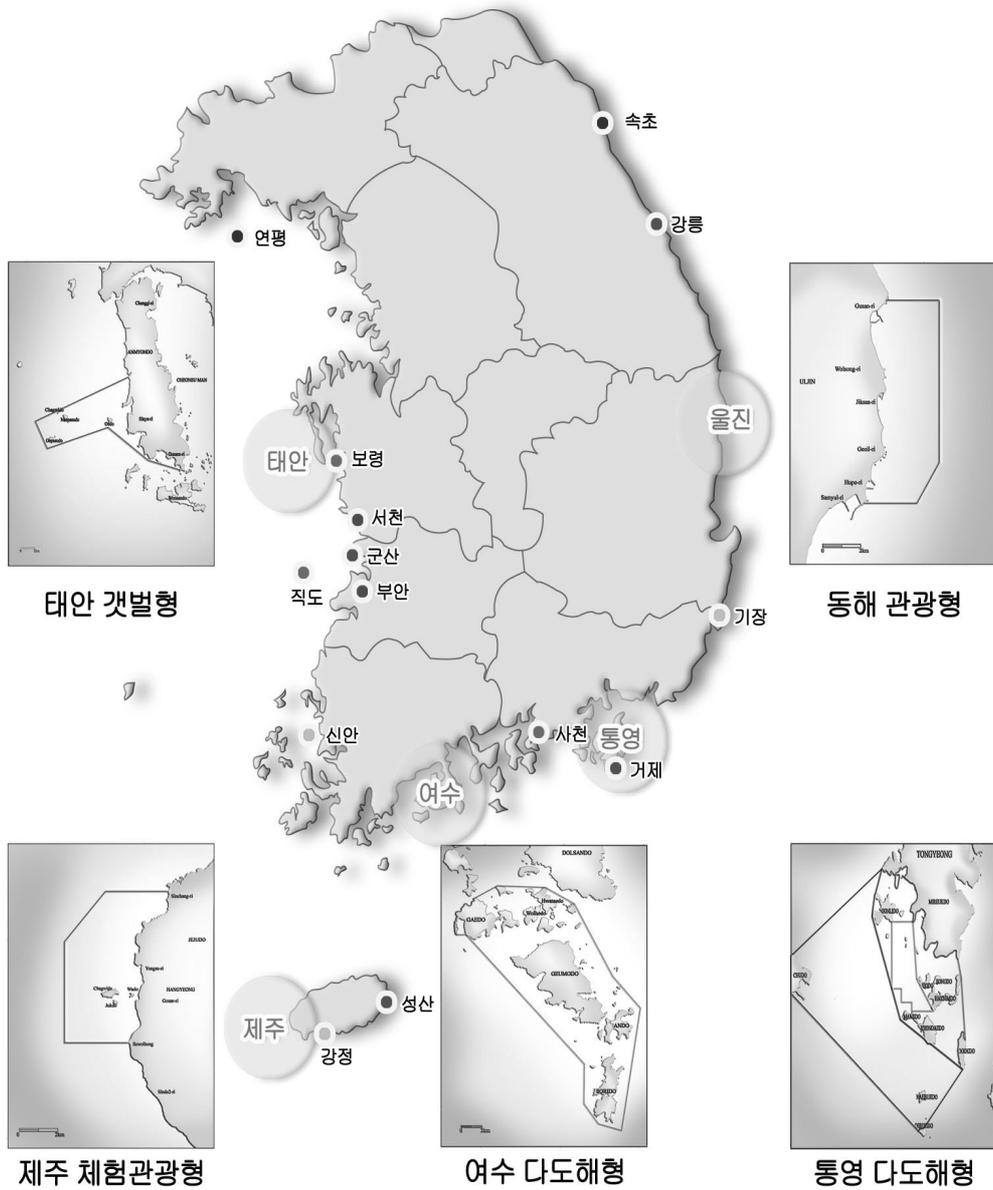
□ 바다목장 연구사업 실적 보고 및 바다목장 발전방안 심포지움 개최

- 2009 연구개발사업 실적 중간보고(7월) 및 최종 보고(12월 초)
- 학계, 전문가, 관계공무원, 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바다목장 발전방안 심포지움 개최(12월 초)

□ 2009년도 사업평가 및 2010년 사업계획 수립

- 바다목장 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현장 애로사항 수렴(11월)
- 2009년도 사업평가 및 2010년도 사업계획 수립(12월 중)

바다목장 위치도



- '06년 소규모바다목장
- '07년 소규모바다목장
- '08년 소규모바다목장
- '09년 소규모바다목장 예정지역
- '10년 소규모바다목장 예정지역
- 시범바다목장 5개해역

소규모 바다목장 현황

지역	위치	면적	유형	기간	주요 사업 내용
강릉	강릉시 정동진 해역	900ha	관 광 형 + 교육형	06~10 (5년간)	- 종묘방류 : 전복, 해삼, 쥐노래미, 불락 가자미 - 시설 : 유어낚시터, 수중관광시설, 스쿠버 다이빙 포인트 개발
거제	거제시 남부면 도장포 해역	500ha	어로형+ 관광형	“	- 종묘방류 : 불락, 전복, 해삼 - 시설 : 인공어초, 해조장, 유로낚시터 등
군산	군산시 옥도면 연도 해역	2,000ha	어로형	“	- 종묘방류 : 조피불락, 넙치 등 - 시설 : 인공어초, 해조장 등
성산	서귀포시 성산포 신양 해역	530ha	어 로 형 + 관광형	“	- 종묘방류 : 전복, 오분자기, 돌돔 - 시설 : 인공어초, 해조장 등
보령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 해역	368ha	어 로 형 + 관광형	07~11	- 종묘방류 : 넙치, 조피불락, 대하, 꽃게, 전복, 참돔, 감성돔 등 - 시설 : 인공어초, 해조장, 생태체험장 등
직도	군산시 옥도면 연도 등 해역	608ha	어로형	“	- 종묘방류 : 조피불락, 넙치, 강성돔 등 - 시설 : 인공어초, 해조장 등
사천	사천시 동서동 및 서포 해역	100ha	어로형	“	- 종묘방류 : 불락, 황점불락, 감성돔, 해삼, 전복 - 시설 : 인공어초, 해조장 등
연평	인천시 옹진군 연평 해역	530ha	어 로 형 + 관광형	08~12	- 종묘방류 : 전복, 오분자기, 돌돔 - 시설 : 인공어초, 해조장, 바다낚시터 등
속초	속초시 장사 해역	190ha	어 로 형 + 관광형	“	- 종묘방류 : 강도다리, 쥐노래미, 조피불락 - 시설 : 인공어초, 연안 생태체험장, 수중전망대
기장	부산시 기장군 해역	300ha	어 로 형 + 관광형	09~13	- 종묘방류 : 조피불락, 전복, 돌돔 - 시설 : 인공어초, 해조장 등
신안	신안군 신의면 고평사 해역	200ha	어 로 형 + 관광형	“	- 종묘방류 : 참돔, 전복, 바지락, 등 - 시설 : 인공어초, 해조장, 체험어장, 낚시터 등
강정	서귀포시 강정 동 연안 해역	500ha	어 로 형 + 관광형	“	- 종묘방류 : 자바리, 돌돔, 전복류 등 - 시설 : 인공어초, 해조장 등

※ 개소당 예산은 50억(국비 25, 지방비 25)

바 자율관리어업 확산 및 내실화

목 표

- 자율관리어업을 어촌사회 선두 변화 중심세력으로 육성하여 어업 관리의 기본 틀로 정착
- 2012년까지 전 어촌계의 60%까지 참여 확대

1) 추진배경

- 면허·허가제도 등 간접적인 수산자원 관리방식은 많은 비용과 노력이 투자되어도 자원회복에 한계

※ 어선 톤당어획량 : ('70년대) 5.1톤 → ('80년대) 3.8톤 → ('90년대) 3.1톤

- 자원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어장 및 자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불법어업을 예방하도록 '01년부터 동 제도 도입

2) 추진경과

- 자율관리어업 시범사업 실시계획 수립('01.2)
- 시·도에 '지역협의회('03.7)'를 구성하여 규약, 공동체 선정 등 심의
 - 지도자협의회를 구성('04.9)하여 정부와 공동체간 가교역할 담당
- 한국수산회에 전담팀을 설치('06.1, 2명)하여 교육·홍보 등 담당
 - 수협중앙회는 전국대회 개최('04년 이후) 및 지도자 양성교육 등을 담당
- '03년부터 매년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개최

※ 제1회 목포, 제2회 통영(VIP 참석), 제3회 천안, 제4회 제주, 제5회 보령, 제6회 속초

□ 한국수산회에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04.8)하여 공동체간 어업 분쟁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소

○ '08년까지 25건의 분쟁사례를 발굴하여 18건 해결 완료

□ '06년부터 공동체 평가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매뉴얼 마련('07)

○ 매년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풍요, 모범, 협동, 참여 등 등급화

○ 우수공동체 지도자는 정부포상 및 해외연수 기회제공

※ 해외연수 169명, 정부포상 105점(훈장 1, 대통령표창 13, 총리표창 7, 장관표창 84)

3) 성과와 반성

□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의 지속적인 확대

○ 참여공동체 : '01) 63개소 → '04) 174 → '09.9) 732개소(12배 증가)

○ 참여어업인 : '01) 5천명 → '04) 15 → '09.9) 54천명(11배 증가)

□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는 분위기 확산 및 불법 어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어촌사회가 새롭게 변화

○ 단순 법규 준수 등 수동적 자원관리에서 능동적 자원 조성 및 관리로 의식이 전환

□ 자원이 회복되고 소득이 향상되는 공동체가 속속 가시화

○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의 최근 3개년('05~'07) 소득이 매년 8-9% 증가된 것으로 조사('08.9~12, 70개소)

※ 공동체 평균 소득 : ('05) 920백만원→('06) 1,010→('07) 1,094백만원(전년비 8.3% 증가)

□ 참여공동체 지속적인 확대에 반해 내실화는 다소 미흡

○ 자율관리의 효과가 큰 어선·복합어업 등의 공동체 참여가 부족하고, 실천이 어려운 분야 활동 미흡

※ 참여공동체 : 마을·양식어업 64%, 어선·복합어업 34%. 내수면 3%

- 아직도 일부 공동체는 자율관리어업 활동을 정부지원금에 의존
 - 출어경비 상승 등 어업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원관리·조성에 필요한 경비 자체조성 소홀
 - 육성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일부 공동체가 세금계산서를 부풀리거나 자담을 되돌려 받는 등 부당수령 사례 적발

4) 향후 추진계획

- 참여공동체를 2012까지 전 어촌계의 60%까지 확대
 - 참여공동체 : ('01) 63개소 → ('05) 308 → ('09) 750 → ('12) 1,200
 - 육성사업비를 확대 지원하여 공동체 참여 및 확산 유도
 - 참여공동체의 약 25% 정도 육성사업비 지원
 - ※ 육성사업비 지원 : ('08) 140개소/143억원 → ('09) 242개소/230억원 (61%증)
 - 공동체 등급에 따라 육성사업비 차등 지원하여 공동체간 경쟁유도
 - 최우수공동체 3억원, 풍요공동체 2억원, 모범공동체 1억원 지원
 - 시·도 사업배정시 어선·복합의 광역공동체에 일정비율 할당 지원
 - ※ '09년도는 전체(242개소)의 43%(105개소)를 어선·복합·광역공동체에 지원
- 어업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자율관리공동체가 어촌사회를 선도하는 중심체로 육성
 - 권역별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도자 리더쉽 함양 교육 실시
 - 성공한 공동체 지도자를 적극 활용하여 성공노하우 등 전파
 - 수산사무소 지자체 이양에 따라 민간컨설턴트를 지역담당제로 지정하여 지역여건 및 공동체 특성에 맞는 컨설팅 실시

□ 매년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여 공동체 참여의식 고취 및 확산 “봄” 조성

- '09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개최(11월, 여수 개최예정)
 -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및 공로자 포상 등
- 성공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자율관리어업 “봄” 조성
 - 입상자는 정부포상(부상), 소속공동체는 차년도 육성사업비 특별 추가 지원(2~5천만원)
- 자율관리어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우수 사례집과 영상홍보물(DVD)을 제작, 배포
- 매월 자율관리어업 소식지를 발간(2,500부), 공동체간 정보 공유

□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에 대한 관리 강화

- 자율관리어업 효과측정을 위해 공동체별 소득변화 추이 조사 실시('09.3~12월, 한국수산회 부설 수산정책연구소)
- 자원수준을 고려한 합리적인 자원관리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공동체 주요 관리대상 어종에 대한 자원조사 실시('09 예산 : 1억원)
- 활동이 부진한 공동체는 수산사무소 현장집합교육 등을 통해 집중 지도하여 활성화 유도('09 예산 지원 : 108백만원)
- 일정요건 미달시 공동체 선정을 취소 등 조치
 - 평가결과 활동실적 부진 공동체, 불법어업 과다 공동체 등

□ 연도별, 유형별 추이

	'01	'03	'04	'05	'06	'07	'08	'09.9	
								구성비 (%)	
공동체(개소)	63	122	174	308	445	579	659	732	100.0
(전년대비 증가율,%)	-	(54.4%)	(42.6%)	(77.0%)	(44.5%)	(30.1%)	(13.8%)	(11.1%)	
- 마을어업	32	61	92	159	233	294	341	379	51.8
- 양식어업	11	15	22	46	70	72	78	80	10.9
- 어선어업	8	29	34	52	71	102	115	127	17.4
- 복합어업	12	17	26	43	62	94	102	118	16.1
- 내수면어업	-	-	-	8	9	17	23	28	3.8
참여어업인(명)	5,107	10,765	15,469	24,805	33,921	44,061	50,728	54,326	
(전년대비 증가율,%)	-	(63.7%)	(43.7%)	(60.4%)	(36.7%)	(29.9%)	(15.1%)	(7.1%)	
공동체당 평균 구성원수(명)	81.1	88.2	88.9	80.5	76.2	76.1	77.0	74.2	

□ 연도별, 시도별 추이

구 분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1	63	1	6	1	2	7	-	4	5	20	7	8	2
2002	79	2	6	2	2	9	-	5	7	25	8	10	3
2003	122	4	7	3	3	15	-	6	9	28	15	16	6
2004	174	5	8	5	7	16	-	13	10	53	23	19	15
2005	308	5	13	10	12	21	5	27	25	99	37	33	21
2006	445	10	15	13	16	28	5	46	27	147	47	60	31
2007	579	15	25	15	23	39	7	49	38	184	69	76	39
2008	659	15	29	15	24	47	8	50	41	215	73	100	42
2009.9 (어업인수)	732 (54,326)	18 (1,656)	35 (3,427)	16 (1,460)	24 (2,164)	58 (4,495)	12 (304)	54 (4,949)	41 (2,896)	236 (17,685)	78 (4,423)	118 (6,623)	42 (4,244)
어촌계수 ('07기준)	1,972	41	58	33	46	77	-	138	64	854	156	405	100

※ 광역공동체 현황('09.9현재) : 36개소(부산1, 인천4, 울산1, 경기2, 강원4, 충남5, 전북1, 전남11, 경북1, 경남4, 제주2)

□ 시도별 참여공동체 및 육성사업비 지원실적 ('02~'09)

(개소, 억원)

구 분		합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동체수('09.3)		695	18	29	16	24	58	12	53	41	215	77	110	42
육성사업	지원공동체수	771	19	28	18	24	75	7	64	59	217	85	121	54
	총사업비	984	22.9	38.6	22.2	34.7	92	7	89	80.4	283	122.9	133.8	57.5

* 우수공동체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40%, 자담 10%

□ 연도별, 시도별 육성사업비 지원실적

(단위 : 개소, 억원)

	합계		2002~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계	771	984	178	308	60	89	60	96	90	118.0	141	143.0	242	230.0
부산	19	22.9	6	11	1	1	1	1	2	2.5	4	2.5	5	4.9
인천	28	38.6	11	17	2	3	3	5	3	5.0	4	4.0	5	4.6
울산	18	22.2	4	7	3	3	2	3	2	3.0	3	2.5	4	3.7
경기	24	34.7	6	8	2	6	2	4	5	7.5	6	6.0	3	3.2
강원	75	92	19	33	6	7	4	6	6	9.5	11	11.0	29	25.5
충북	7	7							1	2.0	3	1.5	3	3.5
충남	64	89	10	21	6	11	5	8	10	13.5	15	17.0	18	18.5
전북	59	80.4	11	27	5	6	5	7	7	9.0	13	13.5	18	17.9
전남	217	283	61	97	16	21	20	32	26	32.5	37	44.5	57	56.0
경북	85	122.9	19	42	8	14	7	15	9	11.0	13	12.5	29	28.4
경남	121	133.8	19	28	7	12	7	10	13	16.5	23	21.0	52	46.3
제주	54	57.5	12	17	4	5	4	5	6	6.0	9	7.0	19	17.5

* 예산지원액 : 지방비와 자부담이 포함된 금액임

* '09까지 순 지원개소 : 366개소(1회지원 163개소, 2회 129개소, 3회 55개소, 4회 13개소, 5회 5개소, 6회 1개소)

목 표

- 급속한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환경오염과 장기간 양식어장 경영에 따라 자정능력이 저하된 어장환경을 회복
-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기반 조성으로 안전한 수산물 생산과 어업 소득증대 도모

1) 추진배경

- 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하여 육상에서 기인한 오염물질의 유입량 증가와 양식어업의 발전으로 자가오염원의 증가로 연안어장의 오염이 심화
- 어장오염에 따른 어병 및 유해성 적조 발생 빈발로 안전한 수산물 생산의 곤란과 이에 따른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86부터 연안어장 정화사업 추진
 - ‘양식어장정화’를 위해 퇴적물 수거, 바닥갈이, 어장재배치 실시
 - 오염이 심화된 남해안에 ‘특별관리 어장정화사업’을 실시
- 연안의 수질은 대체로 양호한 상태이나, 일부 내만과 장기간 연작한 양식장의 퇴적물은 우려할 수준
 - 동해안 연안의 해역 수질은 I ~ II등급, 남·서해안은 II등급으로 대체로 양호한 상태임
 - 해수유동이 느린 남해안 반폐쇄성 일부해역에서는 오염물질 유입 및 배설물 등이 퇴적되어 유기오염 진행상태

2) 추진경과

□ 1986년

- 연안어장의 오염원 제거를 위해 어장에 침적되어 있는 폐기물 등을 직접 수거하는 어장정화사업을 일선 수협 대행체제로 추진

□ 1991년

- 어장정화사업 시행주체를 관할해역에 대한 어장청소 명령권을 가진 시·도지사에게 사업을 이관하여 본격 추진

□ 1996년

- 장기간 양식으로 오염, 질병, 적조피해가 빈발하는 남해안의 9개 만을 특별관리어장으로 지정하여 광역단위 어장정화사업 실시

□ 2005년

- 어장정화사업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균특회계로 전환하여 지자체 주도로 사업 시행

3) 성과와 반성

□ 성 과

- 86이후 양식어장정화 및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으로 총 490천ha에 대하여 퇴적물 수거·처리, 바닥갈이, 객토, 어장재배치 등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생산성은 4~39%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추정)

※ 양식어장정화 : 426천ha, 특별관리어장정화 : 64천ha

□ 반 성

- 어장환경관리에 있어 과학적인 어장환경실태조사, 어장관리해역 지정 등 체계적으로 관리미흡 및 지자체 사업 후순위로 적극적인 사업추진 곤란

4) 향후 추진계획

□ 체계적인 어장관리를 통한 생산성 회복을 추진

- 연안 양식어장환경조사('08~'13) 실시후 오염정도, 어장수용력, 생산성을 감안하여 『어장관리해역』 지정후 적극적인 어장정화 추진
- 어장관리해역 중 환경악화 및 수산물안전성 우려되는 어장에 대하여 『어장관리특별해역으로』 지정후 어장정화, 어장휴식, 어장외해이전, 면허면적 감축 등 어장관리

□ 지속적인 어장정화사업 추진

- 어장정화사업은 국민들이 웰빙식품의 관심증대로 안전하고 깨끗한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공급과 국제사회에서 어장환경 개선·보전을 요구하고 있어 지속적인 정화사업 추진
- 전국 연안 시·도(시·군)를 대상으로 어장정화사업 실시
 - 어장정화사업('09) : 5,761ha, 6,145백만원(국고 80%, 지방비 20%)

□ 연안어장 오염원 유입 차단

- 어장정화사업을 통하여 연안어장의 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어 오염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어장환경 보전을 추진
 - 어업권자의 시설물 유실·투기방지 의무부여로 어장오염원 저감
 - 양식장 부표(浮標) 규격제품 사용을 의무화 및 지원사업 실시
 - 굴 패각 폐기물 친환경 처리(비료 등 자원화) 지원사업 실시

□ 어장정화 실시후 수질개선 효과

- 어장정화사업이 집중 실시되는 고성만, 가막만 등의 경우 COD가 낮아져 오염지수 개선 추세

	고성만	고현만	가막만	득량만
1998	1.50	2.01	2.00	1.73
2000	1.27	1.72	1.71	1.66
2002	1.11	1.15	1.23	1.44

- 어장정화 실시후 다음연도의 환경요인 분석결과 COD는 낮아지고 용존산소 증가하는 등 생태계 복원 효과 발생

	용존산소(%)	COD(%)	총질소(T-N/%)	총인(T-P/%)
고성만	-3.52	-4.07	-14.43	4.89
고현만	4.64	-6.11	24.76	12.49
가막만	0.73	-9.26	23.43	7.93
득량만	-0.89	-1.50	56.69	33.55

□ 어업생산량 증대 효과 분석

- 어장관리법 시행에 따른 정화전문업체의 1차년도 사업실시후 주요 품종별 생산량은 7~3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품종별	단 위	생 산 량		증가율 (%)
			정화 이전	정화 이후	
양 식 어 장	김	ha/속	1,904	2,108	24
	미역	ha/톤	24.6	26.3	7
	툰	ha/톤	2.2	2.5	14
특별관리어장	굴	대/kg	365	489	34

※ 시도 조사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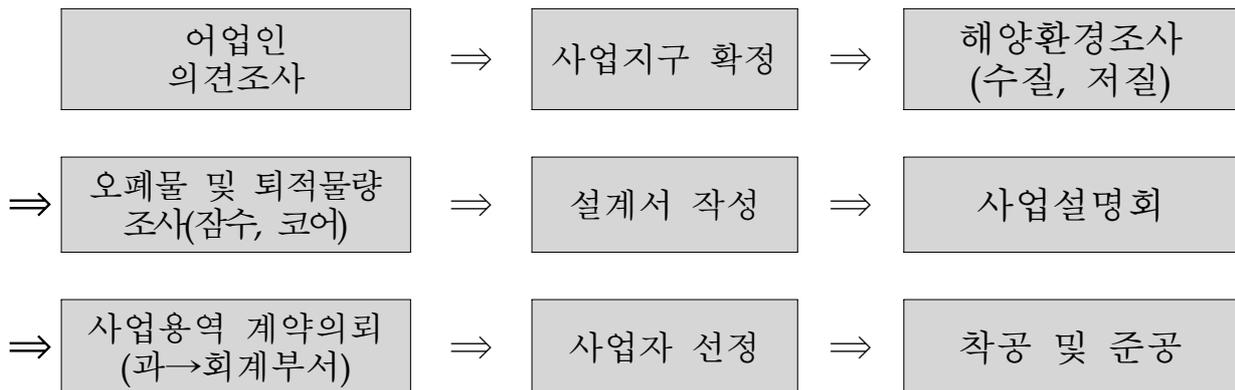
- 전문연구기관(KMI)에서 전남·경남지역에 대한 정화사업의 직·간접 효과 조사를 실시한 결과, 투자비용의 149% 효과 발생

(단위 : 천원)

정화사업비(A)	직접효과(B)	간접효과	총효과(C)	B/A	C/A
9,615,000	9,680,000	4,633,117	14,314,098	1.01	1.49

- ① 어장정화사업을 통하여 침적물 수거, 바닥갈이, 객토 등을 실시할 경우 COD가 낮아지고 용존산소는 증가하는 등 오염환경 개선
- ② 오염환경 개선에 의한 생태계 복원으로 생산량이 증가하여 투자비용이 1년내 회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 효과가 3년간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화사업 성과는 크다고 판단됨

<어장정화사업 추진절차>



<시·도별 어장정화·정비업 등록현황('09.7말현재)>

- 등록 : 52개 업체, 115척(정화선 59척, 부선 56척)

구분	합계	부산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업체수	52개	3	4	1	9	2	13	2	16	2
(정화선)	59척	3	4	1	10	2	13	2	22	2
(부선)	56척	4	4	1	11	2	13	2	17	2

목 표

-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관리와 안전한 수산식품 육성
- 환경 친화적 어업 및 레저 공간 등의 다각적 활용방안 구축

1) 추진배경

- “4대강 살리기”와 “금수강촌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내수면 생태계보호 및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을 도모

2) 추진실적

친환경 농업과 양식업을 접목한 **친환경 논 생태양식**

- 논의 水생태계를 이용한 물고기 양식으로 사료 및 농약사용 절감
- ‘11년까지 미꾸라지의 생태양식 기반 구축 후 붕어 등 품종 확대
 - * (‘09) 미꾸라지 시범양식 3개소 13.4ha → (‘10) 5개소, 23ha
- 농지의 이용 절차 간소화 등으로 내수면 양식이 육성 도모
 - * 농지법시행령 개정(농지과, ‘09.11.28부터 시행)

4대강 유역의 토속어류 등 **수생생물의 생태계 관리**

- 토속어류 중 개체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종은 종묘 생산 및 관리 체계를 확충하여 지속적인 방류 추진 (10종→20종)

낙동강 등 4대강 수계에 **토속어류 산업화센터 건립**

- ‘10년부터 낙동강 수계 토속어류 산업화 센터 건립(경북, 200억원) 추진
 - * 토속어류 종묘생산 시설, 생태체험 및 전시관, 방류시설 등

□ 4대강 유역의 어도 실태 조사

- 4대강 유역의 어도 실태를 조사하여 제기능을 못하는 어도에 대해 회유성 어종이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10년도 10억원)

□ 내수면의 주요 품종별 가공공장 건립 및 기능성제품을 개발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를 촉진

- 생산이 안정적이고 대중화된 품종을 우선 지원하고 품종 확대 및 새로운 기능성 제품 개발을 지원
- * 송어('07~'08, 강원 영월, 50억원), 자라('09~'10, 전북 익산, 32억원), 메기 ('10~'11, 충남 논산, 28억원)

3) 향후 추진계획

□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한 내수면어업 진흥을 위한 사업지원 확대 및 정책과제 개발

- 논 생태 내수면 양식 및 토속어류 산업화 센터 건립 등 내수면어업 진흥을 위한 '10년 예산 요구(약 130억원) 및 확보
-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에 내수면어업 진흥 정책과제 반영 추진

참 고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한 내수면어업 진흥

□ 4대강 현황 및 위치도

○ 현 황

수계	시·도	연장	유역	기타
낙동강	부산,대구,경북,경남	510km	23,384km ²	
영산강	전남	137km	3,468km ²	
한 강	서울,경기,강원,충북	494km	25,954km ²	
금 강	전북,충남,충북	398km	9,912km ²	

자료 : 한국하천연람

○ 위치도

<4대강 토속어종>

- 한강유역 등에 약 60여종의 토속어류가 서식하고 있음
- * 쉬리, 꺾지, 동자개, 각시붕어, 납자루 등

《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한 내수면어업 진흥 》

1. 추진배경

- 「4대강 살리기」와 우리부 「금수강촌 만들기 대책」의 일환으로 내수면 수질개선 및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추진

2. 주요 추진내용

- ① (친환경 논생태양식) 4대강 유역 하천주변에 친환경농업과 양식업을 접목하여 화학비료 및 사료량 저감으로 오염물질 유입량 저감
 - 물고기 입식에 의한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추진('09, 3개소 13.4ha)
- ② (토속어류 방류) 토속어류 등 수생생물 생태계 회복 지원
 - 토속어류 중 개체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종은 종묘 생산·관리 체계를 확충하여 지속적인 방류 추진 (10종→20종)
- ③ (어도의 친환경화) 기존에 설치된 어도에 실태를 조사하여 제 기능을 못하는 어도에 대해 친환경 어도로 개선
 - 우선 4대강 수계를 우선 조사하여 회유성 수산생물(은어, 연어, 참계 등)이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

3. 기대효과

- 4대강의 어도(魚道)관리 및 내수면 생태계 회복을 통한 레저산업 활성화 및 수산자원 증강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
- 하천 생태환경의 복원을 통한 도시민에게는 친수적인 복합 생활환경이 제공되고 어린이에게는 생태교육장으로 활용

① 물고기 입식에 의한 친환경 논생태양식 시범사업

□ 사업목적

- 논의 기본 水생태계를 이용한 생태형 양식을 통해 사료 및 농약 사용 절감으로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및 농업과 양식업을 접목한 친환경 농어업 육성

□ 추진현황

- '09년부터 저가의 우량종묘 생산을 위한 토종종묘보급 사업 추진
 - 먹이생물 배양시설, 종묘생산 시설 등 지원을 통해 토종종묘 대량 생산 시스템 구축
- '09년 논 생태 양식 시범 실시
 - '09예산 20억원(농특회계,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량 : 3개소 13.4ha(충북 진천 3.5ha, 전북 남원 3.5ha, 경남 산청 6.4)
 - * '09년은 미꾸라지를 이용, 향후 붕어, 뱀장어, 제첩 등으로 확대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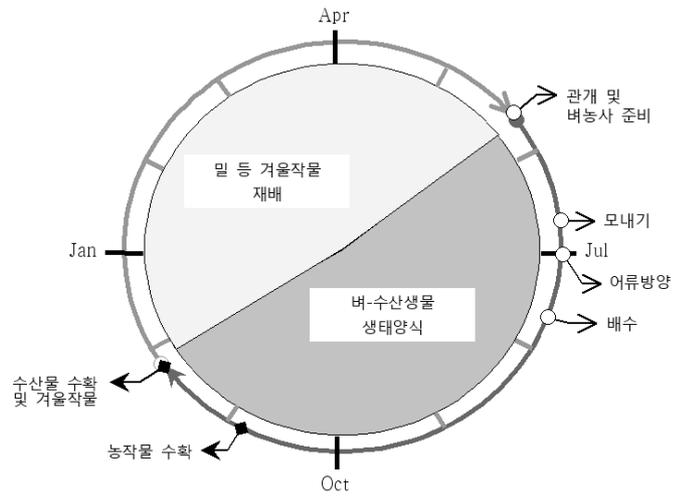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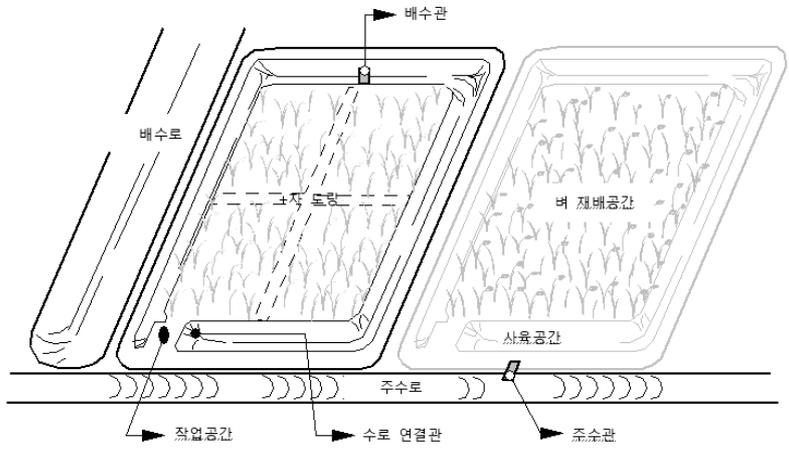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충북	전북	경남	비고
계	2,000	600	1,000	400	
토종종묘 생산시설	1,066	390	480	196	
친어 및 먹이생물 관리	551	197	270	84	
친환경양식장조성	383	13	250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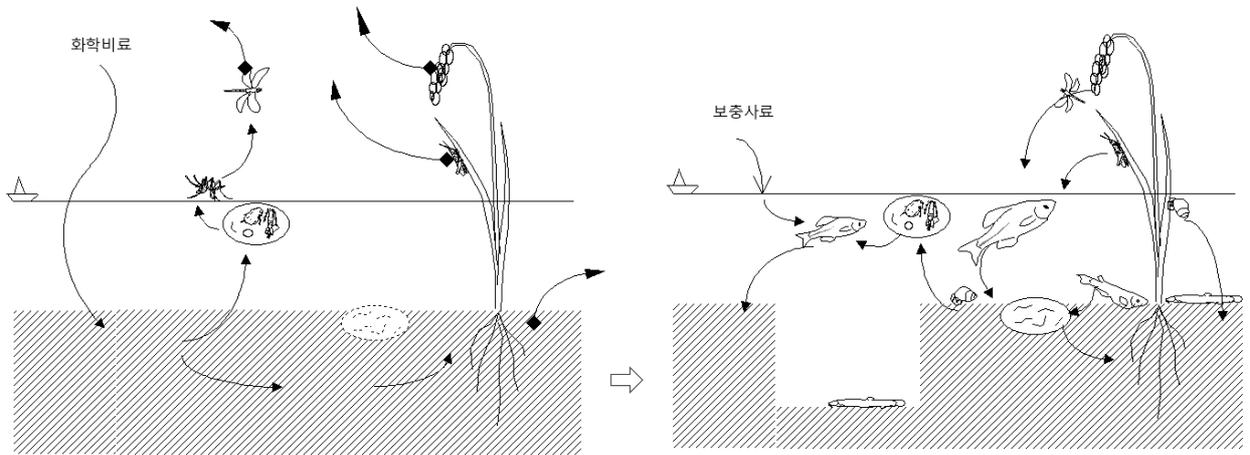
□ 향후계획

- 미꾸라지 논생태 양식 사업확대 추진('19)3개소 13.4ha → ('10)5개소, 23ha]
- 미꾸라지 외에 붕어 등 대상어종 추가 개발('11년 이후)

논 생태양식의 개념과 실제



논 생태양식지 기본 구조(상)와 벼-수산생물 생산 주기(하)



일반 벼 농지(좌)와 논 생태양식지 에너지 순환(우) 비교

② 4대강 토속어류 복원 및 관리

□ 추진배경

○ 하천 공사 등으로 인해 감소되는 토속어류를 복원하고 하천의 생태계 관리를 위해 토속어류의 지속적인 생산, 방류 필요

* 우리나라에서만 서식하는 토속어류 약 60여종(쉬리, 각시붕어, 어름치 등) 대해 연구 기관 조사를 거쳐 공사로 인해 감소가 예상되는 품종부터 우선 방류 추진(약 20종)

□ 주요내용

○ 방류용 어류 대량생산을 위한 복합 토속어류보급센터 건립

- 복합 토속어류보급센터 내에 생태관을 마련하여 4대강에 서식하는 민물고기 전시 및 정보 제공을 통해 교육의 장으로 활용

<복합 토속어류보급센터 및 부가기능>



<복합토속어류보급센터>



<토속어류 생태관>



<토속어류 체험교육>



<토속어류 정보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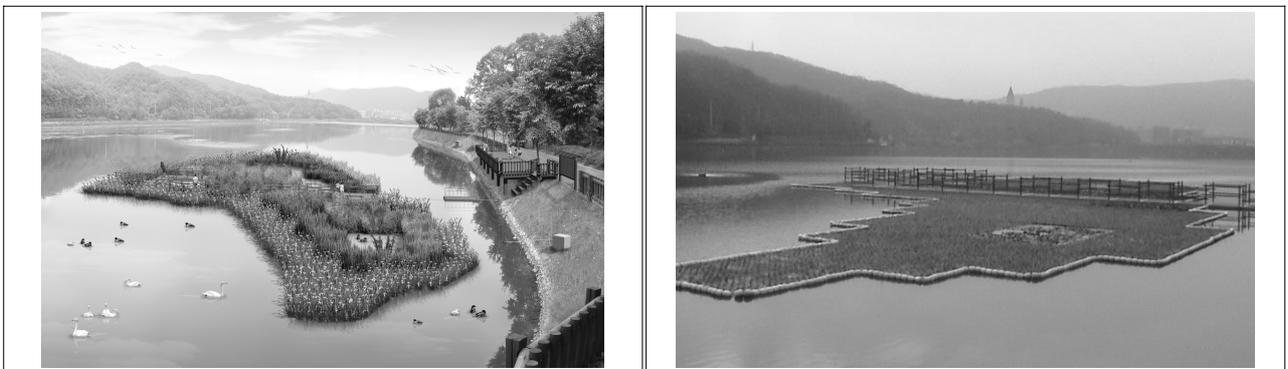
- 하천에 방류터를 마련하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토속어류 방류체험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

<방류체험>



- 지류에 방류된 어종은 전통어로체험 자원이나 수산생물의 생활사와 연계한 교육형 체험프로그램으로 개발
- 4대강에 방류된 토속 어(漁)자원 증강을 위해 인공산란시설 설치

<인공산란장>



□ 향후계획

- '15년까지 거점별 복합 토속어류보급센터 건립
 - 4대강별 생태계 특성에 맞는 토속어류 생산시스템 구축
- 방류터 및 지류의 체험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
- 4대강 토속어류 방류터에 우선으로 인공산란장설치 지원

■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는 토종담수어류(고유종)

Petromyzonidae 칠성장어과(1종)			
<i>*Lampetra morii</i>	칠성장어(북)	<i>☆Koreocobitis naktongensis</i>	얼룩새코미꾸리
Cyprinidae 잉어과(32종)		<i>Iksookimia pumila</i>	부안종개
<i>Rhynchocypris semotilus</i>	버들가지	<i>☆★Iksookimia choii</i>	미호종개
<i>Rhynchocypris kumgangensis</i>	금강모치	<i>Iksookimia longicorpa</i>	왕종개
<i>Rhodeus uyekii</i>	각시붕어	<i>Iksookimia hugowolfeldi</i>	남방종개
<i>Rhodeus honda</i>	서호납줄갱이	<i>Iksookimia yongdokensis</i>	동방종개
<i>Rhodeus pseudosericeus</i>	한강납줄개	<i>Cobitis tetralineata</i>	줄종개
<i>Acheilognathus koreensis</i>	칼납자루	<i>Cobitis hankugensis</i>	기름종개
<i>☆Acheilognathus somjinensis</i>	임실납자루	<i>Cobitis pacifica</i>	북방종개
<i>Acheilognathus signifer</i>	목납자루	Bagridae 동자개과(2종)	
<i>Acheilognathus yamatsutae</i>	줄납자루	<i>Pseudobagrus koreanus</i>	눈동자개
<i>Acheilognathus majusculus</i>	큰줄납자루	<i>☆★Pseudobagrus brevicorpus</i>	꼬치동자개
<i>Acanthorhodeus gracilis</i>	가시납지리	Siluridae 메기과(1종)	
<i>*Mesogobio tumensis</i>	두만강자그사리(북)	<i>Silurus microdorsalis</i>	미유기
<i>Sarcocheilichthys nigripinnis morii</i>	중고기	Amblycipitidae 통가리과(3종)	
<i>Sarcocheilichthys variegatus wakiyae</i>	참중고기	<i>Liobagrus andersoni</i>	통가리
<i>☆Pseudopungtungia nigra</i>	감돌고기	<i>☆Liobagrus obesus</i>	통사리
<i>☆Pseudopungtungia tenuicorpa</i>	가는돌고기	<i>Liobagrus mediadiposalis</i>	자가사리
<i>Coreoleuciscus splendidus</i>	쉬리	Salangidae 뱀어과(1종)	
<i>Squalidus chankaensis tsuchigae</i>	참물개	<i>Neosalanx jordani</i>	젓뱀어
<i>Squalidus japonicus coreanus</i>	물개	Salmonidae 연어과(2종)	
<i>Squalidus gracilis majimae</i>	긴물개	<i>*Hucho ishikawai</i>	자 치(북)
<i>Squalidus multimaculatus</i>	점물개	<i>Thymallus arcticus jaluensis</i>	사루기
<i>★Hemibabus mylodon</i>	어름치	Serranidae 농어과(1종)	
<i>Abbottina springeri</i>	왜매치	<i>Coreoperca herzi</i>	꺽 지
<i>Microphysogobio yaluensis</i>	돌마자	Odontobutidae 동사리과(2종)	
<i>Microphysogobio longidorsalis</i>	배가사리	<i>Odontobutis platycephala</i>	동사리
<i>☆Microphysogobio koreensis</i>	모래주사	<i>Odontobutis interrupta</i>	얼룩동사리
<i>Microphysogobio rapidus</i>	여울마자	Gobiidae 망둑어과(2종)	
<i>Microphysogobio jeoni</i>	땡경모치	<i>Acentrogobius pellidebilis</i>	점줄망둑
<i>☆Gobiobotia macrocephalus</i>	꾸구리	<i>Periophthalmus magnuspinnatus</i>	큰뺨말뚝망둥어
<i>☆Gobiobotia breviparba</i>	돌상어		
<i>☆Gobiobotia naktongensis</i>	흰수마자		
<i>Zacco koreanus</i>	참갈겨니		
Cobitididae 미꾸리과(11종)			
<i>Niwaella multifasciata</i>	수수미꾸리		
<i>Kichulchoia brevifasciata</i>	좁수수치		

■ 토속어류 사진



<쉬리>



<각시붕어>



<어름치>



<참중고기>

■ 방류어종 및 추가방류 대상어종

방류종(10종)	방류종(20종)
참게, 잉어, 동자개, 붕어, 메기, 쏘가리, 꺾지, 뱀장어, 자라, 은어, 다슬기	참게, 잉어, 동자개, 붕어, 메기, 쏘가리, 꺾지, 뱀장어, 자라, 은어, 다슬기 (금강모치, 각시붕어, 납자루류, 감돌고기, 어름치, 미호종개, 꼬치동자개, 참갈겨니, 새코미꾸리, 꺾지)*

* 굵은글씨 : 추가방류 대상어종

③ 4대강 환경친화형 어도개선 사업(안)

□ 추진배경

- 하천을 차단하는 구조물이 전국적으로 약 2만개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나, 어도설치 유무 실태조사 파악이 되지 않고 있음
- 고부가가치의 뱀장어, 연어 등은 대부분 경제성 어종으로 어도가 제기능을 못할시 자원량 부족으로 어업인 소득 감소 초래
- 4대강 유역의 어도 실태조사를 통한 어도개선방안 마련 및 환경친화형 어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4대강 유역에 대해 전문조사기간(국립수산과학원, 대학 등)등을 통해 어도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결과에 따라 어도가 제기능을 못하거나 미설치된 수계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에 개·보수 및 설치토록 협의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4대강 유역 어도실태조사 및 친환경 어도개선
- 추진방법 : 어도실태조사(수과원, 대학 등), 친환경 어도개선(지자체)
- 사업비 : 10억원(어도실태조사 10)

□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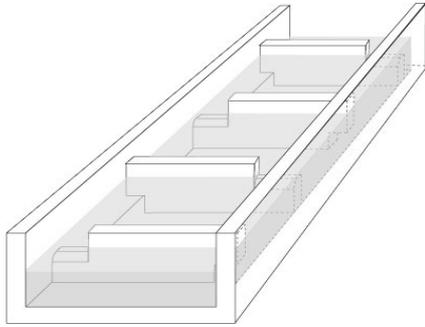
- 환경친화형 어도개선으로 일자리 창출 및 회유성 어종의 서식지 보호로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

□ 향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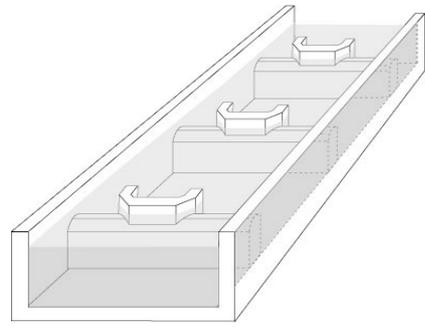
- '10년 신규사업으로 예산 요구 및 협의

<어도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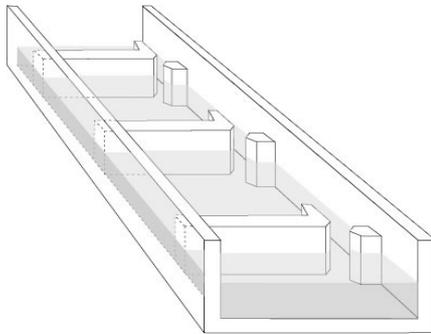
□ 표준 어도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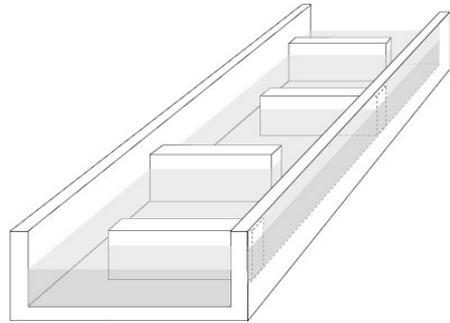
계단식



아이스하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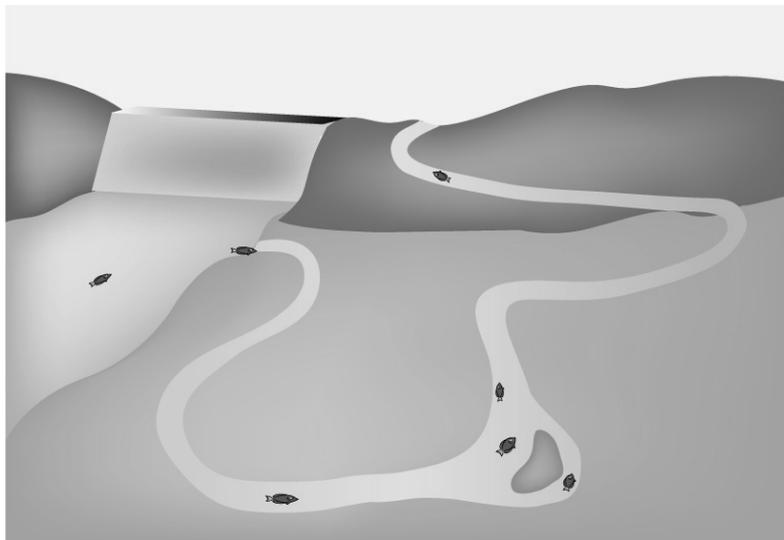


버티컬슬롯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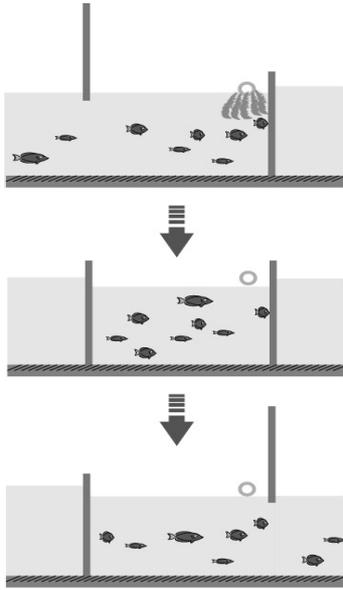


도벽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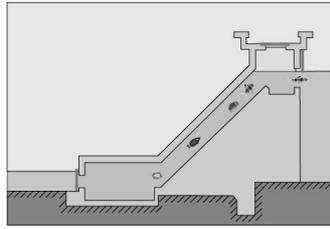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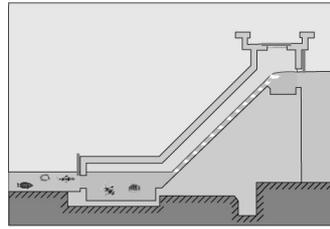
□ 인공하도식 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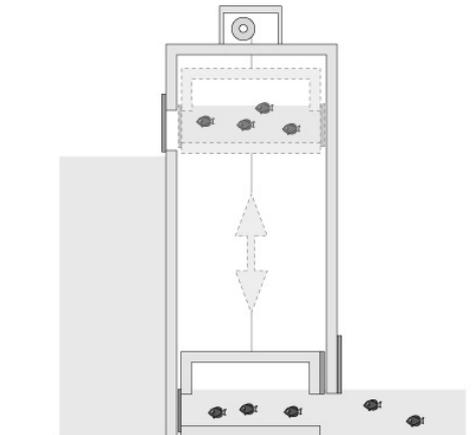
□ 조작형식 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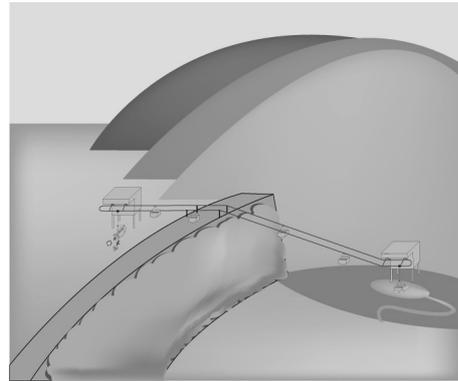
갭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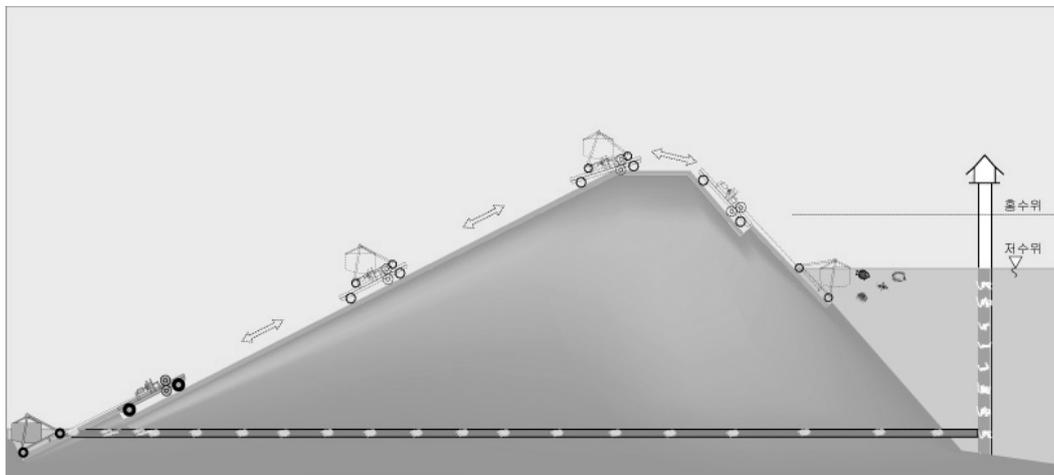
볼랜트식



엘리베이터식



리프트식



리프트식(자주식)

어도 사진



- 탐진강 심천보에 시설한 아이스하바식 어도 -



- 일본의 온가가와에 시설된 경사진 돌붙임 어도 -

자 유어산업 육성제도 도입

목 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인 낚시 관리
- 지속가능한 낚시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한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1) 추진배경

- 국민소득 향상과 여가생활 수요증가 등에 따라 낚시인구가 573만명('04년 기준)에 이르고 있으며 지속적인 증가 예상
- 낚시행위가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오염 및 낚시인의 안전문제 등을 야기하므로 제도적인 관리가 필요

※ 낚시로 인한 포획량(추정) : 매년 5만톤(연근해 및 내수면 어획량의 약 4%)

※ 낚시터 주변 쓰레기 발생량(추정) : 연간 9천톤

※ '08년 낚시사고 현황(사망·실종/중경상·구조, 명) : 갯바위 13/131, 방파제 11/23

2) 추진경과

- 환경과 레저가 조화된 「낚시종합발전정책」 국무회의 보고('06.01.)
 - 낚시행위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낚시관리제” 도입 추진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안 마련, 관계부처 의견 조회(해수부, '06.12.)
 - 낚시인과의 토론회, 간담회('06.05.~10./ 20여회) 및 공청회 개최('06.05.~10./ 10개 시·도)하여 낚시관리제 도입 공감대 조성
 - 낚시발전조성금, 낚시협회 설립 및 환경업무 관할에 대한 관계부처 이견으로 지연

- 정부 조직개편 및 새 정부의 농정방향을 반영한 수정안 마련('08.11.)
 - 주요 이견사항을 삭제하고 낚시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육성할 수 있는 사항(미끼기준 설정, 낚시산업 육성 등)을 보완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안 입법절차 추진
 - 관계부처 의견조희 및 협의('08.12.~'09.6), 입법예고('09.7) 및 규제 심사('09.8.~9) 및 법제처 심사('09.10~11)

3) 성과와 반성

- 종합적인 낚시관리제도 마련을 위하여 낚시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 추진
 - 이로 인하여 당초 입법추진 일정보다 다소 지연됨(국회제출 : '09.08. → '09.12.)
- 지속가능한 낚시에 대한 홍보를 통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유도
 - 올바른 낚시 문화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제작 배포

4) 향후 추진계획

- 낚시어선 및 유어장 관련 제도개선을 통한 행정규제 완화 추진
-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의 강화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안 입법절차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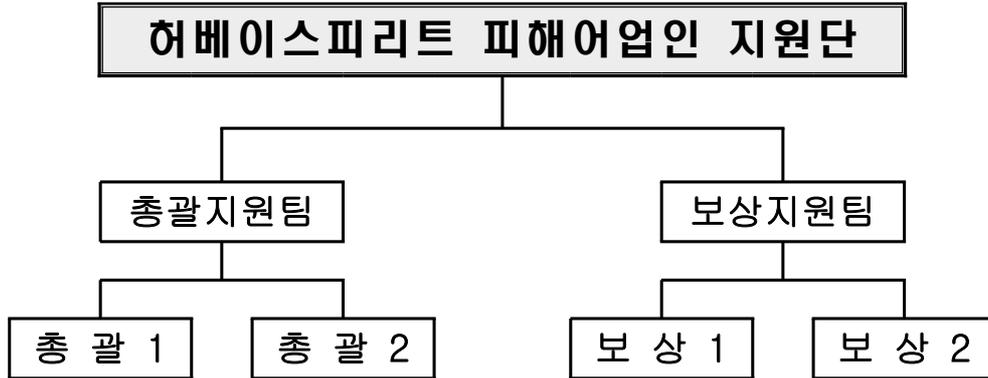
V. H/S[허베이스피리트] 피해어업인 지원단

1. 일반현황	207
2. 주요추진정책	208
가. 피해어업인 지원활동	208
나. 유류 피해어장 복원추진	210

1. 일반현황

조직 및 정원

□ 조직



□ 정원

(단위 : 명)

구 분	합계	고공단	3·4 ~ 4급	4·5 ~ 5급	6급이하	기능직
정 원	5	-	2	3	-	-
현 원	9		2	4	2	1

담당별 업무분장

구 분	주요 업무내용	비 고
총괄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법 및 관련규정 제정·시행에 관한 사항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보상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류피해 어장 환경복원 등에 관한 사항 피해지역 대책위 등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09년도 예산 및 '10년도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09년	'10년(정부안)	증감	대 비 (%)
○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복원(일반)	-	21,600	21,600	순증

2. 주요 추진정책

가 피해어업인 지원활동

목 표

- Hebei Spirit호 유류오염사고 피해민에 대한 신속·공정한 배상지원
- 허베이 특별법에 따른 클레임 청구자에 대한 정부지원 추진

1) 현황 및 실태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 일시/장소 : '07.12. 7(금) 07:06/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5마일
- 사고원인 : 예인선에서 분리된 부선이 정박해 있던 유조선과 충돌
 - * 예인선 : 삼성 T-5호(292톤) / * 부선 : 삼성 1호(11,800톤/3,000톤급 해상크레인 적재)
 - * 유조선 : HEBEI SPIRIT호(146,848톤/홍콩 선적)
- 사고결과 : 유조선의 원유탱크 파공(3개)으로 원유 12,547kl 유출

□ 피해 입증자료 확보 지연으로 '09년 하반기 이후 집중청구

- '09. 5. 8 종료 대전지법 서산지원의 선주 책임제한채권 신고 결과, 총 126천여 건으로 수산분야가 88%인 110.6천 건 차지하고 있음
- 사고 발생 후 1년 10개월이 경과됨에도 수산분야의 피해사정은 179건(89억 원)으로 클레임 접수 및 사정지연에 따른 어업인 불만 팽배
 - ※ '09.11.2 현재 HSC에 클레임 접수는 총 8,997건(약 12,800여명)으로 그 중 수산분야는 1,277건(14.2%)에 불과

2) 추진경과

□ 피해보상 주체인 IOPC Fund와 업무추진

- HS센터와 정례회의('09. 11월초까지 총 19회)를 통해 클레임 접수 및 피해사정 작업 촉구
- IOPC Fund 총회 및 집행이사회, 양자협의를 통한 보상업무 지원

□ 특별법에 의한 보상체계 정립

- 피해사정액이 IOPC Fund 보상한도 초과시, 총사정액과 보상한도 차액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보상

3) 향후 추진계획

□ IOPC Fund 총회 및 집행이사회 참석('10년 3차례, 런던)

- 총회 및 집행이사회 기간 전후 제4차 양자협의 추진
- 타분야 비해 수산분야의 피해사정이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을 위해 지속적 협의 추진

※ 국제기금측과의 비공식 회의를 통해 계속 협의 추진

□ 허베이 특별법에 따른 클레임 청구자에 대한 정부지원 추진

- IOPC 보상 전 정부지원
 - 대지급 : IOPC 피해사정이 완료된 경우 국제기금 지급 이전에 정부가 우선 지급 후 환수
 - 대부금 : 보상청구 후 6개월 이내 미사정시 대부금 지원(1인당 150~935만원 수준)
- IOPC 보상한도 초과시 정부지원(한도초과 보상금)
 - 피해사정액이 국제기금 보상한도 초과시, 총사정액과 보상한도 차액 전부 또는 일부 정부가 보상

□ 보상받지 못한 자의 지원방안 등에 관한 연구 용역 추진

-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민이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나 유류 피해어장 복원추진

목 표

- 유류 피해어장 복원을 통한 어업인 생계안정 및 지속적 생산 도모
- 갯벌어장 활용 및 관리제도 마련

1) 추진배경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어장오염 및 훼손
 - (해안선) 280.3km(충남 167km, 전남 113.3km)
 - (피해어장) 23,389ha(충남 13,790ha, 전북 3,550ha, 전남 6,049ha)
 - (피해지역 확대) 타르 확산('08.1)으로 충남, 전남·북 도서 및 해안 피해 발생
 - (해수욕장) 만리포 등 15개소
 - ※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국토해양부)에 반영('09. 10)

2) 추진경과

- 방제 현황
 - 충남 및 전남·북 일원 오염지역에 대한 기본적 방제활동 종료
 - ※ 해상방제('08. 1. 8), 해안방제('08. 7. 7), 도서방제('08. 10. 10) 완료
 - 현재, 모니터링 및 수시 방제 체제로 전환

3) 성과와 반성

- 유류오염사고 피해어장 복원 추진
 - '10년 223억 원을 투입 어장복원 프로그램 개발 등 어장환경개선

4) 향후 추진계획

□ 유류 피해어장 환경 복원을 통해 어업인 생계안정 도모

- 자연회복에 의한 피해어장 복원을 기본원칙으로 이를 촉진 또는 가속화하여 생업과 직결되는 분야 중점 지원('10년 223억 원)
- 주요 추진내용
 - 어장복원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어장 운영(25억 원)
 - 패류(굴·바지락 등) 채묘장 조성(25억 원)
 - 객토·경운·침체어망 수거 등 어장환경 개선(172억 원)
 - 피해어업인과 소통을 위한 정책 홍보(1억 원)

□ 갯벌어장 활용 및 관리제도 마련

- 갯벌을 중심으로 대규모 갯벌어업단지 조성
- 시범사업(3년간)을 거쳐 신 갯벌어업 모델의 서남해안 전역 확산
- 주요 추진내용 : 5년 프로젝트 추진('10년~'14)
 - 친환경 갯벌어업 개발 제도 도입·운영(법률 제정)
 - 중장기 수출주도형 갯벌어업단지 조성계획 수립
 - 시범사업 추진 및 단계적 확대
 - 신 갯벌어업 모델 확산(미래 갯벌어업 모델 가능)

□ 중장기 투자계획 예산 확보 추진

(단위 : 억원)

사업명	합계	1단계 (765억 원)			2단계 (1,099억 원)			3단계 (1,450억 원)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총계	3,821	371	433	466	358	373	358	373	358	373	358
(신규분야) 소계	1,577	216	243	243	125	125	125	125	125	125	125
○ 환경조사 및 복원프로그램 개발(신규)	243	18	25	25	25	25	25	25	25	25	25
○ 서식생태계 개선(신규)	1,334	198	218	21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어장생산력 증진(기존)	2,244	155	190	223	233	248	233	248	233	248	233

참 고 1

유류오염피해 배(보)상 청구·접수 현황

(‘09. 11. 2 현재)

○ 선주책임제한채권 신고 현황 (‘09. 5. 8 종료)

구 분		계	%	수 산	%	비수산	%
선주책임 제한채권 신고 (대전지법 서산지원)	건 수	126,313	100	110,558	88	15,755	12
	신고액 (억원)	35,444	100	18,816	53	16,628	47

※ 어업별(건/억원) : 양식 6,509/4,431 (6%), 어선 8,974/3,011 (8%), 맨손 88,632/8,208 (80%), 기타 6,443/3,165 (6%)

- 어업별 신고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계	양 식	어 선	맨손어업	기 타
합 계	건 수	110,558 (100%)	6,509 (5.9)	8,974 (8.1)	88,632 (80.2)	6,443 (5.8)
	신고액	18,816 (100%)	4,431 (23.6)	3,012 (16.0)	8,208 (43.6)	3,165 (16.8)
충 남	건 수	57,687	2,970	5,046	47,019	2,652
	신고액	13,141	3,290	2,338	5,150	2,363
전 남	건 수	29,042	2,867	1,897	21,523	2,758
	신고액	3,371	613	244	1,847	667
전 북	건 수	22,953	410	1,924	19,907	712
	신고액	2,165	491	405	1,187	82
기 타	건 수	1,476	262	110	183	321
	신고액	139	36	25	24	54

○ Hebei Spirit센타 클레임 접수·사정(査定) 현황 (‘09. 11. 2 현재)

구 분	HSC claim 접수	IOPC Fund 승인 결과			지 급 액 (건/억원)	한 국 정 부	
	건수 / 억원	계 (건)	피해인정 (건/억원)	반려 (건)		대부액 (건/억원)	대지급액 (건/억원)
계	8,997 / 12,804	1,907	991 / 777	1,023	839 / 694	896 / 29.3	모든 업종 285 / 153.4
수 산	1,277 / 8,955	193	145 / 93	48	137 / 89	575 / 18.9	
	어업	586 / 6,907	1	- / -	1	- / -	
양식	691 / 2,048	192	145 / 93	47	137 / 89	36 / 2.8	
비수산	7,720 / 3,849	1,724	846 / 684	975	702 / 605	321 / 10.4	

* 클레임 접수 건수 : 다수인(맨손어업자 등)으로 구성된 그룹별 접수된 건수가 포함됨.

* 맨손어업자(‘09.10.31 현재) : HSC 제출 55,743명 → HSC에 클레임 접수 30,517명(피해 사정기관 Survey 종료)

참 고 2

주요 대형 유류오염 사고의 피해보상 추이

1. 사고 개요

사고선박	사고일시	오염지역	사고원인	유출량	중점 방제기간
씨프린스	'95. 7	남해안	좌초	원유 0.5만 톤	4개월
나호드카	'97. 1	일 본	선체 절단	중유 0.6만 톤	6개월
에 리 카	'99.12	프랑스	"	중유 1.4만 톤	6개월
프레스티지	'02.11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	중유 6.3만 톤	6개월
허베이스피리트	'07.12	서해안	충돌	원유 1.1만 톤	7개월 ('07.12~'08.6)

2. IOPC Fund 보상금 지급 추이

(단위 : 억 원)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최 종
씨프린스	총 지급액	140	197	339	411	502
	방제 비용	140	197	197	211	207
	피해 보상	-	-	142	200	295
나호드카	총 지급액	412	495	875	1,540	2,312
	방제 비용	407	486	867	1,532	1,855
	피해 보상	5	9	9	8	457
에 리 카	총 지급액	32	408	783	1,397	1,823 (진행중)
	방제 비용	1	25	60	89	449 (진행중)
	피해 보상	31	383	723	1,308	1,374 (진행중)
프레스티지	총 지급액	807	807	807	1,597	1,678 (진행중)
허 베 이 스 피 리 트	총 지급액	543 (진행중)				
	방제 비용	542.5 ('08년말 기준)				
	피해 보상	0.5 (진행중)				

□ 추진 배경

- 오염된 수산물이 유통을 통제하는 등 수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어제한 조치 ('07.12.7)

□ 추진 경과

- 수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사항 긴급시달 ('07.12.7)
 - 오염된 수산물의 채취, 유통통제 및 출어제한 등
- 조업재개 방안 검토 및 관련사항 시달 ('07.12.27)
 - 기관별 역할 및 기능 분담, 조업재개 결정 절차, 조업재개 후 수산물 안전처리 등
- 조업재개 관련, 민관합동 4차례 실무협의회 개최 ('08.1.22, 태안군청)
 - 출어 및 오염 수산물 등에 대한 포획·채취·유통 통제조치 해제 여부 등 논의('08.2.20, 태안군청)
 - 수산물 안전성 관련 각 기관별 조사사항을 점검하고 어업재개를 위한 조치방안 등에 대해 논의('08.2.21 해양수산부)
 - 모항 등 오염이 심하거나 방제작업 중인 해역 등을 제외하고 어업별로 단계적인 조업재개를 실시기로 함('08.3.8 농림수산식품부)
 - 태안선주연합회 저층 형망조사 결과에 대한 민관합동 검증·조사 필요성에 대한 논의('08.3.28 태안군청)
- 태안군 선주연합회가 저질에 대한 타르조사 실시('08.3.22 형망 12척)
- 태안 유류피해지역 조업재개를 위한 시험조업 실시('08.4.4)
- 태안군 선주연합회 차관 면담으로 정부의 신속한 결정요구('08.4.7)
- 조업현황 관련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08.4.10)
 - 조업현황 파악 및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통한 조업재개 추진방안 마련

□ 조업재개 조치

○ 조치 배경

- '08.2월말 수산물 안전성 확인을 위해 어업인들이 조업재개 정식 요청
- 연구기관의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거쳐 조업재개 여부 검토 추진
- * 연구기관(수산과학원, 수산물품질검사원, 해양연구원 등)은 유류오염 사고지역에 대한 해수, 해양생태계 변화 및 수산물의 인체 위해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추진

기본방제 완료 : 해상 '08.1.8 해안 '08.7.7 도서 '08.10.10

○ 조업재개 추진 절차

수산물 안전성 검사의뢰(지자체) → 계획수립(우리부 → 지자체, 과학원통보)
→ 안전성 조사결과 보고(과학원 → 우리부) → 조사결과 통보(우리부 →
지자체) → 조업재개 추진(지자체)

※ 안전성 조사를 위한 시료채취(우리부·지자체·과학원·이해관계 어업인 참여)

□ 어업별 조업재개

- '08.4.18 : 어선어업 (소원면 · 원북면 · 이원면 제외)
- '08.5. 9 : 어선어업 (소원면 제외)
- '08.5.19 : 마을어업 (소근진만, 천수만)
- '08.6.10 : 마을어업 (가로림만, 안면도 일원)
- '08.7.24 : 어선어업 (소원면)
- '08.8.13 : 맨손 · 나잠어업 (안면읍 · 남면 · 근흥면 · 이원면)
- '08.8.27 : 형망어업
- '08.9. 3 : 마을 · 맨손 · 나잠 (소원면 · 원북면)

□ 조사 항목

○ 위해성 평가

유류의 발암성 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에 오염된 수산물의 섭취를 통하여 인체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해성 여부 평가

○ 관능 평가

미각·후각 검사를 통해 식품으로서의 적합성 여부 판정

□ 조사 결과

○ 태안 일부지역의 패류(굴 등)를 제외한 나머지 어종은 인체에 위해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

○ 관능 평가에서 퇴적물내 타르 검출 및 일부 패각에서 기름 흔적 확인 (12개 조사지역 중 11개 지점에서 타르 확인 / 4.4 형망 시험조업)

* 키조개 등 패류는 관능검사에서 문제가 있는 데도 위해성 평가에서는 인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

◆ 대부분의 수산물은 인체에 위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안전성은 확인되었으나, 관능 평가에서 패류는 문제점 노출
 ☞ 안전성이 확인된 어류 등은 조업재개, 인체에 유해성이 있는 패류에는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포획금지 권고

※ 수산물의 인체 위해성 평가 및 관능검사 외에 조업 현장에서 육안으로 식별되는 유류가 발견되어, 조업 시 수산물에 흡착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는 정책적 판단 필요

VI. 주요통계 및 참고자료

1. 어업자원관 예산 내역	219
2. 수산업·어촌 주요통계	221
3. 어업자원관실 소관 주요통계	223
가. 근해어업 허가처분 현황	223
나. 연안어업 허가처분 현황	224
다. 구획어업 허가처분 현황	224
라. 신고어업 현황	225
마. 정치망어업 면허처분 현황	225
바. 마을어업 면허처분 현황	225
사. 어선등록 현황	226
아. 양식어업 면허·허가 건수 및 면적	227
자. 내수면어업 현황	230
차. 수산물 생산량 현황	233
카. 유어·낙시 현황	237
타. 수산자원관리 정보화 시스템 활용 현황	241
4. 어업자원관 소관법령 현황	242
가. 법령개요	242
나. 훈령(고시) 현황	253
5. 수산동식물 채포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255
6. 어업자원관 소관 법인 현황	260
7. 어업자원관 소관 위원회 현황	263
8. 연근해 어업별 조업 모식도	268
가. 수산업법상 수산업의 분류	268
나. 면허·허가·신고어업의 정의 및 어업종류	269
다. 허가어업의 종류	271
【근해어업】	271
【연안어업】	282
【구획어업】	287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a)	2009년 (b)	2010년 안(c)	증 감		비고
				b-a	c-b	
총 계	528,485	338,304	309,573	-190,181	-28,731	
일반회계	20,965	23,259	53,342	2,294	30,083	
○소규모 바다목장(지자체)	4,800	6,000	8,500	81,200	2,500	
○총허용어획량제도운영	915	1,019	1,735	104	716	
○바다목장 조성	12,200	13,000	17,917	800	4,917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운영	1,300	1,840	2,190	540	350	
○지속가능한어업생산체계 구축	1,750	1,400	1,400	-350	0	
○유류피해지역 어장생태복원	-	-	21,600	-	-	
농특회계	406,716	195,762	155,303	-210,954	-40,459	
○생산이력제도입	1,300	1,800	1,800	500	0	
○수산물 위생관리	3,373	2,550	2,750	-823	200	
○해역별위생등급 설정관리	1,853	2,052	2,052	199	0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	6,700	7,000	6,300	300	-700	
○친환경양식기반시설구축	3,200	3,200	4,700	0	1,500	
○친환경양식기반시설구축(지자체)	2,200	1,900	7,200	-300	5,300	
○친환경어구보급지원	3,000	4,870	5,035	1,870	165	
○해양심층수활용 시설지원	5,000	5,000	1,500	0	-3,500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이차보전)	1,300	7,313	(9,742)	6,013	2,429	금용이차보전 으로 통합
○내수면자원조성	200	-	-	-200	0	
○내수면자원조성(지자체)	1,600	1,205	3,834	-395	2,629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940	970	919	30	-51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지자체)	7,150	11,500	11,975	4,350	475	
○연근해어선 감척(지자체)	368,800	129,800	77,500	-239,000	-52,300	
○연근해어선 감척	100	100	-	0	-100	
○바다숲조성사업	-	10,000	15,000	10,000	5,000	
○토종종묘보급	-	1,000	-	1,000	-1,000	내수면자원 조성통합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	-	5,502	3,912	5,502	-1,590	
○수산동물질병관리	-	-	784	0	784	기금에서 이관
○적조피해발생직전 양식어류 방류	-	-	300	0	300	기금에서 이관

구 분	2008년 (a)	2009년 (b)	2010년 안(c)	증 감		비고
				b-a	c-b	
광특회계	67,004	69,774	63,774	2,770	-6,000	
○ 웰빙표고넙치브랜드개발	-	550	250	550	-300	광역발전 (부처편성)
○ 토속어류산업화센타건립	366	-	1,000	-366	1,000	"
○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제주)	450	450	500	0	50	"
○ 양식어장관리사업	5,428	5,719	4,658	291	-1,061	지역발전 (시도편성)
○ 인공어초사업	31,780	31,810	28,547	30	-3,263	"
○ 수산종묘관리사업	14,236	14,152	13,575	-84	-577	"
○ 내수면어업생산시설	2,022	2,878	3,540	856	662	"
○ 김육상채묘및냉동망 보관	2,750	1,000	-	-1,750	-1,000	"
○ 양식어장관리사업(제주)	300	300	270	0	-30	"
○ 인공어초사업(제주)	6,700	8,200	7,380	1,500	-820	"
○ 수산종묘관리사업(제주)	2,572	2,893	3,604	321	711	"
○ 친환경양식기반조성(제주)	400	626	-	226	-626	"
○ 안전한수산물공급체계구축	-	96	-	96	-96	"
○ 고효율어류사료생산공장건립	-	600	-	600	-600	"
○ 복합낚시공원조성사업	-	500	450	500	-50	농어촌지원 농업진흥 지역개발
수발기금	33,800	49,509	37,154	15,709	-12,355	
○ 연안어장 및 내수면환경개선	-	22,000	13,000	22,000	-9,000	
○ 출하조절	3,500	4,200	3,781	700	-419	
○ TAC참여어업인경영개선	15,000	12,500	11,875	-2,500	-625	
○ 양식어업지원	13,300	8,105	7,699	-5,195	-406	
○ 어망생산운영자금	700	600	-	-100	-600	
○ 순환여과식양식시설지원	700	700	700	0	0	
○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	600	600	-	0	-600	
○ 생계소득및안정	-	99	99	99	0	
○ 수산동물질병관리(살처분)	-	335	-	335	-335	농특이관
○ 수산동물질병관리(방역)	-	370	-	370	-370	농특이관

※ '08. 9 추경예산 : 연근해어선감척(2,350억원), 환경친화형배합사료이차보전(13억원) 포함

※ '09. 4 추경예산 : 연안어장및내수면환경개선(20억원)

※ '10년안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기준임

구 분	내 용	농업부문 통계
어가수 : 71,04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년(73,934가구) 대비 4.1% 감소 - 어로어업 48,945가구(69%), 양식어업 22,101가구(31%) * 우리나라 농어가수(128만호)의 5.5% * 우리나라 총가구수(1,667만호)의 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수 : 121만호 - 07년(123만호) 대비 1.6% 감소
어가인구 : 19만2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년(20만2천명) 대비 5% 감소 * 우리나라 농어가인구(338만명)의 5.6% * 우리나라 총인구(4,841만명)의 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인구 : 319만명 - 07년(327만명) 대비 2.7% 감소
어가소득 : 3,118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년(3,067만원) 대비 1.7% 증가 (’08. 표본교체에 따른 시계열상 단층문제가 있음) * 농가소득의 102% * 전국(비농어가) 평균소득(4,044만원)의 77%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4,674만원)의 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소득 : 3,052만원 - 07년(3,197만원) 대비 4.5% 감소
어가부채 : 3,359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년(3,441만원) 대비 2.4% 감소 * 농가부채(2,579만원)의 130% * 전국 가계부채평균(4,128만원)의 8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부채 : 2,579만원 - 07년(2,995만원) 대비 13.9% 감소
어업 부가가치 : 2조 1,74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년(2조1,406억원) 대비 1.6% 증가 * 농림어업 총부가가치(23조 4,411억)의 9.3% * 국내총생산(GDP/1,024조원)의 0.2% (농업은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업 부가가치 : 20.2조원 - 07년(21.9조원) 대비 8.2% 감소
수산물 생산량 : 336만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년(328만톤) 대비 2.6% 증가 - 연근해 129만톤(38%), 양식 138만톤(41%), 원양 67만톤(20%), 내수면 3만톤(1%) - 어류 145만톤(43%), 해조류 94만톤(28%), 패류 43만톤(13%), 연체류 40만톤(12%) * 세계 수산물생산량(15,635만톤)의 2.1% (세계 12위, ’07 기준) 	

구 분	내 용	농업부문 통계
수산물 생산액: 6조 3,55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년(5조7,519억원) 대비 10.5% 증가 - 연근해 3조 2,297억, 양식 1조 5,225억, 원양 1조 3,274억, 내수면 2,753억 * 농림어업 생산액(46조176억)의 1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업 생산액 : 39.7조원 - 07년(35.8조원) 대비 10.7% 증가
수산물 수출 : 14.5억불, 614천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년(12.3억불) 대비 18% 증가 - 일본 6.9억불(48%), 중국 1.9억불(13%), 태국 1.2억불, 미국 1.1억불 - 참치 2.9억불, 오징어 1.3억불, 김 0.8억불, 넙치 0.5억불, 굴 0.5억불 順 * 농림축수산물 수출(44억불)의 33% * 우리나라 총수출(4,220억불)의 0.3% (세계 26위, '07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물 수출 : 29.5억불 - 07년(25.3억불) 대비 16.7% 증가
수산물 수입 : 29.5억불, 4,186천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년(30.6억불) 대비 3.3% 감소 - 중국 9.9(34%), 베트남 3.1, 일본 2.2, 미국 1.4, 태국 1.0억불 - 명태 3.3억불, 새우 2.1억불, 조기 1.4억불, 낙지 1.3억불, 갈치 0.9억불 順 * 농림축수산물 수입(232억불)의 12.7% * 우리나라 총수입(4,353억불)의 0.7% (세계 9위, '07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물 수입 : 201억불 - 07년(162억불) 대비 24% 증가
수산물 자급율: 7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년(70.8%) 대비 7.8%p.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 자급율(사료용 포함) : 26.2% ○ 식량 자급율(사료용 제외) : 49.2% * '08 식량 자급율(사료용 포함) : 쌀(94.4), 보리(36.1), 밀(0.4), 옥수수(0.9), 콩(7.1)
어선수 : 80,766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년(85,627척) 대비 6% 감소 - 5톤 이하(70,602척)가 전체의 87% - FRP 64,072척(79%), 목선 14,563(18%), 강선 2,097(2.5%) 	

3

어업자원관실 소관 주요통계

가 근해어업 허가처분 현황('08년)

(단위 : 척)

업종별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근해어업 계		3,957	326	256	114	26	464	355	160	511	715	658	372
대형 기선저인망	외끌이	46	21	-	-	-	-	-	-	18	-	7	-
	쌍끌이	46	27	6	-	-	-	-	-	3	-	10	-
중형 기선저인망	동해구	42	-	-	-	-	18	-	-	-	24	-	-
	외끌이서남구	43	11	-	9	-	-	-	-	13	-	9	1
	쌍끌이서남구	9	-	-	-	-	-	-	-	1	-	8	-
근해트롤	대형트롤	60	54	-	-	-	-	-	-	-	-	6	-
	동해구트롤	39	-	-	-	-	6	-	-	-	33	-	-
근해선망	대형선망	30	28	-	-	-	-	-	-	-	1	1	-
	소형선망	49	1	1	-	-	3	5	8	4	10	17	-
근해채낚기		896	93	31	41	1	209	25	15	38	300	86	57
기선권현망		80	1	-	1	-	-	-	-	16	-	62	-
근해자망		838	35	78	40	3	120	52	21	148	184	74	83
근해안강망		259	1	31	1	4	-	113	26	83	-	-	-
근해봉수망	근해봉수망	53	3	-	3	-	3	-	1	7	24	5	7
	자리돔들망	5	-	-	-	-	-	-	-	-	-	-	5
잠수기		235	2	11	-	4	7	14	8	52	11	126	-
근해통발	장어통발	80	7	-	-	-	-	5	-	1	-	67	-
	기타통발	262	5	22	6	4	39	30	4	18	79	53	2
	문어단지	47	1	3	-	2	1	-	1	20	4	2	13
패류형망		129	-	28	-	6	-	62	33	-	-	-	-
근해연승		709	36	45	13	2	58	49	43	89	45	125	204

나 연안어업 허가처분 현황('08년)

(단위 : 건)

	건 수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연안어업	66,660	2,761	2,186	1,390	1,252	3,832	8,930	2,399	16,455	5,906	18,310	3,239
연안자망	20,629	733	799	458	591	1,830	3,356	897	3,687	2,784	5,021	473
연안안강망	648	-	108	-	52	-	276	130	75	-	7	-
연안선망	319	7	-	-	-	19	44	20	86	24	103	16
연안통발	8,559	680	116	370	58	224	390	67	1,537	1,446	3,646	25
연안들망	948	53	-	59	-	3	-	-	38	20	36	739
연안조망	1,038	-	-	-	-	-	812	226	-	-	-	-
연안선인망	6	-	-	-	-	6	-	-	-	-	-	-
연안복합	34,513	1,288	1,163	503	551	1,750	4,052	1,059	11,032	1,632	9,497	1,986

다 구획어업 허가처분 현황('08년)

(단위 : 건)

	건 수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구획어업	7,138	43	268	59	89	357	1,076	201	3,858	189	998	-	
이 동 성	형 망	493	-	-	-	-	269	-	205	19	-	-	
	새우조망	936	-	-	-	-	-	-	670	-	266	-	
	실뽕장어안강망	834	-	161	-	65	-	236	120	252	-	-	
정 치 성	지인망	17	3	-	3	-	-	-	-	10	1	-	
	선인망	3	-	-	-	-	-	-	2	-	1	-	
	호 망	338	10	-	-	-	55	7	101	5	160	-	
	건 망	308	17	-	49	-	23	-	-	63	156	-	
	건간망	399	-	95	-	21	-	2	226	-	55	-	
	주목망	575	-	-	-	-	-	500	50	25	-	-	
	승 망	92	-	-	-	-	-	-	82	-	10	-	
	각 망	1,421	11	-	7	-	10	109	18	926	92	248	-
	부 망	36	-	-	-	-	-	-	-	-	-	36	-
	장 망	15	2	-	-	-	-	-	-	-	-	13	-
	낭장망	1,656	-	-	-	-	-	222	13	1,369	-	52	-
	해선망	3	-	-	-	3	-	-	-	-	-	-	-
안강망	12	-	12	-	-	-	-	-	-	-	-	-	

라 신고어업 현황('08년)

(단위 : 건)

	건 수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고어업	100,984	592	4,444	1,375	745	650	57,377	13,629	19,374	2,100	698	-
맨손어업	94,768	5	4,381	3	745	1	56,546	13,610	19,012	435	30	-
나잠어업	6,144	587	63	1,372	-	597	831	19	343	1,665	667	-
투망어업	72					52			19		1	

마 정치망어업 면허처분 현황('08년)

(단위 : 건/ha)

정치망	건 수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건수	540	1		6		110	8	16	46	93	204	56
면적	7,591	3		61		2,171	65	107	683	2,645	1,720	136

바 마을어업 면허처분 현황('08년)

(단위 : 건/ha)

마을어업	건 수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건수	2,897	29	114	22	106	83	275	79	1,295	151	616	127
면적	118,683	1,696	1,522	924	4,369	9,945	6,061	1,715	53,553	6,082	18,386	14,431

사 어선등록 현황('08.12말 기준)

□ 선종별

구분	동력	무동력	계	강선	목선	FRP선	기타
척수	78,280 (97%)	2,486 (3%)	80,766	2,097 (2.6%)	14,565 (18%)	64,078 (79.3%)	26 (-)
톤수	619,098 (99.6%)	2,239 (0.4%)	621,337	394,359 (63.5%)	29,867 (4.8%)	196,772 (31.6%)	339 (-)

※ 일반선박 : 8,194척(국토부 등록)

□ 톤급별

구분	계	2톤미만	2~5톤	5~10톤	10~50톤	50~100톤	100~200톤	200톤이상
척수	80,766	53,481 (66.2%)	17,121 (21.2)	6,163 (7.6%)	2,298 (2.8%)	900 (1.1%)	311 (0.4%)	492 (0.6%)
톤수	621,337	55,545 (8.9%)	62,300 (10%)	47,994 (7.7%)	54,871 (8.8%)	65,838 (10.6%)	45,348 (7.3%)	289,441 (46.6%)

□ 선령별

구분	계	5년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1년이상
척수	80,766	17,311 (21.4%)	22,356 (27.7%)	20,931 (25.9%)	10,428 (12.9%)	9,740 (12%)
톤수	621,337	73,182 (11.8%)	77,333 (12.4%)	96,156 (15.5%)	99,970 (16%)	274,696 (44.2%)

□ 어업별

구분	계	원양	근해	연안	양식	내수면	기타
척수	80,766	448 (0.6%)	3,385 (4.2%)	53,792 (66.6%)	17,104 (21.1%)	4,040 (5%)	1,997 (2.5%)
톤수	621,337	242,666 (39%)	148,032 (23.8%)	132,676 (21.4%)	28,270 (4.5%)	3,728 (0.6%)	65,965 (10.6%)

□ 시도별

구분	계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척수	80,766	4,621 (5.7%)	14 (-)	2,119 (2.6%)	1,277 (1.6%)	2,095 (2.6%)	3,254 (4%)	523 (0.6%)	6,346 (7.9%)	3,831 (4.7%)	33,682 (41.7%)	4,119 (5.1%)	16,421 (20%)	2,464 (3.1%)
톤수	621,337	319,895 (51.5%)	6 (-)	23,495 (3.8%)	5,024 (0.8%)	4,070 (0.7%)	20,393 (3.3%)	250 (-)	23,244 (3.7%)	13,901 (2.2%)	93,538 (15%)	31,163 (5%)	67,697 (10.9%)	18,661 (3%)

아

양식어업 면허 · 허가 건수 및 면적

□ 양식어업 면허

(단위 : 건, ha)

구 분	2007		2008		전년도대비(%)		비 고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총 계	9,352	132,416	9,555	136,083	102.2	102.8		
해조류	2,425	76,183	2,603	79,504	107.3	104.4		
김	948	55,672	960	56,562	101.3	101.6		
다시마	514	6,816	625	8,231	121.6	120.8		
미역	455	5,308	451	5,367	99.1	101.1		
기타	508	8,387	567	9,344	111.6	111.4	툇, 파래 등	
패 류	5,577	49,261	5,586	49,169	100.2	99.8		
굴	1,182	7,641	1,211	7,979	102.5	104.4		
전복	1,174	7,822	1,147	7,070	97.7	90.4		
피조개	857	8,053	848	7,957	98.9	98.8		
바지락	633	6,353	606	6,106	95.7	96.1		
새고막	850	9,771	862	9,921	101.4	101.5		
홍합	171	785	176	799	102.9	101.8		
가리비	126	1,280	107	1,021	84.9	79.8		
기타	584	7,556	629	8,316	107.7	110.1	잔주조개, 동죽 등	
어 류 등	1,350	6,972	1,366	7,410	101.2	106.3		
어 류	소 계	560	1,962	553	1,988	98.8	101.3	
	가두리	438	1,174	434	1,174	99.1	100.0	
	축제식	122	789	119	813	97.5	103.0	
우렁챙이	494	1,731	506	1,886	102.4	109.0		
새우	64	688	65	655	101.6	95.2		
미더덕	159	619	154	603	96.9	97.4		
기타	73	1,972	88	2,278	120.5	115.5	해삼 등	

□ 양식어업 허가

(단위 : 건, ha)

구 분	2007		2008		전년도대비(%)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총 계	3,804	4,800	3,764	4,647	98.9	96.8
해상종묘	878	2,930	867	2,870	98.7	98.0
굴	233	624	239	619	102.6	99.2
피조개	213	1,016	218	1,025	102.3	100.9
미역	199	554	198	552	99.5	99.6
새고막	141	486	120	426	85.1	87.7
우렁쉥이	55	116	54	115	98.2	99.1
기 타	37	134	38	133	102.7	99.3
육상종묘	1,253	135	1,273	136	101.6	100.7
전 복	487	36	493	36	101.2	100.0
어 류	384	73	392	72	102.1	98.6
우렁쉥이	139	2	139	2	100.0	100.0
김·미역	109	10	108	10	99.1	100.0
굴	22	1	19	1	86.4	100.0
기 타	112	13	122	15	108.9	115.4
육상양식	1,673	1,735	1,624	1,641	97.1	94.6
수조식	1,313	276	1,276	271	97.2	98.2
어 류	876	243	864	239	98.6	98.4
전 복	390	27	372	27	95.4	100.0
기 타	47	6	40	5	85.1	83.3
축제식	360	1,459	348	1,370	96.7	93.9
새 우	233	1,024	232	937	99.6	91.5
어 류	109	361	100	353	91.7	97.8
기 타	18	74	16	80	88.9	108.1

□ 불법 무기산 사용 단속실적

(단위 : 드럼(200ℓ), 명)

연도별	구분	합계	부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
'00	적발량	625.5					625.5
	적발인원	50					50
	조치사항						행정·사법, 폐기조치
'01	적발량	774.3					774.3
	적발인원	81					81
	조치사항						행정·사법, 폐기조치
'02	적발량	332.3	0.8	14.9			316.6
	적발인원	28	8	5			15
	조치사항		경고	사법조치			행정·사법, 폐기조치
'03	적발량	293.8	0.1				293.7
	적발인원	31	1				30
	조치사항		경고				행정·사법, 폐기조치
'04	적발량	313.3	0.1	3	15	84.5	210.7
	적발인원	52	1	2	2	1	46
	조치사항		경고	사법조치	사법조치	사법조치, 경고	행정·사법, 폐기조치
'05	적발량	240.2	0.2	2.5		63	174.5
	적발인원	32	2	2		13	15
	조치사항		경고	경고		사법조치, 경고	행정·사법, 폐기조치
'06	적발량	182		60		8.8	113.2
	적발인원	12		1		-	11
	조치사항			사법조치, 무주물처리		무주물처리	행정·사법, 폐기조치
'07	적발량	457.6	2	10.5	70.8	225.2	149.1
	적발인원	28	1	4	5	3	15
	조치사항		사법조치 행정처분		행정처분	사법처분	행정·사법,
'08	적발량	230.4					230.4
	적발인원	26					26
	조치사항						행정·사법, 무주물(7)

자 내수면어업 현황

□ 내수면어업권 현황

○ 내수면어업 추이(2001~2008)

(단위 : 건)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7,910	8,198	8,856	8,558	8,517	8,559	8,363	8,471
면허	219	211	199	166	155	146	115	92
허가	4,889	4,712	4,991	4,973	4,820	4,934	4,882	4,962
신고	2,802	3,275	3,666	3,419	3,542	3,479	3,366	3,417

○ '08년 시·도별 내수면어업 현황

(단위 : 건)

구분	합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면허	92	0	0	1	0	0	0	0	12	0	2	26	23	15	1	12	0
허가	4,962	0	276	19	17	0	2	2	1,356	774	519	425	152	411	305	691	13
신고	3,417	0	49	39	10	3	2	11	548	184	281	315	786	489	329	363	8

○ 내수면 양식어업 경영체(사유수면) 추이(2003~2008)

(단위 : 개소)

양식어종	'03	'04	'05	'06	'07	'08
합 계	3,124	2,923	2,786	2,649	2,471	2,396
잉 어	335	317	320	343	229	277
향 어	155	140	105	86	74	66
뱀장어	389	417	457	480	468	512
송 어	321	296	268	250	246	224
기 타	1,924	1,753	1,636	1,490	1,454	1,317

□ 내수면양식장 현황

○ 내수면양식장(사유수면) 현황(2008)

(단위 : 개소, m²)

구분	합 계		뱀장어		송어류		메기류		기 타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2,396	7,675,040	512	2,215,411	224	520,697	309	1,330,360	1,351	3,908,572
서울	0	0	0	0	0	0	0	0	0	0
부산	49	132,568	1	4,950	0	0	2	5,720	46	121,898
대구	4	20,753	0	0	0	0	1	9,000	3	11,753
인천	32	140,777	7	9,740	0	0	10	23,327	15	107,710
광주	3	2,371	0	0	0	0	0	0	3	2,371
대전	2	2,279	0	0	1	682	0	0	1	1,597
울산	11	42,062	1	9,800	0	0	0	0	10	32,262
경기	251	348,347	27	70,825	12	59,103	60	162,608	152	355,811
강원	140	339,666	4	3,944	90	276,744	3	7,108	43	51,870
충북	174	425,012	4	5,795	38	54,891	28	136,436	104	227,890
충남	232	936,950	22	99,875	11	18,298	58	191,692	141	627,085
전북	759	2,596,849	148	592,245	18	40,297	106	587,724	487	1,376,583
전남	443	1,848,994	275	1,302,749	0	0	22	82,906	146	463,339
경북	129	313,132	1	4,686	49	66,572	12	75,929	67	165,945
경남	160	478,982	19	66,900	5	4,110	7	47,910	129	360,062
제주	7	46,298	3	43,902	0	0	0	0	4	2,396

○ 내수면 미신고 어업(사유수면) 현황(2008)

(단위 : 개소, m²)

시·군	계		육상양식		관상어양식		낙시업		기타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계	274	1,176,866	131	707,996	2	6,635	137	456,132	4	6,103
서울	-	-	-	-	-	-	-	-	-	-
부산	-	-	-	-	-	-	-	-	-	-
인천	3	9,079	-	-	-	-	3	9,079	-	-
대구	1	6,314	-	-	-	-	1	6,314	-	-
광주	-	-	-	-	-	-	-	-	-	-
대전	-	-	-	-	-	-	-	-	-	-
울산	1	150	1	150	-	-	-	-	-	-
경기	109	334,773	7	22,589	2	6,635	100	305,549	-	-
강원	17	55,610	2	2,034	-	-	15	53,576	-	-
충북	22	132,082	20	127,662	-	-	2	4,420	-	-
충남	11	43,859	5	14,000	-	-	6	29,859	-	-
전북	31	259,142	26	249,724	-	-	1	3,315	4	6,103
전남	46	151,937	46	151,937	-	-	-	-	-	-
경북	3	4,000	0	0	-	-	3	4,000	-	-
경남	30	179,920	24	139,900	-	-	6	40,020	-	-
제주	-	-	-	-	-	-	-	-	-	-

○ 내수면 양식방법별 무신고 양식장(사유수면) 현황(2008)

(단위 : 개소, m²)

시·군	계		지수식양식		유수식양식		순환식양식		기타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계	137	720,734	117	589,331	14	110,518	2	8,881	4	12,004

○ 내수면 주요어종별 무신고 양식장(사유수면) 현황(2008)

(단위 : 개소, m²)

시·군	계		미꾸라지		메기류		향어		잉어		기타(우렁이등)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계	137	720,734	13	92,468	14	73,846	8	41,635	8	26,007	94	486,778

차 수산물 생산량 현황

□ 어업품종별 생산량('03~'08)

(단위 : 천톤)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5년평균	2008	대비 ('08/'07)
합 계		2,487	2,519	2,714	3,032	3,275	2,805	3,360	102.6
일반 해면	소 계	1,097	1,077	1,097	1,109	1,152	1,106	1,286	111.6
	어 류	657	672	722	715	762	706	878	115.3
	갑각류	66	57	62	74	85	69	88	103.6
	패 류	110	100	81	80	74	89	81	109.8
	연체동물	253	233	212	220	206	225	216	105.0
	해조류	5	9	15	14	18	12	14	77.0
	기 타	6	5	5	6	8	6	8	97.7
천해 양식	소 계	826	918	1,041	1,259	1,386	1,086	1,382	99.7
	어 류	72	64	81	91	98	81	99	101.3
	갑각류	2	2	1	2	1	2	2	145.6
	패 류	291	305	326	391	479	358	345	72.0
	해조류	452	537	621	765	793	634	921	116.1
	기 타	8	9	11	10	15	11	15	102.3
원양	소 계	545	499	552	639	710	589	664	93.5
	어 류	397	400	440	433	447	423	443	99.1
	갑각류	21	26	29	34	37	29	36	96.0
	연체동물	126	74	84	172	226	136	185	82.0
내수면	소 계	20	25	24	25	27	24	28	103.7
	어 류	17	20	22	21	23	21	25	108.7
	패 류	2	5	2	3	3	3	3	100.0
	기 타	0	0	0	1	1	0	1	100.0

□ 연도별 천해양식 생산량('03~'08)

(단위 : 톤)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5년평균	2008	대비 (08/07)
합 계		826,245	917,715	1,041,058	1,259,274	1,385,804	1,086,019	1,381,892	99.7
어 류	소 계	72,393	64,476	81,421	91,123	97,663	81,415	98,942	101.3
	넙치류	34,533	32,141	40,059	43,852	41,171	38,351	46,329	112.5
	조피볼락	23,771	19,576	21,297	27,517	35,564	25,545	32,977	92.7
	참 돔	4,417	3,988	5,816	4,386	7,213	5,164	7,477	103.7
	송어류	4,093	3,596	5,500	5,651	4,921	4,752	6,149	125.0
	농 어	2,778	1,850	2,600	1,571	2,361	2,232	2,008	85.0
	감성돔	1,084	1,379	2,671	2,705	2,841	2,136	1,588	55.9
	기타돔류	1,287	1,430	2,048	1,689	1,109	1,513	447	40.3
	전 어	-	181	576	2,519	1,225	900	397	32.4
	기 타	430	335	854	1,233	1,258	822	1570	124.8
갑각류	소 계	2,324	2,426	1,399	1,683	1,321	1,831	1,924	145.6
	흰다리새우	-	-	-	661	858	304	1,794	209.1
	대 하	2,324	2,426	1,399	1,022	463	1,527	130	28.1
패 류	소 계	291,063	304,889	326,255	391,060	478,646	358,383	344,657	72.0
	굴 류	238,326	239,270	251,706	283,296	321,276	266,775	249,976	77.8
	홍합류	15,785	20,409	43,953	81,617	98,121	51,977	67,666	69.0
	바지락	27,494	27,570	17,401	14,327	18,819	21,122	16,268	86.4
	전복류	1,065	1,260	2,062	3,050	4,350	2,357	5,145	118.3
	피조개	4,696	3,134	2,548	2,064	3,015	3,091	1,903	63.1
	고막류	2,440	10,849	3,226	5,063	28,372	9,990	1,637	5.8
	키조개	783	1,997	4,950	872	3,870	2,494	1,318	34.1
	가리비	23	173	215	292	286	198	421	147.2
	기 타	451	227	194	479	537	378	323	60.1
기타 수산 동물	소 계	8,411	9,176	10,827	10,495	15,221	10,826	15,345	100.8
	우렁챙이	3,116	6,349	9,334	7,127	9,318	7,049	7,826	84.0
	미더덕	2,047	2,590	1,412	1,519	2,309	1,975	2,620	113.5
	기 타	3,248	237	80	1,849	3,594	1,802	4,899	136.3
해조류	소 계	452,054	536,748	621,156	764,913	792,953	633,565	921,024	116.2
	미 역	198,172	261,574	281,871	322,371	309,097	274,617	381,076	123.3
	다시마류	25,259	22,510	108,327	201,919	250,049	121,613	285,221	114.1
	김	193,553	228,554	197,610	217,559	210,956	209,646	224,242	106.3
	툇	33,661	22,814	30,058	21,125	20,909	25,713	17,701	84.7
	파 래	1,355	1,154	814	682	684	938	8,003	1,170.0
	기 타	54	142	2,476	1,257	1,258	1,037	4781	380.0

□ 내수면어업 생산량('04~'08)

○ 내수면어업 품종별 생산현황

(단위 : 톤)

구 분	'04	'05	'06	'07	'08	증감율(%) '08/'07
합 계	25,299	23,839	24,843	26,760	29,180	9.0
어로어업	10,302	7,500	7,139	5,803	11,098	91.2
가 물 치	24	13	14	28	46	64.3
메 기	146	229	214	149	232	55.7
미꾸라지	0	1	0	0	0	0
뱀 장 어	37	35	46	40	96	140
붕 어	1,397	1,145	1,051	1,295	2,447	89.0
송 어 류	0	0	0	0	31	순증
잉 어	1,430	1,211	961	825	1,379	67.2
피 라 미	50	21	46	47	113	140.4
패류(재첩 등)	3,981	1,400	1,171	829	1,068	28.8
기 타	3,237	3,445	3,636	2,590	5,686	119.5
양식어업	14,997	16,339	17,704	20,957	18,082	-13.7
가 물 치	278	252	287	285	187	-34.4
민 물 돔	302	268	272	798	388	-51.4
뱀 장 어	5,168	5,775	7,966	10,557	6,480	-38.6
잉 어	231	429	320	269	492	82.9
향 어	702	973	706	800	1,028	28.5
송 어 류	3502	3320	1,878	2,882	2,780	-3.5
기 타	4814	5322	6,275	5,366	6,727	25.4

※ 총생산량 대비 어로어업 38%, 양식어업 62%를 차지함

○ 내수면어종 방류량

- 내수면 수산종묘 매입·방류 현황

(단위 : 천미(천마리),천원)

시도	2004		2005		2006		2007		2008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계	6,724	715,730	8,744	932,443	12,541	1,433,000	10,973	1,730,217	19,449	2,573,500
부산							100	10,000	300	60,000
경기	-	-	-	-	-	-		-	-	-
강원	1,137	138,221	1,366	241,166	2,779	426,000	937	435,050	4,401	805,543
충북	1,296	128,533	723	142,402	1,295	184,000	974	146,000	2,025	278,300
충남	254	76,264	346	114,750	1,852	152,000	3,349	400,990	3,593	330,000
전북	765	85,426	125	9,125	2,086	250,000	1,889	262,249	2,517	491,329
전남	1,117	127,143	3,506	200,000	2,505	171,000	1,756	241,428	1,374	228,628
경북	542	70,143	873	135,000	930	146,000	634	99,000	608	99,000
경남	1,613	90,000	1,805	90,000	1,094	104,000	1,334	135,500	4,631	280,700

- 연어방류 및 채포 실적

(단위 : 천미(천마리))

구분	합계	'67~'04	'05	'06	'07	'08	'08/'07
방류량	303,570	267,838	11,250	7,350	13,790	16,550	120.0
채포량	1,848	1,688	23	45	92	83	△9.7

카 유어·낙시 현황

1) 낙시인구 현황

○ 총 낙시인수 : 573만명 (민물 : 380만명, 바다 : 193만명)

※ '04년 한국수산회에서 한국갯벌에 의뢰조사

<우리나라 기존 낙시인구 추정사례>

- 400만명('92) : 배상우 '낙시가 사회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민물 70%, 바다30%)
- 325만명('95) : 환경부 '낙시면허제 추진계획안' (한국갯벌표본조사)
- 500만명('00) : 조계근 '내수면의 낙시면허제 도입 타당성 분석' (내수면 350만, 해면 150만)

○ 성별

(단위 : 천명)

구 분	계	1년에 한두번	1년에 서너번	1년에 대여섯번	한달에 한두번	일주일에 한두번	일주일에 서너번이상
계	5,736	2,144	1,082	1,311	787	312	100
남 자	4,393	1,403	833	1,096	700	281	80
여 자	1,343	741	249	215	87	31	20

○ 지역별

(단위 : 천명)

구 분	계	1년에 한두번	1년에 서너번	1년에 대여섯번	한달에 한두번	일주일에 한두번	일주일에 서너번이상
계	5,736	2,144	1,082	1,311	787	312	100
서 울	1,285	616	250	303	68	27	21
인천 / 경기	1,585	713	274	267	264	54	13
강 원	235	60	37	74	50	7	7
대전 / 충청	545	143	115	176	46	57	8
광주 / 전라	677	184	125	193	147	21	7
대구 / 경북	495	137	111	125	60	26	36
부산/울산/경남	882	268	158	159	143	117	7
제 주 도	62	23	12	14	9	3	1

2) 내수면 낚시터(허가·신고) 현황

(단위 : 건, ha)

구분	계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701건 (9,516ha)	7 (6.9)	25 (594.5)	2 (1.5)	1 (1.2)	266 (2,487.9)	62 (202.5)	115 (934.3)	109 (5,112.2)	22 (65.3)	21 (18.7)	52 (78.3)	19 (12.3)
허가	488건 (9,415ha)	7 (6.9)	20 (591.5)	1 (1.0)	1 (1.2)	179 (2,450.6)	43 (199.5)	90 (924.3)	100 (5,109.2)	2 (56.2)	8 (7.8)	32 (60.1)	5 (6.3)
신고	213건 (101ha)	- (-)	5 (3.0)	1 (0.5)	- (-)	87 (37.3)	19 (3.0)	25 (10.0)	9 (3.0)	21 (9.1)	13 (10.9)	19 (18.2)	14 (6.0)

* '08. 12월 현재

3) 유어장 지정현황

○ 시·도별 유어장 지정현황('08.12.)

(단위 : 개소, ha)

구분	계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계	121개소 (2,046ha)	1 (18.0)	1 (2.0)	8 (208.9)	3 (253.0)	20 (153.0)	6 (23.7)	13 (240.7)	60 (890.6)	9 (256.0)
- 유료낚시터	67개소 (759ha)	1 (18.0)	1 (2.0)	- (-)	- (-)	- (-)	4 (21.5)	10 (188.2)	51 (529.5)	- (-)
- 체험어장	54개소 (1,287ha)	- (-)	- (-)	8 (208.9)	3 (253.0)	20 (153.0)	2 (2.2)	3 (52.5)	9 (361.1)	9 (256.0)

○ 시·도별 유어장 관련 소득 및 이용인원 현황('08.12.)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계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계	4,999백만원 (656천명)	83 (3)	150 (3)	1,007 (166)	9 (5)	100 (28)	147 (15)	347 (20)	3067 (411)	89 (5)
- 유료낚시터	2,306백만원 (185천명)	83 (3)	150 (3)	- (-)	- (-)	- (-)	142 (14)	282 (15)	1,649 (150)	- (-)
- 체험어장	2,693백만원 (471천명)	- (-)	- (-)	1,007 (166)	9 (5)	100 (28)	5 (1)	65 (5)	1,418 (261)	89 (5)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

4) 낚시어선업 운영현황

○ 낚시어선 규모별 신고 어선 수('09.06.)

(단위 : 척)

구분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4,133 (976) ¹⁾	185 (53)	258 (54)	64 (37)	159 (33)	329 (45)	883 (173)	188 (59)	770 (284)	143 (2)	953 (225)	201 (11)
1톤미만	127 (97)	2 (2)	10 (10)	3 (1)	- (-)	4 (4)	15 (9)	- (-)	87 (68)	3 (1)	3 (2)	- (-)
1~2	944 (546)	71 (39)	22 (18)	29 (19)	11 (11)	48 (28)	68 (41)	25 (9)	314 (194)	21 (1)	324 (180)	11 (6)
2~3	587 (175)	30 (10)	24 (13)	12 (11)	8 (8)	119 (12)	99 (57)	15 (8)	74 (18)	25 (-)	157 (36)	24 (2)
3~4	537 (86)	18 (2)	39 (11)	11 (6)	20 (8)	73 (1)	104 (36)	18 (11)	52 (3)	18 (-)	125 (7)	59 (1)
4~5	827 (52)	32 (-)	63 (2)	5 (-)	41 (6)	48 (-)	243 (28)	41 (13)	74 (1)	50 (-)	179 (-)	51 (2)
5~6	140 (7)	8 (1)	7 (-)	1 (-)	4 (-)	12 (-)	51 (2)	9 (4)	7 (-)	7 (-)	16 (-)	18 (-)
6~7	273 (13)	1 (-)	20 (-)	- (-)	6 (-)	14 (-)	118 (-)	33 (13)	18 (-)	10 (-)	37 (-)	16 (-)
7~8	251 (1)	6 (-)	20 (-)	1 (-)	25 (-)	6 (-)	111 (-)	25 (1)	17 (-)	4 (-)	30 (-)	6 (-)
8~9	550 (-)	3 (-)	12 (-)	- (-)	5 (-)	- (-)	10 (-)	2 (-)	6 (-)	1 (-)	12 (-)	4 (-)
9~10	391 (-)	14 (-)	41 (-)	2 (-)	39 (-)	5 (-)	64 (-)	20 (-)	121 (-)	3 (-)	70 (-)	12 (-)

¹⁾ () : 선외기 설치어선 수

※ 신고척수 : 2009년 6월말 현재 낚시어선업으로 신고된 척수임(낚시어선업은 어한기를 이용하여 영업하므로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이며, 6월말 현재 유효기간이 끝난 낚시어선도 포함됨).

○ 연도별 시·도별 낚시어선업 신고 척수

(단위 : 척)

시도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6.
계	3,637	4,000	4,240	4,401	4,423	5,191	5,115	5,198	5,124	5,027	4,133
부산	153	182	187	171	183	196	185	183	199	156	185
인천	126	233	238	217	260	315	339	283	297	258	258
울산	25	29	28	29	66	56	79	89	94	63	64
경기	43	96	125	156	134	185	197	187	198	193	159
강원	873	843	818	773	752	787	693	640	593	624	286
충남	1,132	1,133	1,186	1,262	1,109	1,289	1,312	1,178	1,160	1,142	883
전북	125	163	181	163	191	185	204	214	209	191	188
전남	500	565	549	616	639	755	766	1,043	904	871	770
경북	31	48	61	84	79	96	84	101	108	135	143
경남	391	527	654	699	802	1,087	993	1,040	1,121	1,178	953
제주	238	181	213	231	208	240	263	240	241	216	201

○ 연도별 시·도별 낚시어선 이용객수

(단위 : 명)

시도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6.
계	585,800	667,340	784,265	1,014,469	1,442,209	1,884,252	2,023,826	2,305,937	1,993,277	2,077,781	1,057,836
부산	13,755	18,460	24,262	37,890	45,888	74,501	79,546	72,599	77,221	92,906	50,265
인천	9,715	59,366	16,103	45,558	76,088	81,379	77,265	51,209	55,678	137,318	85,242
울산	222	136	445	9,750	5,891	20,086	11,958	15,747	10,408	14,823	12,038
경기	5,661	13,019	38,895	35,541	57,256	65,731	52,613	66,498	67,782	50,251	46,078
강원	92,794	116,069	106,890	106,696	99,870	102,227	87,630	99,605	96,717	114,987	34,976
충남	226,578	250,402	201,567	271,817	385,212	451,144	388,414	647,737	380,743	329,101	171,417
전북	5,535	7,523	18,348	34,952	55,840	83,765	96,034	83,401	80,238	72,736	48,700
전남	79,492	43,610	111,536	120,748	90,448	346,756	455,504	778,061	657,453	658,602	283,102
경북	681	2,239	4,287	19,783	39,409	64,922	52,780	37,263	119,693	97,793	98,360
경남	79,492	82,254	167,902	243,925	499,604	505,281	630,475	369,672	376,838	398,701	165,256
제주	71,875	74,262	94,030	87,809	86,703	88,460	91,607	84,145	70,506	110,563	62,402

타

수산자원관리 정보화 시스템 활용 현황

단위프로그램	서비스내용	최종자료 갱신년도	정보조회 건수(%)	비고
총 계			49,225	
EEZ조업정보	한·일/한·중 입어허가 및 실적, 협정수역도, 어선별 소진량 등	2009.01	24,189 (49.1%)	
불법어업정보	불법단속현황, 행정처분현황, 지도선관리 등	2009.01	1,322 (2.7%)	
고래자원정보	한반도 고래류, 고래홍보동영상, 고래흔적·좌초현황	2009.01	1,710 (3.5%)	
어선조업정보	입출항신고현황, 출어선현황 등	2009.01	793 (1.6%)	
TAC운영관리	TAC 어종허가현황, 할당 및 소진량, TAC 소개	2009.01	18,975 (38.5%)	
유펜버운영관리	근무관리, 평가관리, 급여관리 등	2009.01	313 (0.6%)	
자원조성정보	어초소개, 어초투입현황, 적지 및 사후조사	2005.12	460 (0.9%)	
통계정보	어업생산통계, 어업등록 통계, 어선인허가 통계	2009.01	1,233 (2.5%)	
자원조사선 조사	과학어탐, 어체측정, 어란자치어, 해양관측 등	2002.12	102 (0.2%)	
자원분석평가	어황정보, 자원평가정보 등	2006.12	128 (0.3%)	

* 정보조회건수는 2008년도 단위프로그램의 정보조회 건수 임.

1. 법령 개요

<수 산 업 법>

연 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 법률 제295호(1953. 9.9) ○ 개정 : 1990. 8. 1.전문개정, 1995.12.30, 1999. 4.15, 2000. 1.28, 2001. 1.29, 2002. 2. 4, 2004.12.31, 2007. 4.11, 22007. 8. 3, 008. 2.29, 2009. 4.22
제정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에 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며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
구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장 100조의 본문(제1장 : 총칙, 제2장 : 면허어업, 제3장 : 허가 및 신고어업, 제4장 : 어획물운반업, 제5장 : 어업조정, 제6장 삭제, 제7장 : 자원의 보호·관리, 제8장 : 보상·보조 및 재결, 제9장 : 수산조정위원회, 제10장 : 보칙, 제11장 : 별칙)과 부칙으로 구성
주요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은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함 ○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마을어업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 ○ 근해어업, 원양어업의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의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구획어업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면허어업, 허가어업 및 시험 또는 연구·교습어업외의 어업은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하위법령 및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법시행령, 어업등록령, 어업단속공무원의직무에관한규정 ○ 부 령(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의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어획물운반업등록에관한규칙, 유어장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수산업에관한수수료규칙, 연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 선박안전 조업규칙, 수산물의포장및용기에관한규칙, 수산업의장려및진흥을위한자금의용자에관한규칙
소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자원관 어업정책과(제도담당 : ☎ 구내 2358)

<어선법>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 법률 제3829호(1977.12.31) ○ 개정 : 1993. 6. 11. 전문개정, 1996. 8.8, 1997. 12.13, 1999. 4.15. 2008. 3.28. 전문개정, 2009. 5.27. 전문개정
제정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의 건조·등록·설비·검사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향상과 어업생산성 증진으로 수산업 발전을 도모
구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장 53조의 본문(제1장 : 총칙, 제2장 : 어선의 건조, 제3장 : 어선의 등록, 제4장 : 어선의 검사, 제5장 : 삭제, 제6장 : 어선의 연구개발, 제7장 : 삭제, 제8장 보칙, 제9장 : 벌칙)과 부칙으로 구성
주요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이란 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 및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섭에 종사하는 선박을 말함 ○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어선의 소유자는 주로 입항·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함 ○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설비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을 수 있음 ○ 어선 또는 설비를 건조·제조하는 사업장 중 시설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선의 안전조업과 성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음
하위법령 및 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 : 어선법 시행령 ○ 부 령 : 어선법 시행규칙, 어선의등록등에관한수수료규칙 ○ 행정규칙 : 어선건조·개조허가오차허용범위, 어선명칭의크기 및표시방법등에관한고시, 어선톤수측정업무의집행요령, 어선의총톤수측정등에관한대행업무범위, 어선법사무취급요령
소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자원관 어업정책과(어선담당 : ☎ 구내 2363)

<어업자원보호법>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 법률 제298호(1953. 12.12) ○ 개정 : 1966. 4.23 일부개정, 1996. 8. 8 일부개정 2008. 2.29 일부개정
제정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주권선의 법적규정을 보완하여 관할수역내의 어업자원을 보호육성하려는 것임
구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
주요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수역을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과 좌의 제선을 연결함으로써 조성되는 경계선간의 해양을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할수역으로 한다 ○ 관할수역내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허가를 받아야 함 ○ 관할수역에서 허가없이 어업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는 어선·어구·채포물, 양식물 및 그 제품을 몰수함 ○ 이 법을 위반한 범죄의 수사에 있어서는 해군함정의 승무장교, 사병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함
하위법령 및 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 :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 부 령 : 없음
소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자원국 어업정책과(제도담당 : ☎ 구내 2358)

<기 르 는 어 업 육 성 법>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 법률 제6611호(2002. 1.14) ○ 개정 : 2005, 12, 29(법률 7796호)
제정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생물의 양식을 활성화하고 수산물의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수산생물에 대한 질병의 진료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다양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에 이바지함
구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장 36조의 본문(제1장 : 총칙, 제2장 : 기르는어업의 육성, 제3장 : 수산생물진료, 제4장 : 보칙, 제5장 : 벌칙)과 부칙으로 구성
주요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르는어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단위로 기르는어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동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기르는어업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르는어업발전기본계획 및 기르는어업발전시행계획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르는어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또는 수면을 기르는어업개발지구로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르는어업개발기구제도 ○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위해 인공어초 또는 바다목장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설치예정인 수면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관리하도록 함 ○ 수산생물 진료를 담당하는 수산질병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질병관리사 및 수산질병관리원 제도
하위법령 및 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 :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령(2003.7.15.제정, 일부개정 2006. 6.12. 대통령령 제19513호) ○ 부 령 :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2003.7.15. 제정, 일부개정 2006. 6.26. 해양수산부령 제340호)
소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자원관 양식산업과(기획담당 : ☎ 구내 2366)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 법률 제8789호(2007. 12.21) ○ 개정 : 2008.2.29(법률 8852호)
제정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수입되는 수산동물에 관한 검역을 강화하는 등 수산동물질병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동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구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장 61조의 본문(제1장 : 총칙, 제2장 :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 제3장 : 수출입 수산동물의 검역, 제4장 : 보칙, 제5장 : 벌칙, 제6장 법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과 부칙으로 구성
주요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동물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체계 등이 포함된 수산동물전염병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 또는 수출·입 수산동물의 검역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안정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수산동물방역관 및 수산동물검역관제도 도입 ○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에 따른 신고, 수산동물전염병의 진단 및 확인, 수산동물거래의 제한 등 수산동물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한 방역관리체계 구축 ○ 수산동물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산동물에 대하여는 살처분이나 양식시설의 격리,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방류수산동물이 수산동물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독·격리 또는 살처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수출입 수산동물의 철저한 검역을 통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수산동물전염병 유입에 따른 대량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
하위법령 및 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령(2008.12.22. 제정, 대통령령 제21174호) ○ 부 령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2008.12.22. 제정, 일부개정 2009. 4.17. 해양수산부령 제66호)
소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자원관 양식산업과(방역 : 2369)

<수산물품질관리법>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 법률 제6399호(2001. 1.29) ○ 개정 : 2009.7.31(법률 9401호)
제정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에 대한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산물의 상품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
구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장 56조의 본문(제1장 : 총칙, 제2장 : 수산물의 품질관리, 제3장 : 수산물가공산업의 육성 및 관리, 제4장 :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가공시설의 등록·관리, 제5장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제6장 이식용수산물의 검역, 제7장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과 부칙으로 구성
주요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생산자 단체 등을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는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 표시 등을 하도록 하여 수산물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수산전통식품산업의 육성, 수산전통식품명인제도의 실시, 자금지원 등 각종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수산물가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함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생산단계·가공단계 등 각 단계별 위해요소와 중점관리사항을 정한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제고함 ○ 정부에서 수매·비축하거나 협약 등의 이행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품질 및 규격의 적합여부, 위해물의 혼입여부 등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함 ○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중금속 및 항생물질 등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출하연기·용도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하위법령 및 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 :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2001.9.1. 제정, 일부개정 2008.8.4 대통령령 제20950호) ○ 부 령 :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2001.9.14. 제정, 일부개정 2009.6.30. 해양수산부령 제75호)
소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자원관 양식산업과(방역담당 : ☎ 구내 2369)

<농어업재해대책법>

연 혁	○ 제정 : 법률 제9659호(2009. 5. 8)
제정목적	○ 농업 및 어업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대책을 마련하여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 도모
구 성	○ 12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
주요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해대책을 수립하고,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 종묘대금 또는 치어대금, 철거비 - 유실되거나 파손된 어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 시설비 및 철거비 - 재해를 입은 어가의 생계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 이재민 구호, 학자금 면제, 영어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정부양곡 지급 ○ 농어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마다 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 확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경우 보조 및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의 예방과 사후복구 관리를 고의로 게을리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킨 경우 - 재해에 대한 피해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하위법령 및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 :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 ○ 부 령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소 관	○ 어업자원관 양식산업과(육성담당 : ☎ 구내 2373)

<수산자원관리법>

연 혁	○ 제정 : 법률 제9627호(2009. 4. 22)
제정목적	○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구 성	○ 제7장 제70조의 본문(제1장, 총칙, 제2장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 제5장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과 부칙
주요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자원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함 ○ 수산자원 조사·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수산자원 현황 파악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위하여 수산자원조사·평가를 실시함 ○ 수산자원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수산자원보호령(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어업인 등에 대한 수산자원보호 의무와 벌칙, 권리 제한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 자율적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어업자 협약제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적 협약체결을 통한 조업분쟁 해결 및 효율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수산자원회복 및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소된 수산자원의 회복과 체계적·효율적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등 ○ 수산자원관리수면 등의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자원의 산란, 종묘발생, 치어의 성장, 정착성 수산자원의 대량 발생·서식 수면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
하위법령 및 규정	○ 대통령령, 부령 : 제정 중(공청회 : '09.8~9)
소 관	○ 어업자원관 자원환경과(자원회복담당 : ☎ 구내 2384)

<어 장 관 리 법>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 법률 제6257호(2000. 1.28) ○ 개정 : 법률 제8130호(2006.12.28)
제정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장휴식 및 어장정화·정비의 실시 등 어장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용·관리 ○ 어장환경의 보전·개선으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조성
구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장 31조의 본문(제1장 : 총칙, 제2장 : 어장의 적정이용, 제3장 : 어장의 정화·정비, 제4장 : 보칙, 제5장 : 벌칙)과 부칙으로 구성
주요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어장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어장에 대하여 종전의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취소하고 새로운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하는 내용의 면허등동시갱신제도를 실시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생산성이 저하된 어장에 대해 어업인들과 협의하여 일정기간 어업을 정지하는 어장휴식을 실시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어장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장정화·정비계획에 따라 어장의 퇴적물을 수거하는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함 ○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와 종사자는 어구나 양식시설물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 금지하고 부표사용 규격을 정함
하위법령 및 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 : 어장관리법시행령 ○ 부 령 : 어장관리법시행규칙
소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자원국 자원환경과(어장환경담당 : ☎ 구내 2386)

<내수면어업법>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 법률 제2835호(1975. 12.31) ○ 개정 : 1999. 2.8 일부개정, 2001. 1.28 전문개정 2005. 3.31. 일부개정, 2009.5.27 일부개정
제정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면어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구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7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
주요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장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그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시·군·구에 설치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내수면의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어도(魚道)를 설치하여 회유성 어류의 이동 통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유어(游漁)질서제한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 행정관청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면허 또는 허가한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내수면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하위법령 및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 : 내수면어업법시행령 ○ 부 령 :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
소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자원국 자원환경과(내수면담당 : ☎ 구내 2891)

<낚시어선업법>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 법률 제5078호(1995.12.29) ○ 개정 : 1999.2.5 일부개정, 2002.5.13 일부개정 2005.7.29 일부개정
제정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낚시어선의 이용 및 안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낚시어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어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구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
주요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해당 어선의 선적항이 속하여 있는 시·도지사의 관할수역으로 함 ○ 낚시어선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약물중독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낚시어선 조정 금지 ○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하게 하여 항·포구 등에 출입항 하려는 때에는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함 ○ 낚시어선의 사고 시 승객 및 선원의 피해보전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함
하위법령 및 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 : 낚시어선업법시행령 ○ 부 령 : 낚시어선업법시행규칙
소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자원관 자원환경과(유어담당 : ☎ 구내 2393)

2. 훈령(고시) 현황

□ 총 49건 : 고시 37 훈령 10건, 예규 2건

구분	공포번호	공포일	명칭	소관부서
고시	제2008-26호	'08. 2.27	어업의손실액조사기관지정	어업정책과
고시	제2008-72호	'08. 8.20	연구·교습어업의승인대상기관지정	어업정책과
고시	제2009-310호	'09. 9.10	중앙수산조정위원회운영규정	어업정책과
고시	제2009-311호	'09. 9.10	고래포획금지에 관한 고시	어업정책과
고시	제2009-312호	'09. 9.10	연근해어업의 어업조정에 관한 고시	어업정책과
고시	제2009-313호	'09. 9.10	어업자의 어획물운반업 등록기준	어업정책과
고시	제2009-314호	'09. 9.10	근해통발어업의 포획채취물의 종류에 관한 제한	어업정책과
고시	제2009-315호	'09. 9.10	어선건조·개조허가오차허용범위	어업정책과
고시	제2009-316호	'09. 9.10	어선톤수측정업무의집행요령	어업정책과
고시	제2009-317호	'09. 9.10	어선명칭의크기및표시방법등에관한고시	어업정책과
고시	제2008-31호	'08. 6.25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	양식산업과
고시	제2008-129호	'08.12.22	검역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고시	양식산업과
고시	제2009-69호	'09.8.1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 수출·입 수산물위생관리에 관한고시	양식산업과
고시	제2009-274호	'09. 8.25	양식수산동식물의활동구역지정등에관한고시	양식산업과
고시	제2009-283호	'09.8.25	수산질병관리사국가시험과목별출제 비율및시험관리에관한 고시	양식산업과
고시	제2009-284호	'09.8.25	양식수산동물치료용 일부 화학물질의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	양식산업과
고시	제2009-285호	'09.8.25	역학조사대상 수산동물전염병의 추가지정에 관한 고시	양식산업과
고시	제2009-286호	'09.8.25	수산동물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고시	양식산업과
고시	제2009-287호	'09.8.25	양식제한조치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양식산업과
고시	제2009-288호	'09.8.25	수산동물 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에 관한 고시	양식산업과
고시	제2009-289호	'09.8.25	수입금지된 물건 등의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양식산업과
고시	제2009-290호	'09.8.25	수산동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	양식산업과
고시	제2009-291호	'09.8.25	살처분수산동물등에 대한 보상금지급 요령	양식산업과
고시	제2009-292호	'09.8.25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한 고시	양식산업과
고시	제2009-294호	'09.8.25	생식용생굴 대일수출요령	양식산업과

구분	공포번호	공포일	명칭	소관부서
고시	제2009-295호	'09.8.25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양식산업과
고시	제2009-296호	'09.8.25	수출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 대상 품목지정	양식산업과
고시	제2009-297호	'09.8.25	수출을 목적으로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양식산업과
고시	제2009-298호	'09.8.25	지정해역의 지정고시	양식산업과
고시	제2009-299호	'09.8.25	대한민국과 태국간 수출·입 수산물·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고시	양식산업과
고시	제2009-300호	'09.8.25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간 수출·입 수산물·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고시	양식산업과
고시	제2009-301호	'09.8.25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 수출·입 활수생동물의 검사·검역에관한고시	양식산업과
고시	제2009-303호	'09. 8.26	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고시	양식산업과
고시	제2008-152호	'09.12.26	총허용어획량(TAC)적용대상어업의종류등의지정에관한고시	자원환경과
고시	제2009-107호	'09.8.25	낙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자원환경과
고시	제2009-308호	'09.9,1	어도설계기준	자원환경과
고시	제2009-367호	'09.9.16	패류채취어업 중 잠수기 사용지역 및 패류의 종류	자원환경과
훈령	제133호	'09. 9.10	어업등록령에관한사무취급요령	어업정책과
훈령	제119호	'09.8.25	소독실시요령	양식산업과
훈령	제120호	'09.8.25	명예감시원 운영요령	양식산업과
훈령	제121호	'09.8.25	수산동물방역관 직무규정	양식산업과
훈령	제123호	'09. 8.26	적조예찰·예보및피해방지에 관한요령	양식산업과
훈령	제129호	'09.9,1	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지침	자원환경과
훈령	제130호	'09.9,1	국·도립 수산자원조성연구기관 운영관리요령	자원환경과
훈령	제131호	'09.9,1	국·도립내수면 연구기관 운영관리	자원환경과
훈령	제132호	'09.9,1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자원환경과
훈령	제149호	'09.9.14	수산자원보호구역관리요령	자원환경과
예규	제21호	'09. 9. 10	어선법사무취급요령	어업정책과
예규	제20호	'09. 8.25	어업재해피해조사보고및복구지원요령	양식산업과

□ 근거법령 : 수산자원보호령 제11조, 제12조

번호	종명		현재기준 법적근거		비고
	국명	학명			
1	붕장어	<i>Conger myriaster</i>	제12조	35cm	
2	방어	<i>Seriola quinqueradiata</i>	제12조	30cm	
3	참돔	<i>Pagrus major</i>	제12조	24cm	
4	돌돔	<i>Oplegnathus fasciatus</i>	제12조	24cm	
5	대구	<i>Gadus macrocephalus</i>	제11조	1월1일-1월31일 (부산·울산 및 경상남도)	
			제12조	30cm	
6	대문어	<i>Octopus dofleini</i>	제12조	300g	
7	대게류	<i>Chionoecetes spp.</i>	제10조	경북 연안 일정수역 포획금지 왕돌초 인근 일부수역 3월1일-4.30일	
			제11조	6월1일-11월30일 (단, 동경131도 30분이동수역은 6월1일-10월31일)	
			제12조	두홍갑장 9cm (단, 대게에 한함)	
			제13조	암컷 채포금지	
8	털게	<i>Erimacrus isenbecki</i>	제11조	강원도 4월1일-5월31일	
			제12조	강원도 두홍갑장 7cm	
9	도루묵	<i>Arctoscopus japonicus</i>	제12조	11cm	
10	명태	<i>Theragra chalcogramma</i>	제12조	27cm	

번호	종명		현재기준 법적근거		비고
	국명	학명			
11	붉은 대게	<i>Chionoectes japonicus</i>	제11조	7월10일-8월20일 (단, 강원도 연안자망어업은 6월1일-7월10일)	
			제13조	암컷 채포금지	
12	참가 자미	<i>Pleuronectes herzensteini</i>	제12조	12cm	
13	코끼리 조개	<i>Panopea japonica</i>	제11조	4월1일-7월31일 (강원과 경북)	
14	북쪽 말뚝 성게	<i>Strongylocentrotus intermedius</i>	제11조	9월1일-10월31일 (강원도에 한함)	
			제12조	각경 4cm	
15	등근 성게	<i>Strongylocentrotus nudus</i>	제11· 12조	삭제	
16	연어	<i>Oncorhynchus keta</i>	제11조	10월1일-11월30일	
17	시마 연어 (송어)	<i>Oncorhynchus masou masou</i>	제12조	12cm	
18	키조개	<i>Atrina pectinata</i>	제11조	7월1일-8월31일	
19	조피 불락	<i>Sebastes schlegelii</i>	제12조	23cm	
20	꽃게	<i>Portunus trituberculatus</i>	제11조	6월16일-8월15일 (단, 연평도 및 서해특정해역 중 일정수역은 7월1일-8월31일)	
			제12조	두흉갑장 6.4cm	
			제13조	외부포란 암꽃게 포획금지	
21	백합	<i>Meretrix lusoria</i>	제11조	7월1일-8월20일	
			제12조	각장 5cm	
22	대하	<i>Fenneropenaeus chinensis</i>	제11조	5월1일-6월30일	

번호	종명		현재기준 법적근거		비고
	국명	학명			
23	취노래미	<i>Hexagrammos otakii</i>	제11조	11월1일-12월31일, 다만 백령·대청 주변어장은 11월15일-12월14일	
			제12조	20cm	
24	참홍어	<i>Raja pulchra</i>	제11조	6월1일-7월15일	
			제12조	체반폭 42cm	
25	불락	<i>Sebastes inermis</i>	제12조	15cm	
26	농어	<i>Lateolabrax japonicus</i>	제12조	30cm	
27	넙치	<i>Paralichthys olivaceus</i>	제12조	21cm	
28	감성돔	<i>Acanthopagrus schlegelii</i>	제12조	20cm	
29	전어	<i>Konosirus punctatus</i>	제11조	5월1일-6월30일 (단, 경상북도, 강원도는 제외)	
30	민어	<i>Miichthys miuuy</i>	제12조	33cm	
31	개서대	<i>Cynoglossus robustus</i>	제11조	7월1일-8월31일	
			제12조	26cm	
32	문치 가자미	<i>Pleuronectes yokohamae</i>	제11조	12월1일-1월31일 (단, 경상북도는 2월1일-2월28일)	
			제12조	15cm	
33	새조개	<i>Fulvia mutica</i>	제11조	6월16일-9월30일 (단, 부산·울산·경남·제주·전남(무안·영광제외) 6.1-9.30)	
34	툇	<i>Sargassum fusiforme</i>	제11조	10월1일-익년 1월 31일	
35	감태류	감태, <i>Ecklonia cava</i>	제11조	5월1일-7월31일, (단, 제주도는 1월1일-12월31일)	
		검둥감태, <i>Ecklonia kurome</i>			

번호	종명		현재기준 법적근거		비고
	국명	학명			
36	우뭇가사리	<i>Gelidium anansii</i>	제11조	11월1일- 익년 4월 30일	
37	도박류	<i>Grateloupia spp.</i>	제11조	10월1일- 익년 4월 30일	
38	넓미역	<i>Undariopsis peterseniana</i>	제11조	제주도 9월1일- 11월30일	
39	대황	<i>Eisenia bicyclis</i>	제11조	5월1일-7월31일	
40	곰피	<i>Ecklonia stolonifera</i>	제11조	5월1일-7월31일	
42	개다시마	<i>Kjellmaniella crassifolia</i>	제11조	11월1일- 익년1월31일	
43	소라	<i>Batillus cornutus</i>	제11조	전남(여수·삼산)·제주 6월1일-8월31일 경북(울릉·독도) 6월1일-9월30일	
			제12조	5cm (단, 제주·경북 (울릉도·독도) 7cm)	
44	오분 자기류	마대오분자기, <i>Sulculus diversicolor diversicolor</i>	제12조	제주도 각장 4cm	
		오분자기, <i>Sulculus diversicolor aquatilis</i>			
45	해삼	<i>Stichopus japonicus</i>	제11조	7월1일-7월 31일	
46	황돔	<i>Dentex tumifrons</i>	제12조	15cm	
47	전복류	<i>Haliotis spp.</i>	제11조	9월1일-10월 31일 (단, 제주도 10월1일-12월31일)	
			제12조	7cm (제주 10cm)	
48	닭새우	<i>Panulirus japonicus</i>	제11조	7월1일-8월 31일	
			제12조	두홍갑장 5cm	

번호	종명		현재기준 법적근거		비고
	국명	학명			
49	펼닭 새우	<i>Linuparus trigonus</i>	제11조	6월1일-8월 31일	
			제12조	두홍갑장 10cm	
50	은어	<i>Plecoglossus altivelis altivelis</i>	제11조	4월1일-5월31일, 9월1일-10월31일 (단, 강원도·경북 4월15일-5월15일, 8월15일-10월15일)	
51	산천어	<i>Oncorhynchus masou masou</i>	제12조	20cm	
41	뜸부기	<i>Silvetia siliquosa</i>	제11조	8월1일-9월30일	
52	참계류	참계 <i>Eriocheir sinensis</i>	제11조	강원도 8월1일-11월30일(단, 댐은 제외)	
		동남참계 <i>Eriocheir japonicus</i>	제12조	두홍갑장 5cm	
53	빙어	<i>Hypomesus nipponensis</i>	제11조	3월1일-3월20일	
54	쏘가리	<i>Siniperca scherzeri</i>	제11조	5월20일-6월 30일 (단, 전북·전남 ·경북·경남 5월10일-6월20일)	
			제12조	18cm	
55	자라	<i>Trionyx sinensis</i>	제11· 12조	삭제	
56	말조개	<i>Unio douglasiae</i>	제12조	각장 9cm	
57	기수 채첩	<i>Corbicula japonica</i>	제12조	각장 1.5cm	
58	열목어	<i>Brachymystax lenok tsinlingensis</i>	제11조	3월1일-4월30일	
59	다슬 기류	<i>Semisulcospira spp.</i>	제11조	12월 1일- 익년 2월 28일	
			제12조	각고 1.5cm	
60	황복	<i>Takifugu obscurus</i>	제12조	20cm	
61	참조기	<i>Larimichthys Polyactis</i>	제11조	근해유자망 4월10일-8월10일	

6

어업자원관 소관 법인 현황

단체명 (대표자)	설립근거 (설립일)	주요업무	직원수 (회원)	주소 (전화번호)	감독 부서
(사)인천자망협회 (송준호)	민법제32조 '09. 3. 4	회원 상호간 친목협동으로 해양환경 정화와 친환경적 어업 도모	3	인천 중구 북성동 1가 104-14 032-888-4080(FAX 032-887-4462)	어업 정책
(사)기선선인망협 회 (심재현)	민법제32조 1991.6.12	선인망 어구어법 및 멸치가공기술 개발과 회원상호 친목도모	2	전남 여수시 봉산동 100-5 061-642-4565(FAX 겸용)	어업 정책
(사)남해군근해장 어통발연합회 (이말순)	민법제32조 '06.1.25	남해군 근해 장어통발 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을 도모	5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170-32 055-867-7585(fax 055-867-6209)	어업 정책
(사)부산광역시 기장군나잠회 (전숙자)	민법제32조 '03.10.27	나잠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정보교환, 연안바다 보호 및 해녀 의 복지향상, 상조 등	5	부산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298-3 051-721-4199(fax 051-721-4177)	어업 정책
(재)수산연구재단 (임광수)	민법제32조 '88.08.20	국립수산진흥원의 수산기술업무 지원, 장학사업 등	-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408-1 051-720-2882(fax 051-720-2889)	어업 정책
(사)수진회 (박병하)	민법제32조 '02.10.15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및 상부 상조	113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408-1 051-720-2676	어업 정책
(사)울산광역시 나 잠회(박영자)	민법제32조 '02.06.12	울산시 나잠회원들간 친목 및 수 산자원보호와 관리 도모	-	울산 북구 당사동 052-298-9993	어업 정책
(사)전국근해오징 어 채낚기연합회 (임학진)	민법제32조 '05.06.02	전국근해오징어채낚기 어업인의 권 익보호, 오징어 TAC 시행에 따른 선구적 역할 수행 등	2	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1가 60-4 054-867-7585(fax 054-248-1891)	어업 정책
(사)전북형망어업협 회 (마상석)	민법제32조 '06.12.08	해양환경 정화활동, 친환경 정보 자료수집 및 제공, 어구 및 어자 재 활용 기술정보 수집 및 정보교 환 등		전북 군산시 해망동 1011-17 군산수협 해망동어판장 2층 063-442-0713(fax063-446-4601)	어업 정책
(사)제주도 연안 어업인협회 (강순복)	민법제32조 '05.9.28	제주 연안어장 환경정화 활동으로 연안 어족자원 보호와 연안어업인 들의 권익보호	1	제주 제주시 연동 292-34 fax : 064-724-2344	어업 정책
(사)제주도근해연 승어업인협회 (강철진)	민법제32조 '06.08.07	제주 근해연승어업인 권익보호와 수 산자원 보호를 위한 어장환경 정화 활동 및 상호 정보교환	1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667-6 064-732-3502	어업 정책
(사)충남보령근해 안강망협회 (박영선)	민법제32조 '02.04.09	어선어업기술개발 및 지식정보교 환, 보령풍어제 사업, 대천항 주 변 청소 및 정비	1	충남 보령시 신후동 2240 041-934-7409(fax 041-932-7049)	어업 정책
(사)화성어선주협 회 (박래운)	민법제32조 '04. 5. 12	어선어업 자율적 질서확립 및 어 족보호 활동, 인명구조 및 해난사 고 예방 등	-	경기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689 018-356-3576	어업 정책
(사)한국축제식 양식협회 (김지연)	민법제32조 '07.2.16	축제식 양식 정보교환, 수급조절, 축제식양식 발전 방안 모색	72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동 155-4 041-6756-114(fax 041-6756-117)	양식 산업

단체명 (대표자)	설립근거 (설립일)	주요업무	직원수 (회원수)	주소 (전화번호)	감독 부서
(사)한국유해조류 연구회 (나기환)	민법제32조 '06.1.27	회원 상호간 연락 및 제휴를 통해 유해조류 연구 발전	83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408-1 051-720-2520(fax 051-720-2266)	양식 산업
(사)한국해삼협회 (현대식)	민법제32조 '06.6.13	회원상호간 친목도모 해삼양식 산 업과 관련된 현안문제 해결	38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6-313 02-3474-8730	양식 산업
(사)한국광어 양식연합회 (신대범)	민법제32조 '08.12.19	회원간 상호협력, 넙치양식 정보 교환으로 판매촉진 및 판로 확대	517	제주 제주시 일도2동 359-11 064-753-0365(fax 064-722-0365)	양식 산업
(사)한국김생산어 민연합회 (박성진)	민법제32조 '99.5.26	수산물(김) 생산 및 판매에 있어 어민의 권익과 정당성을 발휘	4,777	전남 해남군 송지면 산정리 712-3 061-533-7072(fax 061-534-7072)	양식 산업
(사)전국새우양식 협회 (윤명길)	민법제32조 '09.1.8	회원상호간 친목과 권익 도모, 안 정적인 양식체계 확립 및 양식기 술발전 모색	201	인천 강화읍 신문리 205 032-429-0061	양식 산업
(사)한국해산종묘 협회 (박완규)	민법제32조 '09.4.13	회원상호간 친목과 권익 도모, 수 산종묘 및 양식업과 수산업 전체 에 기여	300	경남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44 055-863-2178	양식 산업
(사)한국전복협회 (최영태)	민법제32조 '07.3.21	새로운 기술보급사업, 전복 유통 에 관한 정보와 상담 및 대어업인 봉사	2,000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115-7 061-284-0038(fax 061-284-1007)	양식 산업
(사)한국아쿠아포 럼 (배평암)	민법제32조 '06.7.28	해양, 수산 등 수계산업의 발전, 연안 수산자원 관리, 증양식 산업 연구 및 진흥에 기여	150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7-1 041-530-1286(fax 041-530-1493)	양식 산업
전국마른김협회	민법제32조 '08.1.28	회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 및 김산업 발전 도모	370	전남 완도군 근외면 원동리 177 061-554-4430(fax 061-554-4431)	양식 산업
(사)한국수조양식 기자재연합회 (성광용)	민법 제32 조 '02.8.12	수조양식기자재산업의 신소재 기 술개발을 위한 연구위탁사업, 연 구조사 및 정보 수집 등	40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30-6 02-925-3877(fax 02-927-7012)	양식 산업
(사)한국조류학회 (한명수)	민법제32조 '05.7.8	수산업상 유용한 조류의 조사 및 연구활동	459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 011-9801-4107	양식 산업
(사)완도군다시마 생산자협회 (임익노)	민법제32조 '07.2.5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지리 적 표시품의 출하조절, 등록 및 품질관리	1,200	전남 완도군 금일읍 화목리 061-554-5439(018-517-2356)	양식 산업
(사)완도군미역협회 (최광선)	민법제32조 '07.3.12	완도 미역의 생산 및 품질향상 관리, 지리적 표시품의 출하조절 등록 및 품질조사	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061-552-5115(fax 061-552-0825)	양식 산업
(사)한국수산증·양 식기술사협회 (김영길)	민법제32조 '07.5.22	수산증양식기술사 복리증진과 상호간 친선 도모, 법령과 제도개선 등을 통한 수산증양식산업발전 도모	46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72 041-951-2072(011-779-6319)	양식 산업
(사)패류인공종묘협회 (정임식)	민법제32조 '08.1.30	양식기술교류 및 관련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패류 인공종묘 산업 지원 및 육성, 양식 먹이생물의 보존 및 개발	17	경남 거제시 둔덕면 술역리 725 055-633-4995	양식 산업

단체명 (대표자)	설립근거 (설립일)	주요업무	직원수 (회원수)	주소 (전화번호)	감독 부서
(사)한국진주양식협회 (이민재)	민법제32조 '99.03.09	양식진주의 품질향상과 생산성 증대, 제품의 고급화 및 다양화로 국제경쟁력 강화	10	경남 통영시 북신동 1-1 055-646-6092(fax 055-646-6640)	양식 산업
(사)한국관상어협회 (정택운)	민법 제32 조 92.09.07	관상어의 생산 및 사육기술 보 급, 품종개량사업	1 (60)	서울 종로구 창신동 424-2 02-762-2079(fax 02-744-2079)	자원 환경
(사)한국송어양식 협회 (박주형)	민법제32조 '05.10.24	내수면양식업 결속 도모, 회원 공 동이익 증진 및 내수면어업의 지속 적 발전에 기여	1 (40)	충북 제천시 청전동 661 043-646-2627(fax 043-644-2628)	자원 환경
(사)전국내수면향 어 양식협회 (송용철)	민법제32조 '05.11.18	내수면 향어 양식산업의 발전 도모 및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	1 (60)	전북전주시덕진구성덕동491-4 063-211-9855(fax 063-546-5323)	자원 환경
(사)한국자라 생산자협회 (배상기)	민법제32조 '05.11.29	내수면 자라 양식산업의 발전 도 모 및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	1 (80)	경북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 814-78 054-976-8028(fax 054-976-1412)	자원 환경
(사)전국메기양식 업협회 (장상봉)	민법제32조 '06.6.14	내수면 메기 양식산업 발전 도모 및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	1 (50)	전북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19-5 063-544-5510(fax 063-544-5520)	자원 환경
(사)한국내수면양 식단체협회 (배상기)	민법제32조 '06.8.16	내수면 양식산업의 발전 도모 및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	1 (470)	충북 제천시 청전동 661 043-646-2627(fax 043-644-2628)	자원 환경
(사)한국민물장어 생산자협회 (나진호)	민법제32조 '08.12.22	내수면 민물장어 양식산업의 발 전 도모 및 회원의 공동이익 증 진	1 (180)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835-5 061-343-1148(fax 061-343-1179)	자원 환경
(사)강원홍게통발 선주협회 (최순화)	민법제32조 '84.03.16	붉은대게 자원관리, 홍게자원의 지 속가능한 재생산기반구축	3 (21)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1341-8 033-631-8938(fax 033-631-8931)	자원 환경
(사)경북홍게통발 선주협회 (이재길)	민법제32조 '01.03.16	붉은대게 자원관리, 홍게자원의 지 속가능한 재생산기반구축	3 (18)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623-81 054-787-2608(fax 054-787-1608)	자원 환경
(사)전남여수낙시 어선업협회 (손철석)	민법제32조 '05.5.27	낙시어선업의 기술개발 및 지식· 정보 교환, 낙시어선업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수질오 염 방지 및 수산자원보호, 낙시어 선 어업인의 복지 향상	8 (-)	전남 여수시 국동 37-308 061-643-7942(fax 061-644-5161)	자원 환경
(사)한국낙시어선 협회 (김홍제)	민법제32조 '02.10.29	낙시어선업의 기술개발, 지식 및 정보교환, 낙시대회 개최, 낙시어선 업의 안전사고 예방 및 계도	25 (-)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755-3 041-934-6044(fax 041-932-5333)	자원 환경
(사)한국낙시업 중앙회 (권순국)	민법제32조 '93.11.01	낙시터 경영자 간의 상호협력 및 우호증진, 건전한 낙시 육성·발 전 등	10 (-)	경기 화성시 봉담읍 덕리 70-3 031-227-0744~5 (fax 031-227-0742)	자원 환경
(사)한국낙시연합 (김동현)	민법제32조 '81.2.5	낙시질서 확립 및 낙시품종 조성, 어족보호 및 자연보호, 낙시인의 정보교환과 권익보호 등	12 (-)	서울 중구 신당동 357-5 국일빌딩 401호 02-2235-2704~5 (fax 02-2235-2706)	자원 환경

가. 중앙수산조정위원회

① 명칭	중앙수산조정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 형식)	- 수산업법 제86조(1963.4.11) 정부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 2006. 4.16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어업에 관한 조정·보상 또는 재결 등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 계속 유지 필요)				
⑥ 설치목적	- 어업에 관한 조정·보상 또는 재결 등에 관한사항을 심의				
⑦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 어업별 분쟁의 조정 - 시·도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 그 밖에 수산업법 또는 어장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⑧ 예산	연 도	2007	2008	2009	
	총 액(천원)	900천원	900천원	900천원	
	경상 경비	900천원	900천원	900천원	
	사업 경비	-	-	-	
⑨ 위원 (총 19명) ※위원장까지 포함하여 작성	위원장 (임명권자)	농림수산식품부 차관(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당연직(√)			
	당연직 (총 3명)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 수협중앙회 상임이사			
	위촉직 (총 16명)	학계2명, 연구계2명, 지역어업인 11명, 기타 1명 (별도 구분) 여성 2명(13%), 지방인사 11(69%), 기타 3명(18%)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2005년	출석 1회, 서면 -회	2006년	출석 1회, 서면 2회
		2007년	출석 -회, 서면 3회	2008년	출석 1회, 서면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없음			
		2005년	출석 -회, 서면 -회	2006년	출석 -회, 서면 -회
		2007년	출석 -회, 서면 -회	2008년	출석 -회, 서면 -회
		2007년	출석 -회, 서면 -회	2008년	출석 -회, 서면 -회
⑪ 위원회 운영인력	- 기존부서 수행 2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어업자원관실 어업정책과 제도담당				

나. 총허용어획량(TAC)심의위원회

① 명칭	총허용어획량(TAC)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속(주관)		성격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심의(√)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 형식)	- 수산자원보호령 제36조 제5항(1996.12.31) 정부입법(√)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 2007, 10, 15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 설정(어종별 자원의 지속적 관리)																			
⑥ 설치목적	-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⑦ 기능	-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선정과 총허용어획량 설정 등에 관한 사항 - 총허용어획량의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 예산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도</th> <th>2007</th> <th>2008</th> <th>2009</th> </tr> </thead> <tbody> <tr> <td>총액(천원)</td> <td>-</td> <td>-</td> <td>-</td> </tr> <tr> <td>경상 경비</td> <td>-</td> <td>-</td> <td>-</td> </tr> <tr> <td>사업 경비</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연도	2007	2008	2009	총액(천원)	-	-	-	경상 경비	-	-	-	사업 경비	-	-	-
	연도	2007	2008	2009																
	총액(천원)	-	-	-																
	경상 경비	-	-	-																
사업 경비	-	-	-																	
⑨ 위원 (총 17명) ※위원장까지 포함하여 작성	위원장 (임명권자)	박종국(수산정책실장) * 당연직(√), 위촉직()																		
	당연직 (총 4명)	어업자원관, 국립수산과학원 어업자원본부장, 해양수산개발원 수산어촌연구본부장, 수협중앙회 회원경영지원부장																		
	위촉직 (총 12명)	학계1명, 연구계2명, 업계6명, 시도3명 (별도 구분) 여성 1명(6%)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2005년	출석 1회	2006년	출석 2회, 서면 1회															
		2007년	출석 1회, 서면 1회	2008년	서면 2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없음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1명(직제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어업자원관실 자원환경과 자원회복담당																			

다. 기르는어업심의회

① 명칭	기르는어업심의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농림수산식품부		자문위원회(√) 단순자문()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 형식)	- 기르는어업육성법 제3조제1항(2003.7.15)/정부입법(√)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 2003, 10, 1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존속기한 미설정 사유 본 위원회의 목적은 기르는 어업의 육성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서 기르는 어업정책이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와 연계된 본 위원회의 존속기한 설정 곤란				
⑥ 설치목적	- 기르는어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				
⑦ 기능	- 기르는어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 기르는어업 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심의 - 기르는어업의 육성 및 기르는어업 발전과 관련된 사항 심의				
⑧ 예산	연 도	2007	2008	2009	
	총 액(천원)	0	0	0	
	경상 경비	0	0	0	
	사업 경비	0	0	0	
⑨ 위원 (총 15명) ※위원장까지 포함하여 작성	위원장 (임명권자)	* 당연직(√), 위촉직()			
	당연직 (총 3명)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 수협중앙회 상임이사			
	위촉직 (총 12명)	학계1명, 연구계2명, 협회5명, 기업계0명, 법조계0명, 언론계0명, 기타4명 (별도 구분) 여성 2명(13%), 지방인사 10명(66%), 장애인 0명(0%)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2005년		2006년	
		2007년	출석 1회, 서면 0회	2008년	
	분과회의	해당없음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⑪ 위원회 운영인력	-해당없음				
⑫ 소관부서·담당자	어업자원관실 양식산업과 기획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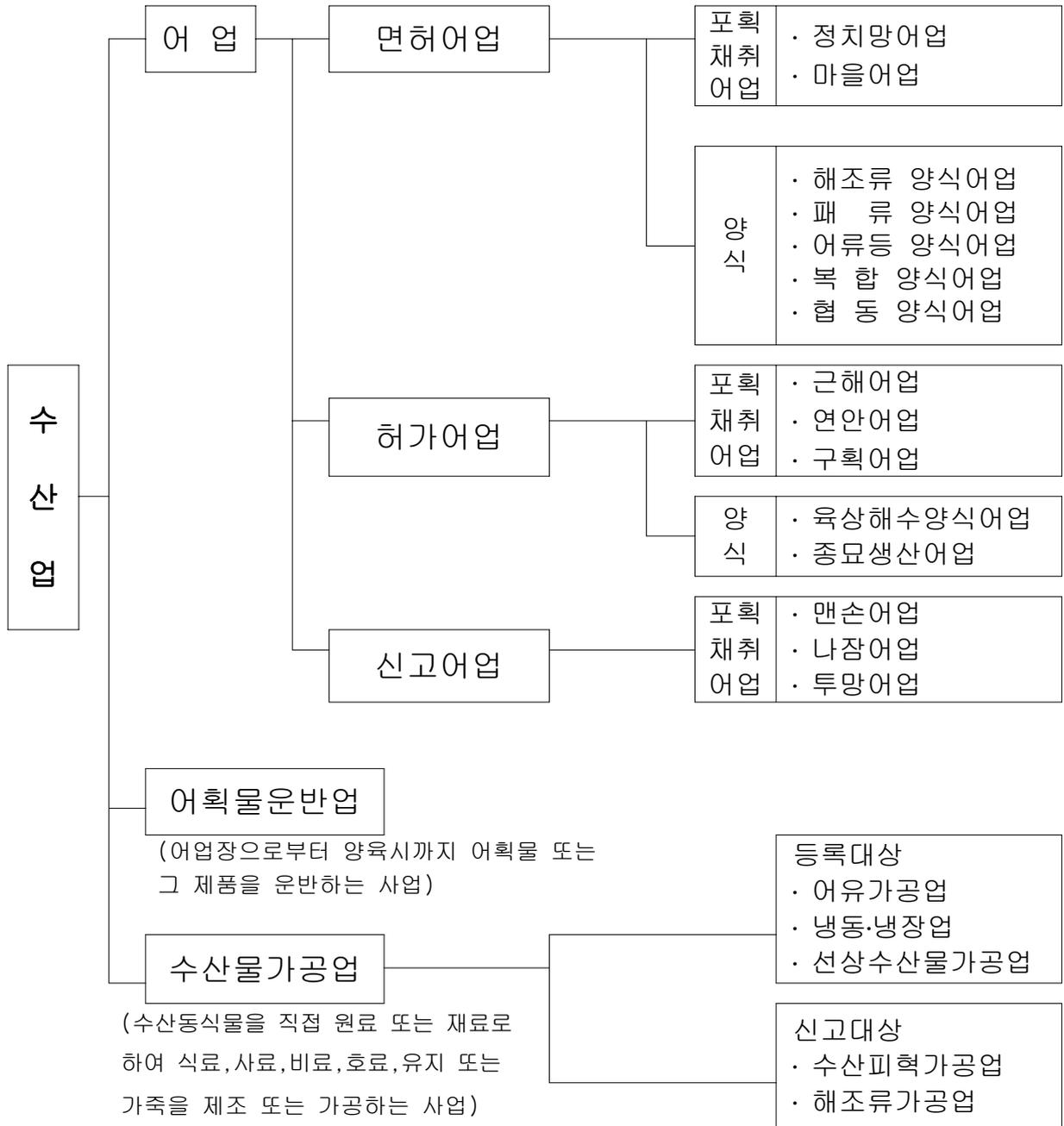
라. 수산동물전염병방역협의회

① 명칭		수산동물 전염병 방역협의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자문위원회(√) 단순자문(√)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 형식)		-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4조(2008.12.22)/ 정부입법(√)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 미구성('08.12.22 법 발효로 금년 중 위원회 구성계획)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존속기한 미설정 사유 본 위원회는 수산동물 전염병 방역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위한 것으로서 수산동물 전염병 관련사항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와 연계된 본 위원회의 존속기한 설정 곤란			
⑥ 설치목적		- 수산동물 전염병 방역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자문			
⑦ 기능		- 수산동물 전염병의 방역대책 및 방역제도 개선 - 수·출입 수산동물의 검역대책 및 검역제도 개선 - 그 밖에 수산동물 전염병의 방역 및 검역에 관한 사항			
⑧ 예산		연 도			
		2007		2008	
		2009			
		총 액(천원)		0	
		경상 경비		0	
		사업 경비		0	
⑨ 위원 (총 명) ※위원장까지 포함하여 작성	위원장 (임명권자)	* 당연직(√), 위촉직()			
	당연직 (총 0명)				
	위촉직 (총 0명)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분과회의	해당없음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⑪ 위원회 운영인력		-해당없음			
⑫ 소관부서·담당자		어업자원관실 양식산업과 방역담당			

라. 중앙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

① 명칭	중앙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 어업정책과)		행정위원회()단순자문()심의(√)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 형식)	-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7조(1997.9.7) 정부입법(√)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 1999, 12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 - 어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필요시 개최																			
⑥ 설치목적	- 협정으로 인하여 어업활동 등에 제한을 받는 어업인 등의 지원 대상과 금액 등의 심의·의결																			
⑦ 기능	- 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 어업인 등의 지원을 위한 재원대책에 관한 사항 - 지원대상자 선정·지원방법 결정 등 - 어선·어구의 개선비용 및 출어 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 - 관련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원금 지급등의 재심의 -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⑧ 예산	<table border="1"> <thead> <tr> <th>연 도</th> <th>2007</th> <th>2008</th> <th>2009</th> </tr> </thead> <tbody> <tr> <td>총 액(천원)</td> <td>0</td> <td>0</td> <td>0</td> </tr> <tr> <td>경상 경비</td> <td>0</td> <td>0</td> <td>0</td> </tr> <tr> <td>사업 경비</td> <td>0</td> <td>0</td> <td>0</td> </tr> </tbody> </table>				연 도	2007	2008	2009	총 액(천원)	0	0	0	경상 경비	0	0	0	사업 경비	0	0	0
	연 도	2007	2008	2009																
	총 액(천원)	0	0	0																
	경상 경비	0	0	0																
사업 경비	0	0	0																	
⑨ 위원 (총 14명) ※위원장까지 포함하여 작성	위원장 (임명권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당연직(√), 위촉직()																		
	당연직 (총 4명)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협중앙회장, 전남도 국장, 경남도 국장																		
	위촉직 (총 10명)	학계 1명, 연구계 2명, 협회 4명, 기타 3명 (별도 구분) 여성 1명(10%), 지방인사 8명(80%)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2005년	출석 - 회, 서면 - 회	2006년	출석 - 회, 서면 - 회															
		2007년	출석 - 회, 서면 - 회	2008년	출석 - 회, 서면 - 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총 -개)																		
		2005년	출석 - 회, 서면 - 회	2006년	출석 - 회, 서면 - 회															
		2007년	출석 - 회, 서면 - 회	2008년	출석 - 회, 서면 - 회															
⑪ 위원회 운영인력	- 없음																			
⑫ 소관부서·담당자	어업자원관실 어업정책과 기획담당																			

가. 수산업법상 수산업의 분류



나. 면허·허가·신고어업의 정의 및 어업종류

◇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말함.

◇ 어업의 구분

○ 면허어업 : 일정한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일정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관청의 처분이며, 행정법학상의 특허에 해당함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면허)

- 면허어업 종류(7개) :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마을어업

○ 허가어업 : 수산자원의 번식보호 또는 어업조정 기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일반인에게 과해진 어업의 금지를 일정한 경우에 특정인에게 해제하여 자연의 어업행위의 자유를 회복하게 하는 행정행위

- 근해어업허가 : 총톤수 8톤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

· 대형기선저인망·중형기선저인망·트롤·선망·채낚기 등 21개 어업

- 연안어업허가 :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이나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8톤이상 10톤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

· 자망·안강망·통발·들망·조망·선인망·복합어업 등 8개 어업

- **구획어업허가** : 일정한 수면을 정하여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

· 정치성구획어업 : 일정한 수역에서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지인망, 선인망어업 등 13개어업)

· 이동성구획어업 : 일정한 수역의 범위를 정하여 그 수역범위안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어업(형망, 새우조망어업 등 4개어업)

-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허가**

· 육상해수양식어업 :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 종묘생산어업

- 육상종묘생산어업 :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육상 또는 해상에서 생산된 종묘를 일정기간 동안 중간 육성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어업

- 해상종묘생산어업 :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바닷가의 바닥 또는 수중에 대·지주·뗏목·뜸·밧줄·채룽·그물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해상 또는 육상에서 생산된 종묘를 일정기간 동안 중간 육성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어업

○ **신고어업** : 신고어업은 면허어업·허가어업 이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함.

- 신고어업 종류 : 맨손·나잠·투망어업 3개 어업

다. 허가어업의 종류

【 근해어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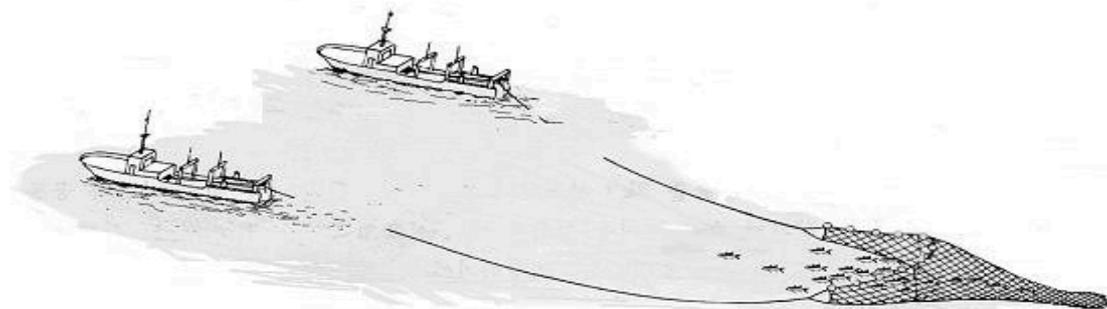
1.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 어업의 종류 /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60톤이상 140톤미만 / 1통
- 선원수 : 약 12~14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년중(9월~6월)
- 대상어종 : 가자미류, 강달이류, 보구치, 붕장어, 참조기, 오징어, 고등어, 아귀, 눈볼대, 갈치, 가오리류, 서대류, 도루묵, 말쥐치
- 조업모식도



2.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 어업의 종류 /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60톤이상 140톤미만 / 1통
- 선원수 : 척당 약 12~14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년중(9월~6월)
- 대상어종 : 강달이류, 갈치, 삼치, 고등어, 참조기, 병어류, 오징어, 전갱이, 가자미류, 말쥐치, 붕장어, 갑오징어
- 조업모식도



3.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 어업의 종류 /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20톤 이상 60톤 미만 / 1통
- 기관마력 / 선원수 : 회전수가 1,200미만은 450마력 이하, 1,200이상은 550마력 이하(평균 440마력/1척당) / 12~13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년중(10월~5월)
- 대상어종 : 가자미류, 도루묵, 청어, 문어, 대구, 명태, 임연수어
- 조업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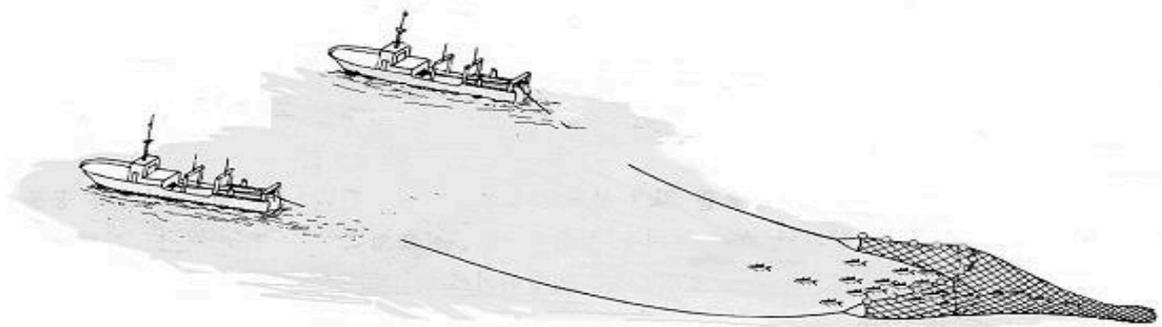
4.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 어업의 종류 /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20톤이상 60톤미만 / 1통
- 기관마력 : 회전수가 1,200미만은 450마력이하, 1,200이상은 550마력이하(평균 420마력/1척당)
- 선원수 : 약 12~13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연중(10월~5월)
- 대상어종 : 가자미류, 붕장어, 강달이류, 멸치, 아귀, 보구치, 오징어, 도루묵, 가오리류, 서대류, 넙치류
- 조업모식도 :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 조업모식도(3번)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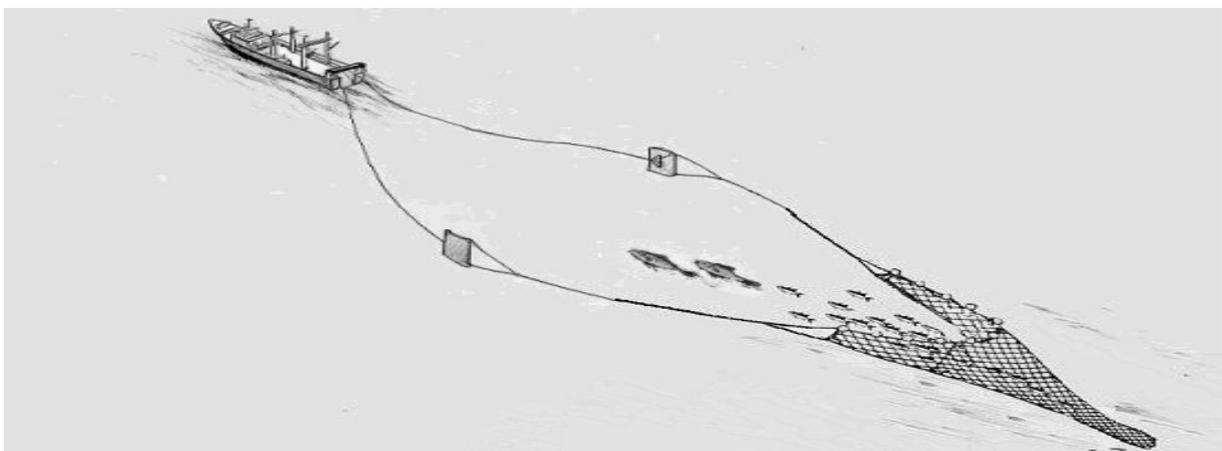
5.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 어업의 종류 /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 어선규모 : 20톤이상 60톤미만 / 사용어구수 : 1통
- 기관마력 : 회전수가 1,200미만은 450마력 이하, 1,200이상은 550마력 이하(평균 420마력/1척당)
- 선원수 : 척당 약 12~13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연중(10월~5월)
- 대상어종 : 강달이류, 붕장어, 오징어, 아귀, 민어, 보구치, 닭새우류, 고등어, 양태, 서대류, 갈치, 가오리류, 가자미류, 넙치, 꽃게, 참조기
- 조업모식도 : 쌍끌이기선저인망 조업모식도(2번)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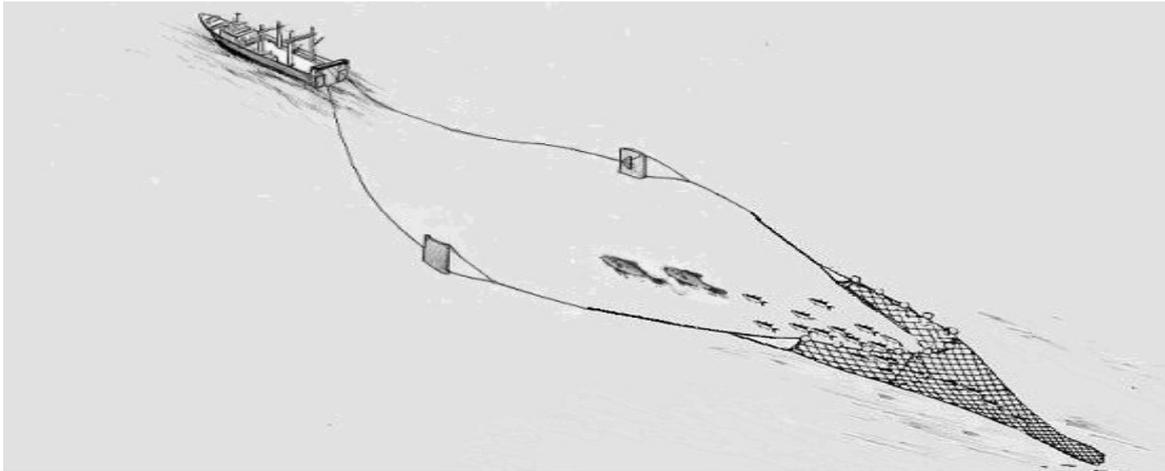
6. 대형트롤어업

- 어업의 종류 / 대형트롤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60톤이상 140톤미만 / 1통
- 선원수 : 약 14~16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연중(7월~4월)
- 대상어종 : 오징어, 갈치, 병어류, 고등어, 삼치류, 말쥐치, 참조기
- 조업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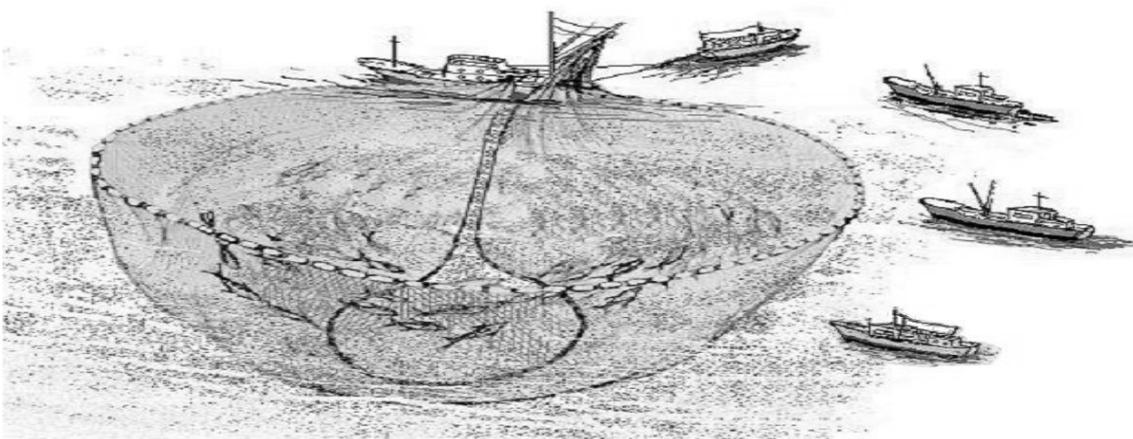
7. 동해구중형트롤어업

- 어업의 종류 / 동해구중형트롤어업
- 어선규모 : 20톤이상 60톤미만 / 1통
- 선원수 : 약 10~12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연중(12월~4월)
- 대상어종 : 청어, 가자미류, 도루묵, 골뱅이, 멧태, 대구
- 조업모식도 : 대형트롤어업 조업모식도(6번)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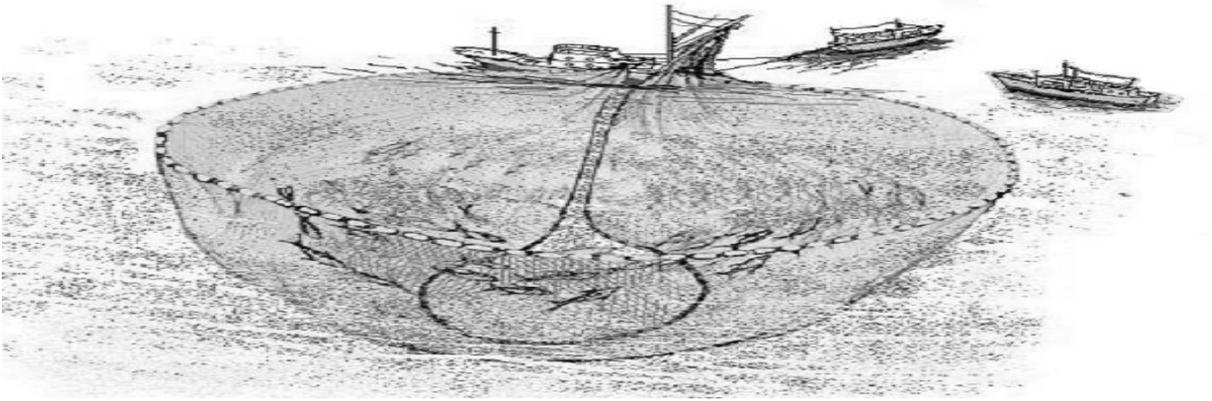
8. 대형선망어업

- 어업의 종류 / 대형선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50톤이상 140톤미만 / 1통
- 선원수 : 그물배, 어탐선, 운반선에 총 80~90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연중
- 대상어종 : 고등어, 정어리, 전갱이, 오징어, 갈치, 삼치, 청어
- 조업모식도



9. 소형선망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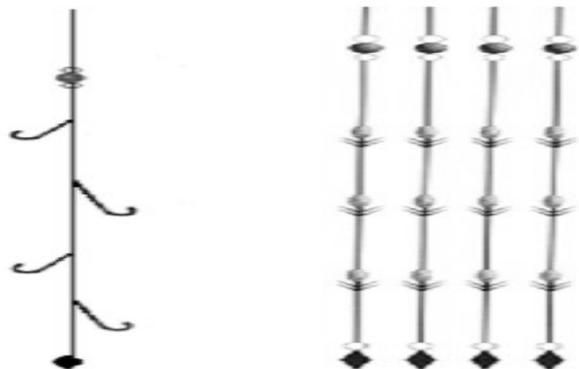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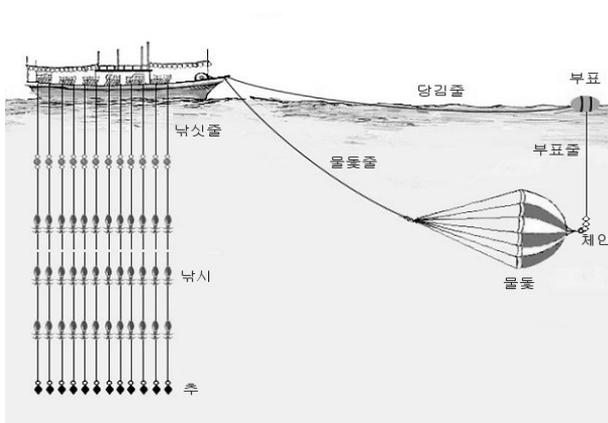
- 어업의 종류 / 소형선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8톤 이상 30톤 미만 / 1통
- 선원수 : 등선, 운반선 / 그물배 7~10명 내외, 보조선 5~8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정어리(6~11월), 멸치(6~11월), 전어(4~10월), 학공치(2~4월, 9~12월)
- 대상어종 : 정어리, 멸치, 전어, 학공치, 배도라치, 삼치
- 조업모식도



10. 근해채낚기어업

<채낚기>

- 어업의 종류 / 근해채낚기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8톤이상 90톤미만 / 자동조획기 20~25대(100톤급)
- 선원수 : 20~30톤급 10~15명 내외, 80~120톤급 15~20명 내외, 150~200톤급 20~25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2~6월 대마도 주변해역, 7~9월 울릉도~대화퇴 해역, 덕적도~소흑산도해역, 10~12월 동해안
- 대상어종 : 오징어, 갈치, 복어류, 고등어, 꽁치
- 조업모식도



(채낚시)

〈외줄낚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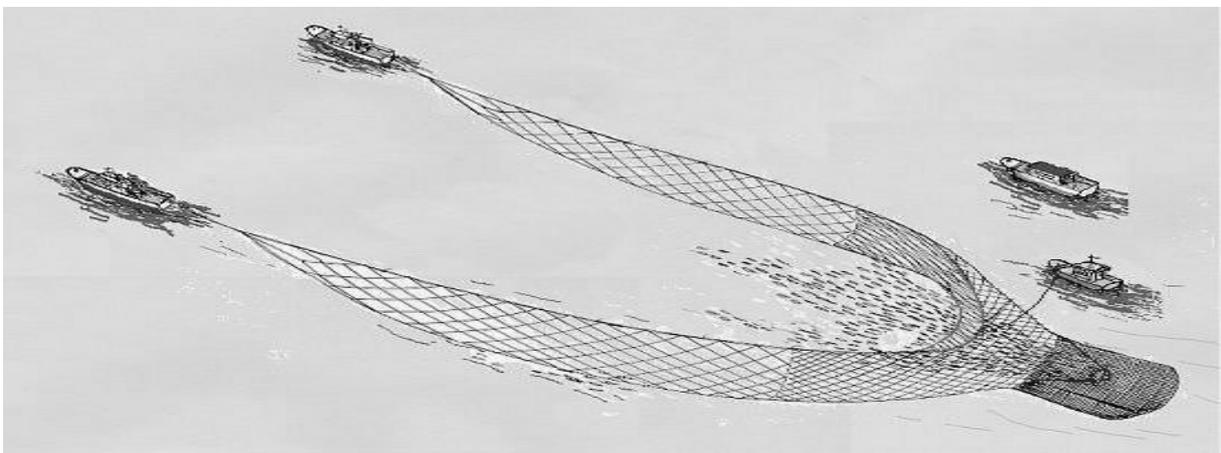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8톤이상 90톤미만 / 자세 약 12개
- 선원수 : 약 12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12~3월
- 대상어종 : 은밀복
- 조업모식도



(외줄낚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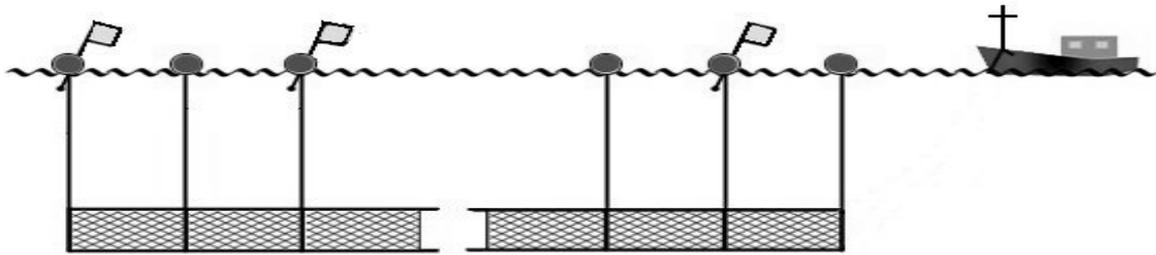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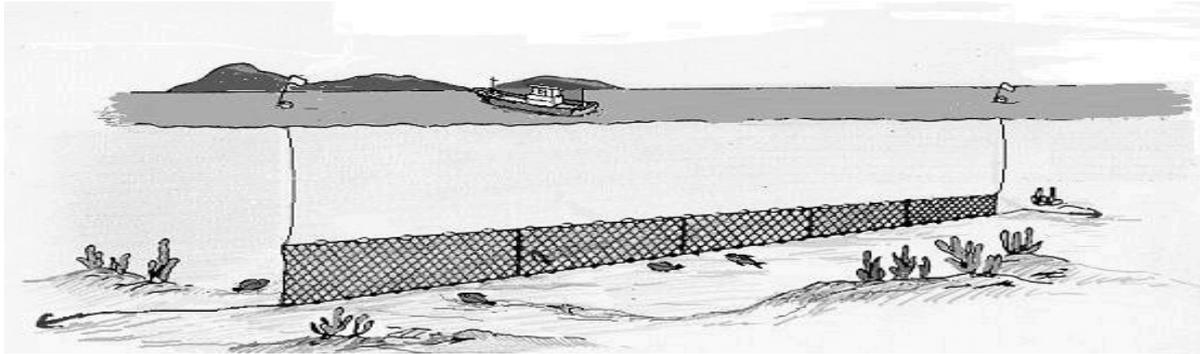
11. 기선권현망어업

- 어업의 종류 / 기선권현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40톤미만 / 1통
- 기관마력 / 선원수 : 회전수가 1,200미만은 220마력이하, 1,200이상은 350마력이하 (평균 319마력/1척당) / 1통당 5~6척 약 70명내외
- 주 조업시기 : 7~1월(8~11월)
- 대상어종 : 멸치, 전어
- 조업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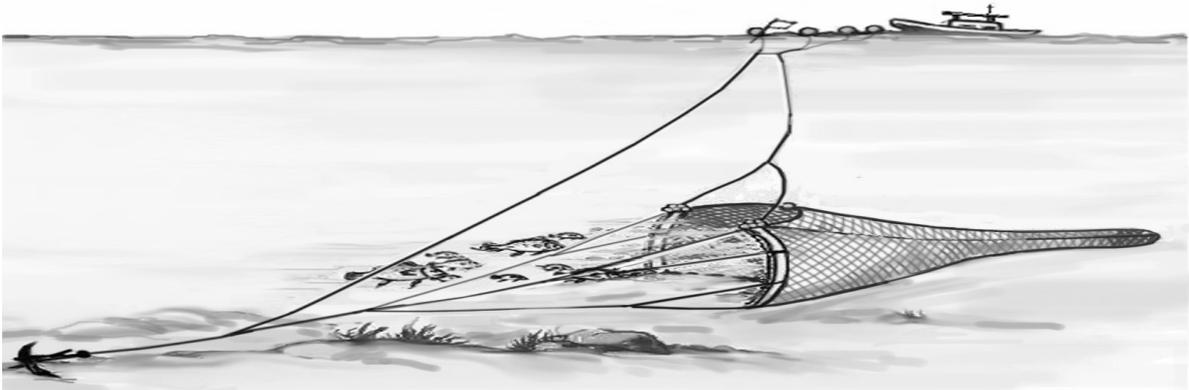
12. 근해자망어업

- 어업의 종류 / 근해자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8톤이상 90톤미만
- 선원수 : 20톤급기준 약7~10명내외
- 주 조업시기 : 썩치(5~7월, 11~1월), 참조기(2~6월), 명태(8~2월)
- 대상어종 : 썩치, 참조기, 오징어, 고등어, 방어, 상어, 명태, 도루묵, 임연수어
- 조업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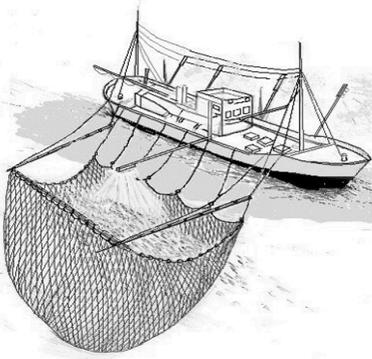
13. 근해안강망어업

- 어업의 종류 / 근해안강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8톤이상 90톤미만 / 5~10통
- 선원수 : 8~10명내외
- 주 조업시기 : 연중(6~3월)
- 대상어종 : 강달이류, 갈치, 참조기, 병어류, 고등어, 젓새우, 오징어, 밴댕이, 아귀, 꽃게, 갑오징어, 말쥐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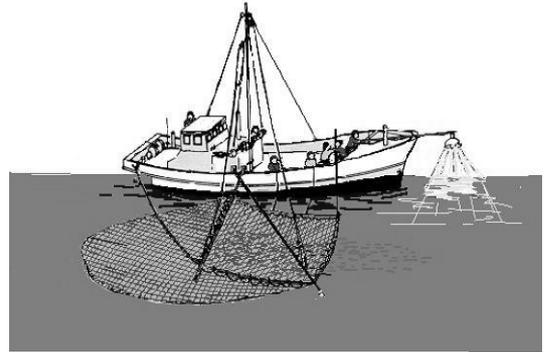


14. 근해봉수망어업

- 어업의 종류 / 근해봉수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8톤이상 90톤미만 / 1통
- 선원수 : 30~35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8~12월
- 대상어종 : 꽂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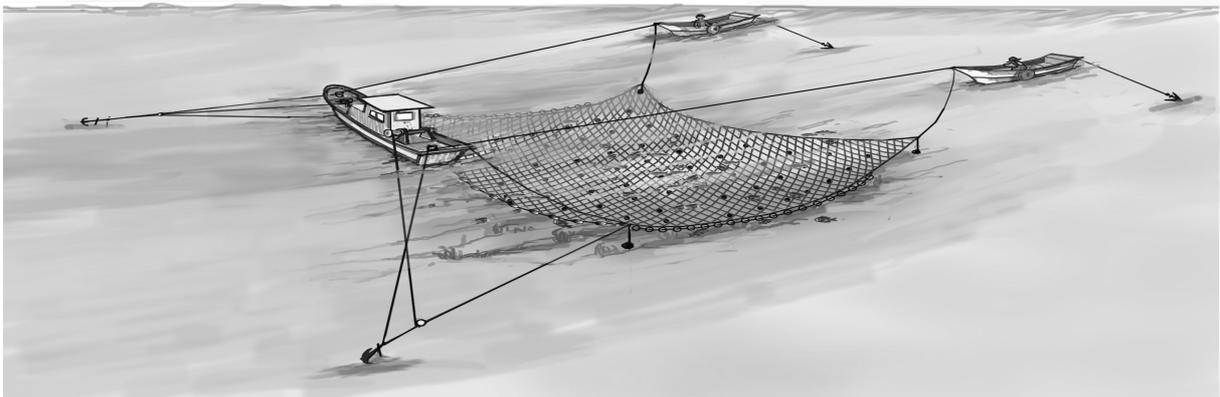
봉수망 초망



들망

15. 근해자리돔들망어업

- 어업의 종류 / 근해자리돔들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8톤이상 90톤미만 / 1통
- 선원수 : 총 10~15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대상어종 : 4~7월 / 자리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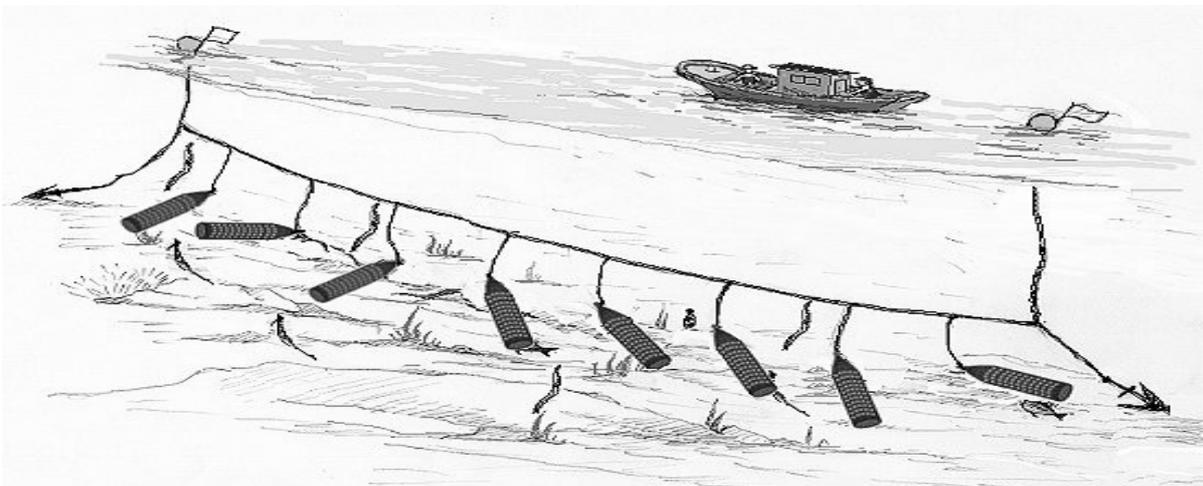
16. 잠수기어업

- 어업의 종류 / 잠수기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8톤미만
- 선원수 : 4~5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미역(4~11월), 성게(7~4월), 해삼(11~6월), 전복(11~7월)
- 대상어종 : 미역, 성게, 해삼, 전복, 우렁챙이, 소라
- 1항차 조업수 : 2~3회 잠수/일 · 1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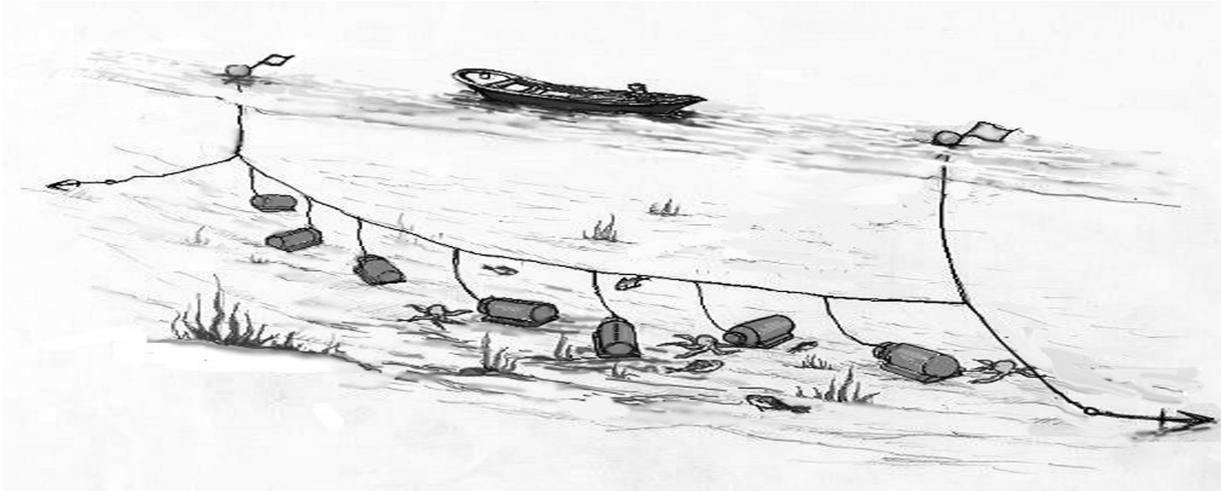
17. 근해장어통발어업

- 어업의 종류 / 근해장어통발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8톤이상 90톤미만 / 3,200~2,000개 내외
- 선원수 : 7~8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3~10월
- 대상어종 : 봉장어, 갯장어, 떡장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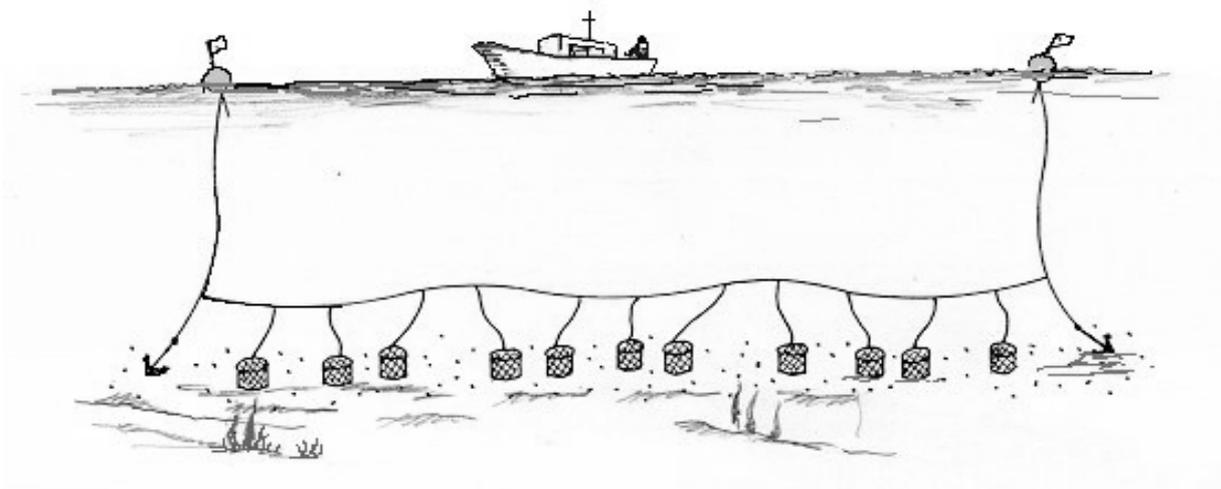
18. 근해문어단지어업

- 어업의 종류 / 근해문어단지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8톤이상 90톤미만 / 2,400개
- 선원수 : 4~5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대상어종 : 6~8월 / 대상어종 : 참문어, 왜문어, 주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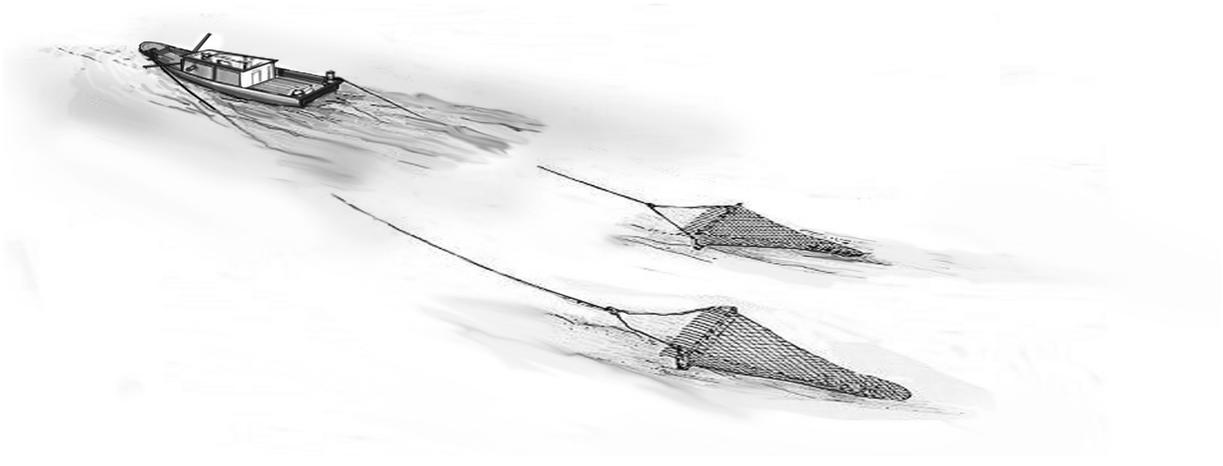
19. 그 밖의 근해통발어업

- 어업의 종류 / 그 밖의 근해통발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8톤이상 90톤미만 / 2,500~5,000개
- 기관마력 / 선원수 : 평균 446마력(1척당) / 60톤급 약 11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연중
- 대상어종 : 붉은대게, 붕장어, 꽃게, 골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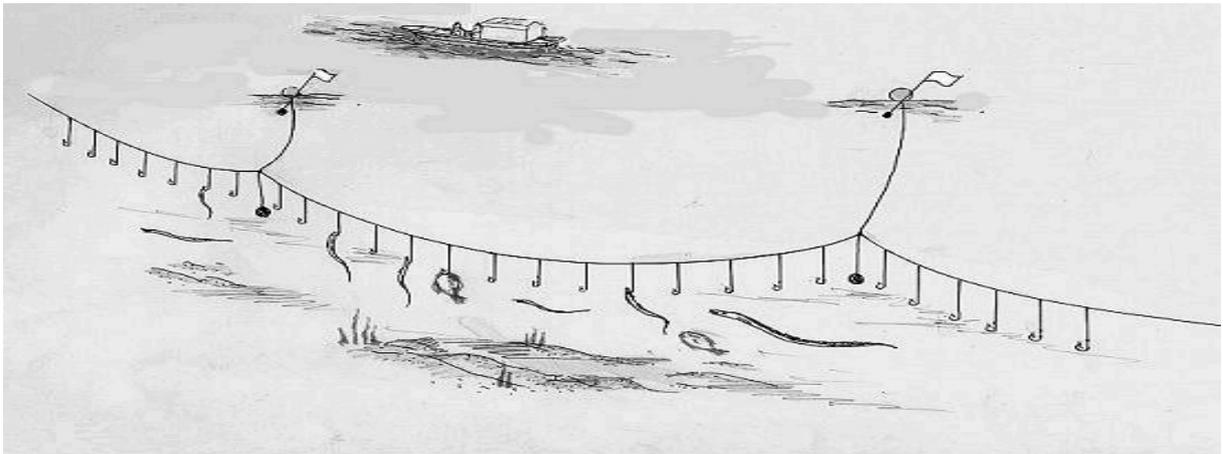
20. 근해형망어업

- 어업의 종류 / 근해형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20톤미만 / 1~4개
- 선원수 : 10톤급 4~5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연중
- 대상어종 : 피조개, 바지락, 백합, 가리비



21. 근해연승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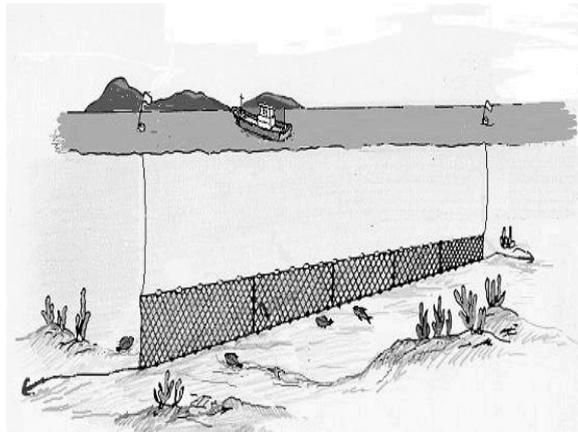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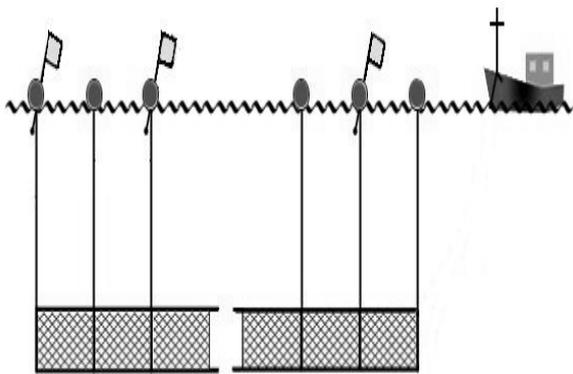
- 어업의 종류 / 근해연승어업
- 어선규모 : 8톤이상 90톤미만
- 선원수 : 10~20톤급 약 5~6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명태(10~3월)
- 대상어종 : 명태, 갈치, 참돔, 옥돔, 복어류



【 연안어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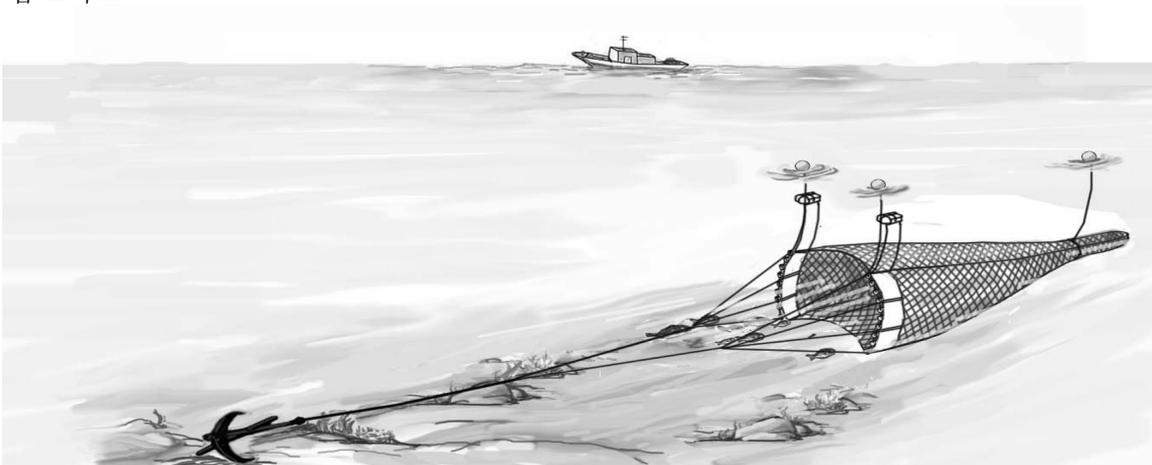
1. 연안자망어업

- 어업의 종류 / 연안자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무동력선, 10톤미만의 동력선 / 12,000~35,000미터
- 선원수 : 2~6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썩치(5~7월), 청어 및 임연수어(5~6월), 명태(12~6월), 쥐치(6~7월)
- 대상어종 : 썩치, 청어, 임연수어, 명태, 쥐치
- 조업모식도



2. 연안개량안강망어업

- 어업의 종류 / 연안개량안강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8톤미만의 동력선 / 5통이내
- 선원수 : 2~3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꽃새우(5~10월), 중하(3~6월, 9~11월)
- 대상어종 : 꽃새우, 중하, 꽃게
- 조업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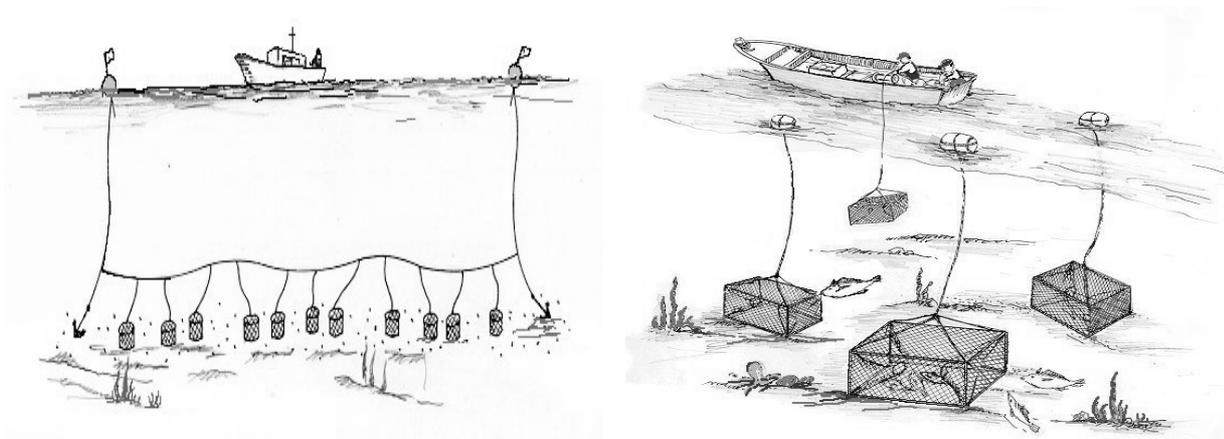
3. 연안선망어업

- 어업의 종류 / 연안선망어업
- 어선규모 / 선원수 : 8톤미만의 동력선 / 1통
- 선원수 : 6~7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전어(5~11월), 멸치(5~12월), 학공치(1~6월)
- 대상어종 : 멸치, 전어, 학공치, 까나리
- 조업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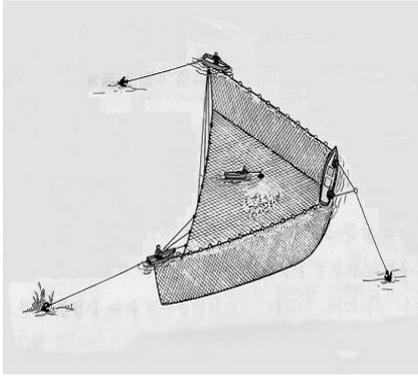
4. 연안통발어업

- 어업의 종류 / 연안통발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무동력선, 8톤미만의 동력선 / 2,500~4,000개
- 선원수 : 2~6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문어(10~6월), 골뱅이(3~11월), 민꽃게(4~11월), 우럭(3~8월)
- 대상어종 : 문어, 골뱅이, 민꽃게, 우럭, 노래미, 붕장어
- 조업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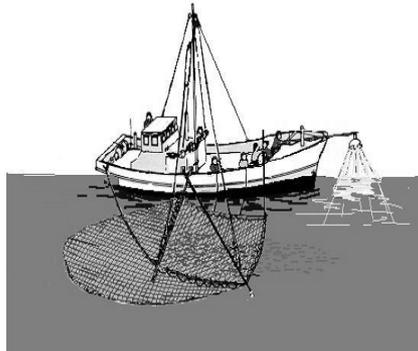


5. 연안들망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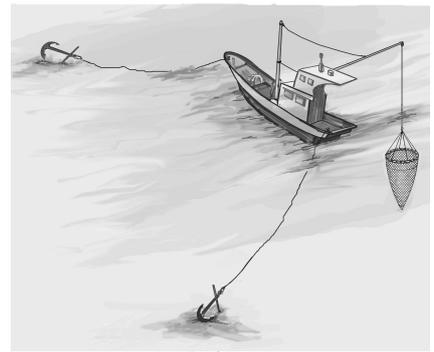
- 어업의 종류 / 연안들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무동력선, 10톤미만의 동력선 / 1~2통
- 선원수 : 2~8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말쥐치(4~6, 9~12월), 멸치(6~12월), 화살꼴뚜기(2~4월), 자리돔(4~7월)
- 대상어종 : 말쥐치, 멸치, 화살꼴뚜기, 자리돔
- 조업모식도



삼척들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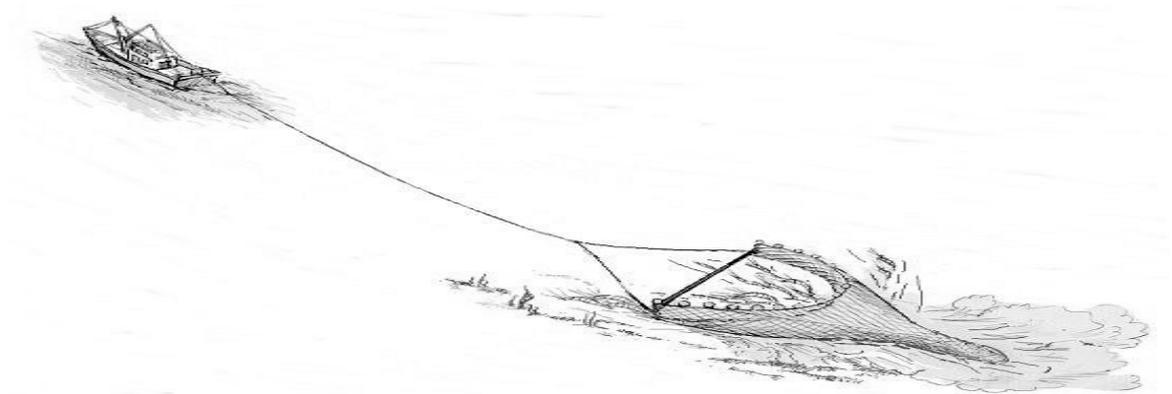
초망



들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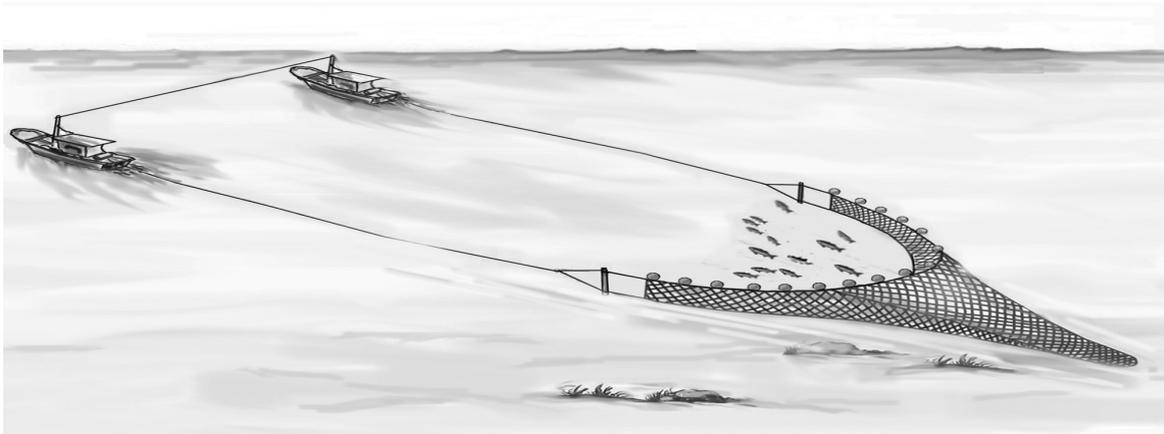
6. 연안조망어업

- 어업의 종류 / 연안조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8톤미만의 동력선 / 1통
- 선원수 : 2~3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중하(연중), 자주새우(4~10월), 꽃새우(4~11월)
- 대상어종 : 중하, 자주새우, 꽃새우
- 조업모식도



7. 연안선인망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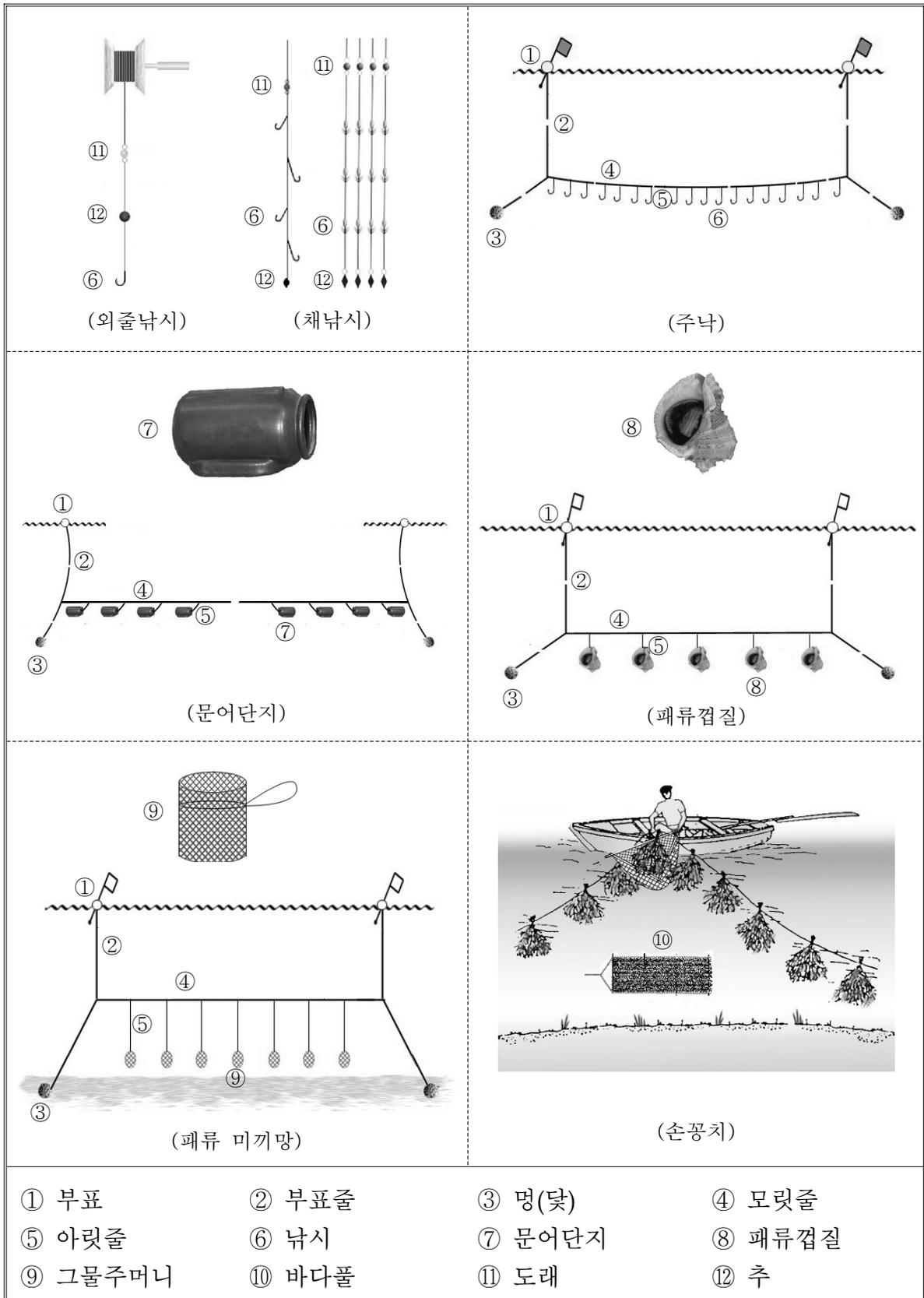
- 어업의 종류 / 연안선인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8톤미만의 동력선 / 1통
- 선원수 : 5~10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멸치(10~12월), 학공치(3~6월, 11월~1월)
- 대상어종 : 멸치, 학공치
- 조업모식도



8. 연안복합어업

- 어업의 종류 / 연안복합어업
- 어선규모 : 무동력선, 10톤미만의 동력선
- 사용어구수
 - 외출낚시 : 1인당 사용낚시수(조) - 1~50조
 - 연승 : 3~500광주리
 - 패류껍질어업 : 소라껍질 3,000여개를 1조로 하여 10~15조 사용
 - 패류미끼망어업 : 미끼주머니 1,000여개 사용
- 선원수 : 1~8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3~5월(패류껍질어업), 4~7월(패류미끼망어업), 5~7월, 11월(손꽂치어업)
- 대상어종
 - 외출낚시 : 문어, 복어, 농어, 불락, 넙치, 숭어, 우럭, 노래미, 감성돔, 도미, 방어
 - 채낚기 : 오징어, 갈치
 - 연승 : 명태,가자미,붕장어,갈치,망둑어,농어,도미,가오리,우럭,낙지,갯장어,노래미,복어,옥돔,상어
 - 문어단지어업 : 참문어, 왜문어, 주꾸미
 - 패류껍질어업 : 주꾸미
 - 패류미끼망어업 : 피빨고둥, 갈색띠매물고둥
 - 손꽂치어업 : 꽂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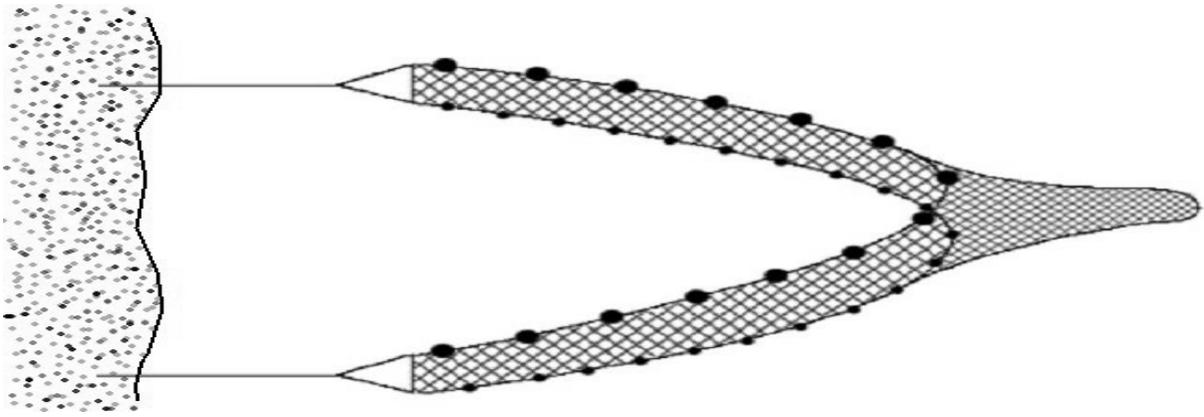
■ 연안복합어업의 조업모식도



【 구획어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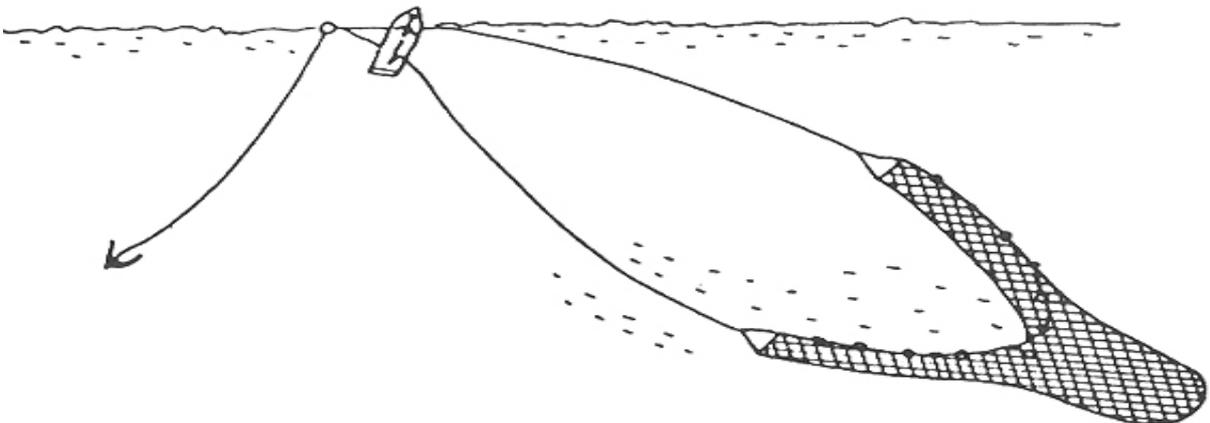
1. 지인망어업

- 어업의 종류 / 지인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무동력선, 5톤 미만의 동력선
- 선원수 : 약 6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멸치(4~10월)
- 대상어종 : 멸치
- 조업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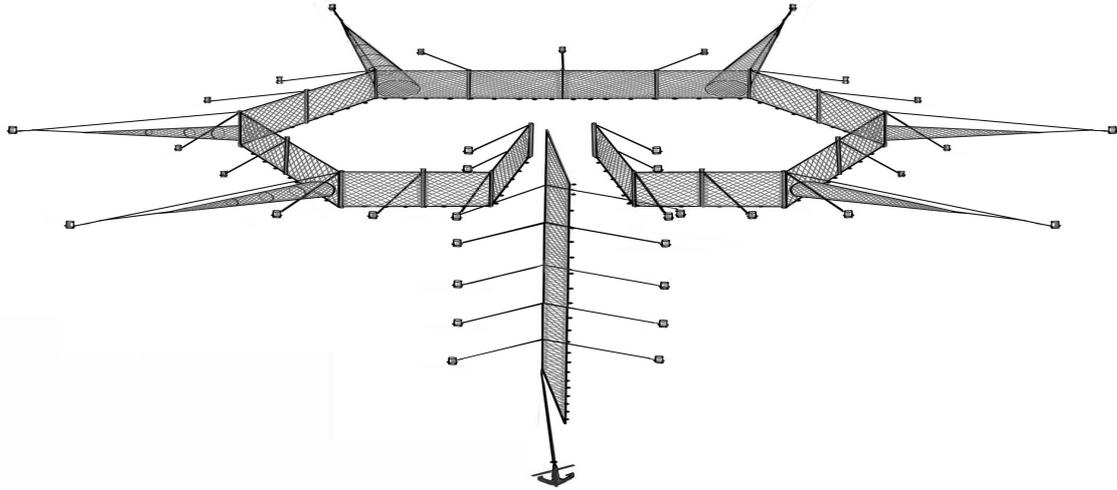
2. 선인망어업

- 어업의 종류 / 선인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무동력선, 5톤미만의 동력선 / 1통
- 선원수 : 2~4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대상어종 : 연중 / 가자미, 새우, 게
- 조업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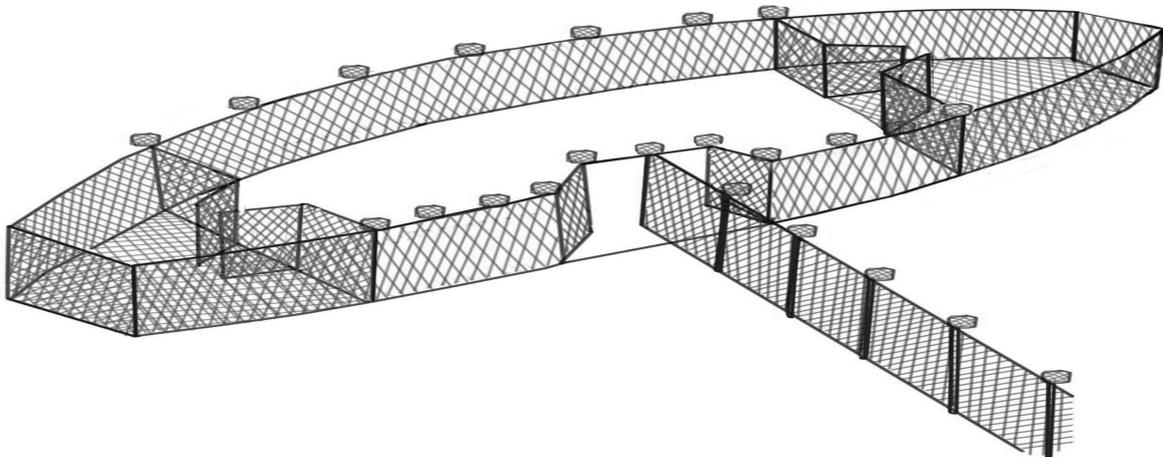
3. 호망어업

- 어업의 종류 / 호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무동력선, 5톤미만의 동력선 / 1통
- 기관마력 / 선원수 : 50마력 내외 / 3~4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2~4월(숭어), 3~4월(말쥐치, 넙치, 숭어), 5~6월(임연수어), 8~9월(방어, 갑오징어)
- 대상어종 : 숭어, 말쥐치, 넙치, 숭어, 임연수어, 방어, 갑오징어
- 조업모식도



4. 건망어업

- 어업의 종류 / 건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무동력선, 5톤미만의 동력선 / 1통
- 선원수 : 2~3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대상어종 : 4~7월 / 멸치, 갈치
- 조업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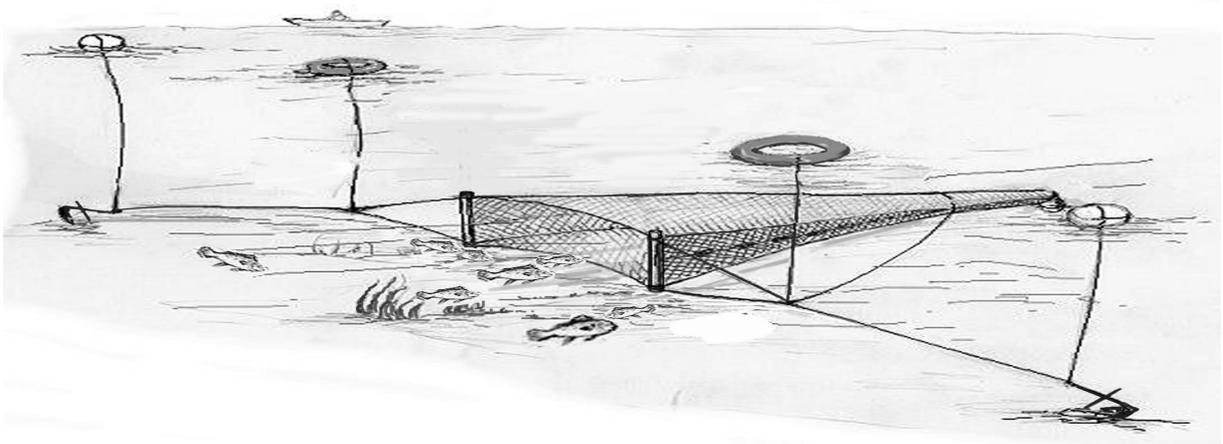
5. 건강망어업

- 어업의 종류 / 건강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무동력선, 5톤미만의 동력선 / 1통
- 선원수 : 2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2~11월
- 대상어종 : 젓새우류, 중하, 갑오징어, 삼치, 숭어, 대하, 민어, 꽃게, 망둑어
- 조업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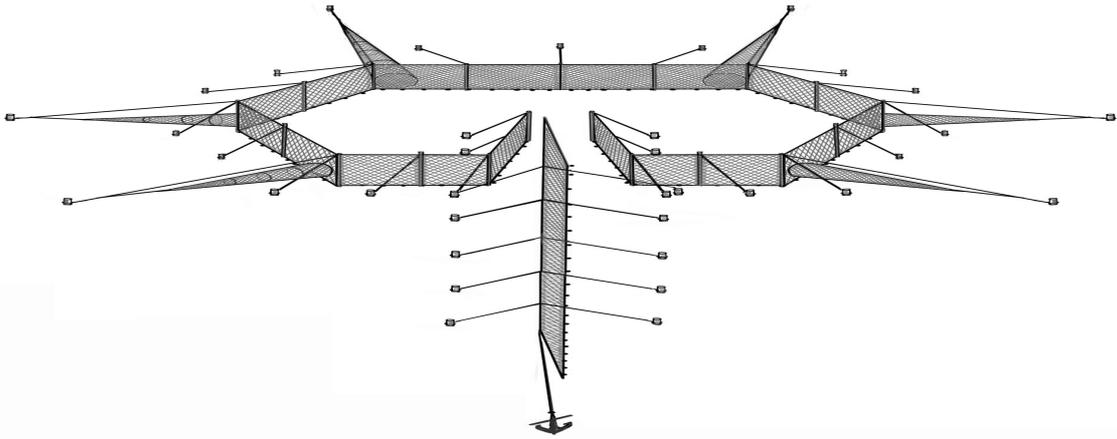
6. 주목망어업

- 어업의 종류 / 주목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무동력선, 5톤미만의 동력선 / 1통
- 선원수 : 2~4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3~12월
- 대상어종 : 젓새우, 해파리, 멸치, 베도라치, 복어
- 조업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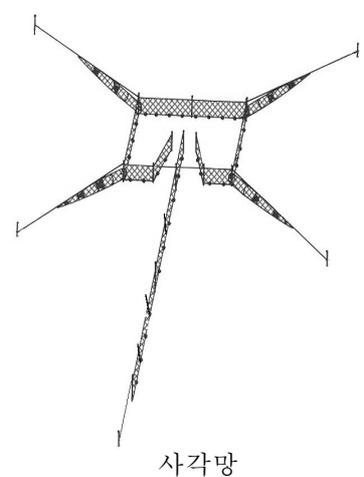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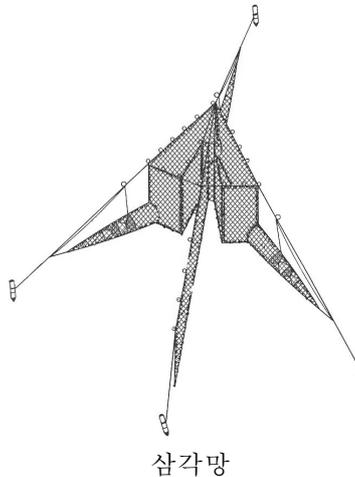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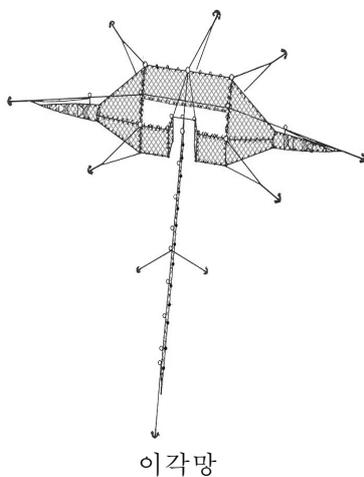
7. 승망어업

- 어업의 종류 / 승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무동력선, 5톤미만의 동력선 / 1통
- 선원수 : 2~3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10~5월(송어), 3~6월 9~12월(감성돔), 12~5월(농어), 11~3월(대구), 5~9월(방어), 5~9월(전어)
- 대상어종 : 송어, 감성돔, 농어, 전어, 대구, 방어, 메기, 보구치
- 조업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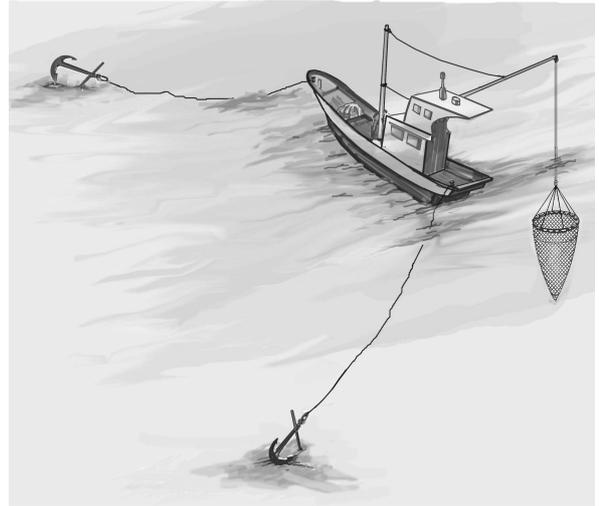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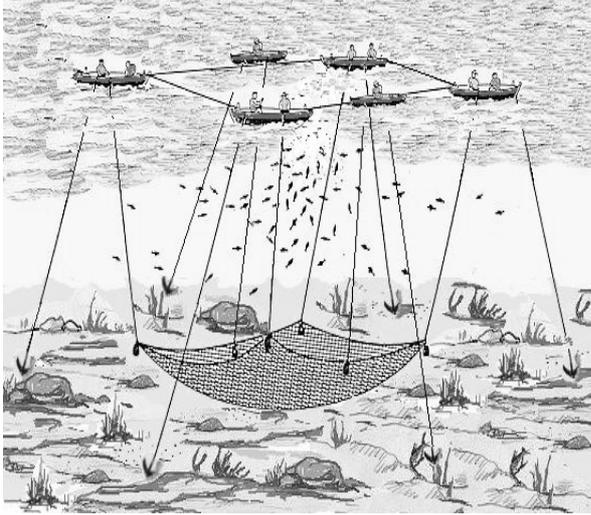
8. 각망어업

- 어업의 종류 / 각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무동력선, 5톤미만의 동력선 / 1통
- 선원수 : 5~8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대상어종 : 5~7월 / 부시리, 갈치, 오징어, 전갱이, 멸치
- 조업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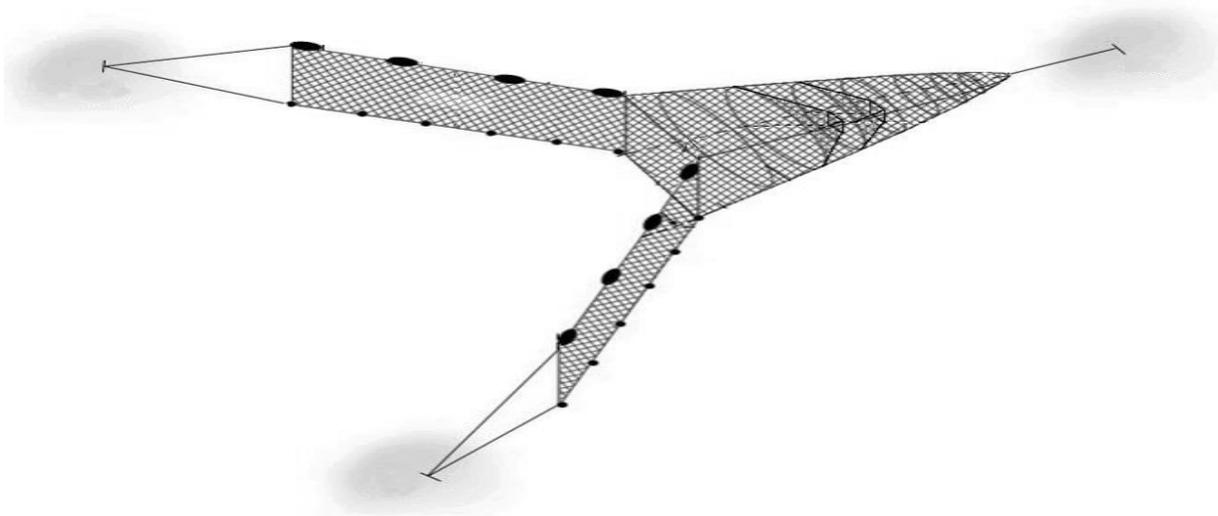
9. 부망어업

- 어업의 종류 / 부망어업
- 어선규모 : 무동력선, 5톤 미만의 동력선
- 대상어종 : 멸치, 전어, 까나리, 전갱이
- 조업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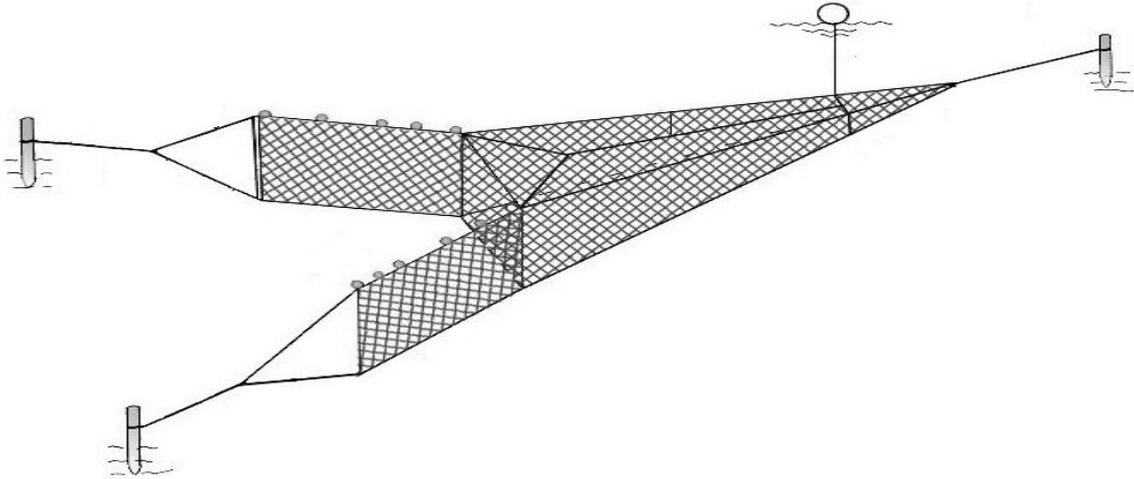
10. 장망어업

- 어업의 종류 / 장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무동력선, 5톤미만의 동력선 / 1통
- 선원수 : 1~2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11~5월
- 대상어종 : 빙어, 붕어, 잉어, 멸치, 전어, 까나리, 숭어, 전갱이, 농어
- 조업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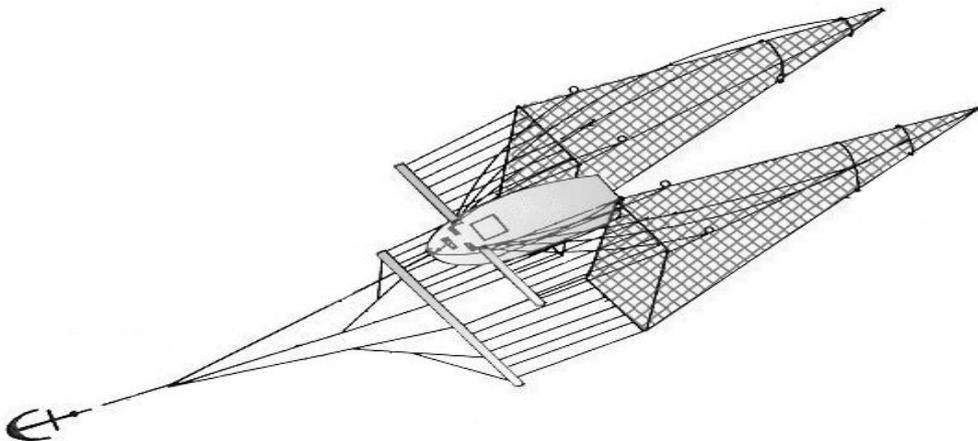
11. 낭장망어업

- 어업의 종류 / 낭장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무동력선, 5톤미만의 동력선 / 1통
- 선원수 : 2~6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3~11월
- 대상어종 : 멸치, 베도라치, 까나리, 삼치, 실뱀장어, 멸치, 방어, 새우류, 꽃게, 오징어, 갈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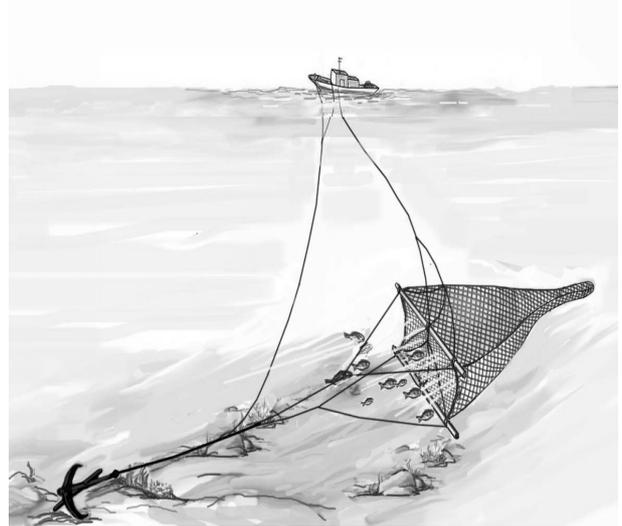
12. 해선망어업

- 어업의 종류 / 해선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무동력선 / 1통
- 선원수 / 주 조업시기 : 2~3명 내외 / 3~7월, 9~11월
- 대상어종 : 베도라치(실치), 까나리, 뱀멍이, 멸치, 중하, 해파리, 젓새우, 꽃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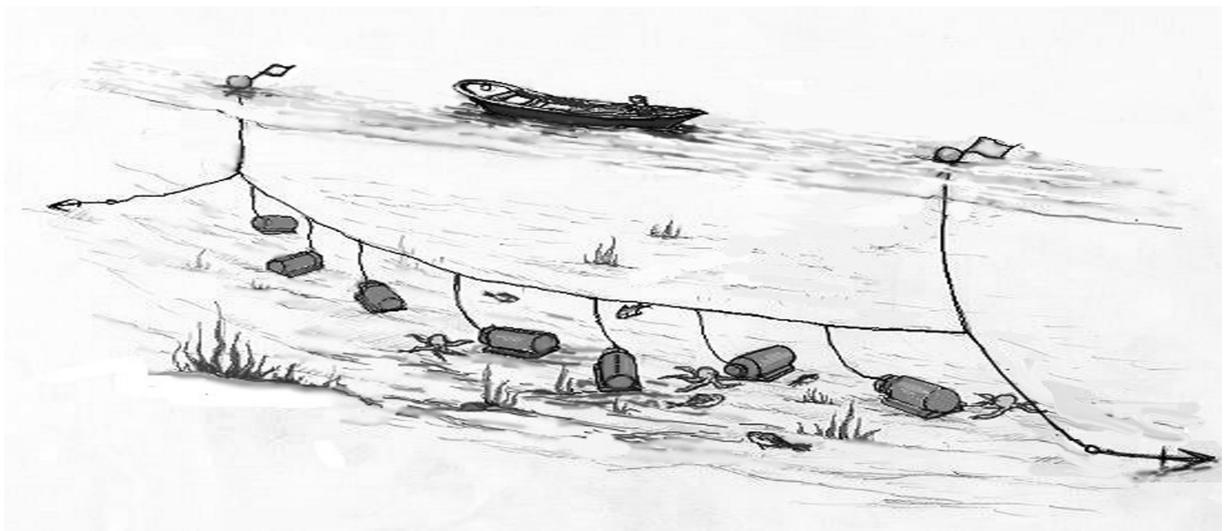
13. 안강망어업

- 어업의 종류 / 안강망어업
- 어선규모 : 무동력선, 8톤미만의 동력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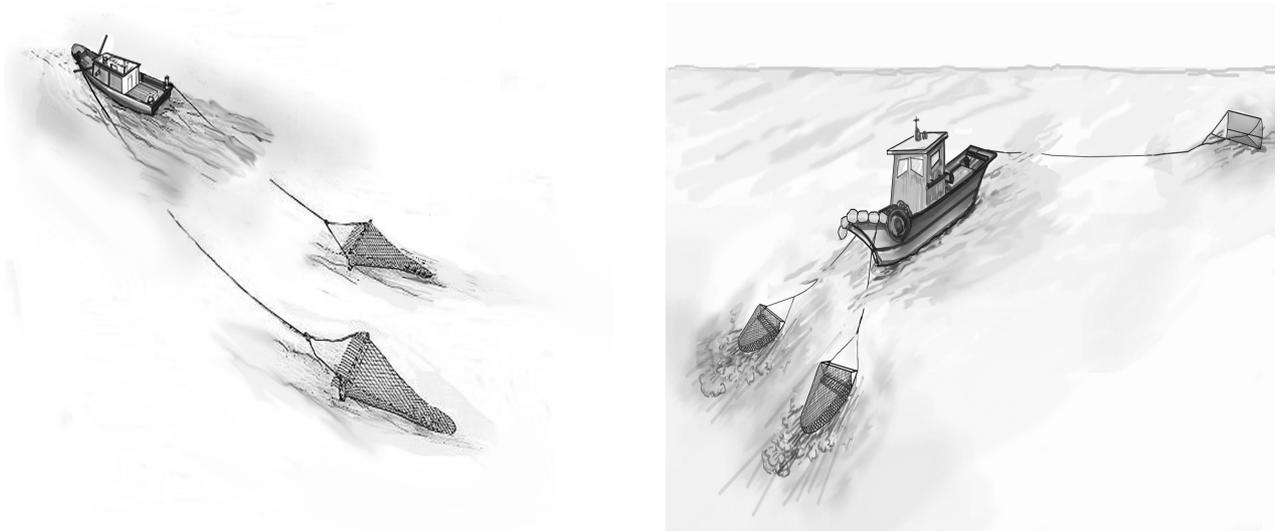
14. 문어단지어업

- 어업의 종류 / 문어단지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무동력선 / 1,500~3,000개
- 선원수 : 2~3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6~8월
- 대상어종 : 참문어, 왜문어, 주꾸미
- 조업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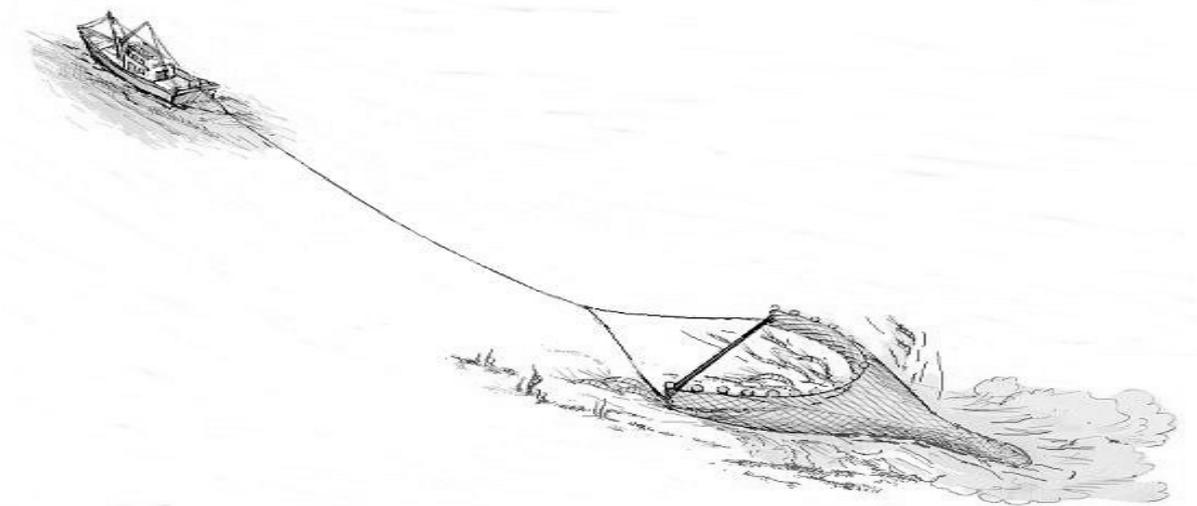
15. 패류형망어업

- 어업의 종류 / 패류형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무동력선, 5톤미만의 동력선 / 2통이내
- 선원수 : 2~8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연중
- 대상어종 : 피조개,바지락,민들조개,북방대합,개랑조개,백합,접시조개,가리비,소라,대황,재첩



16. 새우조망어업

- 어업의 종류 / 새우조망어업
- 어선규모 : 무동력선, 5톤미만의 동력선
- 대상어종 : 새우류, 중하, 가오리류, 꽃게류



17. 실뱀장어안강망어업

- 어업의 종류 / 실뱀장어안강망어업
- 어선규모 / 사용어구수 : 무동력선, 5톤미만의 동력선 / 2통이내
- 선원수 : 2~3명 내외
- 주 조업시기 / 대상어종 : 3~6월, 12~4월 / 실뱀장어

